

새로운 경기

공정환 세상

2020 환경백서



목 차

제1부 일반현황

제1장

경기도의 여건과 환경행정 기본현황

제1절 지역적 기초여건	1
1. 위치	2
2. 자연환경	3
3. 인구	4
4. 행정구역	5
제2절 환경행정 기본현황	6
1. 환경행정 조직의 변천	7
2. 환경분야 근무인력	13
3. 환경분야 사무분장	16
4. 환경분야 예산	18

제2장

경기도 환경행정 추진현황

제1절 2019년 환경행정 주요정책 추진사항	20
1. 2019년 주요성과	21
2. 환경정책 분야 추진상황	25
3. 기후에너지 분야 추진상황	30
4. 미세먼지대책 분야 추진상황	34
5. 환경안전관리 분야 추진상황	39
6. 자원순환 분야 추진상황	43
7. 북부환경관리 분야 추진상황	47
제2절 2020년 환경행정 추진계획	49
1. 2020년 업무추진 여건	50
1. 2020년 핵심정책 추진방향	50
2. 2020년 정책목표 및 핵심전략	52

제2부 분야별 환경정책

제1장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기반조성

제1절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55
1. 지속가능발전목표 개념	56
2.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현황	57
3.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발전방향	58
제2절 환경산업 육성·지원	59
1. 환경기업 해외진출 지원	60
2. 녹색제품 보급 활성화	62
제3절 환경보전기금 설치·운용	65
1. 추진배경 및 운용현황	66
2. 용자 및 지원 대상	67
제4절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69
1. 설립배경 및 기능	70
2. 운영현황	72
3. 향후 발전방향	74
제5절 환경 교육 및 홍보	75
1.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운영	76
2.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77
3. 환경교육 문화사업	78
제6절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성화	79
1. 현황 및 성과	80
2. 발전방향 및 향후계획	80
제7절 자연환경 현황	81
1. 생태기반 및 자원현황	82
2.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88
제8절 생물자원의 조사와 보전관리	90
1.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관리	91
2. 야생생물 보호대책	95
3. 생태통로(Eco-bridge)의 조성 및 관리	100
제9절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	102
1.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개요	103
2.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운영	106

제2장

저탄소 실현 에너지 정책 추진

제1절 기후변화 현황 및 대책	110
1. 지역특성 및 기후현황	111
2.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113
3. 기후변화 대응대책	117
4. 기후변화 적응대책	123
제2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	126
1.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수급 현황	127
2. 제5차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130
3. 경기도에너지센터 운영사업	132
4.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133
5.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설치지원	134
6.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35
7.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136
8.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137
9.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138
제3절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	141
1.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 대책	142
2.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지원	144
3.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	145
4. 도민 가스안전 확보	146
제4절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148
1.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149
2.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151

제3장

도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

제1절 일반현황	154
1. 대기환경관리 현황	155
2. 미세먼지 발생원 분석	156
제2절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청정한 대기질 조성	157
1.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158
2.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160
3.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161
4.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64

5. 실내공기질 관리	165
6. 저녹스 버너 및 보일러 지원사업	172
7.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운영	173
8.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지원	174
9.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75
제3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확대 보급	176
1. 수소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177
2.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78
3. 천연가스 버스 보급대책	180
4.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181
제4절 운행 이동오염원 관리강화로 미세먼지 저감	182
1.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83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186
3. 노후건설기계 관급공사장 사용 규제	189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190
제5절 미세먼지 저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192
1. 유엔환경계획(UNEP)-경기도 국제협력 증진	193
2. 중앙정부 및 인접 지방정부와 미세먼지 공동 대응	194

제4장

환경오염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1절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	196
1. 유해화학물질 관리현황	197
2.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례	200
3.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체계 구축	201
제2절 사업장 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	204
1. 환경기술 지원	205
2.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개선 지원	206
3. 악취방지대책	207
제3절 배출시설 및 환경서비스업 엄격 관리	212
1.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213
2. 생태독성 관리제도	214
3.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216
4.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218
5. 측정대행업 등록	219
6.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220

7.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221
8. 폐수처리업 등록	221
제4절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 삶의 질 개선	222
1. 소음·진동 현황과 발생 실태	223
2. 소음·진동 방지대책	225
3.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지원	227
4.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227
5.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	228
6.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229
7. 환경성질환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230

제5장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구현

제1절 일반현황	233
1. 폐기물관리의 기본 방향	234
2. 경기도 폐기물 통계자료 작성	234
3.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235
4.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236
5.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	236
6. 의료폐기물 관리	237
7.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 도입	238
8. 불법폐기물 관리 및 예방 대책	239
9.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239
10.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240
제2절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41
1. 자원순환 정책 비전 수립	242
2. 깨끗한 경기만들기 추진	243
3. 생활폐기물 배출수거 체계 개선	244
4. 자원순환마을 조성	245
제3절 폐기물재활용 활성화	246
1. 폐기물재활용 의의	247
2. 재활용품 수거량 및 재활용률	247
3.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시행	248
4.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249
5.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250
6.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251
7. 1회용품 사용 줄이기	252

제4절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화	253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54
2. 음식물류 폐기물 원천적 감량	255
3. 자원화시설 기반 구축	255
제5절 생활폐기물 처리	256
1. 소각시설 관리 및 건설	257
2. 매립지 관리 및 건설	264
3. 사용종료매립지 공원 조성 사업	266
4. 폐기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268

제6장	환경과 기업이 상생하는 경기도 조성
------------	----------------------------

제1절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환경서비스 지원	270
1. 산단 배출업소 맞춤형 인허가 지원	271
2.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환경닥터제)	273
3. 신규 사업장 환경시설 운영관리방법 지원	275
제2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감시 강화	278
1. 대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279
2. TMS 등을 활용한 과학적 감시 활동	284
제3절 도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환경행정 구현	286
1.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287
2. 민간환경감시원 운영	288
3.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289
4. 환경법 위반업소 공개	291
제4절 숲속공장(Plant in the Forest) 조성	292
1. 숲속공장 조성 추진배경	293
2. 추진내용 및 성과	295
3. 평가 및 발전방안	296

부 록

1. 주요 환경통계	299
2. 관련 법률 및 소관 조례	304

표 목 차

<표 1-1-1> 경기도 위치와 극점	2
<표 1-1-2> 경기도 인구 현황	4
<표 1-1-3> 경기도 행정구역 현황	5
<표 1-1-4> 환경행정조직의 변천	11
<표 1-1-5> 환경국 근무인력 현황	14
<표 1-1-6>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환경분야) 근무인력 현황	14
<표 1-1-7> 수자원본부 근무인력 현황	15
<표 1-1-8>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근무인력 현황	15
<표 1-1-9> 환경국 부서별 사무분장내역	16
<표 1-1-10> 수자원본부 사무분장내역	17
<표 1-1-11> 환경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2019년)	19
<표 2-1-1> 경기도 환경산업 일반현황	60
<표 2-1-2>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현황	61
<표 2-1-3> 녹색제품 범위	62
<표 2-1-4> 경기도 및 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제정 현황	63
<표 2-1-5> 녹색제품 구매실적	64
<표 2-1-6>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 및 기능	71
<표 2-1-7> 녹색환경지원센터 보조금 지원현황(2018~2019)	72
<표 2-1-8> 연구환경개발 및 기술지원 실적(2018~2019)	72
<표 2-1-9>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 추진현황(2019년)	73
<표 2-1-10>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실적(2019년)	77
<표 2-1-11> 경기도 자연생태자연도 등급 분포 현황	82
<표 2-1-12>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경기도 시군별 출현종 현황	83
<표 2-1-13>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현황	84
<표 2-1-14>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86
<표 2-1-15>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현황	88
<표 2-1-16> 전국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현황	91
<표 2-1-17>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현황	95
<표 2-1-18> 경기도 내 생태계교란 식물 분포현황 및 제거실적	97
<표 2-1-19> 경기도 내 생태통로 현황	100
<표 2-1-20> 시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현황	105
<표 2-1-21>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및 규모	106
<표 2-1-22>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108
<표 2-2-1> 직접배출량 분야	113
<표 2-2-2> 간접배출량 분야	113
<표 2-2-3> 분야별 직접배출량 현황	114
<표 2-2-4> 분야별 간접배출량 현황	115
<표 2-2-5>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추진전략 및 사업계획	119
<표 2-2-6>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사업	124

<표 2-2-7> 최종 에너지원별 소비량	127
<표 2-2-8> 1차 에너지원별 생산량·공급량	128
<표 2-2-9> 연도별 전력자립도(2014~2018)	128
<표 2-2-10> 도내 전력생산(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29
<표 2-2-11>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	129
<표 2-2-12> 경기도 비전, 목표 및 전략	130
<표 2-2-13>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중점과제 주요내용	131
<표 2-2-14>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133
<표 2-2-15>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설비단가	133
<표 2-2-16> 시설별 단가	134
<표 2-2-17>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134
<표 2-2-18>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135
<표 2-2-19>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136
<표 2-2-20>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연도별 사업성과 및 지원효과	137
<표 2-2-21> 도시가스 공급률	142
<표 2-2-22>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 계획	143
<표 2-2-23> 도시가스사별 공급권역	144
<표 2-2-24> 연료별 가격비교	145
<표 2-3-1>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저감목표	158
<표 2-3-2>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159
<표 2-3-3> 대기질 개선 목표	160
<표 2-3-4>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시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	161
<표 2-3-5> 비상저감조치 시행횟수	163
<표 2-3-6> 경기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주요 추진과제	164
<표 2-3-7>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인체 영향	165
<표 2-3-8>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167
<표 2-3-9>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69
<표 2-3-10> 일반버너와 저녹스버너 비교	172
<표 2-3-11> 일반보일러와 저녹스보일러 비교	172
<표 2-3-12> 경기도 배출사업장 단속인력 현황	173
<표 2-3-13> 경기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현황	174
<표 2-3-14> 도로청소방법 분류	175
<표 2-3-15>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별 장단점	175
<표 2-3-16> 천연가스 버스 보급현황(2019년)	180
<표 2-3-17>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률	184
<표 2-3-18>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184
<표 2-3-19>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구분	188
<표 2-3-20> 연도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191
<표 2-4-1>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소 현황	198
<표 2-4-2>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사고 건수	200
<표 2-4-3> 유관기관별 업무분담 현황	202
<표 2-4-4>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203

<표 2-4-5> 지정악취물질	207
<표 2-4-6> 발생원별 주요 악취발생 공정과 물질(일부)	208
<표 2-4-7> 경기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209
<표 2-4-8> 최근 5년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내역	210
<표 2-4-9> 경기도 내 악취관리지역 현황	211
<표 2-4-10> 생태독성 적용대상 폐수배출 업종별 현황 및 평균독성(TU)	214
<표 2-4-11>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215
<표 2-4-1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추진 체계	216
<표 2-4-13>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국비) 지원비율	216
<표 2-4-14> 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	217
<표 2-4-15> 공사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	217
<표 2-4-16> 환경전문공사업 현황	218
<표 2-4-17> 환경전문공사업 지도·점검 결과	218
<표 2-4-18> 측정대행업 현황	219
<표 2-4-19> 측정대행업 지도·점검 결과	219
<표 2-4-20> 환경관리대행기관 현황	220
<표 2-4-21> 환경관리대행기관 분야별 관리대행 지도점검 실적	220
<표 2-4-22> 환경컨설팅회사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221
<표 2-4-23> 폐수처리업소 현황	221
<표 2-4-24>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2019년)	225
<표 2-4-25> 특정 공사장 지도·점검실적(2019년)	225
<표 2-5-1>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235
<표 2-5-2>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35
<표 2-5-3>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235
<표 2-5-4>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처리현황	236
<표 2-5-5>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36
<표 2-5-6> 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37
<표 2-5-7> 불법폐기물 처리현황	239
<표 2-5-8>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239
<표 2-5-9>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	247
<표 2-5-10>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현황(2018년)	247
<표 2-5-11>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주체별 역할	248
<표 2-5-12>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시행지역	249
<표 2-5-13> 연도별 농촌폐비닐 수거현황('13~'19년)	249
<표 2-5-14>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현황	250
<표 2-5-15> 연도별 생활자원회수센터 처리현황	250
<표 2-5-1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현황	255
<표 2-5-17>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여열 생산 및 이용실적(2019년)	259
<표 2-5-18> 소각장별 다이옥신 배출기준 및 연도별 배출농도 현황	260
<표 2-5-19>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262
<표 2-5-20> 중·소형 소각시설 현황	262
<표 2-5-21> 수도권매립지의 경기도 폐기물 반입 추이	264

<표 2-5-22> 경기도 매립시설 현황	265
<표 2-6-1> 배출업소 및 허가(신고)현황	271
<표 2-6-2> 최근 3년간 배출업소 및 배출시설 인·허가 처리 현황	271
<표 2-6-3> 주요 민원 처리기간 단축 실적	272
<표 2-6-4> 연도별 환경컨설팅 실적(2014~2019)	272
<표 2-6-5> 환경기술지원(환경닥터제) 지원현황	273
<표 2-6-6> 대기 배출부과금 부과현황(2019년)	280
<표 2-6-7>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현황(2019년)	280
<표 2-6-8>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81
<표 2-6-9> 수질 배출부과금 부과현황(2019년)	282
<표 2-6-10>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현황(2019년)	283
<표 2-6-11> 드론 장비현황	285
<표 2-6-12> 명예환경감시원 현황	287
<표 2-6-13> 명예환경감시원 환경오염신고 현황	287
<표 2-6-14> 명예환경감시원 캠페인 및 홍보활동 현황	287
<표 2-6-15> 민간환경감시원 활동 및 실적	288
<표 2-6-16>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289
<표 2-6-17> 2019년 환경오염행위 신고 현황	289
<표 2-6-18> 2019년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현황	290
<표 2-6-19> 최근 3년간 위반업체 인터넷 공개내역	291
<표 2-6-20> 독일 슈투르가르트의 바람길숲 조성 및 효과	293

그림 목 차

<그림 1-1-1> 환경국 기구표	10
<그림 1-1-2> 환경분야 총 예산 규모	18
<그림 2-1-1>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사업	67
<그림 2-1-2> 경기생물다양성탐사 행사 주요내용	68
<그림 2-1-3>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운영	76
<그림 2-1-4>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77
<그림 2-1-5> 환경교육문화사업 운영	78
<그림 2-1-6> 경기도 내 습지 현황	85
<그림 2-1-7> 시흥 및 파주 국가생태탐방로	89
<그림 2-1-8> 생태·경관보전지역 위치도	93
<그림 2-1-9> 민관합동 불법엽구 수거 행사시 수거한 불법엽구	96
<그림 2-1-10> 단풍잎돼지풀 제거 사진	97
<그림 2-1-11>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현황 및 특징(24종)	98
<그림 2-1-12>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99
<그림 2-1-13>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역의 철새 모습	99
<그림 2-2-1> 경기도 기상 및 기후변화 추세	111
<그림 2-2-2> 경기도의 권역별 기온상승 및 강수량 증가현상	112
<그림 2-2-3> 분야별 직접배출량 현황	115
<그림 2-2-4> 분야별 간접배출량 현황	116
<그림 2-2-5> 2020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비전과 목표	118
<그림 2-2-6>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비전 및 목표	123
<그림 2-2-7> 경기도에너지센터 추진현황	132
<그림 2-2-8> 에너지자립마을 설치 사례	135
<그림 2-2-9> 미니태양광 설치 사례	136
<그림 2-2-10>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설치지원 시설 종류	137
<그림 2-2-11>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구축 기본계획	138
<그림 2-2-12>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구축 기본계획 분야별 중점과제	139
<그림 2-2-13> 수소추출시설(수소생산기지)	140
<그림 2-2-14> 안산시 수소시범도시 조성계획(안)	140
<그림 2-2-15>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145
<그림 2-2-16> 가스안전장치 보급	147
<그림 2-2-17> LP가스안전지킴이	147
<그림 2-2-18>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149
<그림 2-2-19>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	151
<그림 2-2-20> 에너지 행복나눔 사업	152
<그림 2-3-1>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연도별 농도비교	155
<그림 2-3-2>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행동	162
<그림 2-3-3> 배출가스 저감장치 종류	183
<그림 2-3-4> 5종 건설기계 종류	189
<그림 2-3-5> 2019년 청정대기 국제포럼	193

<그림 2-3-6>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협약식	194
<그림 2-4-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선	197
<그림 2-4-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관리 체계도	198
<그림 2-4-3>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례	200
<그림 2-4-4> 화학사고 비상연락 체계도	201
<그림 2-4-5> 대기방지시설 개선 지원	206
<그림 2-4-6> 석면피해 구제절차	228
<그림 2-4-7> 경기도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현황	229
<그림 2-4-8> 수원·가평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229
<그림 2-5-1> 2019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전략	243
<그림 2-5-2>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진	244
<그림 2-5-3> 자원순환마을 조성사례	245
<그림 2-5-4> 농촌폐비닐 수거·처리 체계도	249
<그림 2-5-5> 업사이클플라자 주요 추진사업	251
<그림 2-5-6>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254
<그림 2-5-7>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추이	254
<그림 2-5-8> 동부권 광역 소각시설(이천시)	258
<그림 2-5-9> 매립시설(남양주시 에코랜드)	265
<그림 2-5-10> 사용종료 매립지 공원조성 모습	267
<그림 2-5-11>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SRF)시설	268
<그림 2-6-1>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관리 방법 지원	276
<그림 2-6-2> TMS 운영체계	284
<그림 2-6-3> 드론장비사진	285
<그림 2-6-4> 숲속공장 조성 협약식(주요기업)	295
<그림 2-6-5> 숲속공장 조성 협약식(전체기업)	295
<그림 2-6-6> 숲속공장 조성 참여사업장 전경	296
<그림 2-6-7> 숲속공장 조성 참여사업장 전경	296
<그림 2-6-8> 「1사 1그루」 나무심기 홍보물	297

제1부 일반현황

제1장 경기도의 여건과 환경행정 기본현황

제2장 경기도 환경행정 추진현황

제 1 장

경기도의 여건과 환경행정 기본현황

제1절 지역적 기초여건

제2절 환경행정 기본현황

제1절

지역적 기초여건

1. 위치
2. 자연환경
3. 인구
4. 행정구역

1. 위 치

경기도는 동북아시아에 길게 뻗은 한반도 서부중앙지역인 동경 126°와 127°, 북위 36°와 38°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경기도의 면적은 전 국토의 약 10%인 10,185km²이다.

북쪽으로는 86km의 휴전선에, 서쪽으로는 332km의 해안선에 각각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강원도, 남쪽으로는 충청도와 인접해 있고, 그 중앙에는 서울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한강에 의해 남·북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한수 이북은 산간지역이, 한수 이남지역에는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다.

<표 1-1-1> 경기도 위치와 극점

도 청	단	지 명	극 점	연장거리(km)
동경 127° 00 ' 북위 37° 16 '	동단	양평군 청운면 도원리	동경 127° 51 '	동서간 130.0
	서단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풍도	동경 126° 22 '	
	남단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북위 36° 53 '	남북간 155.4
	북단	연천군 신서면 도밀리	북위 38° 17 '	

※ 자료출처 : 경기통계(<http://stat.gg.go.kr>)

2. 자연 환경

가. 기후

경기도의 기후는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이가 심한 대륙성 기후로서 연평균기온은 대략 11~13℃이며, 북동지역의 산악과 내륙지역은 기온이 낮고, 남서쪽 해안지역이 약간 높으며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기온차도 크다.

연평균 강수량은 1,100mm 내외로 북동부 내륙지방인 북한강 유역과 임진강상류는 1,300 ~ 1,400mm의 강수량을 나타내는 다우지역이나, 해안지방은 강수량이 900mm 내외에 불과하다.

나. 지형

지형은 추가령구조곡을 경계로 북부산지와 남부산지로 나누어지며, 북부는 중국 요동방향의 마식령산맥, 남부는 중국방향으로 뻗은 광주산맥과 차령산맥이 있으며, 이 산맥들은 동쪽에서는 고도가 높으나 서쪽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고도가 낮아져 구릉이나 평야로 변하는 동고서저(東高西低)로 바뀐다.

도내에 분포하는 주요 산들은 주로 광주산맥에 속하는데, 그중 명지산(明智山, 1,267m), 국망봉(國望峰, 1,167m), 광덕산(廣德山, 1,046m), 용문산(龍門山, 1,157m)등 1,000m를 넘는 산은 내륙 쪽에 위치해 있다.

서울 부근에 위치한 국사봉(國師峰, 764m), 천마산(天摩山, 812m), 수락산(水落山, 629m), 도봉산(道峰山, 717m), 관악산(冠岳山, 629m) 등이 700m 내외의 고도를 가지며 화강암의 박리작용(剝離作用)의 결과로 기암절벽이 많고 계곡이 깊어 예로부터 명산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하천은 한강, 임진강, 안성천(安城川) 등이며 대부분이 한강유역에 속한다. 한강은 우리나라에서 네번째로 긴 강(514km)이고, 그 유역면적은 약 2만 7,260km로 압록강에 이어 전국 제2위이다.

한강은 금강산 부근에서 발원하는 북한강 수계와 오대산 부근에서 발원하는 남한강 수계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강은 소양강, 홍천강, 청평강 등의 지류를 합치면서 서남쪽으로 흐른다. 남한강은 평창강, 옥동강, 달천, 청미천, 섬강, 북하천 등의 지류를 합치면서, 서북쪽으로 돌아 흐르다가 양수리 근처에서 북한강과 합류하여 한강의 본류를 이룬 뒤 강화도의 북쪽을 돌아 경기만으로 들어간다.

임진강은 마식령산맥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한탄강, 영평천, 사미천, 문산천 등의 지류를 모아 김포 부근에서 한강과 만난다.

평야는 대부분이 이 세 하천유역에 발달한 충적(沖積)평야로써, 한강 중류의 이천·여주뜰과 하류의 김포·부평뜰, 임진강 하류의 파주뜰, 안성천과 진위천 유역의 평택·화성뜰이 주요한 평야를 이룬다.

이밖에 한강 중·상류에는 분지(盆地)와 곡저(谷底)평야의 발달이 현저하고, 강화도·김포 및 남양만·아산만 일대에는 간척사업으로 이루어진 넓은 간척평야가 있다.

3. 인 구

가. 총괄 현황

2019년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13,653천명으로 우리나라전체 인구 51,849천명의 26.3%를 차지하며, 세대수는 5,468천세대로 전체 22,481천세대의 24.3%로 나타났다.

경기 남부 21개 시·군과 북부 10개 시·군의 인구분포율을 살펴보면 남부지역에 74.2%인 10,144천명이 북부지역에 25.8%인 3,509천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년대비 남부는 121,320명, 북부는 46,985명이 증가하였다.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는 11개시(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 시흥)로 이중 수원시가 1,235천명(경기도의 9.0%)으로 도내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크고 연천군이 44천명(경기도의 0.3%)으로 인구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1-1-2> 경기도 인구현황

(단위: 명, 세대)

구 분	인구수	세대수	구 분	인구수	세대수	구 분	인구수	세대수
합 계	13,653,984	5,468,920	광주시	385,640	156,884	경기북부	3,509,276	1,431,381
경기남부	10,144,708	4,037,539	광명시	322,494	126,001	고양시	1,078,859	434,028
수원시	1,235,022	498,836	군포시	282,862	110,005	남양주시	709,307	276,656
용인시	1,078,591	406,880	하남시	274,734	115,792	파주시	465,612	191,668
성남시	960,342	400,460	오산시	236,075	95,209	의정부시	456,776	190,760
부천시	855,685	340,160	이천시	223,349	92,643	양주시	229,778	93,026
화성시	855,949	327,797	안성시	195,207	81,599	구리시	200,755	79,870
안산시	707,385	277,331	의왕시	162,344	62,387	포천시	161,643	69,976
안양시	574,464	222,589	양평군	118,374	55,782	동두천시	98,245	42,999
평택시	537,135	226,020	양평군	114,659	50,334	가평군	63,462	30,768
시흥시	508,379	194,750	과천시	58,462	21,467	연천군	44,839	21,630
김포시	457,556	174,613						

※ 경기통계 (2019)

4. 행정구역

가. 행정구역 변천

2019년 12월 31일 현재 경기도의 행정구역은 28시, 3군, 17행정구, 543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 통·리 수는 17,156개, 96,125반이다.

<표 1-1-3> 경기도 행정구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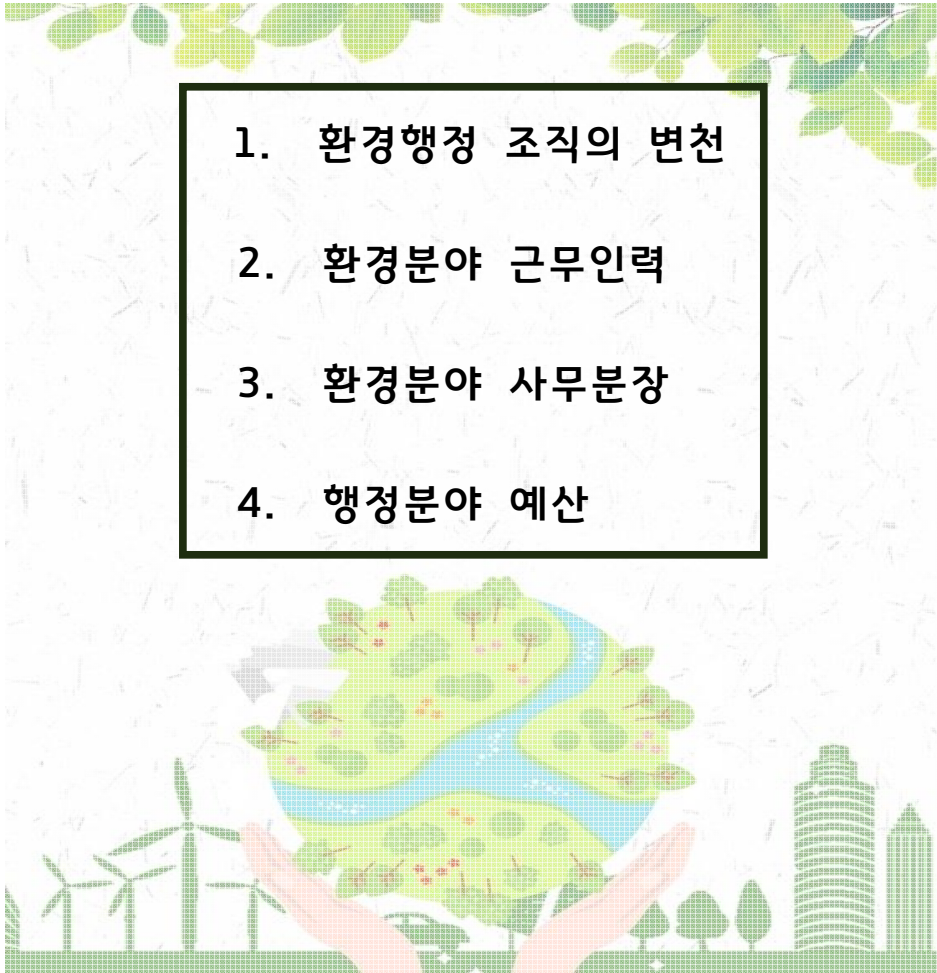
(2019년 12월말 기준)

시군구명	읍·면·동	출장소	일반구	통·리	반	면적(km ²)
합계	543	8	17	17,156	96,125	10,191.52
수원시	44	0	4	1,602	7,250	121.09
용인시	31	0	3	1,248	8,554	591.26
성남시	50	0	3	1,351	8,133	141.64
부천시	10	0	0	708	5,093	53.45
화성시	28	2	0	911	4,923	697.77
안산시	25	0	2	1,232	3,432	155.73
안양시	31	0	2	574	3,226	58.46
평택시	23	3	0	805	3,830	458.24
시흥시	18	0	0	509	3,002	138.66
김포시	14	0	0	535	3,751	276.61
광주시	10	1	0	280	1,275	430.99
광명시	18	0	0	507	3,241	38.53
군포시	11	0	0	351	2,382	36.42
하남시	13	0	0	384	2,087	92.99
오산시	6	0	0	338	2,287	42.71
이천시	14	0	0	415	2,039	461.42
안성시	15	0	0	486	1,548	533.42
의왕시	6	0	0	191	1,010	53.99
양평군	12	0	0	273	805	877.65
여주시	12	0	0	303	1,012	608.30
과천시	6	0	0	156	733	35.87
고양시	39	0	3	1,039	6,484	268.08
남양주시	16	1	0	632	5,203	458.12
파주시	20	1	0	424	3,444	673.23
의정부시	14	0	0	659	3,733	81.54
양주시	11	0	0	268	2,259	310.39
구리시	8	0	0	311	1,872	33.33
포천시	14	0	0	287	1,057	826.96
동두천시	8	0	0	155	1,228	95.66
가평군	6	0	0	126	597	843.69
연천군	10	0	0	96	635	676.32

제2절

환경행정 기본현황

1. 환경행정 조직의 변천
2. 환경분야 근무인력
3. 환경분야 사무분장
4. 행정분야 예산



1. 환경행정 조직의 변천

경기도의 환경행정 조직은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던 1970년대까지는 보건사회국 보건과 위생계(2명)에서 담당해오다가 환경오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1980년 2월에 보건사회국 환경위생과에 공해방지계(5명)가 신설되면서 환경행정 조직이 시작되었다.

1987년 4월 공해방지계가 환경관리계로 개칭되었고, 같은 해 9월에는 폐기물처리계(4명)가 신설되어 폐기물업무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989년 9월에 정원 19명으로 환경보호담당관실(자연보호계,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폐기물처리계)이 신설되어 과(課)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91년 7월에 보건사회국이 보사환경국으로, 환경보호담당관실이 환경보호과로 개칭되었고, 1992년 7월에는 배출업소 관리권한이 환경부에서 이관되어 환경보호과를 환경관리과(20명)와 환경지도과(17명)로 분리 개편하면서 인력도 총 37명으로 대폭 보장되었다.

환경관리과에는 환경기획계, 환경관리계, 청소1계, 청소2계를 두었으며 환경지도과에는 환경지도계, 대기지도계, 수질지도계를 두었다. 1993년 7월에는 환경관리과의 청소1계를 청소계로, 청소2계를 오수관리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시설계를 신설하여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1994년 5월에는 팔당호 등 수질 오염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과에 수질보전계를 신설하였다. 1995년 6월 환경관리과의 수질보전계와 건설도시국의 상수도기획계, 상수도관리, 시설계 및 하수도계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보사환경국으로 흡수하여 포함시켜 상하수도과를 신설하면서 본격적인 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면서 1996년 1월 보사환경국에서 환경국을 분리하면서 환경 분야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국(局) 체계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조직도 환경지도과를 폐지하고 환경보전과에 환경기획계, 환경관리계, 생태보전계, 생활환경계, 대기보전계를,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계, 재활용계, 청소시설계를, 상하수도과를 상하수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상하수기획계, 상수도관리계, 하수관리계, 오·폐수관리계, 수질보전계를 각각 두게 되었다.

또한, 한수이북 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북부출장소에 환경관리과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환경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고 환경행정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조직체제도 “계”체제가 폐지되고 “담당”제를 도입하였다.

경기도에서도 정부방침에 맞추어 1998년 9월 1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과 환경보전 욕구를 수용하여 환경정책과를 신설하고 청소행정과를 폐기물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환경정책과에는 환경기획담당, 정책개발담당, 환경정책과제팀을 두어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환경정책과의 신설로 기존의 환경보전과 환경기획계와 상하수관리과 상수도기획계가 폐지되었다.

아울러, 1999년 9월 2단계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업무수행기능이 유사한 환경정책과의 환경정책과제팀과 정책개발담당을 통합하고, 환경보전과의 자연생태담당을 환경정책과로 옮겼다.

이와 함께 미래의 소중한 자원으로 이용가치가 높은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하수관리과에 지하수업무를 전담하는 지하수관리담당을 신설하고, 오수관리담당을 수질관리담당으로, 수질관리담당을 한강수계 담당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여 1국 4과 14담당 체제로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1년 11월에는 폐기물관리과를 환경자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폐기물재활용담당을 음식물자원담당으로, 폐기물시설담당을 환경시설담당으로 개칭하였다.

또한, NGO의 도정참여가 확대되면서 이들과의 협력관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환경정책과의 정책개발담당을 환경협력담당으로 개칭하였다.

그동안 환경부에서 관리해오던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의 관리권이 2002년 10월 1일부터 시·도로 위임되면서 경기도내 25개 산업단지 2,930개 업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과에 인력 12명을 보강, 공단환경관리담당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을 중앙에 건의하여 2003년 4월 7일 배출업소 단속공무원 16명과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인력 10명 등 총 26명의 인력이 증원되었고 환경보전과 공단환경지도담당을 신설하여 14명과 제2청 맑은물보전과에 2명을 각각 배치함으로써 지역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2003년 6월 27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재정사건중 1억원이하 소액사건 처리업무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양됨에 따라 환경분쟁소액 사건을 환경보전과 생활환경담당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2004년에는 환경정책과에 환경분쟁조정담당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한수이북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북부출장소가 2000년 2월 제2청사로 승격되면서 당초 환경업무를 1과 4담당(팀)이 운영해오던 것을 환경보건국내에 환경관리과, 맑은물보전과 등 2과를 두게 되었다. 환경관리과에는 환경정책담당, 환경자원담당, 생태환경담당을, 맑은물보전과에는 수질보전담당, 상하수도담당과 임진강수계팀을 두어 5담당 1팀 체제로 대폭

증설하였다.

또한, 2002년 10월 1일 산업단지에 대한 배출업소 관리권의 이관으로 한수 이북지역 3개 산업단지를 관리하기 위해 인력 2명을 보강하여 북부지역도 환경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3년 11월 26일 맑은물보전과의 상하수담당을 상수관리담당, 하수관리담당으로 분리하여 업무의 가중을 해결하였고 2004년에는 임진강수계팀을 환경지도담당으로 변경하였다.

2005년 10월 28일 대기보전업무의 강화를 위하여 환경보전과를 대기관리과로 변경하고, 기존의 담당을 대기총량·대기보전·교통공해·환경관리·생활환경의 5개 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공단환경관리·공단환경지도·공단환경조사팀 등 3팀으로 구성된 공단환경사업소를 신설하여 환경공해 우심지역인 공단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상하수관리과를 맑은물관리과로 제2청 맑은물보전과를 환경보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기관리담당을 신설하였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과 팔당상수원지역의 규제를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2006년 9월 19일 대기관리과의 환경관리담당과 맑은물관리과 한강수계담당,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를 통합하여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설치하고, 환경정책과의 공원업무를 산림녹지과로 이관하여 공원생태담당을 자연생태담당으로 변경하고, 환경분쟁조정담당을 환경협력담당으로 흡수 통합하고 환경자원과와 환경자원과의 재활용담당을 폐지하고 환경자원담당과 환경시설담당을 환경정책과에 흡수시켰다.

2007년 2월 22일 물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수질정책과, 수질관리과, 상하수관리과등 3개과 11팀으로 조직을 확대 시켰고, 또한 자원재활용업무의 중요성을 인식 환경정책과에 있던 업무를 자원재활용과를 신설하여 분리시켰다.

2007년 7월 1일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담당하던 산업폐수업무를 폐수배출사업장의 민원편의 등의 사유로 대기관리과로 이체하여 4담당에서 5담당체제로 변경되었다.

2009년 1월 5일 환경정책과에 산림녹지과소속 공원관리담당이 도시공원담당으로 이체되었으며 남한산성도립공원이 신설되었다. 대기관리과는 대기총량담당이 대기정책담당으로 기후변화담당이 대기보전담당으로 변경되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수질오염총량과를 신설하여 수질정책과 오염관리담당과 상하수관리과 하수시설담당을 이체받고 총량기획담당을 신설하였다.

2009년 3월 24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공단환경관리담당은 친환경관리담당으로 공단환경지도담당과 공단환경조사담당은 친환경지원담당으로 통합됐다.

2009년 11월 2일 환경정책과 도시공원담당이 공원관리담당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2010년 3월 19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친환경관리담당이 공단기획담당으로 친환경지원담당이 공단관리담당으로 변경되었으며, 공단지도담당이 신설되었다.

2010년 11월 25일 대기관리과가 기후대기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1년 4월 7일 환경정책과 가축매몰지사후관리담당과 팔당수질개선본부 상하수과에 가축매몰지수질관리담당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조직으로 신설되었으며, 2011년 12월 26일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관리과 수질관리담당이 팔당상수원관리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2년 3월 5일 도시환경국 환경과 폐지, 환경국 북부환경관리사업단 3팀 신설되었고, 2012년 9월 구미 불산사고,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의 불산누출사고 등 각종 화학사고로 인한 체계적인 환경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13년 5월 1일 환경국내에 환경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기후대기과의 대기보전·산업폐수팀을 이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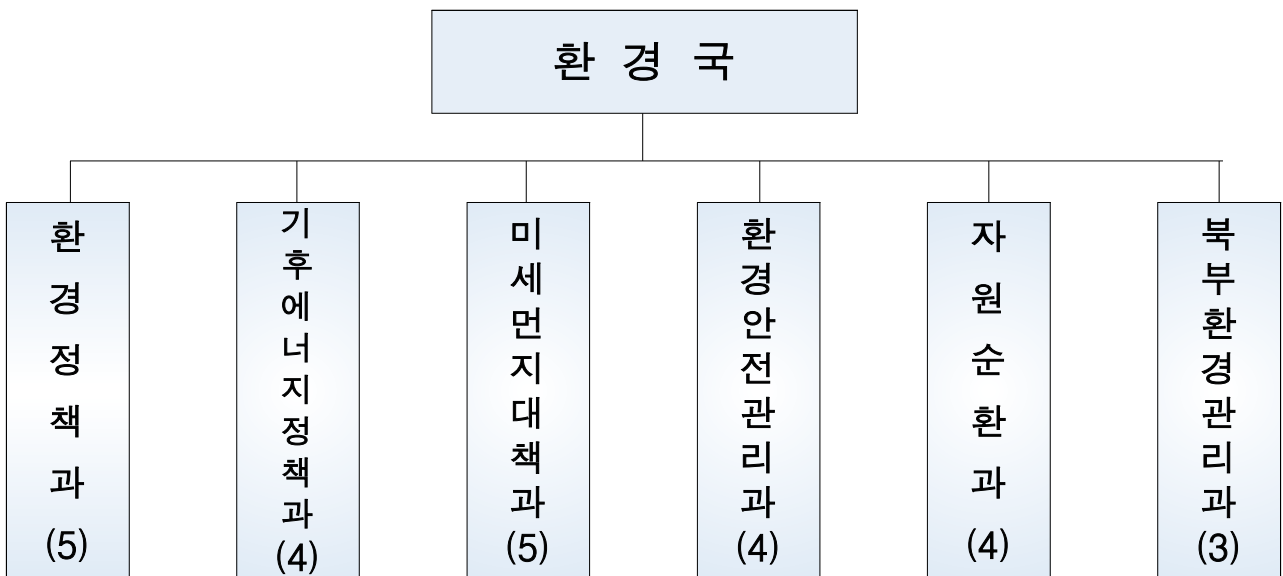
2014년 10월 2일 환경국 북부환경관리사업단을 북부환경과로,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수자원 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5년 4월 7일에는 환경정책과 생활환경복지팀을 폐지하고 자원순환과 자원순환팀을 신설하였다.

2016년 3월30일 수질총량과 총량기획팀을 폐지하고 수질정책과에 수자원 정책팀을 신설하였으며, 상하수과의 토양지하수팀을 수질관리과로 수질관리과 수생태팀을 수질총량과로 변경하였다.

2018년 10월 1일 미세먼지대책과가 신설되었으며 기후대기과와 경제노동실의 에너지과가 기후에너지정책과로 통합되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로 명칭 변경되었다.

< 그림 1-1-1 > 환경국 기구표 (2019년 12월말 기준)

□ 기 구 : 1국 6과 25팀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 9팀 43명

<표 1-1-4> 환경행정조직의 변천

연도	분야	환경보전분야	폐기물분야	상하수분야
'70년대		보건사회국 보건과 위생계		
'80. 2.		환경위생과 공해방지계 신설		
'86. 7. 1				도시국 도시개발담당관 상하수도계 신설
'87. 4. 1		환경위생과 공해방지계를 환경관리계로 명칭변경		
'87. 9. 1			환경위생과 폐기물처리계 신설	
'89. 3.15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신설
'89. 9. 1		환경보호담당관실 신설(자연보호계,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폐기물처리계)	
'90. 7.15		환경보호담당관실 자연보호계를 국민운동지원과로 이관		
'91. 7.15		보건사회국을 보사환경국으로 개칭, 환경보호담당관을 환경보호과로 개칭		상수도계, 하수도계 분리
'92. 5.25			폐기물처리계를 청소1계, 청소2계로	
'92. 7.21		환경보호과를 환경관리과로 개편(환경기획, 환경관리) 환경지도과 신설 (환경지도, 대기지도, 수질지도)	(청소1계, 청소2계)	
'93. 7.20			청소1계를 청소계로 청소2계를 오수관리계로 청소시설계 신설	도시개발과 상수도계를 상수도관리계와 상수도시설계로
'94. 5.16		환경관리과 수질보전계신설 환경기획계를 환경관리계로 개칭, 환경관리계를 환경보호계로 개칭	청소시설계를 환경시설계로	
'95. 6.28				보사환경국에 상하수도과신설 (도시개발과의 상수도기획계, 상수도관리계, 하수계, 환경관리과의 수질보전계)
'96. 1.26		환경국 신설 환경보전과(환경기획, 환경관리, 생태보전, 생활환경, 대기보전)	청소행정과 (청소행정, 재활용, 청소시설)	상하수관리과 (상하수기획, 상수도관리, 하수관리, 오폐수관리, 수질보전)
'98. 9.14		환경정책과 신설(환경기획담당, 정책개발담당, 환경정책과제팀) 환경보전과 환경기획계는 폐지	청소행정과를 폐기물관리과로 명칭변경	상수도기획계 폐지
'99. 9.20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제팀 폐지 환경보전과 자연생태담당을 환경정책과로 이전		지하수담당 신설 오수관리담당 → 수질관리담당 수질관리담당 → 한강수계담당
'00. 3.22		제2청사 환경관리과, 맑은물보전과 신설		
'01.11. 1		정책개발담당을 환경협력담당으로 명칭변경	폐기물관리과 명칭 변경(환경자원과) 폐기물재활용담당을 음식물자원담당으로, 폐기물시설담당을 환경시설담당으로 변경	
'02.10.11		환경보전과 공단환경관리담당 신설		
'03. 6.27		환경보전과 공단환경지도담당 신설		
'03.11.26				제2청 맑은물보전과내 상하수담당을 상수관리담당과 하수담당으로 분리 신설
'04. 5.28		환경정책과 환경분쟁조정담당 신설, 자연생태담당을 공원생태담당으로 명칭변경		제2청 맑은물보전과내 임진강수계팀을 환경지도담당으로 변경

연도	분야	환경보전분야	폐기물분야	상하수분야
'05.10.28		환경보전과를 대기관리과로 명칭변경(대기총량·대기보전·교통공해·환경관리·생활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신설		상하수관리과를 맑은물관리과로 변경 제2청 맑은물보전과를 환경보전과로 명칭변경 및 대기관리담당신설
'06. 9.19		환경정책과 공원업무 산림녹지과로 이관(공원생태담당을 자원생태담당으로 변경) 환경분쟁조정담당을 환경협력담당으로 흡수 통합	환경자원과와 재 활용담당을 폐지(환경자원담당과 환경시설담당을 환경정책과에 흡수)	팔당수질개선본부 설치(대기관리과 환경관리담당, 맑은물관리과 한강수계담당,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통합하여 팔당기획, 지역관리, 시설관리, 상수원관리담당 설치)
'07. 2.22		환경정책과 환경시설담당 업무를 자원재활용과로 이전	자원재 활용과 신설(환경자원, 재활용, 환경시설담당 등 3개 담당으로 운영)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정책과, 수질관리과, 상하수관리과 3개과 11팀으로 조직 확대 운영
'07. 7. 1		팔당수질관리과 산업폐수팀을 대기관리과로 이체		
'09. 1. 5		환경정책과에 도시공원담당 이체, 남한산성도립공원 신설 대기관리과 대기총량담당을 대기정책담당으로 기후변화담당을 대기보전담당으로 변경	자원재 활용과를 자원순환과로 명칭변경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수질오염총량과를 신설하고 수질정책과에서 오염관리팀을 상하수관리과를 상하수과로 변경하고 하수시설팀을 이체하고 총량기획팀을 신설
'09. 3.24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공단환경관리담당을 친환경관리담당으로 공단환경지도담당과 공단환경조사담당을 친환경지원담당으로 통합		
'09.11. 2		환경정책과 도시공원담당을 공원관리담당으로 변경		
'10. 3.19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친환경관리담당이 공단기획담당으로 친환경지원담당이 공단관리담당으로 변경, 공단지도담당이 신설		
'10.11.25		대기관리과가 기후대기과로 명칭변경		
'11. 4. 7		환경정책과에 가축매물지사후관리담당 '12.12.31까지 한시적 조직 신설		팔당수질개선본부 상하수과에 가축매물지수질관리담당 '12.12.31까지 한시적 조직 신설
'11.12.26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관리과 수질관리담당이 팔당상수원관리담당으로 명칭변경
'12.3.5		환경과 폐지, 북부환경관리사업단 신설		
'13.5.1		환경안전관리과 신설하고 기후대기과 대기보전·산업폐수팀 이체하여 환경안전지도팀, 환경사고대응팀,, 환경안전정책팀을 신설		팔당수질개선본부 상하수과 물산업지원팀 신설
'14.1.1		환경정책과 가축매물지사후관리팀 폐지 환경안전관리과 환경기술지원팀 신설		팔당수질개선본부 상하수과 가축매물지수질관리팀을 폐지, 토양지하수팀 신설
'14.10.2		행정1부지사 소속 환경국을 사회통합부지사 소속으로 이체 환경국 북부환경관리사업단을 북부환경관리과로 명칭 변경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수자원본부로 명칭변경
'15.4.7		환경정책과에 생활환경복지팀을 폐지하고 자원순환과 자원순환팀 신설		
'16.3.30				총량기획팀(수질총량과)폐지, 수자원정책팀(수질정책과)신설, 토양지하수팀(상하수과→수질관리과), 수생태팀(수질관리과→수질총량과)
'17.9.20		기후대기과에 대기정책팀 명칭을 대기기획팀으로 변경 미세먼지대책팀 신설		
'18.10.1		경제실 소속 기후에너지정책과 환경국 소속으로 이체		

연도	분야	환경보전분야	폐기물분야	상하수분야
'18.10.1		기후대기과에서 미세먼지대책과로 명칭 변경 미세먼지대책과 대기기획팀에서 미세먼지기획팀 변경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대책팀에서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변경 미세먼지대책과 기후변화팀을 기후에너지과로 이체 미세먼지대책과 공동협력팀 신설		
'18.10.1		공단환경관리사업소(5팀, 30명)가 광역환경관리사업소(9팀, 43명)로 개편		
'19.7.1		미세먼지대책과 교통환경팀을 폐지하고 운행차관리팀과 친환경차보급팀으로 변경		

2. 환경분야 근무인력

1980년 2월 환경위생과에 공해방지계를 설치하고 환경업무를 별도로 시작할 당시는 배출업소관리 등 제한된 분야만 다루었기 때문에 환경분야 종사인력이 적었다. 그러나 인구의 급증과 산업의 발달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커지고 각종 환경오염사고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관리 조직이 계속 확대·개편되었다.

2019.12.31. 현재 경기도 환경분야 근무인력은 환경국 113명,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환경분야) 104명, 수자원본부 79명, 광역환경관리사업소 43명 등 339명이다.

가. 환경국

1996년에 환경국이 신설되고 1998년 9월에 환경정책과가 신설되면서 환경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2006년에는 환경자원과를 폐지하고 환경자원담당과 환경시설담당을 환경정책과에 흡수시키고, 대기관리과의 환경관리담당과 맑은물관리과의 한강수계담당을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이관하였다. 그 후 2007년 2월 22일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수질정책과, 수질관리과, 상하수관리과 등 3개과 11팀으로 확대운영되고, 환경국에 자원재활용과를 신설하였다. 이후 2007년 7월 1일 팔당수질개선본부내 산업폐수담당을 민원인의 편의 등을 위하여 환경국 대기관리과로 다시 이체하였다. 2009년 1월 5일 환경정책과에 도시공원담당을 이체되었으며, 남한산성도립공원담당을 신설되고 자원재활용과가 자원순환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0년 11월 25일 대기관리과가 기후대기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환경정책과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담당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조직으로 신설되고 2012년 3월 5일 북부청사 환경과를 폐지하고 환경국 소관 북부환경관리사업단을 신설하였고, 2013년 5월 1일 기후대기과의 대기보전·산업폐수팀을 이체하여 환경안전관리과를 3개팀으로 신설하였다.

2014년 10월 2일 북부환경관리사업단을 북부환경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5년 4월7일 환경정책과 생활환경복지팀을 폐지하고 자원순환과 자원순환팀을 신설하였다.

2017년 9월 20일 기후대기과 대기정책팀 명칭을 대기기획팀으로 변경하였고 미세먼지 대책팀을 신설하였으며, 2018년 10월 1일 경제실 소속 기후에너지정책과가 환경국으로 이체되었다.

2018년 10월 1일 기후대기과에서 미세먼지대책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대기기획팀을 미세먼지기획팀으로 변경, 미세먼지대책팀을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변경하였으며, 미세먼지 대책과에 공동협력팀을 신설하고 기후변화팀을 기후에너지과로 이체하였다.

이후 2019년 7월 1일 미세먼지대책과 교통환경팀을 폐지하고 운행차관리팀과 친환경차 보급팀 2개 팀으로 분리하였다.

<표 1-1-5> 환경국 근무인력 현황

계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 정책과	미세먼지 대책과	환경안전 관리과	자원순환과	북부환경 관리과
113	22	22	22	18	18	11

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본원은 대기연구부와 물환경연구부로 나누어지며 대기연구부는 환경연구기획팀, 대기조사1팀, 대기조사2팀, 대기평가팀, 대기화학팀, 생활환경팀, 토양분석팀으로 물환경연구부는 유역환경조사팀, 산업폐수팀, 생활하수팀, 먹는물검사팀, 물안전성검사팀, 물환경생태팀 등으로 총 83명이다.

또한, 한수이북 지역을 담당하는 북부지원은 대기화학팀, 수질환경팀, 토양분석팀, 먹는물검사팀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총 환경연구 인력은 104명이다.

<표 1-1-6>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환경분야) 근무인력 현황

계	대기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북부지원 (대기화학, 수질환경, 토양분석, 먹는물)
	환경 연구 기획	대기 조사1	대기 조사2	대기 평가	대기 화학	생활 환경	토양 분석	유역 환경 조사	산업 폐수	생활 하수	먹는물 검사	물 안전성 검사	물환경 생태	
104	13	5	3	5	6	7	6	7	8	5	8	5	5	21

다. 수자원본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과 팔당상수원지역의 규제를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2006년 9월 19일 대기관리과의 환경관리담당과 맑은물관리과 한강수계담당,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를 통합하여 팔당기획팀 · 지역관리팀 · 시설관리팀 · 상수원관리팀 등 4개팀 39명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운영하여 오다가 수질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2007년 2월 22일 수질정책과, 수질관리과, 상하수관리과로 3개과11팀으로 확대되었다. 2009년 1월 5일 수질오염총량과를 신설하였으며, 2012년 4월 25일 가축매몰지로 인한 2차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매몰지수질관리담당 및 기존 팔당상수원관리담당에서 선박운영담당이 분리되었으며, 2013년 5월 1일 상하수와 물산업지원팀 신설, 2014년 10월 2일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수자원 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4개과 15팀 79명으로 운영중에 있다.

<표 1-1-7> 수자원본부 근무인력 현황

계	수질정책과	수질관리과	상하수과	수질총량과
79	17	28	21	13

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경기도 남부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5년 10월 24일 공단환경관리 사업소를 설치하였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는 공단환경관리 · 공단환경지도 · 공단환경조사담당 등 3담당 25명으로 운영되어 오다 2009년 3월 24일 친환경관리담당과 친환경지원담당 2개담당으로 축소되었으며, 2010년 3월 19일 다시 조직개편되면서 공단기획 · 공단관리 · 공단지도담당 등 3담당 24명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경기도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공단환경관리 사업소를 광역환경관리사업소로 개편하고 9팀 43명으로 대폭 확대 운영중에 있다

<표 1-1-8>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근무인력 현황

계	환경 관리팀	환경 허가팀	환경 점검1팀	환경 점검2팀	환경 점검3팀	환경 점검4팀	환경 점검5팀	환경 점검6팀	환경 점검7팀
43	4	6	9	6	5	3	3	3	3

3. 환경분야 사무분장

가. 환경국

경기도 환경정책의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북부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과별 사무분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1-9> 환경국 부서별 주요 사무분장 내역

구분	부서별	분장사무	비고
환경국	환경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계획 수립·시행 • 환경산업 육성 지원 및 환경협력 • 환경교육 지원 및 환경분쟁조정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 	
	기후에너지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시행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육성 • 도시가스 공급 등으로 에너지 불평등 해소 • 에너지효율향상 및 에너지 복지 제고 	
	미세먼지대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 개선 시행계획 수립 및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보급 추진 • 미세먼지 저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환경안전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환경서비스업 인·허가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및 악취민원 해소 • 석면 및 빛공해, 환경성질환 등 환경보건 관리 	
	자원순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순환경제 기반 구축 및 공공처리 안정성 확보 • 쓰레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자원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폐기물 배출·수거 체계 개선 •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및 자원순환 문화 확산 	
	북부환경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부 환경보전계획 수립·시행 •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 북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응 	

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정수장 및 약수터 등에 대한 수질검사, 하천, 호소수 수질조사, 폐수, 오수, 폐기물, 대기, 소음·진동, 악취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오염도검사와 대기, 수질, 토양 등 분야별 측정망 운영 등 환경관련 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다.

다. 수자원본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과 팔당상수원지역의 규제를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2006년 9월 19일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설치, 2014년 10월 2일 수자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표 1-1-10> 수자원본부 사무분장 내역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수자원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 ○ 팔당호 수질 오염사고,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 개인하수, 분뇨, 가축분뇨처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환경공영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팔당호 관리 선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먹는 물 관련 영업 인·허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정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하수도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물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한강수계, 진위천 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 수질오염사고예방대책 추진 	

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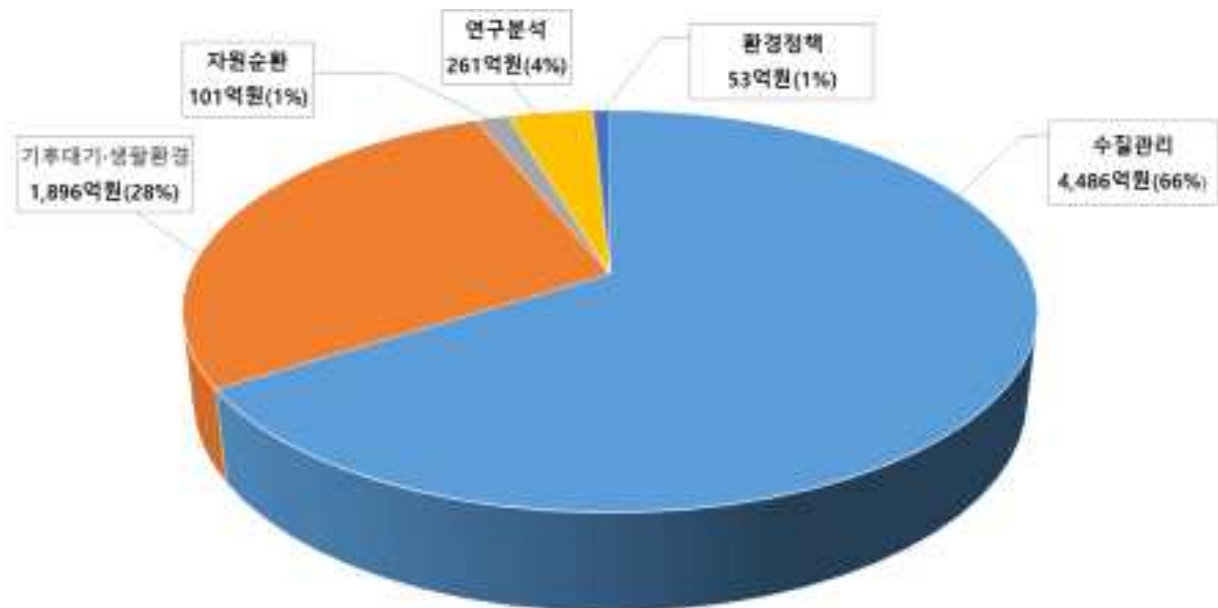
경기도(남부) 산업단지(국가 및 일반) 총량·대기·폐수 배출업소의 인·허가 및 경기도 전체(시군위임 제외)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 환경분야 예산

2019년도 환경분야 총 예산 규모는 6,797억원이며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21조 974억원의 3.2%에 해당하며 환경국 예산은 2,051억원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하였다.

환경분야 예산은 기후대기·생활환경, 자원순환, 연구분석, 환경정책, 수질관리 분야로 나뉘며, 기후대기·생활환경 분야는 기후에너지정책과, 미세먼지대책과, 환경안전관리과, 북부환경관리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이 해당하고, 자원순환 분야는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연구분석 분야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 환경정책 분야는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 수질관리 분야는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이 해당한다. 현황 및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 그림 1-1-2 〉 환경분야 총 예산 규모 (2019년)



※ 2019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 기준, 연구분석(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수질관리(수자원본부 예산)

〈 표 1-1-11 〉 환경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 (2019년)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본예산			도 일반회계 예산 대비	환경분야 예산 대비
	계	국 비	도 비		
계	6,797	5,347	1,450	3.2%	100%
환경국	2,027	1,434	593	1.0%	29.8%
보건환경연구원	261	21	240	0.1%	3.8%
수자원본부	4,486	3,889	597	2.1%	66.0%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3	3	20	-	0.4%

※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 21조 974억원

제 2 장

경기도 환경행정 추진현황

제1절 2019년 환경행정 주요정책 추진사항

제2절 2020년 환경행정 추진계획

제1절

2019년 환경행정 주요정책 추진사항

1. 2019년 주요성과
2. 환경정책 분야 추진상황
3. 기후에너지 분야 추진상황
4. 미세먼지대책 분야 추진상황
5. 환경안전관리 분야 추진상황
6. 자원순환 분야 추진상황
7. 북부환경관리 분야 추진상황

1. 2019년 주요성과

① 환경보전의식 확산과 환경교육 강화

- ‘환경의 날’ 행사 개최 및 환경대상 시상으로 도민의 환경보전의식 정립
 - 기념식, 세미나·포럼, 체험행사 등 토론과 참여형 환경축제의 장 마련(6.15.)
 - 경기도 환경보전 유공자 발굴 및 「경기도 환경대상」 총 40명 시상
- 환경교육 기반 구축 및 전문 인력 역량강화
 - 지역(기초)환경교육센터 확대(10개소→12개소)
 - 교원 환경교육연수(1회), 교사연구회 지원(5개소), 군 환경담당 연수(6회)

② 환경기업 경쟁력 강화

- 유망환경기업 역량 강화 지원 : 36개사(‘17년 10개사, ‘18년 11개사, ‘19년 15개사)
- 「2019경기환경산업전」 개최 및 해외시장 수출판로 개척 기회 마련
 - 대기, 물, 자원순환, 에너지 등 환경 전 분야 135개사 284부스 전시 / 수출계약 175만 USD
- 통상촉진단 파견 : 15개사(베트남, 인도, UAE) / 180건(4,723만USD) 수출상담



③ 친환경 조성을 위한 에너지 자립체계 구축 및 지원

- 온실가스 감축 시민실천 확대 및 기후변화 교육역량 강화
 -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개별 9,752가구↑, 단지 138개소↑)
 -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양성(225명), 가정,상가,학교 등 진단컨설팅(3,122개소)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공공·민간 신재생에너지 보급(4,673kW), 발전사업자 계통연계비용 지원(12,500kW)
 - 지역사회공헌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18개 마을 1,930kW)
-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구축 기본계획」 수립
 - 5대 중점분야(수소공급 체계구축, 수소활용 인프라 확대, 수소도시구현,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 안전한 수소 지원체계 구축)
- 지역에너지 비용 격차 해소 위한 효율적·체계적인 도시가스 공급 체계 구축
 -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28개 사군 78개 지역) /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12개 사군 22개 마을)
-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 취약계층 LED보급 지원(저소득층 1,153가구, 사회복지시설 426개소)
 - 폭염대비 저소득 독거노인 에어컨 설치(586가구) 및 하절기 전기요금 지원
 -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설치 지원(타이머록 3,900세대, 금속배관 교체 2,282세대)
 - LP가스안전지킴이 사업 추진(5개시 LP가스 사용 14만여가구 안전점검)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대응

-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안심대책 마련('19.4.10)
 -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에 따른 단계별(4단계) 대응강화 및 취약계층 건강보호 조치 시행
 - 특별단속반 집중투입,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강화를 통한 근원적 저감 추진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군,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 ('19.9.5)
 - 「2019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19.9.19~9.20)
- 노후 경유차 조기퇴출을 위한 운행제한 및 저공해화 추진
 -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상시단속('19.1) 및 고농도 시 단속('19.6) 시행
 -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86,258대, 155,069백만원)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확대 보급
 - 수소차 189대 보급, 수소충전소 4개소 운영 중
 - 전기버스 보급을 위한 도비지원(165대, 4,950백만원 / 대당 30백만원)

○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정보 실시간 도민 제공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 ※ 맑은숨터 413개소, 공기청정기 렌탈 10,360개소, 무료측정 및 개선 컨설팅 11,480개소, IoT 기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120개소(완료 50, 추진 중 70)
-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통한 도민의 선제적 대응력 강화
 - ※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88개소, 미세먼지번호등 107개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개 349개소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2부제 시행



수소차충전소 개장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5 산업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지원

○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대비체계 구축 지원

- 취급사업장 안전교육 15회(1,247명) 및 사고대응 숙달을 위한 모의훈련(5회)
-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공감대 조성을 위한 민관산 포럼(1회)

○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효율적 운영관리 지원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개선(146개소)

○ 환경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 관리 강화

- 환경서비스업체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취약부문 집중 관리(290개소, 20회/개소)
- 대기방지시설 운영방법 스티커 제작·배포(4종 12,000매)

○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환경서비스업 관리 강화

- 환경컨설팅업, 환경관리대행업 현장 전수점검 실시(675개소)
- 측정대행업 점검방법 개선을 통한 엄격관리(131개소 점검, 30건 적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포럼



개선 전 개선 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대기방지시설 스티커 제작

6]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석면 피해예방 및 빛공해 방지로 생활환경 개선
 - 석면슬레이트 주택 1,299동 철거 및 지붕 10동 개량
 -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시행('19.7.19.)으로 빛공해 관리여건 조성
-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강화
 - 자연친화형 시설인 가평 환경성질환 센터 준공('19.7월 개관)
 - 체계적인 예방·교육 및 치유를 위한 거점기능 수행

7]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 업사이클 프로그램 도민향유 등 자원순환문화 인식개선 선도
 -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5개 과정 / 2,285명), 플리마켓 개최(3회 / 1,900여명)
 - ※ 업사이클 플라자 개관('19.6.15) / 개관 이후 방문객 현황: 11,413명(월 평균 2,853명 / 9월말 기준)
- 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8개소 50백만원), 업사이클 공모전 개최(10개작 선정), 팝카페 운영(55회 417명)
 - ※ 업사이클 산업활성화 및 문화확산 위한 MOU체결('19.6.15) / 도, AK플라자, 계원예술대, 청강문화산업대



업사이클 개관식



관산학 MOU체결



업사이클 플리마켓

- 도민불편 해소와 2차 오염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불법폐기물 신속 처리 추진
 - 발생현황 : 742,800톤(16개 시·군, 92개소) / 처리실적 : 466,581톤(62.8% 처리)
 - ※ 잔량(276,219톤)은 연내처리 목표로 적극 추진
- '깨끗한 경기'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및 주민참여 청결운동 전개
 - 시·군 연계 '깨끗한 경기의 날' 특별 대청소(분기) 및 '경기 청소의 날' 운영(매월)
 - ※ (분기)3회, 4,173명 참여, 116.2톤 수거, (매월)159회, 시·군 81,223명, 2,322톤 수거
 - 불법행위 예방 사업 추진(CCTV 79대, 감시원 177명 운영, 행복홀씨 입양 2,874개 단체 등)
-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 소각시설 확충(2개소 350톤/일)
 - (신 설) 평택·안성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250톤/일('19.11월 준공)
 - (대 보 수) 용인 소각시설 100톤/일('19.7월 준공)

2. 환경정책 분야 추진상황

1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실천하는 환경정책 추진

- ◆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실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 녹색 소비 확산으로 환경보전 실천과 친환경사회 구축

□ 환경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도모

-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 실천·협력사업 지속 추진
 - 도시대학, 국내·외 교육협력, 미세먼지 및 지속가능포럼 개최 등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공표('19.1.30.), 매 2년마다 이행사항 평가
 - * 환경·경제·사회 등 전 분야 포괄 지표 마련(17대 목표, 68개 세부목표, 138개 지표)
- 환경 축제 한마당으로 환경의 날 행사 개최 및 환경대상 시상
 - (환경의 날 행사) 기념식·세미나·체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민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유하는 환경축제
 - ※ '19.6.15.(토) 경기상상캠퍼스 / 경기도 주최, 경기도환경보전협회 주관 / 1,500여명 참여
 - (환경대상) 환경보전 유공자 발굴 및 「경기도 환경대상」 시상(40명)

□ 환경수요 대응과 전문성 강화 위한 출연기관 설립 추진

- 정책이슈 대응 및 전문성 확보, 사업효율성 증대를 위한 환경인프라 구축
- 경기환경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19.6.24.~11.20.)
 - 환경·에너지 사업분석, 경제성 등 설립·운영 타당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 녹색제품 사용 확대 기반 구축

- 녹색제품 소비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한 道 친환경생활지원센터 운영
-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도·시·군, 공공기관 상·하반기 1회)
- 민간분야 자발적 녹색구매 참여를 위한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추진(시범)
 - 도 내 유아기관 80개소 대상 시범사업 추진 및 매뉴얼 개발

2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 ◆ 강소 환경기업의 안정적 육성 및 지원으로 환경 新 성장동력 확보
- ◆ 우수 환경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우수 환경기업 육성 및 지원

- 중소환경기업 친환경성장 기반 마련 및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경쟁력 강화
 -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보전기금 지원(16개사 25억원 추천)
 -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지원(10개사 1억원)
- 유망환경기업 발굴 및 중점 지원
 - '19년 유망환경기업 지정(신규 10개사, 재지정 5개사) 및 현판, 인센티브 19종 제공
 - 유망환경기업 맞춤형 사업비 지원(28개사 142백만원)
- 우수 환경기업 해외진출 판로 확대 지원
 - 통상촉진단 파견(2회) : 하노이, 호치민 8개사 / 뭍바이, 두바이 7개사
 - ※ 경기도-베트남 환경기업간 업무협약 체결(6월) : (주)이오니아아이엔티
 - 해외 판로개척 성과 : 180건 559억원(4,723만 USD) 수출상담

□ 환경산업 산·학·관·민 협력 네트워크 강화

- 녹색환경지원센터 중심 지역 환경문제 해결 및 기술개발
 - 지역 환경현안 해결 및 기술개발 산학협력 연구과제 추진(24개 과제)
 -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 및 지역 환경문제 해결 지원(30개 과정, 180개소)
- 연구역량 활용 극대화 및 환경기술 전파·보급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 우수 환경기술 보급, 환경기술 정보교류의 장 마련 (성과발표회, 토론회 등)

□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과의 만남의 장, 「2019경기환경산업전」 개최

- 기간/장소 : '19.10.1.~10.2.(2일간) / 킨텍스
 - (전시회) 135개사 284부스 / (부대행사) 수출 및 일자리 상담회, 환경안전포럼 등 13개
- 추진성과 : 참관객 4,517명(해외바이어, 공무원, 기업, 유관기관, 도민 등)
 - 수출상담액 42백만USD(계약액 175만USD), 일자리 채용상담(29개사 126명 참여)

3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환경교육의 내실화」

- ◆ 환경교육 운영 지원 활성화 체계 구축을 통한 역량강화 기반 구축
- ◆ 현장 체험중심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및 환경문화예술 사업 추진

□ 환경교육 운영 지원 활성화 체계 구축

- 환경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활성화
 - 환경교육 프로그램·교구 공모(10개) 및 경기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6개)
- 환경교육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道 - 市·郡 센터 - 학교 - 민간과의 환경교육 관계자 워크숍 추진(2회)
 - 환경교육 전문가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2회) 및 지역센터 협의회(2회) 개최

□ 환경교육 현황조사 및 인력 역량강화

- 환경교육 인력 현황조사(1회 43명), 교육현황 DB구축(112개 기관, 315개 프로그램)
- 환경교육 인력 역량강화
 - 교원 환경교육연수(1회), 환경교육 교사연구회 지원(5개소)
 - 군 환경담당 연수(6회, 377명 연수)

□ 현장 체험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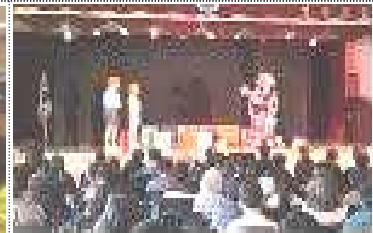
-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 즐거운 에코여행 등 현장체험 환경교육(10개 사업 107회, 26,053명)
 - 장애청소년·다문화·고려인 청소년 가족 등 소외계층대상 환경교육 실시
-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을 통한 환경교육 추진
 - 환경을 주제로 한 연극 제작 및 공연(수원시, 12회 1,385명 참여)



경기도환경교육관계자 워크숍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4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로 건강한 생태계 조성

- ◆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로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및 생태서비스 확대
- ◆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및 야생동물 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 확보

□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관리 및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

-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 및 도시 생태 체험·휴식 공간 제공
 - 도로 건설로 훼손·단절된 한북정맥 비독재 생태축 복원(생태통로 설치)
 - 환경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자연마당(1개소), 생태공원(3개소), 생태놀이터(1개소) 조성
-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 명지산 등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불법행위 감시, 생태전시관, 탐방로 관리 등)
 - 생태자원 지속적 관리 및 지역 맞춤형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안산 대부도)
- 자연 및 환경 생태적 특성과 자치를 반영한 정밀공간생태 정보지도 제작
 - 모든 市 이상의 지자체(28개 市) 2021년까지 작성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통한 생태계 건강성 제고

- 생태계교란식물 제거로 토종 야생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확보
 -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식물 제거(20개 시·군 1,345ha, 육군본부와 협업)
 -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DMZ 일원 생태계교란식물 확산억제
- 야생동물 보호 및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 구조치료기관 운영(27개소) 및 멸종위기 철새 보호(먹이주기, 벵짚존치, 쉼터 관리 등)
 -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철선 울타리 등 91.5km, 멧돼지포획틀 105개)
-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경기생물다양성탐사*(발견종수 1,361)
 - * 24시간 동안 생물전문가, 일반인들이 함께 행사지역의 모든 생물종을 찾아 목록 만드는 참여활동



포천 비독재 생태축복원



동두천시 생태놀이터



경기생물다양성탐사



명지산 생태전시관

현안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현황

- ◆ 지역별 이행방안 차별화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 ◆ 적정사후 처리 및 안전관리 강화로 2차 오염 및 도민 피해 예방

□ 현 황

- (발생) 10.26일 현재, 도내 총 9차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 연천 6건(10.2./10.11./10.14./10.16./10.19./10.20.), 파주 3건(10.16./10.23.)
 - ※ 전국 : 총 15건(경기 9, 강원 6)
- (대응체계) 道 재난대책본부 내 포획대응반 설치(5명), 도-시·군 현장통제팀 운영

□ 세부 대응조치

- (포획현황) 긴급대책 후(10.15.~) 총 699마리 포획, 이전 일일 포획량 1.5~3배 ↑
 - ※ 道 내 멧돼지수 약 2.52만두로 추정
- (포획기구) 포획틀 16개 시·군 489개, 포획트랩 4개 시·군 46개 설치 완료
- (포획단) 피해방지단 등 29개 시·군 646명 구성으로 예찰 및 포획 강화
- (대응계획) 道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 대응계획 수립·운영
 - 포획 강화로 인한 방역 및 안전 관리 철저, 총기 포획 시 포상금* 지원
 - * 지원규모 : 포획자 10만원 × 10,800두(목표 포획두수) / 소요재원 : 도 예비비
 - ASF 발생여부, 감염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5개 지역으로 구분, 지역별 관리체계 차별화

구 분	대 상	내 용
① 민통선 이북지역 및 ② 감염·위험지역	파주, 연천	(총기포획 불가) 폐사체 예찰 및 제거 우선, 멧돼지 이동 차단 후 제거
③ 발생·완충지역	파주, 연천, 김포,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총기포획 불가) 포획틀·트랩 집중 설치 · 1차 차단지역 제로화 후 단계적 총기포획 전환
④ 차단·경계지역	남양주, 가평, 의정부	(총기 허용) 집중 포획 강화 ‘멧돼지 제로화’
⑤ 그 외 지역	수원, 용인 등 21개 시·군	(총기 허용) 피해방지단 확대 운영 ‘개체수 저감’

□ 향후계획

- 멧돼지 폐사체 예찰 강화 및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철저
- 대응계획 철저이행을 통한 포획 강화로 ASF 조기 종식 주력

3. 기후에너지 분야 추진상황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체계 구축

- ◆ 온실가스 감축 사업 이행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체계 마련
- ◆ 도민참여 확대를 위한 저탄소생활 실천 지원 사업 확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마련

- 온실가스 감축 계획 세부사업 이행 관리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37개 사업추진,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40개 과제 모니터링
- 공공부문 에너지목표관리제 운영 및 시설 설치 지원
 - ‘19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 72개 기관(직속기관, 소방서 등의 건물 및 자동차)
 - 공공부문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안산단원보건소 등 10개소, 160백만원)

□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

- 탄소포인트제 지원을 통한 녹색소비 실천 유도
 - ‘19년 개별가구 212,980가구(9,752가구↑), 아파트 1,047개 단지(138개소↑)
- 친환경에너지 시설 확대를 위한 태양광 설치 및 용자지원 추진
 - 부천 굴포하수처리장(환경기초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원(502백만원, 161kW)
 - 에너지기금(10억원) 용자지원 : 8개소 789.76kW

□ 기후변화 적응 사업 지원

- 폭염 취약지역 쿨루프 사업(광주 19개소), 쿨링로드 구축(고양, 구리 500m×2개소)
- 폭염 민감가구 및 이용시설(경로당 등) 폭염대응요령 안내(160개소, 2,000명)
- 환경미화원 등 야외근로자 이동식 그늘막 쉼터 설치 지원(용인 15set)

□ 기후변화 대응 컨설팅 및 교육 추진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컨설턴트 양성(225명), 진단 컨설팅(3,122개소) 추진
- 환경활동가, 대학생, 기후변화 담당 공무원 등 대상별 맞춤형 강좌 개설
 - 기후변화교육센터(84백만원), 그린캠퍼스(290백만원, 6개 대학) 등

2 도민, 시·군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

- ◆ 정부의 탈 원전 및 에너지전환 정책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자립 제고
-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

□ 공공기관 및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사업

- 공공청사 등 지자체 소유 공용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농업기술원 소득지원연구소(1개소, 45kW) 및 시·군 지역지원사업(21개소, 1,997.7kW)
- 공동·단독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으로 민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주택지원(700가구, 2,100kW), 건물지원(8건, 120kW), 태양광대여사업(2개소, 200kW)
 - 계통연계비* 지원(177개소, 12,500kW) * 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을 한전 배전계통에 연계하는 비용
- 시군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공헌형 에너지지원 사업
 -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추진(9개 사업, 태양광 1,437.8kW, ESS 816.2kW)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18개 마을 1,930.3kW)

□ 에너지비전 확산을 위한 도민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원스톱 지원제도 운영
 - (교 육) 태양광발전 창업교육 4회 200명
 - (컨설팅) 신재생에너지 투자컨설팅 사업(컨설팅 49건, 학교 종합진단 5건)
- 경기도 스마트에너지 아파트 조성 시범사업
 - 에너지 다소비(공용)시설에 대한 진단 및 시설교체비용 지원(2개소, 300백만원)

□ 수소시장 성장기 주도를 위한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구축 기본계획」 수립('19.8)
 - 5대 중점분야 : ①수소공급체계구축 ②수소활용 인프라확대 ③수소도시 구현 ④수소융합클러스터조성 ⑤안전한 수소 지원체계 구축
- 기본계획에 따라 수소생산·이송, 기술개발 등 중점분야 사업추진예정('20)
 - 수소융합클러스터 연구용역 추진(150백만원), 수소배관망 시범사업(450백만원),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1,000백만원), 국제수소엑스포(500백만원), 수소위원회(15백만원)

3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해소대책 마련 추진

- ◆ 지역 간 에너지 비용격차 해소를 위한 효율적·체계적인 에너지공급 체계 구축

□ 경기도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종합지원 계획 정비

- 경기도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종합 지원계획 수립('17.6월)
 -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해소, 효율적·체계적인 연료공급 환경구축을 위한 지역별 공급대안 설정 및 지원계획 수립
- 지역별 공급대안 설정 후 지역여건 변화 등 고려 지원대상 정비('19.10월)

《 미 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17.6.21.) 》

- ▶ (사업기간) '17~'30년(14년간)
- ▶ (지원대상/소요예산) 1,795개 지역 / 6,305억원(도비 1,310)
- ▶ (추진방법) 지역여건 및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에너지원 보급
 - 도시가스배관망 923지역, LPG저장탱크 836지역, LNG저장탱크 9지역, 신재생에너지 27지역

※ 도내 561개 읍·면·동 중 55개 지역 미공급, 도시가스 보급률 88.0%('18년말 기준)

□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해소를 위한 지원계획 추진

-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지원
 -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공급시설 설치 지원(28개 시·군, 78개 지역)
-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통한 집단공급 체계 구축(12개 시·군, 22개 마을)
 - ※ 연료비 절감 : 유통구조 단순화 및 공급자간 경쟁 입찰로 가격 인하(36%)
(변경전) 다단계 용기거래[충전소→판매소→소비자] ⇒ (변경후) 체적거래[벌크공급]
- 읍면동 단위 연료집단공급 추진
 - 안산 대부동 일원 LNG배관망 구축(배관망 11.7km, 약 890세대)

4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 ◆ 냉·난방 복지사업 추진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도모
- ◆ 태양광 및 고효율 LED 보급 지원으로 에너지빈곤층 해소

□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냉·난방 복지사업 추진

-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633백만원) * '19년 시범사업
 - 폭염시 무더위쉼터 이용이 어려운 독거노인가구에 에어컨 및 전기요금 지원
 - 거동불편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586가구)
-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 에너지 지원으로 에너지복지 증진
 - 연탄쿠폰(406천원), 난방유(310천원), 에너지바우처*(125천원)
 -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태양광, LED 보급을 통한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

-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 사업(667백만원)
 - 태양광시설 보급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전기요금) 절감
 -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태양광 251kW)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3,643백만원)
 - 고효율 LED조명 교체로 전기요금 절감 등 에너지복지 실현
 - 저소득층(1,153가구), 사회복지시설(426개소)

□ 도민 에너지절약 교육 및 가스 안전사고 예방

-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운영(300백만원)
 - 계층별, 분야별 강의와 체험교육으로 에너지에 대한 도민 인식전환
 - 도민 에너지프로슈머 양성교육 등 3개 사업(6,090명)
- 가스 안전장치 보급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759백만원)
 - 고령자 대상 타이머 콕 설치 및 LPG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 타이머 콕 설치(3,900가구), 금속배관 교체(2,282가구)
- LP가스안전지킴이 사업 추진(2,470백만원, 5개시 14만여 가구 점검)

4. 미세먼지 분야 추진상황

1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정한 대기질 조성

- ◆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저감 대책 마련과 대응 강화
-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 발굴·시행

□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맞춤형 저감대책 추진

- '22년 초미세먼지 농도 33% 개선을 목표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
 - 친환경차 보급 등 6대 분야 49개 과제 차질 없는 이행(1조 7,671억원 투입)
 - 지역특성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한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18.10~'20.3.)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道 시행계획 수립('20~'24)
 - 道 대기환경개선 목표 설정, 배출원별 대기환경개선 계획 및 추진방안 제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 안심대책 추진

- 고농도時 단계별·선제적 대응을 위한 '경기도형 단계별·대응계획' 수립·시행('19.4.)
 - (대응강화)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속일수에 따라 단계별 대응 강화(4단계)
 - (조치강화) 공공기관 차량2부제, 사업장·공사장 단축조정, 노후건설기계 제한 등 단계적 조치
- 어린이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 우선 조치 및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 강화
 - (건강보호) 미세먼지 마스크 긴급 지원(95만매), 다중이용시설 상시측정(120개소) 등
 - (단속강화) 고농도지역 '도 특별점검반' 투입, 대형사업장 '1:1 전담관리제' 실시 등

□ 도민체감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 발굴·시행

- 취약계층 대기정보 안내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 확대(20개 시·군 107대)
- 미세먼지 기여도와 주민체감도 높은 도로변 살수 강화
 - 지자체-사업장 간 주변도로(반경 2km) 자율 살수협약 체결(104개 업체 126대)
 - 고농도 기간 살수강화를 위한 살수차 임차 운영(20개 시·군 122대)
- 지역 내 미세먼지 핵심배출원 상시 감시 위한 민간감시단 운영(16개 시·군 124명)
- 고농도 시즌 대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방안 검토('19.7~11월)



2 친환경자동차 타기 좋은 경기도 조성

- ◆ 친환경차(전기, 수소차 등) 보급 지속 확대
- ◆ 전기차충전기, 수소충전소 등 충전인프라 확충

□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 전기차 보급 : '18년 5,735대 → '19년 9,159대 (증 3,424대)
 - ※ 전기버스 보급 확대 : ('19년 본예산) 79대 → ('19년 추경) 165대
- 수소차 보급 : '18년 6대 → '19년 195대 (증 189대)
- 전기이륜차 보급 : '18년 472대 → '19년 1,478대 (증 1,006대)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 '18년 11,879대 → '19년 12,363대 (증 484대)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 '18년 329대 → '19년 524대 (증 195대)

□ 충전 인프라 기반 확충으로 친환경차 타기 좋은 환경 조성

- 전기차 충전기 설치 : '18년 8,388기 → '19년 12,111기 (증 3,723기)
- 수소차 충전소 구축 : '18년 0개소 → '19년 19개소 (완료 4, 추진 중 15)
 - 지자체 7개소(평택3, 부천1, 안산1, 화성1, 안성1) 추진 중
 - 고속도로 휴게소 4개소 완료, 민간보조 8개소 추진 중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 도내 유료도로 3개소에 대한 통행료 감면 : 429,790대 458백만원
 -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경기남부도로 100%감면
-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입주자 및 법인 친환경차 구매 지원
 - 대상지구 확대 : '18년 26개소 → '19년 173개소(도내 전 산업단지)
- 전기버스 보급확대를 위한 취·등록세 감면 제도개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건의(2회)를 통한 전기버스 취·등록세 감면 시행('20.1월)



3 노후경유차 관리강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 ◆ '21년까지 노후경유차 퇴출을 위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확대
- ◆ 노후차량 단속시스템 구축을 통한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지원 강화

- '19년 본예산 대비 '20년 사업비 대폭 증액으로 지원범위 확대
 - ('19년) 110,237백만원 → ('20년) 312,079백만원 (증 201,842백만원)

〈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 추진실적 〉

구 분		추진계획	실적('19.12.)
▶ 조기폐차, DPF부착, 엔진교체 등 지원 확대	노후 경유차	('18) 46,945대→('19) 173,156대[본예산 55,277대]	118,708대
	노후 건설기계	('18) 726대→('19) 3,516대[본예산 465대]	1,723대
▶ LPG 화물(1톤) 신차구입 지원		('18) 0대→('19) 572대[본예산 130대]	308대

□ 노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및 단속

- LEZ 단속시스템 추가 구축(11개시) : 19지점 23대 CCTV 설치(3,077백만원)
 - ('18년) 17개시 61개 지점 128대 CCTV → ('19년) 28개시 80개 지점 151대 CCTV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단속 시행(17개시) : 707대 적발('19.1. ~ 12.)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19. 6. 1 시행
- 매연 과다 배출 버스·화물차량 등 수시점검(243,421대 검사)
- 수도권 100억 이상 관급 공사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20.1.시행) 홍보

□ 노후 5등급 경유차 등록 대수 감소 : 58만대('18.12) → 40만대('19.12.)



4 수혜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관리

-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를 통한 건강피해 최소화
- ◆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보급

□ 실내공기질 개선으로 도민 건강보호 및 환경복지 제고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법정관리시설 지도·관리 강화
 - 법정관리시설 지도·점검(2,730개소, 시·군), 오염도 검사(274개소, 보건환경연구원)
 -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교육 미이수·자가측정 미이행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분기별 공개 : 349개소
 - ※ 보건환경연구원 측정결과, 도, 시·군 공공시설 자체측정결과, 신축아파트 자체 측정결과
- 법정규모 미만 소규모 시설 지원강화
 -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개선 컨설팅 : 11,480개소
 - 기준초과, 취약시설 친환경 리모델링(맑은숨터) : 413개소
 - 공기청정기 지원('18~'22년, 5년 렌탈 후 이관) : 10,360개소



□ IoT기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정보제공을 통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 IoT기반 상시측정 센서 설치 및 모니터링 : 120개소
 - * 어린이집 79, 도서관 25, 의료원 6, 요양병원 9, 산후조리원 1(50 원료, 70 계획)
 - 24시간 상시 측정데이터 스마트폰 앱 및 웹으로 조회
 - 유지기준 초과 시 자동알림, IoT 센서와 공기정화장치와 프로토콜을 연동하여 스마트형 실내공기질 관리



□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기술 보급으로 생활안전 강화

- 「미세먼지 저감 주민체감형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으로 우수기술 발굴
 - ('19.7~10월) 환경분야 기업, 대학 등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전을 통해 도민이 체감 가능한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 우수기술* 4개 선정
 - * ①버스전용 공기청정기 ②IoT 미세먼지보호 벤치 ③미세먼지 방음벽 ④공기정화팬 방진망
-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으로 효과 및 사업성 검증 후 도정 반영 계획
 - ('20년 ~) 설계부터 분석까지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추진
 - ⇒ 효과가 검증된 기술은 미세먼지정책에 반영하여 시군으로 확대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간 정책협의체 운영
- ◆ 동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 공동 대응 국제 협력 기반 조성

□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시군과 협력 강화

- 국가기후환경회의-지자체 협의체 구성('19.5.14.)
 - 협의체 회의(2회)를 통한 법령 개정 및 정책·제도 건의
 - ※ (협의체 구성)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개 및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19.9.5.)
 - 도-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미세먼지 발생원별 대책 마련
 - * 경기 남부권 6개 시 :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 미세먼지 저감정책 진단 및 이행과제 발굴 워크숍('19.5.2.)
 -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동향 및 추진성과 공유(도, 시군, 전문가 등 100여명)

□ 민간 주도 미세먼지 정책수립 소통의 장 마련

- 민·관 협력 미세먼지 대응 실천 워크숍('19.7.19.)
 - 민간 차원의 미세먼지 실천단 구성 및 도 미세먼지 정책 공유
-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민 원탁회의('19.9.19)
 - 미세먼지 공동대응 도민 실천방안 논의(전문가, 도민 등 100여명)

□ 동아시아 지방정부·NGO 간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 UNEP* 주관 '대기질 개선 인식포럼' 참석 및 道 사례발표('19.6.25~26)
 - *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회의)
- 동아시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19 청정대기 국제포럼」('19.9.19~9.20)
 - 미세먼지 국내 배출원 저감 및 공동대응 인식확산 등 협력강화(16개국 600명)



5. 환경안전관리 분야 추진상황

1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현장 컨설팅 및 대응훈련 등 안전대책 이행
- ◆ 화학물질 대응정보 제공 및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안전 강화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사업장의 사고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실무교육 실시
 -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방법, 사고 시 대처·대피 요령 등(15회 1,247명)
- 화학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한 ‘안전진단 요일제’ 추진
 - 사업장 담당자·대표자, 운반자 등에게 주 1회 안전관리 문자 발송(1,586개소, 34회)
- 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사업장 안전관리 컨설팅 실시(40개소)

□ 화학물질 정보 제공과 사고대응 능력 향상

- 사업장 주변지역 대기 중 화학물질 농도 측정
 - 사업장 부지경계, 최인접 주거지·학교 등 영향지역 모니터링(15개소, 12개 항목)
- 휴대폰 앱을 활용한 화학물질 DB 구축 및 정보 제공
 - 사업장·기상·방재 정보 등을 ‘경기안전대동여지도 앱’* 통해 제공(‘20. 1. 예정)
 - * 道 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 중인 각종 사고, 재난상황 알림 어플리케이션(사용자: 약 6만명)
- 화학사고 발생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 도, 환경부, 시·군, 소방, 군부대 등 사고대응기관 참여 모의·실제훈련 실시(5회)



□ 道 특성에 맞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중앙계획과 연계한 道 여건에 맞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마련(‘19.12.)
- 유독물질 다량취급사업장, 주민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 운영(2회)
 -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시설 현장 확인 및 안전업무 논의
-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토론회 개최(1회, 113명)
 - 시·군 여건에 맞는 지역중심 화학사고 대비체계 마련 공감대 조성

2 사업장 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

-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지원으로 대기질 개선
- ◆ 악취유발 사업장 지원을 통한 생활민원 발생 최소화

□ 대기방지시설 개선으로 소규모 사업장 오염물질 저감

-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방지시설 146개소 개선 완료
 - 방지시설 교체·개선비의 90% 지원(시설당 최대 7.2억원)
 - 국비 348억원 추가 확보(1회 추경)하여 사업량 확대(150개소 → 750개소)
 - ※ 총 사업비 755억원 : 국비 378(50%), 도비 151(20%), 시군비 151(20%), 자부담 75(10%)

□ 기술력이 부족한 소규모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 적발위주의 단속에서 사업장별 환경시설 유지·관리 서비스 체계로 전환
 - 사업장별 전문인력 지정·파견으로 지속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사업장별 월2회)
 - ※ 지원실적 290개소, 사업비 18억원(도비 5.4 시비 11.4 자부담 1.2)
 - 기술인력 전문교육 및 사업별 성공(실패) 사례 공유(3회)
- 효과적인 방지시설 관리를 위한 매뉴얼 스티커 제작·배포(4종 12,000매)
 - 여과집진·흡수·흡착 시설 등의 지도점검 및 기술인 교육시 배포 및 활용

□ 악취유발 사업장 지원을 통한 주민 피해 최소화

- 악취 신고대상 및 민원다발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교체)·개선비 지원(최대 8천만원)
 - '19년 6개 시·군 21개 사업장에 16억원 지원(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교체 전(흡수에 의한 시설)



교체 후(흡수에 의한 시설)

3 배출시설 및 환경서비스업 엄격 관리

- ◆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허용배출 총량 단계적 축소 및 관리감독 강화
- ◆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및 환경서비스업 철저 관리

□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배출허용 총량 관리

- 연차별로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그 이내로 배출을 제한
 - (할당기간) 1차('08~'12년), 2차('13~'17년), 3차('18~'22년)
 - (대 상) 대기 1~3종 사업장 307개소
 - ※ 질소산화물 또는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
- 분기별 배출허용총량 준수여부 점검, 연간총량 초과업체 과징금 부과(연1회)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신고) 등 관리

-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배출시설 대상 확대시행('20. 1. 1.) 대응
 - 강화된 기준 및 추가배출시설 안내 (→ 시·군, 사업장)
 - 소규모 사업장은 방지시설 개선·교체 비용 지원
- 맞춤형 환경민원 통합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
 - 허가(신고) 일괄(의제) 처리, 제출서류 간소화, 민원 처리기한 59% 단축
-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배상체계 확립
 - 모든 사업장이 환경책임보험 가입토록 조치, 미가입 사업장 처분(2개소)

□ 실효성 있는 환경서비스업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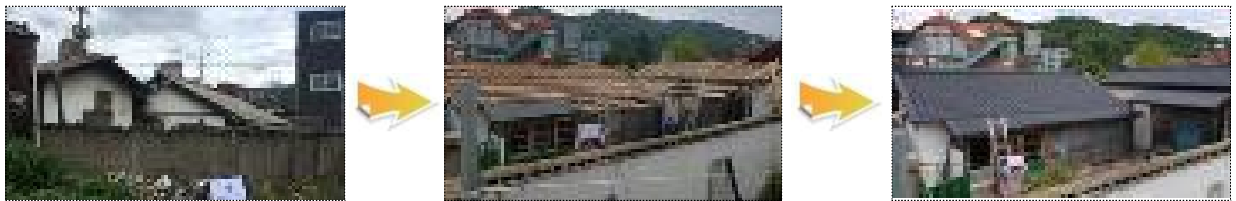
- 환경서비스업 전수점검 추진 : 675개소
 - 자율점검대상인 환경컨설팅업(49개소)과 환경관리대행업(149개소)도 현장점검 추진
- 측정대행업체의 점검방법 개선
 - 사업장 자가측정 자료를 DB화하여 측정대행업체의 측정자료와 비교·분석
 - ※ 131개소 점검결과, 26개소 30건 적발

4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 ◆ 석면 슬레이트 철거·개량 지원으로 쾌적한 삶의 공간 제공
-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및 빛공해 방지로 도민건강 보호

□ 주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석면 피해자 지원

- 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 1,299동 철거 및 지붕개량 10동 완료
 - 연말까지 철거 1,600동, 지붕개량 30동 추진 예정
 - ※ (철거) 가구당 336만원, (지붕개량) 취약계층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 석면피해 질환자에게 생활수당 및 장의비, 조위금 등 지원(215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질환자에게 도·시·군 예산 및 석면피해 구제기금으로 지급(지방비 10% : 기금 90%)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환경성 질환의 예방·관리 필요
 - 접근성을 고려하여 수원('14.4월 개관)과 가평('19.7월 개관)에 환경성질환센터 건립
 - 수원·가평 환경성질환센터의 광역적 기능수행 위한 예산지원
 -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대상 찾아가는 예방활동, 유치원 교사 교육 추진 등

□ 빛공해 방지로 조화로운 야간 조명환경 조성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및 시행('19.7.19.)에 따른 용도지역별 체계적 관리
 - 지정지역 : 가평·연천군과 관광특구(관광진흥법)를 제외한 도 전역
 - 적용시설 : 공간조명(가로등), 광고조명(간판조명), 장식조명(건물외벽 조명)
 - ※ 시행시기 : 신규시설은 '19.7월부터, 기존시설은 5년 유예로 '24.7월부터 적용

6. 자원순환 분야 추진상황

1 자원순환경제 기반 구축 및 폐기물 감량화

- ◆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을 위한 자원순환 전략과 제도 추진
- ◆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통한 감량화 추진

□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등 중장기 정책목표 수립
 - 국가 자원순환 기본계획과 연계한 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19.5월 ~ '20.3월)
 - ※ 용역계약('19.5월/경기연구원), 착수보고회('19.6월), 중간보고회('19.10월)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 처분부담금 부과(144억원/122개소)
 - 전년도 매립·소각 처리한 폐기물 대상으로 부과·징수('19년부터 부과)
 - ※ (부과대상) 생활폐기물, 시·군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사업장폐기물 감량 추진

- 순환골재 사용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 추진
 -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 조사(처리량 44,502톤, 재활용량 43,372톤)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철저 및 적극사용 이행 안내(6월)
 - 순환골재 의무사용공사 시·군 담당자 교육('19.6월) : 31개 시·군 44명
- 사업장폐기물의 각종 감량화 기법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코칭제' 실시
 - 사업장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50개소 대상으로 환경전문가 방문 컨설팅

□ 1회용품 사용규제로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 휴가철 1회용품 사용 및 명절기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사용 억제
 -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등 무상제공 행위 등 계도 및 홍보(19,389개소)
 - 과대포장 제품 점검 : 951건 점검, 검사명령 81건 / 14건 과태료 1,480만원
- 사무실 내 다회용컵 사용 등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조성
 - 회의실 다회용컵 제작·비치(13개 회의실, 500개), 컵 자동세척기 도입(3개소)

2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 배출·수거체계 개선

- ◆ 지역 맞춤형 배출·수거체계 구축으로 도민 편의성 제고 및 재활용 촉진
- ◆ 생활 속 분리수거가 곤란하거나 위해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확대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수거체계 개선

- 배출체계개선(문전→거점)으로 분리배출 유도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 생활폐기물 배출 취약지역 내 거점배출시설 지속 확충(8개 시·군 66개소)
 - 재활용 동네마당(15개소), 농촌지역 등 재활용품 수거시설(51개소) 설치



□ 순환이용가능 자원 및 분리수거 취약품목 수거 활성화

- 분리수거율이 저조하거나, 수은함유 별도 취급 폐기물에 대한 집중 수거
 - (폐형광등) 수거목표 2,380톤 → 실적 1,594톤 (67% 달성)
 - (폐건전지) 수거목표 1,030톤 → 실적 1,072톤 (104% 달성)
 - (폐종이팩) 수거목표 1,310톤 → 실적 982톤 (75% 달성)
- 실적 우수자(개인, 단체)에 대한 도지사 표창(12월) 등 인센티브로 자발적 참여 유도

□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및 농업부산물 처리 지원

-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3개 시·군 11개소)
- 농약용기 및 농촌폐비닐 수거활성화를 위한 보상금·장려금 지급(1,819백만원/19.9월)
 - (농약용기) 수거목표 2,600천개 → 실적 2,814천개(108% 달성)
 - (농촌폐비닐) 수거목표 15,720톤 → 실적 14,408톤 (92% 달성)
- 농업부산물의 불법처리 예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파쇄기 지원
 - 소규모 농가 대상 농업부산물 경작지 내 파쇄 처리로 퇴비화 유도(8개 시·군/14대)

3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및 공공처리 안정성 확보

- ◆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및 신속처리로 유해환경으로부터 도민 보호
-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폐기물 처리 안정성 확보로 도민 불편 방지

□ 폐기물 불법처리행위 근절 및 도민참여 활성화로 깨끗한 경기 조성

- 불법·방치 폐기물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 道 특사경 내 불법 방치·투기폐기물 관련 전담팀 구성·운영(특사경, '19.3월~)
 - 폐기물처리신고 대상 사업장 확대, 신고포상금 등 관련제도 개선 추진
 - 불법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국·도비(국 118억, 도 51억) 교부
 - ※ 처리 실적('19.12월말 기준) : 605,513톤(80.9%) / 발생량 : 747,927톤
-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으로 쓰레기 없는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 특별대청소 등 깨끗한 경기의 날 운영(162회, 85,396명 참여, 2,438톤 수거)
 - 불법행위 예방 사업 추진(CCTV 79대, 감시원 177명 운영, 행복홀씨 입양 2,874개 단체 등)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개선을 통한 안정적 처리 기반 확보

- 공공 폐기물 소각시설(전처리시설 포함) 확충 : 2개소 350톤/일
 - (신 설) 평택·안성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250톤/일('19.11월 준공)
 - (대보수) 용인 소각시설 대보수 100톤/일('19.7월 준공)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3개소 455톤/일
 - (신 설) 바이오가스화 시설 : 평택·안성 210톤/일('19.11월 준공), 시흥 145톤/일('23년 준공)
 - (시설개선) 사료화 시설 : 수원 100톤/일('20.12월 준공)
-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선별장) 확충 : 5개소 338톤/일
 - (신 설) 용인 150톤/일('23년 준공), 평택 50톤/일('19.11월 준공)
 - (시설개선) 부천 70톤/일('20.5월 준공), 안성 58톤/일('20.12월 준공), 인천 10톤/일('20.11월 준공)
-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합의조건 이행 등 환경부·서울·경기·인천 협력 추진

4 업사이클 산업활성화 및 자원순환 문화 확산

- ◆ 高 부가가치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업사이클 산업 기반 등 마련
- ◆ 도민 주도의 마을환경문제 해결 및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 업사이클 문화확산 선도 및 산업육성 활성화 기반 구축

○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개관

- 팹장비 및 사무기기 등 설치('19.2월), 소재전시실·홍보관 등 구축('19.4월)
- 업사이클 기업 및 GUP카페 입주(13개사 / '19.3월~6월), 개관행사 개최('19.6월)

○ 업사이클 인식제고를 위한 문화 확산 사업

- 플리마켓, 세미나·포럼 등 자원순환 문화행사 추진(6월~9월 / 4회)
- 탐방체험실습, 강사양성 및 교사연수과정 운영(6월~9월 / 5개과정 2,285명)
※ 교육청 지정 특수 분야 교사연수 기관 지정(8.12./전국최초)

○ 업사이클 산업 육성 및 소재 DB 운영

- 업사이클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4월~10월/8개팀 50백만원)
- 업사이클 DB구축(소재 503, 제품 280), 업사이클 공모전 개최('19.7월~10월/10개작선정)

□ 마을단위 자원순환 커뮤니티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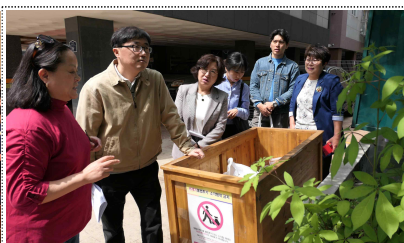
○ 주민역량 고려 단계별 마을 조성: 10개마을(1단계 5, 2단계 5)

- 1단계(5개소, 최대 15,000천원/1개소) 주민교육, 캠페인, 분리배출 시설개선 등 마을 환경개선 지원
- 2단계(5개소, 최대 50,000천원/1개소) 1단계 사업참여+재활용 특화사업(자원순환테마공원 조성 등)

○ (종합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컨설팅(2회), 중간워크숍 개최(1회), 멘토마을운영(3개소)



발대식 ('19.4.17.)



전문가 컨설팅 ('19.5월)



중간워크숍 ('19.7.24.)

7. 북부환경관리 분야 추진상황

1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및 DMZ일원 생태계 보전

- ◆ 영세 중소기업 재정·기술적 지원을 통한 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
- ◆ 멸종위기종 두루미¹⁾ 대체서식지 및 생태계 보호공간 안정적 관리

□ 북부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 지원

-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벙커C유 보일러를 LPG 등 청정연료로 교체
 - 청정연료 전환에 필요한 버너·저장탱크 등 교체비용 지원 : 20개소 700백만원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지원
 - 폐수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비용 지원 : 22개소 498백만원



청정연료 전환 前



청정연료 전환 後



방지시설개선 前



방지시설개선 後

□ DMZ일원 생태계 보호를 위한 임진강평화습지원 운영

- DMZ·임진강 주변 두루미 서식 생태환경 조성 및 개체수 조사
 - 두루미 도래 실태(연도별 최대치) : 432마리('17.2.14)→730마리('18.2.1)→586마리('19.1.25)
- 초화류 식재 및 탐방객 편의시설 등 시설물 유지 보수
- 탐방객 대상 DMZ 생태·역사·문화 등 생태해설프로그램 운영(3,500여명)



1) 두루미(크기 140~160cm, 10kg내외) : 천연기념물 제202호(멸종위기종 1급), 시베리아 등지에서 번식하여 10월 하순부터 다음해 3월까지 연천, 파주, 철원 등 DMZ 주변에 도래

2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환경사고 대응

- ◆ 반환 공여구역¹⁾ 등 체계적 환경치유로 도민의 건강과 지역환경 개선
- ◆ 道·주한미군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 반환기지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정화 추진

○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 정화 주체

구 분	정화주체	반환 後 ➡	구 분	정화주체
공여구역	미군		반환 공여구역	국방부
주변지역	시군	반환 주변지역		

※ 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2조, 제28조

○ 반환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화 추진 현황

(단위 : 개소)

계	미오염	정화 추진현황					조사불가	조사중
		소계	정화완료	정화중 (국방부)	정화계획 (국방부)	정화검토 (시군)		
53	19	31	13	1	7	10	2	1

※ 반환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환경부) : 53개소



토양시료채취 작업



토양오염 정화시설(유류)



토양오염 세척시설(중금속)

□ 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주한미군과 도·시군 간 비상연락망 정비 등 협력체계 구축
-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고 예방 및 대응 관리
 - 미군기지 환경사고대응 T/F팀(7개 실·국장) 및 실무회의 구성 운영
 -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현장조치 매뉴얼 전파
-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 모니터링 실시(19개소, '19. 5~6)

1) 공여구역 :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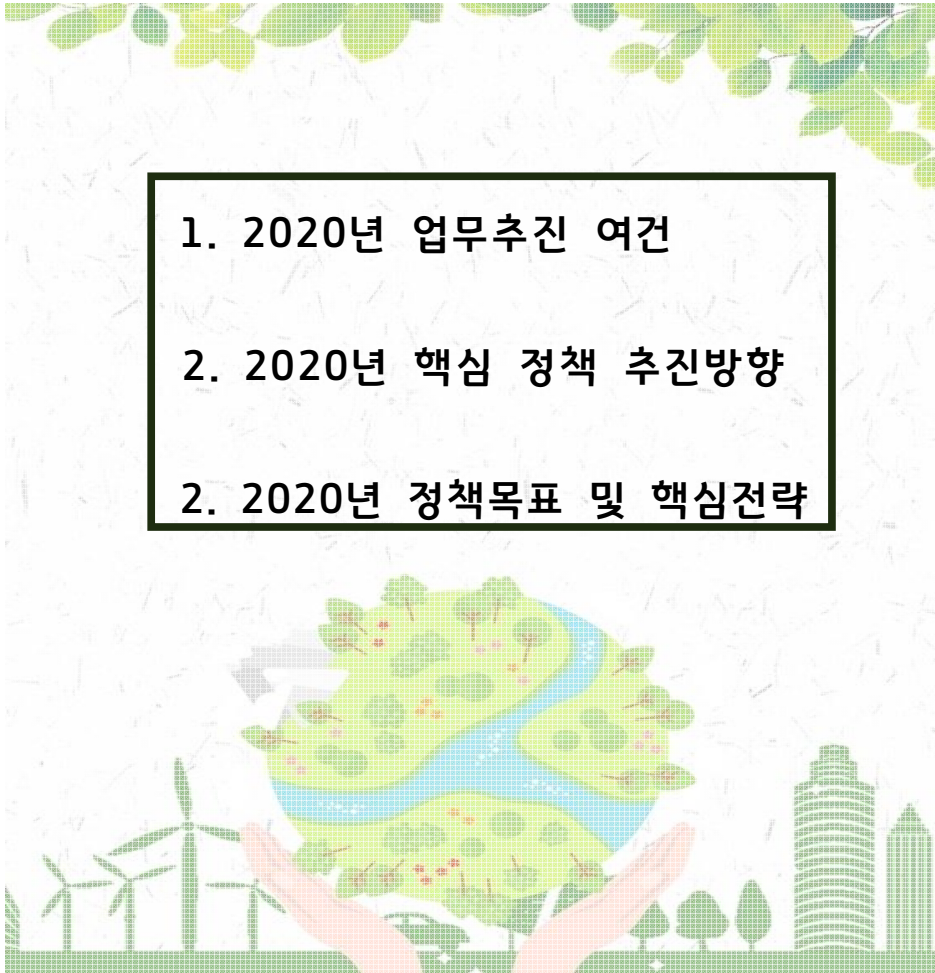
제2절

2020년 환경행정 추진계획

1. 2020년 업무추진 여건

2. 2020년 핵심 정책 추진방향

2. 2020년 정책목표 및 핵심전략



1

업무추진 여건

□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 불안 고조

- 환경 악화에 대한 국민 인식도 ↑, 특히 미세먼지, 방사능,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불안감 높은 실정

▶ 2018년 사회조사¹⁾ 중 환경 분야 결과('18.11,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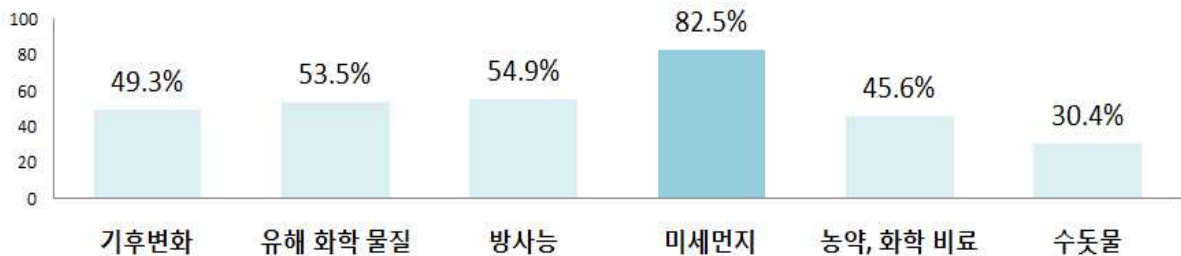
• '환경상황이 5년 전 대비 좋아졌는가?' 라는 질문

⇒ 좋아졌다(25.4%), 나빠졌다(36.4%)

• 환경 분야별 '불안하다' 로 응답한 비율

⇒ 미세먼지(82.5%), 방사능(54.9%), 유해화학물질(53.5%), 기후변화(49.3%)

<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



* 각 항목별 '불안하다', '보통', '불안하지않다' 답변 중 → '불안하다'에 응답한 비율

□ 환경문제 공동대응·협력 중요성 부각

-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중앙·국내외 협력 강화
 -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구성·운영(중앙정부, 경기·서울·인천·충남)
 - 미세먼지 공동대응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소('18.6.)
- (폐기물)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 발생('18.4.), 방치·불법 폐기물의 사회적 이슈화로 폐기물 재활용·관리체계 구축 등 공동 노력
 -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18.5.), 불법폐기물 근절대책 발표('18.11.)

1) 2018년 사회조사 결과는 5개 부문(가족, 교육, 보건, 안전, 환경)에 대하여 전국 25,843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7,000명 대상, 2018.5.16.~5.31. 동안 조사집계 결과

□ 도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 추진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

- '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33% 개선 ('17년 $27\mu\text{g}/\text{m}^3$ → '22년 $18\mu\text{g}/\text{m}^3$)
 - 배출량이 큰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차 확대
 - 드론, TMS 등 첨단 장비 활용한 불법행위 단속
 -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매년 1,150ha 조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내·외 협력
 - 취약계층 이용시설 컨설팅 및 리모델링, 공기청정기 지원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2개소(수원·가평) 건립 운영

□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순환이용 활성화로 순환경제 실현
 - 국가계획과 연계한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및 자원순환 성과관리 시행
 - 소각·매립 폐기물에 대한 처분부담금 부과 및 사업장폐기물 감량 코칭
- '깨끗한 경기'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및 주민참여 청결운동 전개
 - ※ 6개 분야(생활, 도로, 산림, 하천, 농지, 해양) 28개 사업(6,251백만원)
 - 시군연계 '깨끗한 경기의 날' 특별 대청소(분기) 및 '경기 청소의 날' 운영(매월)
- 불법폐기물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 불법방치 폐기물 행정대집행 실시, 우려사업장 중점 관리, 관련제도 정비 등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

- 주민, 시·군과 함께하는 도민친화형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공공기관(22개소, 2,042.7kw) 및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710곳, 2,420kw)
 -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발굴 및 도 에너지센터 활성화
 -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18개마을, 1,877.3kw)

□ 환경오염원 안전관리 강화 및 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환경안전관리 모니터링사업 추진
- 사업장 배출시설 인허가 및 다량배출사업장 총량관리 철저
 - 배출허용총량 준수를 위한 공정개선 및 최적방지시설 설치 유도

비전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 지속가능한 미래



정책목표	핵심전략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기반조성	①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실천하는 환경정책 추진 ②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③ 환경교육 기반 역량강화 ④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로 건강한 생태계 조성
저탄소 실현 에너지 정책 추진	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비전 구현 ② 도민, 시군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기반 구축 ③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대책 마련 추진 ④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미세먼지 실질적 저감 및 맞춤형 환경복지	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질 조성 ② '미세먼지 제로'의 친환경 교통수단 패러다임 전환 ③ 미세먼지 해결방안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④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환경오염원 안전 관리 체계 구축	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②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③ 배출사업장 및 환경서비스업 엄격 관리 ④ 경기북부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
함께 만드는 깨끗한 경기도	① 자원이 선순환하는 순환경제 기반 구축 ② 생활폐기물 배출체계 개선과 수거 활성화 ③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및 공공처리 안정성 확보 ④ 업사이클 기반구축 및 자원순환 문화 확산

제2부 분야별 환경정책

제1장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기반 조성

제2장 저탄소 실현 에너지 정책 추진

제3장 도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

제4장 환경오염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5장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구현

제6장 환경과 기업이 상생하는 경기도 조성

제 1 장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기반 조성

제1절 「지속가능발전협약」 지원

제2절 환경산업 육성·지원

제3절 환경보전기금 설치·운용

제4절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제5절 환경교육 및 홍보

제6절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성화

제7절 자연환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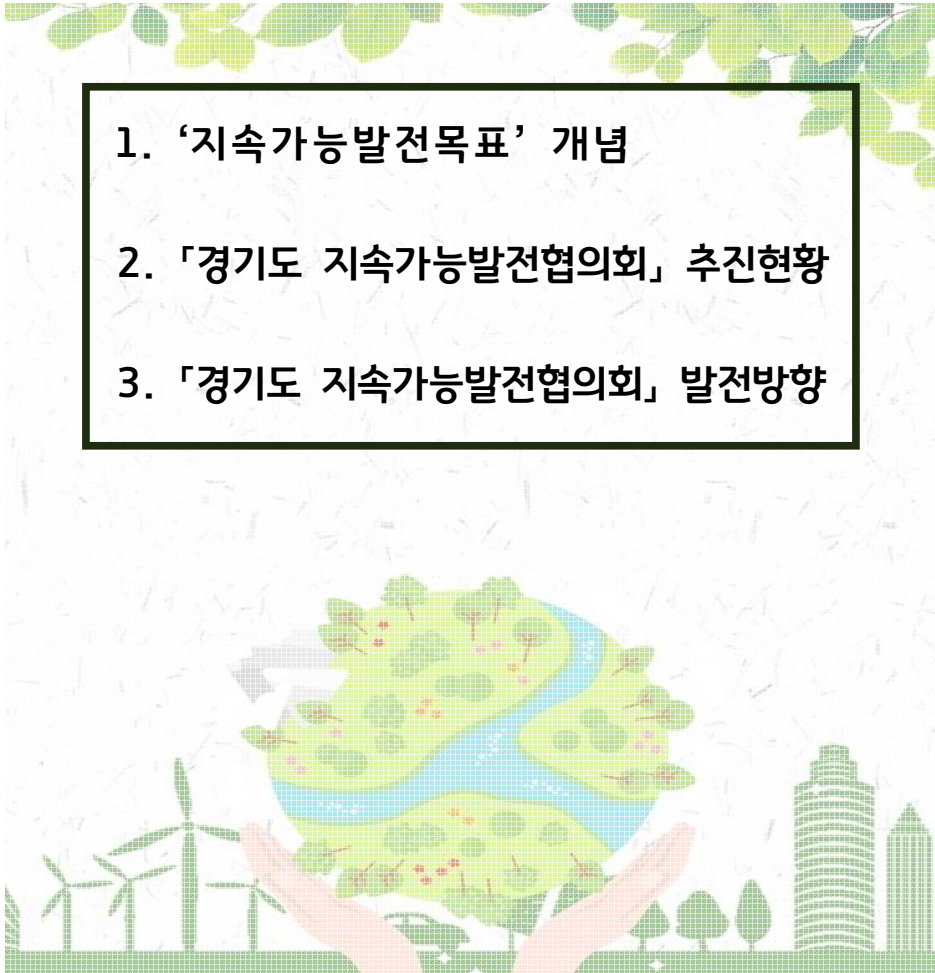
제8절 생물자원의 조사와 보전관리

제9절 환경영향평가 제도

제1절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원

1. ‘지속가능발전목표’ 개념
2.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현황
3.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발전방향



1.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개념

가. 지방의제21에서 지방 SDGs(지속가능발전 목표)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179개국의 정부와 NGO 대표들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①개발과 환경에 관한 리우선언, ② 21세기를 위한 세부 실천강령(Agenda21), ③기후변화협약, ④생물다양성협약, ⑤산림에 관한 원칙 선언 등 지구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구체화하는 주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성과 중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범지구적인 목표와 행동강령을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의제21」(Agenda21)의 채택은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의제21」은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가, 지역사회, 영역(9개 그룹) 등에서 나름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들은 모두 제각각으로 동일한 평가척도를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15년 유엔 총회에서는 「의제21」을 보완하고 단일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맞는 세부 이행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고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17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2.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 현황

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과 추진

경기도는 1997년 8월 경기연구원(구 경기개발연구원)에 ‘지방의제21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을 시작으로 1998년 9월 학계, 사회단체, 언론계와 도의회, 공무원 등 여러 분야 대표 96명으로 구성된 「경기의제21추진협의회」를 발족하였다. 「경기의제21추진협의회」는 3개 분과위원회(정책기획, 사업실행, 지역협력)로 구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장 1인 및 간사 1인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두고 「경기의제21」의 수립과 실천 점검 등을 총괄하였다.

1999년 6월에는 경기도의 지방의제21인 「푸른경기21」을 작성·선포함으로써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로 공식 출범하여 의제실천사업을 비롯한 민·관 협력을 기초로 한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2004~2005년에는 사회·환경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푸른경기21」내용을 전면적으로 재작성하였고, 2007년에는 재 작성된 「푸른경기21」 13개 분야의 의제 실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여 13개 의제실천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11년에는 제3차 푸른경기21을 작성, 생물다양성, 기후행동21, 녹색사회경제, 삶의 질, 마을의제 등 5대 주요 경기의제와 지속가능성평가, 국제교류협력, 시군의제21 등 3대 특별의제로 구성 되어있으며, 위원으로는 학계, 사회단체, 기업계, 언론, 도의회, 공무원 등 각 분야 대표 278명을 제5기 위원(2007년~2008년)으로, 286명을 제6기 위원(2009년~2010년)으로 위촉하였으며, 제7기 위원(2011년~ 2012년) 272명, 제8기 위원(2013년~2014년) 297명, 현재는 제9기 위원(2015년~2016년) 281명(중복제외)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1년 민간 사무처를 설치, 경기의제21 실천사업을 총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내 27개(동두천, 양평, 양주, 부천 제외)동 시·군 지방의제21 사업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2017년에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협력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명칭을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였으며,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지표 수립을 하였다.

2020년에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방SDGs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한발짝 더 다가섰다.

3.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발전방향

가. 지방의제21 및 지방SDGs의 지속적 확산

민·관 파트너십 기구인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경기도민,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우리나라 지방의제21의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다양한 우수 사례들을 개발 확산시켜 왔다. 지난 10년 활동을 종합해 보면 실천협의회는 그간 지방의제21 추진기구로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천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외부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으며, 그 일례로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의제21 실천사업 평가’에서 2003년부터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를 비롯해서 시흥·군포시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특히 2007년에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환경부가 실시한 ‘전국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선정심사에서 ‘푸른경기21 도시대학’이 대통령상인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8년에는 광명시와 군포시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09년에는 수원시와 시흥시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경기도 민간부문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사업인 그린홈건설턴트 사업과 그린캠퍼스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2011년 국회기후변화 포럼에서 주는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 2015년에는 지속가능발전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 지방의제21 추진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또한 우리동네 그린맵 공모사업을 추진, 그린맵 프로그램이 한국유네스코의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인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와 파트너십의 정신을 확대·강화하고 환경, 경제, 사회적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도민과 지방정부 양자 모두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와 실천방식으로서 환경 거버넌스 정착

지속가능발전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의 형평성, 현 세대내 형평성, 인간과 생태종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경제·환경의 통합적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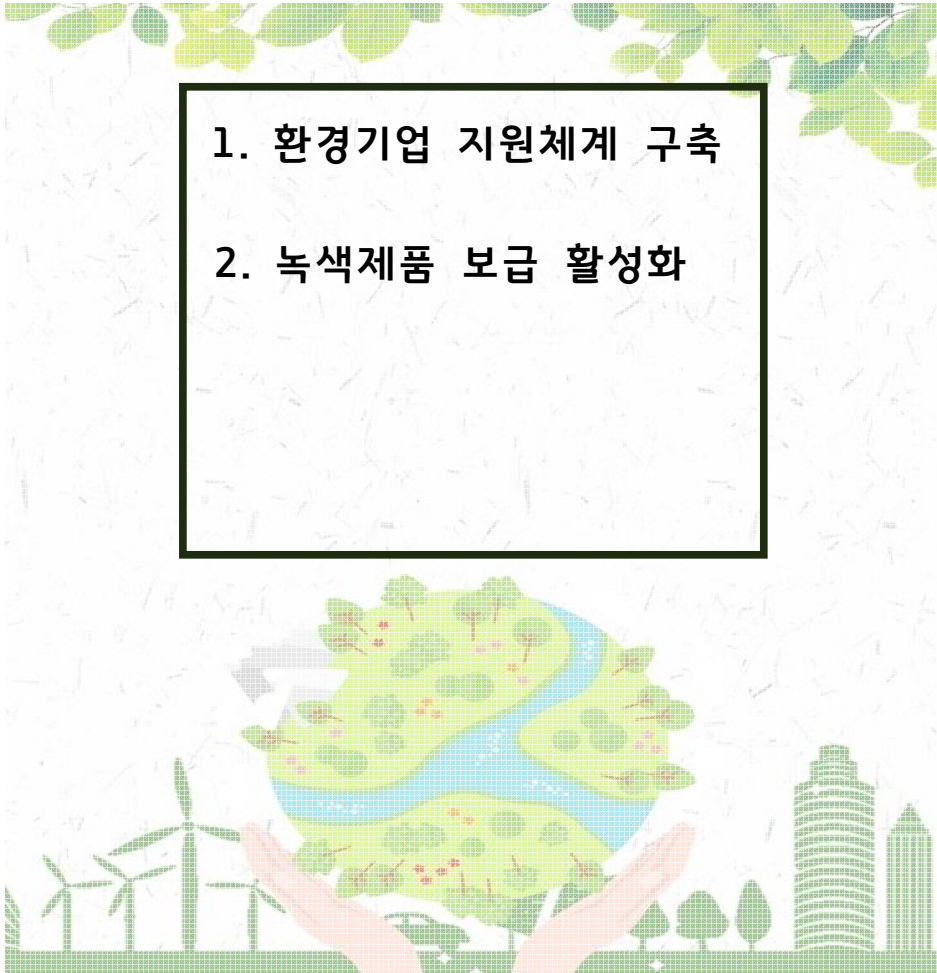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정과 도민의 거버넌스 협의체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그룹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시대흐름에 맞추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미래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를 기초로 하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도정전반에 걸쳐 추진되어 온 의제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맞게 통합·정리하고 우수 사업 발굴과 경기환경포럼 지속추진 등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담당자 : 환경정책과 환경기획팀 최 훈 / ☎ 031-8008-4234)

제2절 환경산업 육성·지원

1. 환경기업 지원체계 구축
2. 녹색제품 보급 활성화



1. 환경기업 지원체계 구축

가. 추진배경

기후변화, 에너지 및 자원고갈 등 환경문제가 전 지구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환경산업은 녹색경제를 주도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오늘날 삶의 질에서 경제적 번영과 더불어 환경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악화와 유해화학물질 오염 등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환경가치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음에 따라, 산업경제 발전을 도모하면서 환경보전도 가능케 하는 부문인 환경산업의 역할이 지속 증대되고 있다.

세계 환경시장 규모는 최근 7년간(2012~2018) 23.7% 증가하여 2018년에는 1조 2,440억 달러(약 1,436조 원)에 달하였으며, 2020년까지 1조 3,36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7년 국내 환경시장 규모는 전년대비(98조 628억 원) 0.8% 성장한 98조 8,188억 원(GDP 5.7% 차지)으로 추정, 최근 6년간(2012~2017) 연평균 2.4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7년 경기도의 환경시장 규모는 전국 환경시장 규모의 약 36.3%에 해당하는 35조 8,933억 원으로 추정되며, 환경관련 사업체수는 15,084개로 전국대비 약 26%, 환경관련 사업체에 포함된 환경산업 등록업체는 전국대비 30%, 녹색전문기업은 전국대비 34.5%가 경기도에 입지해 있다. 환경관련 사업체의 종사자수는 151,671명으로 추정되는데, 전국 대비 34.1%를 차지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지속가능환경자원이 33,167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자원순환관리 26,001명, 물관리 23,153명, 환경지식서비스 산업 21,814명 순이다.

< 표 2-1-1 > 경기도 환경산업 일반현황

구분	계	지속가능 환경자원*	자원 순환	물관리	환경안전 보건	환경지식 서비스	대기 관리	기상기후 대응	환경복 원복구
업체수(개사)	15,085	4,507	3,560	1,696	1,460	1,301	1,189	952	420
종사자수(명)	151,671	33,167	26,001	23,153	20,237	21,814	9,041	12,679	5,579

* 「2019년 환경산업통계조사」(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제2차 경기도 환경산업육성계획(2020~2024)」(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

나. 추진현황

경기도는 2015년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추진사업으로는 기업 직접지원과 전시회 및 융자지원 등 간접지원으로 나뉜다. 기업 직접지원 사업으로는 사업실적, 보유기술, 고용창출이 우수한 도내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선정하여 신뢰도를 제고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환경산업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유망환경기업 인증 및 맞춤형 지원을 한다. 유망환경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환경기업에게는 기술애로 지원을 통하여 기업 역량강화 지원을 하고 있다.

간접지원 사업으로는 경기환경산업전(Eoc Fair Korea)을 개최하여 우수 환경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해외 환경분야 바이어를 초청, 무역상담회를 통하여 환경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가 하면, 중국시장 위주에서 탈피하여 베트남·인도·중동 등으로 확장한 환경산업 통상촉진단을 파견하여 환경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환경오염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보전기금과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시설 용자 지원과 중소기업 환경기술 애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 표 2-1-2 >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현황

구분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지정업체수(개사)	81	-	11	9	10	10	11	15	15
최초지정	70	-	11	9	10	10	9	10	11
재 지정	11	-	-	-	-	-	2	5	4
소요예산(백만원)	1,056	32	52	130	200	162	148	166	166

다. 향후계획

경기도는 환경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제4차 국가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018~2022)」 정책과 연계하고 경기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경기도 환경시장 규모는 우리나라 환경시장의 약 36.3%를 차지하여 전국 최다이나, 다수가 중소기업인 도내 환경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각종 지원과 제도를 발굴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중소환경기업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유망환경기업 지원을 내실화하고, 환경산업 예산 확대와 기술 및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반 확충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관내 환경기업도 적용·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 발족예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내 환경산업본부와 협력하여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해 환경산업 분산 추진업무를 통합하는 등 윈스톱 지원 효과를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 환경정책과 환경산업협력팀 김경애 / ☎ 031-8008-3538)

2. 녹색제품 보급 활성화

가. 개요

녹색제품은 통상 생산·소비·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이라 정의한다.

녹색제품의 인증기준에는 크게 환경기준과 품질기준이 있으며 환경기준은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환경성을 고려토록하고 품질기준은 해당제품별 한국산업규격(KS) 등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구매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이 없는 경우,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그 밖의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표 2-1-3 > 녹색제품 범위

구 분	환경마크	우수재활용(GR마크)
대상품목	사무용기기, 건설용자재 등 165개 품목	폐지, 폐고무 등 15개 분야
인증제품수	4,155개 업체 / 15,895개 제품	191개 업체 / 220개 제품
로고		
인증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자원순환산업인증원
홈페이지	www.greenproduct.go.kr	www.gr.or.kr

법률상 적용대상 공공기관으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공사(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등 909개 기관이 있으며 경기도의 의무구매 기관은 법적대상 37개 기관²⁾과, 도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투자한 공기업과 도에서 출연한 19개 기관 등 총 56개 기관이다.

사무실에서 사용가능한 녹색제품으로는 컴퓨터 및 모니터, 프린터, 토너카트리지, 팩시밀리, 복사기, 사무용 목재가구, 사무용지 및 종이제품 등이 있고 토목·건축 관련 상품으로는 페인트, 건설용 방수제, 보온단열재 및 흡음판, 투수 콘크리트제품, 도로보조기층용 재생골재, 수도계량기, 창호, 실내용 바닥장식재, 형광램프 및 안정기, 가스보일러 등이 있으며 가정용품으로는 화장지, 비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합성수지제품 등이 있다.

2) 의무구매기관(법적 대상) : 경기도, 31개 시군,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의료원, 경기개발연구원

나. 추진동향

국제사회는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UNNCED)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과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당면과제로 천명한 바 있으며, 2012년 7월 Rio+20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에서는 “지속가능 소비·생산 10개년 계획”을 채택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녹색생산·소비체제 구축 및 녹색구매(Green Purchasing)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점점 커지고 있다.

EU에서는 재생(recycling)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친환경제품 매출이 연평균 9%씩 증가('14.12, KOTRA)하고 있고, 일본은 '전력사용 제한령'에 따라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한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친환경 소비가 '4대 소비트렌드'*중 하나로 부상하는 등 각국에서는 녹색소비 추구경향이 증대하는 추세이다.

* 1.스마트소비, 2.친환경소비, 3.온오프 연계 소비, 4.소비자 참여형 소비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12월 31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 4월에는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과 내용을 보완하였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홍보 등 녹색제품 구매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006년 12월 26일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내 31개 전 시·군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2008년 10월 21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와 모든 시·군이 조례제정을 완료하였다.

< 표 2-1-4 > 경기도 및 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제정 현황

지자체명	조례제정일	지자체명	조례제정일	지자체명	조례제정일
경기도	'06. 12. 26	파주시	'07. 12. 28	안양시	'08. 5. 6
고양시	'06. 4. 28	용인시	'07. 12. 31	구리시	'08. 5. 26
가평군	'07. 5. 11	안성시	'07. 12. 24	광명시	'08. 6. 16
부천시	'07. 10. 4	남양주시	'07. 12. 31	의정부시	'08. 6. 16
김포시	'07. 11. 8	동두천시	'08. 1. 10	광주시	'08. 7. 21
화성시	'07. 11. 12	오산시	'08. 1. 15	안산시	'08. 8. 4
포천시	'07. 11. 16	양주시	'08. 2. 18	군포시	'08. 8. 11
시흥시	'07. 12. 12	과천시	'08. 2. 26	여주시	'08. 10. 9
성남시	'07. 12. 13	이천시	'08. 3. 3	연천군	'08. 10. 16
수원시	'07. 12. 27	평택시	'08. 3. 5	양평군	'08. 10. 21
하남시	'07. 12. 27	의왕시	'08. 4. 10	조례 제정 100%	

또한, 2011년 8월부터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2013년 5월 27일 정식 개소하였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주요사업은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정부합동평가 “녹색제품 구매비율”에서 최근 3년간(‘16~’18) 도부 1위, 가 등급을 달성하였다.

< 표 2-1-5 > 녹색제품 구매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총구매액	녹색제품 구 매 액	비 율 (%)	
총 계	603,879,584	314,165,701	52.02	가등급
경기도	30,601,708	16,530,491	54.02	
시·군	573,277,876	297,635,210	5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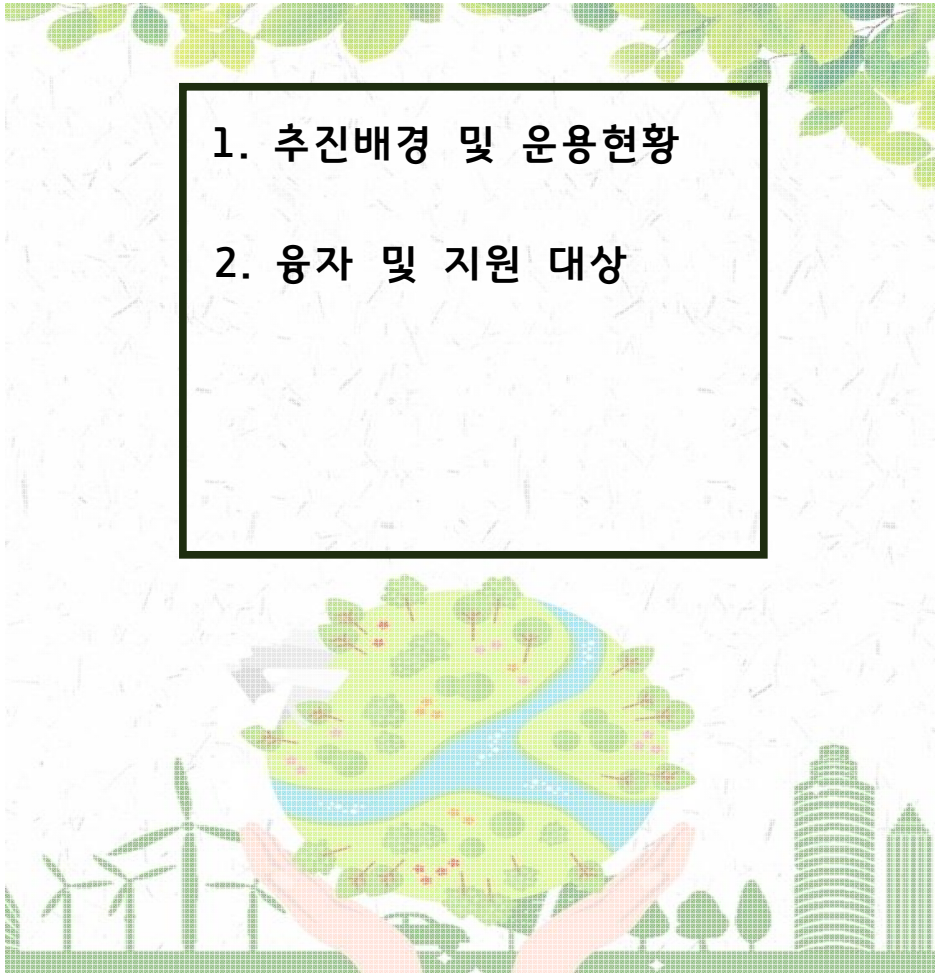
(담당자 : 환경정책과 환경기획팀 김아라 / ☎ 031-8008-4229)

제3절

환경보전기금 설치·운영

1. 추진배경 및 운영현황

2. 용자 및 지원 대상



1. 추진배경 및 운용현황

가. 추진배경

중소기업체의 사업 활동 중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적절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으나 중소기업에서는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적극적인 투자를 꺼려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는 1991년 제정한 「경기도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조례」를 1999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기업체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뿐만 아니라 민간 환경단체에도 환경보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0년부터 전국 최초로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환경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2014년에는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적 경제 환경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지역사회에서 환경보전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시작함으로써 경기도는 경제적 발전과 함께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의 환경요구 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한 환경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나. 운용 현황

기업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환경보전과 개선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쪽으로 변화하고, 민간에서도 활동을 다변화·다양화함에 따라 기금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어 경기도는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대상 시설의 융자한도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였고 기업체의 부담 금리도 연 2.5%에서 2.2%로 낮추었다. 융자분야도 환경산업 육성, 폐수처리업, 측정대행업은 물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독물 취급시설까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은 1991년 18개 업체 8억 1,50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13개 업체 32억 7,350만원을 융자 지원한 것까지 포함하여 총 558개의 중소기업에 825억 5,424만원을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저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민간단체 환경보전사업으로 2016년 41개 단체 2억 4,581만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696개 단체 48억 7,150만원을 지원하여 민·관의 동반자적 협조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은 환경기술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및 환경교육 등 크게 6개 분야로 2015년 8개 업체 1억 3,37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10개 업체 9,157만원을 지원한 것 까지 포함하여 총 59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4억 6,215만원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에는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일반회계에서 환경보전기금으로 편입하였으며, 연간 약 50억원의 징수교부금을 교부 받아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활용하고 있다.

2. 용자 및 지원대상

가. 용자 대상

환경보전기금 용자 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며 대기·수질오염방지시설, 대기·수질 자동계측시설 등을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해외진출사업 및 측정대행업,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구입에 해당된다.

현재, 기업체에서 부담해야하는 금리는 연2.2%(고정금리)이고 최장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까지 가능하며 업체당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에서 용자대상 적합 여부, 신청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용자를 결정하고, 신청기업은 취급은행에서 소정의 절차를 통해 대출을 실행한다.

<그림 2-1-1> 환경보전기금 용자지원 사업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 환경오염 측정장비 구입

나. 보조 대상

1.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단체로서 회원이 100인 이상이고 최근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을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사업은 도의 환경정책 수립·결정 및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폭 넓은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 중 2개 시·군 이상에 걸친 환경교육·보전, 현장체험 및 환경문화사업 등 민간차원의 자율 환경 사업이 해당된다.

2.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

도내 환경보전사업을 주로 하는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크게 3개 분야로 환경기술 개발, 환경제품 마케팅, 환경교육이다.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매년 초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신청된 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및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심의운용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공정하게 심의하여 지원 대상 사업과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다. 자연생태 보전사업 추진

1. 자연생태 보전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2017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치료를 위한 시·군별 치료기관의 지정·운영 등을 위한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및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 경기생물다양성 탐사(BioBlitz)

경기생물다양성 탐사(BioBlitz)는 24시간 동안 생물전문가와 일반인들이 함께 행사지역의 모든 생물종을 찾아 목록을 만드는 과학 참여 활동으로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이다.

2019년 환경보전기금 1억원을 지원받아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 제1회 경기생물다양성 탐사를 개최하였으며, 1,036명이 행사에 참가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백부자, 새매 등을 비롯하여 1,361종의 생물종을 발견하였다.

<그림 2-1-2> 경기생물다양성 탐사 행사 주요내용



(담당자 : 환경정책과 환경산업협력팀 최지원 / ☎ 031-8008-3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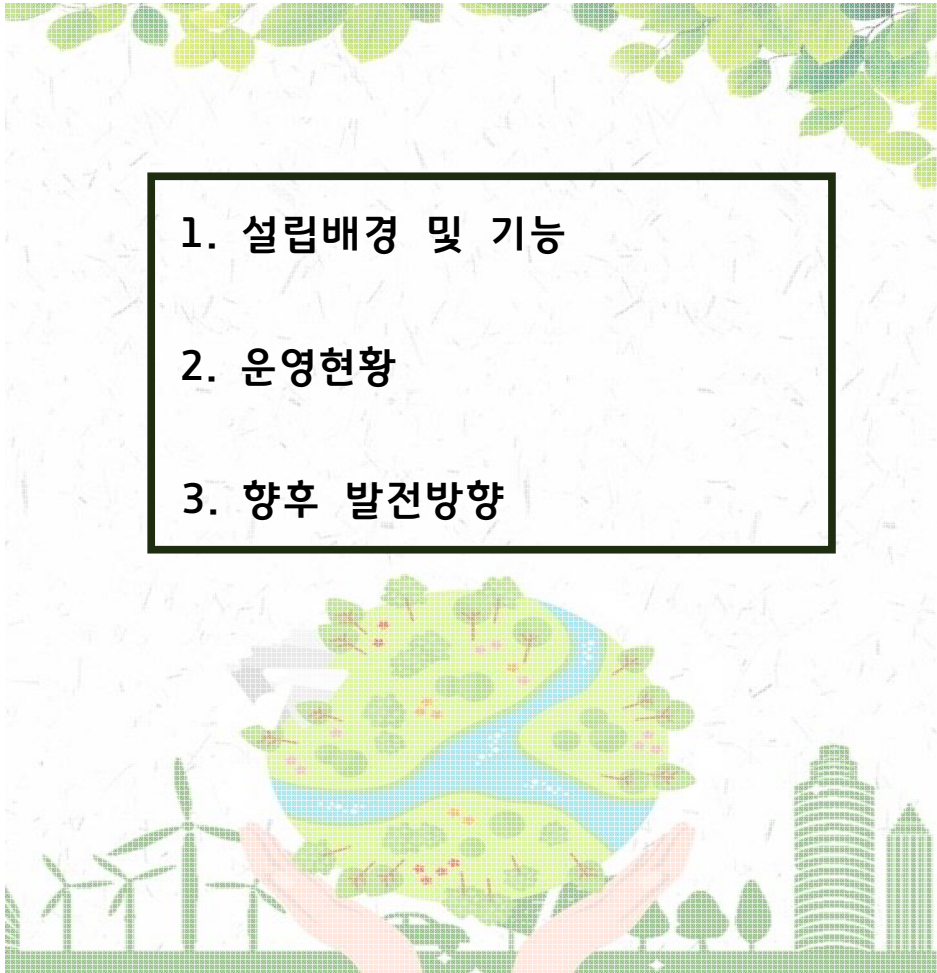
제4절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1. 설립배경 및 기능

2. 운영현황

3. 향후 발전방향



1. 설립배경 및 기능

가. 설립목적

경기도 지역 내 환경연구 역량을 총 결집하여 지역 특유의 환경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3개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녹색환경지원센터는 과거의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로서 2011년 4월 28일 환경산업 지원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환경기술지원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개정되면서 명칭이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녹색환경지원센터로 변경되었다.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역 내 대학, 국가, 지자체 및 기업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설립하여 정보기술의 공유와 장비의 공동 활용 등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오염 문제의 규명과 해결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특화 환경기술을 개발하여 환경기술 보급·전파의 지역거점 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센터 간에는 경쟁과 협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하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연구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다.

나. 센터구성 및 운영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예산회계 및 행정실무 등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과 센터의 연구사업, 기업체의 환경관련 업무의 지원 등 기술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연구협력실을 두고 있고 인력은 센터장과 사무국장, 연구협력실장, 사무원, 연구원 등 총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사업의 합리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 설립 주관대학, 각급 연구기관, 행정기관, 민간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협의회』는 환경부, 경기도, 해당 시 공무원과 대학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센터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사업평가협의회』와 『연구협의회』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선정과 평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다. 설립지역 및 참여대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대기환경 규제지역, 수질·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환경현안 문제 상존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지역 특화 환경기술을 개발하여 환경기술 보급·전파의 지역거점체제를 구축하고자 전국 13개 시·도에 15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녹색환경지원센터는 각 시·도에 1개 설치가 원칙이나 경기도에는 3개의 센터가 설치·운영되어 있는데 이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센터는 용인지역에 소재한 명지대학교가, 안산센터는 안산지역에 소재한 한양대학교가, 시흥센터는 시흥지역에 소재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라. 주요기능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역량 활용 극대화, 지역 내 연구기관 간 정보·기술의 공유와 장비의 공동활용 등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환경오염문제 규명 및 해결의 시너지 효과 창출, 지역 특유의 환경문제에 대한 집중연구와 환경기술 개발의 거점 형성, 지역문제에 대한 자체 해결능력 강화,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의 개발로 지역특화 환경산업 육성, 민원사항 해결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환경기술 전파·보급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체제 구축, 환경기술 정보교류 및 현안자료 수집 창구 마련, 개발된 신기술의 수요 창출을 위한 수요자 개발자 연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지역에 경기센터를 두어 안산시와 시흥시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기술개발과 기술 지원, 환경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고, 반월·시화공단이 소재한 안산시와 시흥시에 각각 안산센터와 시흥센터를 설치하여 안산센터는 공단의 수질분야를, 시흥센터는 공단의 대기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 표 2-1-6 >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 및 기능

센 터 명	설립일	주 요 기 능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기관 : 명지대학교)	2000.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개발 • 평택호, 화옹호, 안양천 등 호소 및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개발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기관 : 한양대학교)	2000. 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시흥지역의 폐수 및 폐기물처리기술개발 • 시화호 유입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00. 7.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시흥지역의 악취저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개발 • 안산·시흥지역 대기환경예측모델의 개발

2. 운영현황

센터 운영을 위해 국비와 도비, 시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주관기관인 각 대학에서도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

< 표 2-1-7 > 녹색환경지원센터 보조금 지원현황(2018~2019)

(단위 : 백만원)

구분	경기센터			안산센터			시흥센터		
	계	'18	'19	계	'18	'19	계	'18	'19
계	1,401.6	703.2	698.4	1,397	675	722	1,498	740	758
국비	666.6	340.2	326.4	660	334	326	670	344	326
도비	735	363	372	737	341	396	828	396	432

2018년과 2019년까지 녹색환경지원센터 전체 연구과제 수행은 총 43건이며,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은 총 440개사 510건을 수행하여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중소기업 애로기업 기술지원을 실시하였고, 환경관리인, 지역주민 대상 환경교육은 291건 3,901건을 수행하여 민관산학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다.

< 표 2-1-8 > 환경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실적 (2018~2019)

구분	경기센터			안산센터			시흥센터		
	계	'18	'19	계	'18	'19	계	'18	'19
연구개발 과제(건)	13	7	6	15	9	6	15	8	7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기업/횟수)	130 /158	57/70	73/88	133 /151	66/73	67/78	177 /201	70 /80	107 /121
환경교육(횟수/명)	44 /1,862	29 /1,153	15 /709	125/ 1,184	63 /700	62/484	122 /855	69 /402	53 /453

< 표 2-1-9 > 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 추진현황 (2019년)

구분	연구과제명
경기 녹색환경 지원센터 (6개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기도 오염 지하수 및 토양의 지중처리를 위한 나노물질의 표면개질기술 연구 2. 모래톱에 축적된 미세 및 소형 플라스틱의 자율수거를 위한 건식 선별 및 여과장치 개발 3. 경기도 환경산업육성 종합계획(2020~2024) 4.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용인시 도시기후지도 작성 및 바람길 제시 5. 하이브리드형 굴뚝 먼지측정기 모듈 개발 6. 가용성 폐기물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물질(먼지97%이상, SOx 70% 이상)저감을 위한 [하이브리드 습식자갈순환 전기집진기(50m³/min)] 개발
안산 녹색환경 지원센터 (6개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산 지역 폐수 내 비소 처리 효율 향상을 위한 최적 가용 기술 개발 2. 안산시 미세먼지 발생원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 3. 안산지역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4. 시화호 유역의 환경호르몬 분포 조사 5. AMD 슬러지를 이용한 바이오 가스 황화수소 및 실록산 동시 제거용 흡착제 제조기술 개발 6. ICT 기반 고온배가스의 에너지 및 환경관리를 위한 스마트 운영시스템
시흥 녹색환경 지원센터 (7개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열증기를 이용한 대기용 활성탄 재생장치 개발(1차년도) 2. 석탄회 기반 제올라이트를 개질한 수처리용 여과재의 제조 및 이를 이용한 독성중금속 제거 연구(1차년도) 3. 시흥지역 녹조예방 및 녹조제거용 미생물제제 적용 연구(2차년도) 4. 시화산단 업종별 흡착탑에 사용되고 있는 활성탄의 물성 특성조사를 통한 대기질 개선 방안 연구(1차년도) 5. 시화/안산 스마트허브 내 금속/섬유 업종 유래 미세먼지 발생현황 및 미세먼지 특성 조사(1차년도) 6. 경기도 화목 연소 난방취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7. 시흥시 패각류 폐기물 재활용방안 연구

3. 향후 발전방향

센터 간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센터별로 연구할 과제를 협의·조정하는 한편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지역신문 및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모에 의해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 연구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기업 환경지원 사업을 활성화하여, 산·학·연·민·관의 관계전문가로 인력 풀을 구성,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센터별 홈페이지 활성화, 신기술 발표회, 세미나 개최 등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홍보하는 등 센터의 역할·기능, 사업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대학에서부터 친환경적 생활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린캠퍼스 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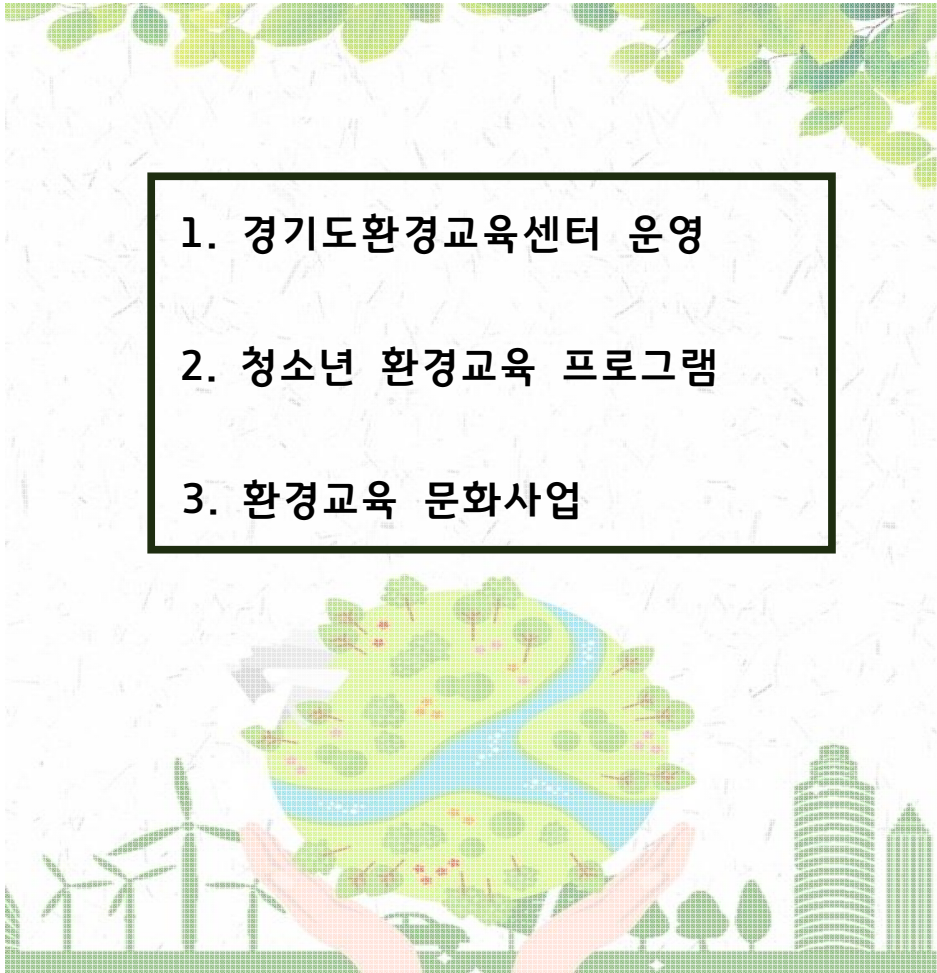
또한, 센터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행정기관에 의존하던 예산부분을 좀 더 다양화 해 기업체에서 발주하는 연구사업과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센터별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강점을 차별화한 장점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작성자 : 환경정책과 환경산업협력팀 김경애 ☎ 031-8008-3538)

제5절

환경교육 및 홍보

1.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운영
2.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3. 환경교육 문화사업



1.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운영

경기도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1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³⁾

경기도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으며, 이에 따라 환경교육 연구 및 조사, 환경교육 인력 역량강화 사업, 환경교육 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환경교육 기관·단체 컨설팅,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년에는 환경교육 인력 현황조사(99명 등록), 환경교육 요구조사 실시(2,560명 응답), 환경교육 현황조사(114개기관, 328개 프로그램), 교사연구회 지원(5팀), 인력 역량강화 연수(516명), 환경교육자료 공모전 개최(교구 5, 프로그램 5), 환경교육 교구 보급 대역(32개 기관, 401개 대역, 10,133명 수혜. 9개 기관 59개 보급), 경기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6팀), 지역환경교육센터 사업 지원(5팀), 환경교육 네트워크 사업 지원(5팀), 환경교육 컨설팅(9회), 환경교육관계자 워크숍(2회), 도-지역센터 협의회(3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워크숍(23명)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다.

센터에서 개발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환경교육 소식,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정보는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www.ggeec.or.kr)에 게시하여 공개하고 있다. 특히, 매년 공모전을 통해 제작한 우수한 환경교육 교구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어 많은 환경교육 기관·단체들이 활용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환경교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기초 단위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광역-기초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앞으로도 우수한 환경교육기관을 발굴하여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2-1-3>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운영



(담당자 :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 박은경 / ☎ 031-8008-4225)

3) 2019년 12월 말 기준, 광역 단위의 환경교육센터는 8개가 지정되어 있으며(경기도, 강원1, 강원2, 충남, 전남, 경남, 울산, 부산), 도 내 기초 단위의 환경교육센터는 11개가 지정되어 있다(양평, 안산1, 안산2, 고양, 화성, 안양, 용인, 시흥, 수원, 파천, 부천)

2.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당일형 및 숙박형 체험교육, 청소년 환경캠프, 환경 가족 기자단, 환경교육지도자 양성 과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환경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사업은 환경부에서 시·도의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하였다. 경기도는 청소년 교육 전문기관인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2011년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지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사업은 단순 수련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생활 속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 체험과 공동체 생활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숙박형으로 진행되는 환경 캠프는 공동생활 속에서 개개인의 노력이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2-1-4>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9년에는 314백만원을 지원하여 유아, 청소년, 성인 등 31,944명을 교육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 표 2-1-10 >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실적 (2019년)

합 계	학 생(명)					일반인(명)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환경 교육 지도자	교원	기타
31,944명	2,170	7,537	8,457	13,084	73	102	40	481

(담당자 :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 박은경 / ☎ 031-8008-4225)

3. 환경교육 문화사업

환경교육 문화사업은 영화, 음악, 연극, 뮤지컬, 노래 등 문화예술 장르의 친근함과 전달력을 환경교육에 접목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가 심사를 하고 선정된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비 보조사업자인 수원시는 이 사업을 통해 경기도내 16개 초등학교를 방문 찾아가는 환경연극 공연을 추진 하였다.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인한 쓰레기 과다발생이 일으키는 문제를 이룬 위주의 단순 교육방식을 탈피해 학생들이 연극에 직접 참여 하게 하였으며 무분별한 쓰레기로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힘썼다

2019년에는 환경연극 '보물을 찾아서'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원시 총 16개 초등학교를 순회공연을 제작하여 약1,640명이 공연 교육에 참여하였다. 쓰레기섬으로 보물을 찾아서 떠나는 아이들의 모험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환경연극은 환경교육사업의 문화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기초 환경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인한 환경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참여해 보는 순회 환경연극은 환경문제 인식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문화 사업이다.

<그림 2-1-5> 환경교육 문화사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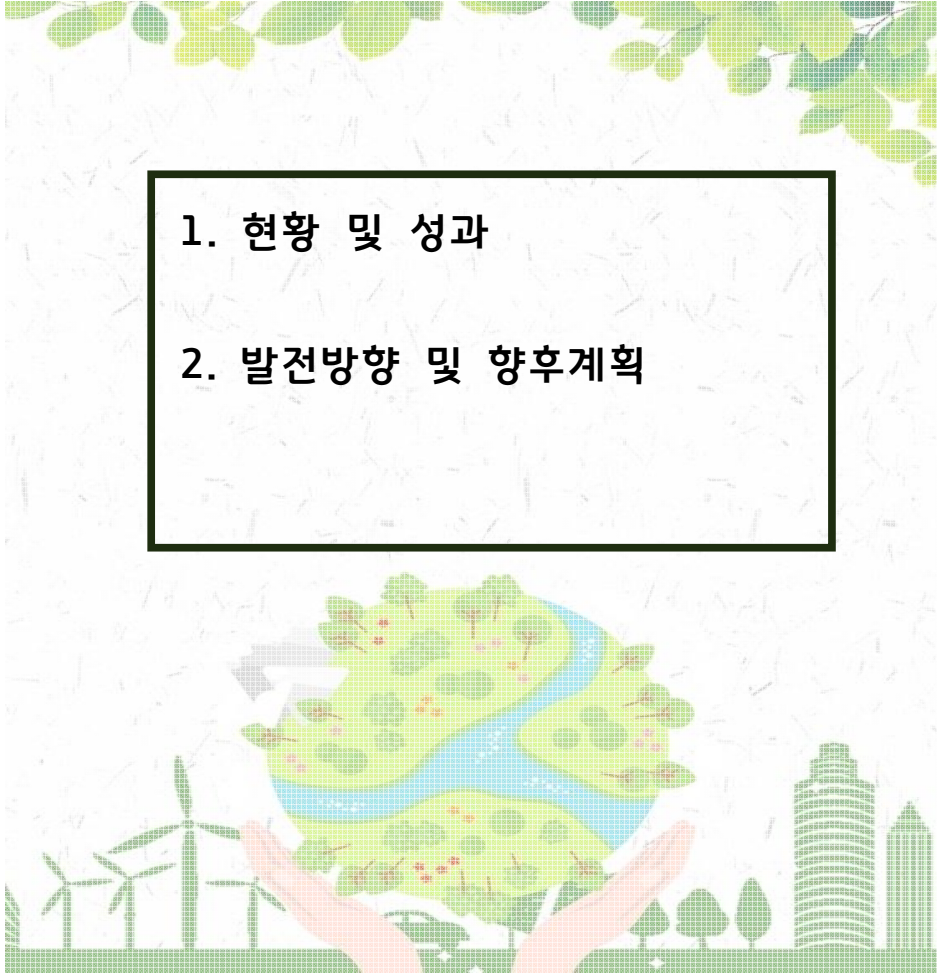
(담당자 :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 박은경 / ☎ 031-8008-4225)

제6절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성화

1. 현황 및 성과

2. 발전방향 및 향후계획



1. 현황 및 성과

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분쟁 발생 시 당사자가 중앙 또는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하여 피해 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제도이다. 행정기관이 절차 및 분야별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환경분쟁에 개입함으로써 생활주변의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에는 당사자 간의 자리를 주선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알선(斡旋),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수락을 권고하는 조정(調停), 피해의 원인과 손해배상 등에 관한 판단을 하여 결정하는 재정(裁定), 위원회의 중재안 수용을 수락 확인 후 결정하는 중재(仲裁) 이상 네가지 종류가 있다. 이 중 재정은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장하던 업무였으나 2002년 12월 26일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1억원 이하의 분쟁 재정 사건'이 각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2003년 6월 27일부터 기존에 처리하던 환경분쟁조정 중 알선 및 조정 이외에 재정까지 포함하여 처리하게 되었다.

경기도에 접수된 환경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47건, 2011년 12건, 2012년 10건, 2013년 5건, 2014년 22건, 2015년 25건, 2016년 17건, 2017년 15건, 2018년 23건으로 총 376건에 이른다. 2019년도에 접수된 환경분쟁조정 12건 중 재정 11건, 조정 1건으로 재정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 공사장의 소음과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이는 최근 수도권의 신도시개발, 공동주택 재개발, 도로공사 등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003년 7월 9일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연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및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분쟁조정위원을 위촉하여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하였다. 2019년말 기준 15명(당연직 2, 위촉직 13)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여성위원 7명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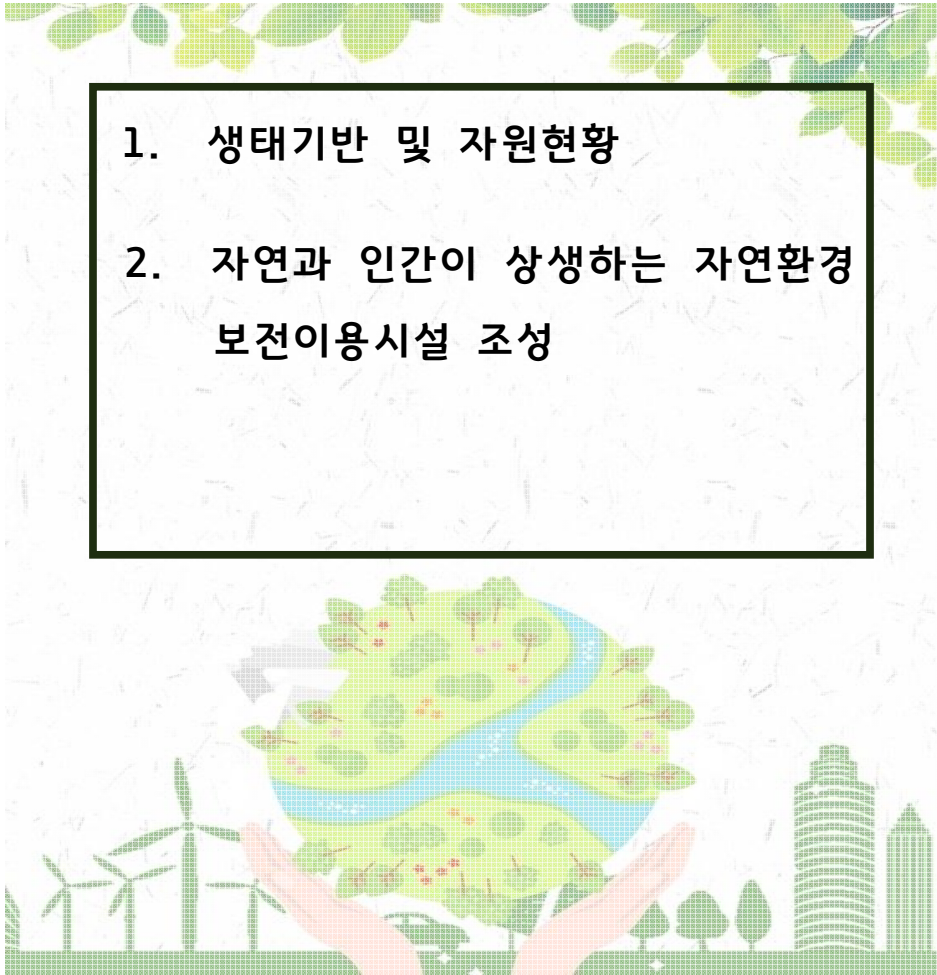
2. 발전방향 및 향후계획

환경 분쟁이 발생하는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분쟁 당사자의 구조도 복잡하여 이를 해결하는 데 고도의 기술을 요함에 따라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심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분쟁 워크숍, 분야별 전문교육 참여 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정결정, 전문가 참여 확대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 송원용 / ☎ 031-8008-3536)

제7절 자연환경 현황

1. 생태기반 및 자원현황
2.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조성



1. 생태기반 및 자원현황

가. 생태자연도 및 도시생태현황지도

생태·자연도는 환경부가 전국의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한 지도로서 자연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의 지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도이다. 그동안 각종 협의·평가 시 활용한 녹지자연도는 식생의 자연성 등의 일부 산림 요소만 평가되어, 습지, 철새도래지, 야생동·식물 및 그의 서식지 등 생태계 전반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보전가치를 토대로 보전하여야 할 곳과 이용·개발이 허용되는 곳을 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자 1996년에 작성한 녹지자연도 등급제를 폐지하고, 생태·자연도를 작성하게 되었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자연환경을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의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1등급은 생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 2등급은 완충지역 및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 3등급은 이용가능 지역, 별도관리지역은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1:25,000 지도에 표시된다. 이에 따라 생태·자연도는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성평가 등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개발에 의한 생태계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 면적은 총 1,026,146ha이며, 그 중에서 생태자연도 면적은 1등급이 10.6%, 2등급이 79.5%, 3등급이 0.8%, 별도관리지역이 9%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2급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표 2-1-10 > 경기도 생태자연도 등급 분포 현황

구분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
면적(ha)	1,026,146	52,563	393,207	3,794	44,743
구성비(%)	100.0	10.63	79.55	0.77	9.05

자료 :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egis.me.go.kr>)

생태·자연도는 국내에서 활용되는 자연환경평가정보 중에 현장정보를 기반한 신뢰도 있는 평가자료로서 높은 위상을 가지나 이러한 평가등급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 의해 도출되는 등급으로서 지역적 가치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점을 보완하고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라 작성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이며, 작성된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 주제도”와 비오톱 유형화와 비오톱 평가 과정을 거쳐 각 비오톱(공간)의 생태적 특성과 등급화된 평가가치를 표현한 “비오톱유형도”와 “비오톱평가도” 등을 말한다. 2017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규정이 신설되었고, 도내 28개 市에서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5년마다 갱신 작성하게 되었다.

경기도에서는 28개 市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성 예산의 30%를 환경보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경기도 현황을 반영한 통일성 있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작을 위하여 경기도형 작성방법을 지침으로 별도 고시할 계획이다.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자연생태팀 한진선 / ☎ 031-8008-4237)

나. 서식 동식물

1) 경기도의 야생동식물 분포

환경부의 4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조사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서식종은 식물 1,503종, 포유류 20종, 조류 105종, 양서·파충류 24종, 어류 88종, 저서무척추 529종, 곤충 2,954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표 2-1-12 >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경기도 시군별 출현종 현황

지역	계	담수어류	식물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저서무척추	조류	포유류	비고
경기도	5,223	88	1,503	24	2,954	529	105	20	
가평군	1,927	37	733	21	813	280	30	13	
고양시	731	35	212	7	395	60	20	2	
광주시	1,795	39	591	16	951	159	26	13	
남양주시	1,247	29	467	18	556	146	24	7	
성남시	732	18	151	9	460	74	11	9	
안성시	1,460	15	625	13	711	54	27	15	
양주시	975	19	344	12	417	149	25	9	
양평군	2,053	43	374	18	1,377	194	33	14	
여주시	1,383	43	434	14	751	99	29	13	
용인시	1,520	23	621	12	672	148	31	13	
이천시	1,535	32	393	12	905	164	17	12	
파주시	1,680	48	472	16	926	175	31	12	
포천시	2,141	40	605	20	1,179	254	27	16	
군포시	408	6	62	0	292	36	5	7	
김포시	739	26	219	0	342	119	20	13	
수원시	520	22	376	0	41	50	23	8	
시흥시	666	21	331	0	279	18	9	8	
안산시	661	20	268	0	336	17	13	7	
안양시	619	12	232	0	339	16	12	8	
의왕시	338	10	173	0	70	60	15	10	
부천시	171	10	0	0	137	11	9	4	
연천군	390	38	227	9	0	90	20	6	
평택시	496	0	388	16	0	12	67	13	
화성시	535	8	376	0	0	64	75	12	
오산시	184	0	139	0	0	30	10	5	
과천시	268	0	165	0	82	0	13	8	
의정부시	92	0	73	5	0	0	9	5	
하남시	221	0	201	6	0	0	9	5	
광명시	20	6	0	0	0	0	10	4	
동두천시	621	16	206	10	343	34	12	0	
구리시	47	0	37	4	0	0	6	0	

※ 자료 : 경기도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2019)

2) 멸종위기동식물

경기도에 분포하는 멸종위기동식물은 식물 3종, 포유류 4종, 조류 5종, 양서·파충류 5종, 곤충 4종으로 멸종위기동식물 총 21종으로 나왔다.

< 표 2-1-13 >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현황

구 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종수(종)	
1급	포유류	늑대, 대륙사슴, 반달가슴곰, 붉은박쥐, 사향노루, 산양, 수달, 스라소니, 여우, 작은 관고박쥐, 표범, 호랑이	12
	조류	검독수리, 넓적부리도요새, 노랑부리백로, 두루미, 매, 먹황새, 저어새, 참수리, 청다리도요사촌, 크낙새, 호사비오리, 흑고니, 황새, 흰꼬리수리	14
	양서·파충류	비바리뱀, 수원청개구리	2
	어류	감돌고기, 꼬치동자개, 남방동사리, 모래주사, 미호종개, 얼룩새코미꾸리, 여울마자, 임실납자루, 종수수치, 통사리, 흰수마자	11
	곤충류	붉은점모시나비, 비단벌레, 산골뚝나비, 상제나비, 수염풍뎅이, 장수하늘소	6
	무척추동물	귀이빨대칭어, 나팔고둥, 남방방개, 두드럭조개	4
	육상식물	광릉요강꽃, 금자란, 나도풍란, 만년콩, 비자란, 암매, 죽백란, 털복주머니란, 풍란, 한라솔다리, 한란	11
2급	포유류	담비, 무산쇠족제비, 물개, 물범, 삿, 큰바다사자, 토끼박쥐, 하늘다람쥐	8
	조류	개리,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축새, 검은목두루미, 고니, 고대갈매기, 긴꼬리딱새, 긴점박이올빼미, 까막딱다구리, 노랑부리저어새, 느시, 독수리, 따오기, 뚝부기, 무당새, 물수리, 벌매, 붉은배새매, 붉은어깨도요, 붉은해오라기, 뿔쇠오리, 뿔종다리, 새매, 새호라기, 섬개개비, 솔개, 쇠검은머리썩새, 수리부엉이, 알락개구리매, 알락꼬리마도요, 양비둘기, 올빼미, 재두루미, 잿빛개구리매, 조롱이, 참매, 큰고니, 큰기러기, 큰덤불해오라기, 큰말뚝가리, 팔색조, 향라머리검독수리, 흑기러기, 흑두루미, 흑비둘기, 흰목물떼새, 흰이마기러기, 흰죽지수리	49
	양서·파충류	고리도롱뇽, 구렁이, 금개구리, 남생이, 맹꽁이, 표범장지뱀	6
	어류	가는돌고기, 가시고기, 꺾저기, 꾸두리, 다목장어, 돌상어, 목납자루, 백조어, 버들가지, 부안종개, 연준모치, 열목어, 칠성장어, 큰줄납자루, 한강납줄개, 한동종개	16
	곤충류	깊은산부전나비, 꼬마잠자리, 노란잔산잠자리, 닳무늬길앞잡이, 대모잠자리, 두점박이사슴벌레, 뚱보주름메뚜기, 멧조롱박딱정벌레, 물방개, 물장군, 소똥구리, 쌍꼬리부전나비, 애기뿔쇠뚝구리, 여름어리표범나비, 왕은점표범나비, 은줄팔랑나비, 참호박뒤영벌, 창언조롱박딱정벌레, 큰자색호랑꽃무지,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20
	무척추동물	갯게, 거제외줄달팽이, 검붉은수지맨드라미, 금빛나팔돌산호, 기수갈고동, 깃산호, 대추귀고동, 둔한진총산호, 망상맴시산호, 물거미, 밤수지맨드라미, 별혹산호, 붉은발말뚝게, 선침거미불가사리, 연수지맨드라미, 염주알다슬기, 울릉도달팽이, 유착나무돌산호, 의염통성게, 자색수지맨드라미, 잔가지나무돌산호, 착생깃산호, 참달팽이, 측맴시산호, 칼새오리옆세우, 해송, 흰발농게, 흰수지맨드라미	28
	육상식물	가는동자꽃, 가시연, 가시오갈피나무, 각시수련, 개가시나무, 개병풍, 갯봄맞이꽃, 검은별고사리, 구름병아리난초, 기생꽃, 끈끈이귀개, 나도승마, 날개하늘나리, 넓은잎제비꽃, 노랑만병초, 노랑붓꽃, 단양썩부쟁이, 닳꽃, 대성쓴풀, 대청부채, 대홍란, 독미나리, 두잎약난초, 매화마름, 무주나무, 물고사리, 방울난초, 백부자, 백양더부살이, 백운란, 복주머니란, 분홍장구채, 산문꽃나무, 산작약, 삼백초, 새깍아재비, 서울개발나물, 석곡, 선제비꽃, 섬개야광나무, 섬개현상, 섬시호, 세뿔두구꽃, 손바닥난초, 솔붓꽃, 솔잎난, 순채, 신안새우난초, 애기송이풀, 연잎평의다리, 왕제비꽃, 으름난초, 자주명귀개, 전주물꼬리풀, 정향풀, 제비동자꽃, 제비붓꽃, 제주고사리삼, 조름나물, 죽절초, 지네발란, 진노랑상사화, 차겉이란, 참물부추, 초령목, 철보치마, 콩짜개란, 큰바늘꽃, 탐라란, 파초일엽, 피뿌리풀, 한라송이풀, 한라옥잠난초, 해오라비난초, 흑난초, 홍월굴, 황근	77
	해조류	그물공말, 삼나무말	2
	고등균류	화경버섯	1
총종수		80	

자료 :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 주요 습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2017)에 의하면, 경기도 내 약 218여 개소 이상의 내륙·연안습지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장항습지, 산남습지, 시암리습지 등은 다양한 생태계의 발달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

경기도 내 「습지보전법」에 의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경기도 내 3개소가 있다.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 3개 시군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의 자연하구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일대 0.71km²에 갯골의 경사가 급한 특이 지형을 보전하고, 물새 및 법적보호종의 중요 서식처를 보호하기 시흥 갯벌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었다. 최근에는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마도요의 서식지이자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안산 대부도 상동연안 1.2km²와 고갯부리연안 3.33km² 등 대부도 갯벌 4.53km²가 2017년 3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림 2-1-6> 경기도 내 습지 현황



< 표 2-1-14 >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지역명	위 치	면적(km ²)	특 징	지정일자 (람사르등록)
환경부 지정 : 25개소, 129.042km²				
낙동강하구	부산 사하구 신평, 장림, 다대동 일원 해면 및 강서구 명지동 하단 해면	37.718	철새도래지	1999.08.09
대암산용늪	강원 인제군 서화면 대암산의 큰용늪과 작은용늪 일원	1.360	우리나라 유일의 고층습원	1999.08.09 (*97.03.28)
우포늪	경남 창녕군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일원	8.651 (개:0.104)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원시 자연늪	1999.08.09 (*98.03.02)
무제치늪	울산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	0.184	산지습지	1999.8.9 (*07.12.20)
제주 물영아리 오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0.309	기생화산구	2000.12.5 (*06.11.18)
화엄늪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0.124	산지습지	2002.02.01
두웅습지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0.067	신두리사구의 배후습지 희귀야생동.식물 서식	2002.11.1 (*07.12.20)
신불산 고산습지	경남 양산시 원동면 대리 산92-2일원	0.308	희귀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산지 습지	2004.02.20
담양하천습지	전남 담양군 대전면, 수북면, 황금면,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 일원	0.981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하천습지	2004.07.08
신안 장도 산지습지	전남 신안군 흑산면 비리 대장도 일원	0.090	도서지역 최초의 산지습지	2004.8.31 (*05.03.30)
한강하구	경기 고양시 김포대교 남단~강화군 송해면 송리리 사이 하천제방과 철책선 안쪽(수면부 포함)	60.668	자연하구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다양한 생태계 발달	2006.04.17
밀양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1	0.587	절경이 뛰어나고 이탄층 발달, 멸 종위기종 삶 등 서식	2006.12.28
제주 1100고지	제주 서귀포시 섶달동, 중문동 및 제주 제주시 광령리 경계 일원	0.126	산지습지로 멸종위기종 및 희귀야 생동식물 서식	2009.10.01 (*09.10.12)
제주 물장오리오름	제주 제주시 봉개동	0.610	산정화구호의 특이지형, 희귀야생 동식물 서식	2009.10.01 (*08.10.13)
제주 동백 동산습지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0.590	생물다양성 풍부, 북남방계 식물 공존	2010.11.12 (*11.03.14)
고창 운곡습지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1.930 (개:0.133)	생물다양성 풍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서식	2011.03.14 (*11.04.06)
상주 공검지	경북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0.264	생물다양성 풍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서식	2011.06.29
영월 한반도습지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2.772 (주:0.857)	수달, 돌상어, 묵납자루 등 총 8종의 법정 보호종 서식	2012.01.13 (*15.05.13)
정읍 월영습지	전북 정읍시 쌍암동 일원	0.375	생물다양성 풍부하고 구렁이, 말뚝가리 등 멸종위기종 6종 서식	2014.07.24
제주 숨은물뱅디	제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175 (주:0.875)	생물다양성 풍부하고 자주땅귀개, 새호리기 등 법정보호종 다수 분포	2015.07.01. (*15.05.13)
순천 동천하구	전남 순천시 교량동, 도사동, 해룡면, 별량면 일원	5.656 (개:0.263)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물새 서식지이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멸종위기종 상당수 분포	2015.12.24 (*16.01.20)
섬진강 침실습지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고달면.오곡면, 전북 남원시 송동면 섬진강 일원	2.037	수달, 남생이 등 법적보호종이 다수분포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	2016.11.07
문경 돌리네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일원	0.494	멸종위기종이 다수분포하고 국내유일의 돌리네 습지	2017.06.15
김해 화포천	경남 김해시 한림면, 진영읍 일원	1.244	황새 등 법적보호종이 다수분포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	2017.11.23
고창 인천강하구	고창군 아산면, 심원면, 부안면 일원	0.722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열린하구로서 노랑부리백로 등 법적보호종이 다수 서식	2018.10.23

지역명	위 치	면적(km ²)	특 징	지정일자 (람사르등록)
해양수산부 지정 : 12개소, 1,415.54km²				
무안갯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현경면 일대	42.0	생물다양성 풍부 지질학적 보전가치 있음	2001.12.28 (*08.01.14)
진도갯벌	전남 진도군 군내면 고군면 일원(신동지역)	1.44	수려한 경관 및 생물다양성 풍부, 철새도래지	2002.12.28
순천만갯벌	전남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 일대	28.0	흑두루미 서식 도래 및 수려한 자연경관	2003.12.31 (*06.1.20)
보성·별교 갯벌	전남 보성군 호동리, 장양리, 영등리, 장암리, 대포리 일대	31.85	자연성 우수 및 다양한 수산자원	2003.12.31 (*06.01.20)
웅진 장봉도 갯벌	인천 웅진군 장봉리 일대	68.4	희귀철새 도래, 서식 및 생물다양성 우수	2003.12.31
부안줄포만 갯벌	전북 부안군 줄포면, 보안면 일원	4.9	자연성 우수 및 도요새 등 희귀철새 도래, 서식	2006.12.15 (*10.02.01)
고창갯벌	전북 고창군 부암면(I지구), 심원면(II지구) 일원	64.66	광활한 면적과 빼어난 경관, 유용수자원의 보고	2007.12.31. (*10.12.13)
서천갯벌	충남 서천군 비인면, 종천면 일원	68.09	검은머리물떼새 서식, 빼어난 자연 경관	2008.01.30 (*10.09.09)
신안갯벌	전남 신안군	1,100.86	빼어난 자연경관 및 생물다양성 풍부(염생식물, 저서동물)	2010.1.29 (*11.09.01)
마산만 봉암갯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봉암동	0.1	도심습지,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식 물 서식	2011.12.16
시흥갯벌	경기 시흥시 장곡동	0.71	내만형 갯벌, 희귀 멸종위기야생동 물 서식, 도래 지역	2012.02.17
대부도갯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연안갯벌	4.53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노랑부리백 로, 알락꼬리마도요의 서식지이자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갯벌	2017.03.22

지역명	위 치	면적(km ²)	특 징	지정일자 (람사르등록)
시·도지사 지정(7개소, 8.254km²)				
대구달성 하천습지	대구 달서구 호림동, 달성군 화원읍	0.178	흑두루미, 재두루미 등 철새도래지, 노랑어리연꽃, 기생초 등 습지식물 발달	2007.05.25
대청호 추동습지	대전 동구 추동 91번지	0.346	수달, 말뚝기리, 희부물떼새, 청딱따 구리 등 희귀 동물 서식	2008.12.26
송도갯벌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원	6.11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말뚝기리, 알락꼬리도요 등 동아시아 철새이동경로	2009.12.31. (*14.07.10)
경포호· 가시연습지	강원 강릉시 운정동, 안현동, 초당동, 서동 일원	1.314 (주0.007)	동해안 대표 석호, 철새도래지 멸종위기종 가시연 서식	2016.11.15
순포호	강원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리 일원	0.133	멸종위기종 표금 수채서식 철새도래지이며 생물다양성이 풍부	2016.11.15
쌍호	강원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일원	0.139 (주0.012)	사구위에 형성된 소규모 석호, 동발 서식	2016.11.15
가평리습지	강원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일원	0.034	해안충적지에 발달한 담수화된 석호 로 꽃창포, 부채붓꽃, 털부처꽃 서식	2016.11.15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자연생태팀 황금옥 / ☎ 031-8008-3513)

2.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이란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자연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시설, 생태관찰시설, 자연보전관·자연 학습원 등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자연보호 및 기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경기도는 우수한 자연생태지역을 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여 우수한 자연자원을 확보함과 아울러 주민들이 쾌적하게 휴식하고 자연을 체험·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관리하고 있다.

< 표 2-1-15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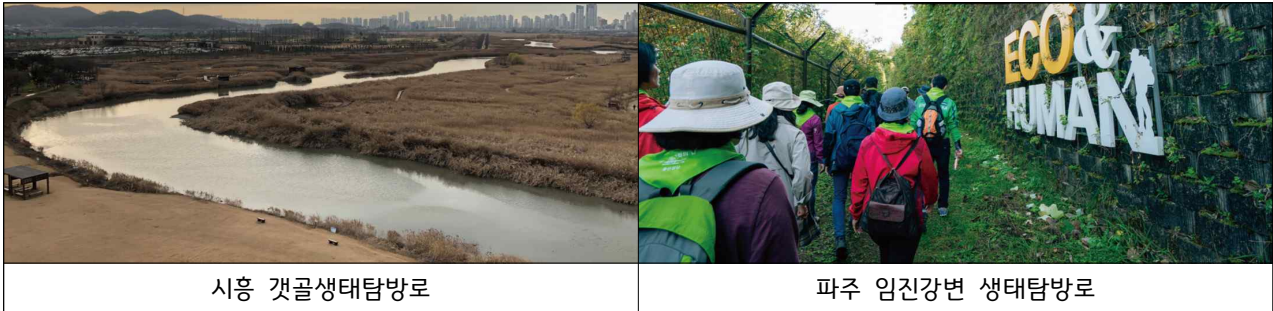
(’19.12월 기준)

사업명	주요시설	사업기간	비고
명지청계산 생태탐방로	탐방로, 생태탐방학습원 등	’02~’07	완료
시흥갯골 생태공원	교육관, 전망대, 관찰대, 미로원 등	’06~’14	완료
김포 하동천 생태탐방로	생태학습장, 탐조시설, 관찰데크, 방로 등	’06~’10	완료
고양 습지 생태공원	생태연못, 수생식물원, 산책로 등	’08~’11	완료
구리 장자호수 생태공원	생태학습장, 야생화동산, 화원, 산책로 등	’08~’11	완료
이천 환경학습관	환경학습장, 식물원, 수족관 등	’09~’13	완료
용인 수지 생태공원 복원	생태습지, 관찰데크, 방문자센터 등	’09	완료
성남 탄천민물고기 생태습지 복원	생태습지 자연학습장 등	’09	완료
광명 산림연결 이동통로	생태육교 (도덕산~구름산)	’10	완료
포천 지동촌 생태탐방로	생태탐방로, 습지원 등	’11	완료
의왕 왕송호수 수변테크	생태탐방로, 수변테크 등	’12 ~ ’15	완료
수리산 생태탐방로	생태탐방로, 안내시설 등	’12, ’18	완료
파주 파평 생태학습장	학습관, 탐방로, 허브원, 숲속쉼터 등	’13	완료
구리 곤충 생태관	곤충생태관	’13	완료
안산 갈대습지 생태다리	생태다리	’14	완료
연천 차탄천 에움길 생태탐방로	징검다리, 휴식공간, 탐방로 등	’14	완료
명지산 생태전시관	생태전시관	’14	완료
연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전망대, 휴게쉼터, 출렁다리 등	’14~’15	완료
수리산 탐방안내소	홍보관, 강의실, 안내소 등	’15	완료
파주 감악산 힐링로드	데크, 목교, 식생터널 등	’16	완료
양주 마장저수지 생태탐방로	데크, 탐방로 등	’16	완료
파주 마장저수지 생태탐방로	탐방테크, 탐조대, 휴게시설 등	’17	완료
연인산도립공원 자연환경 복원	생태복원	’17	완료
의왕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탐방로, 수변데크 등	’16~’18	완료
포천 한탄강 지질체험관	지질생태체험관, 휴게시설 등	’17~’18	완료
구리 장자호수 생태공원	데크, 탐방로 등	’16~’19	완료
수원 도시숲 생태공원	생태숲, 생태체험장설 등	’18~’19	완료
남양주 반딧불이 생태공원	생태학습관, 반딧불이 섹터	’17~’20	추진중
연인산도립공원 물안골 환경복원	기존수림복원, 야회 전시장 조성 등	’19~’20	추진중
야생동물 생태 체험 학습장	관찰 탐방로, 탐조대 등	’19~’20	추진중

나.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국가규모의 탐방로로서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나 훼손·단절된 지역의 복원 및 현명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2010.11.9.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을 수립·시행중으로 경기도는 시흥 갯골생태탐방로와 파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포천 한탄강변 자연생태탐방로 등 3개 탐방로를 조성 완료하였다.

<그림 2-1-7> 시흥 및 파주 국가생태탐방로



2020년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광릉(사적 1972호), 봉선사 대종(보물 387호), 휘경원(사적 3602호) 등의 문화·역사적 시설과 천연기념물 11호인 광릉크낙새 서식지, 327호인 원앙이가 서식하고 있는 광릉숲에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자연생태팀 한진선 /☎ 031-8008-4237)

제8절

생물자원의 조사와 보전관리

1.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관리
2. 야생생물 보호대책
3. 생태통로(Eco-bridge)의 조성 및 관리

1.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관리

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의거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23조에서는 시·도지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인정되는 지역을 지역주민과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환경관서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후 시·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국가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9개소 248.03km² 이고,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은 24개소 37.764km² 이다. 그 중 경기도는 가평 일원의 조종천 상류 명지산·청계산 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전국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은 33개 지역 323.558km²에 달한다.

< 표 2-1-16 > 전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

지역명	위 치	면적(km ²)	특 징	지정일자 (람사르등록)
환경부 지정 : 9개소, 248.03km²				
지리산	전남 구례군 산동면 심원계곡 및 토지면 피아골 일원	20.20	극상원시림 (구상나무 등)	1989.12.29
섬진강 수달서식지	전남 구례군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일원	1.834	수달 서식지	2001.12.01
고산봉 붉은박쥐서식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일원	8.78	붉은박쥐 서식지	2002.05.01
동강유역	강원 영월군 영월읍, 평창군 미탄면 정선군 정선·신동읍 일원	79.259	지형·경관 우수 희귀 야생동식물 서식	2002.8.9. (19.12.31확대)
왕피천 유역	경북 울진군 서면, 근남면 일원	102.841	지형·경관 우수 희귀 야생동식물 서식	2005.10.14. (13.07.17확대)
소항사구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항리, 독산리 일원	0.121	해안사구 희귀 야생동식물 서식	2005.10.28
하시동·안인사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일원	0.235	사구의 지형·경관 우수	2008.12.17
윤문산	경북 청도군 윤문면 일원	26.394	경관 및 수달, 하늘다람쥐, 담비, 산작약 등 멸종위기종 서식	2010.09.09
거금도 적대봉	전남 고흥군 거금도 적대봉 일원	8.365	멸종위기종과 특정야생동식물 서식	2011.01.07

시도	지역명	위 치	면적 (km ²)	특 징	지정일자 (변경일자)
시·도지사 지정 : 24개소, 37.764km²					
서울	한강밤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4-4 및 마포구 당인동 314	0.279	철새도래지, 서식지	1999.08.10
	둔촌동	서울 강동구 둔촌동 211	0.030	도시지역의 자연습지	2000.03.06 (13.07.04확대)
	방이동	서울 송파구 방이동 439-2 일대	0.059	도시지역의 습지	2002.04.15 (05.11.24확대)
	탄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및 강남구 수서 동	1.151	도심속의 철새도래지	2002.04.15
	진관내동	서울 은평구 진관동 282-1 일대	0.017	도시지역의 자연습지	2002.12.30
	암사동	서울 강동구 624-1 일대	0.127	도시지역의 하천습지	2002.12.30
	고덕동	서울 강동구 고덕동 396 일대 서울 강동구 강일동 661일대 (고덕수변 생태복원지 ~ 하남시계)	0.320	다양한 자생종 번성 제비, 물총새 등 보호종 을 비롯한 다양한 조류 서식	2004.10.20. (07.12.27확대)
	청계산원터골	서울 서초구 원지동 산4-15번지 일 대	0.146	갈참나무를 중심으로 낙 엽활엽수군집 분포	2004.10.20
	현인릉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3-1 일대	0.057	다양한 자생종 번성	2005.11.24
	남산	서울 중구 예장동 산5-6 일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산1-5일대	0.705	신갈나무군집 발달 남산 소나무림 지역	2006.07.27. (2007.12.27)
	불암산삼육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산223-1일대	0.204	서어나무군집 발달	2006.07.27
	창덕궁후원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일대	0.441	갈참나무군집 발달	2006.07.27
	봉산	서울 은평구 신사동 산93-16	0.073	팔배나무림 군락지	2007.12.27
	인왕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1-1일대	0.258	기암괴소나무가 잘 어우 러지는 수려한 자연경관	2007.12.27
	성내천하류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6 일대	0.070	도심속 자연하천	2009.11.26
	관악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56-2 일대	0.748	회양목군락 자생지	2009.11.26
백사실계곡	서울 종로구 부암동 산 115-1 일대	0.133	생물다양성 풍부	2009.11.26	
울산	태화강	울산 북구 명촌동 태화강 하류 일원	0.983	철새 등 야생동물·식물 서식지	2008.12.24
강원	소한계곡	강원 삼척시 근덕면 초당리, 하맹방 리 일원	0.104	국내 유일 민물김 서식 지	2012.10.05
전남	광양백운산	전남 광양군 옥룡면, 진상면, 다압면	9.74	자연경관수려 및 원시자 연림	1993.04.26
경기	조종천상류 명지산·청계산	경기 가평군, 포천시	22.06	희귀곤충상 및 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한 지역	1993.09.01
경남	거제시 고란초서식지	경남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산 144-3	0.002	고란초 집단자생지	1995.10.02
부산	석은덤계곡	부산 기장군 정관면 병산리 산101-1	0.02	희귀야생식물 집단서식	2015.06.10
	장산습지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산51-188	0.037	산지습지로서 희귀야생 식물 서식	2017.08.09

경기도내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환경부장관이 1993년 9월 6일에 지정한 조종천 상류 명지산·청계산지역으로, 1997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1998년 3월 10일 관리권이 경기도로 이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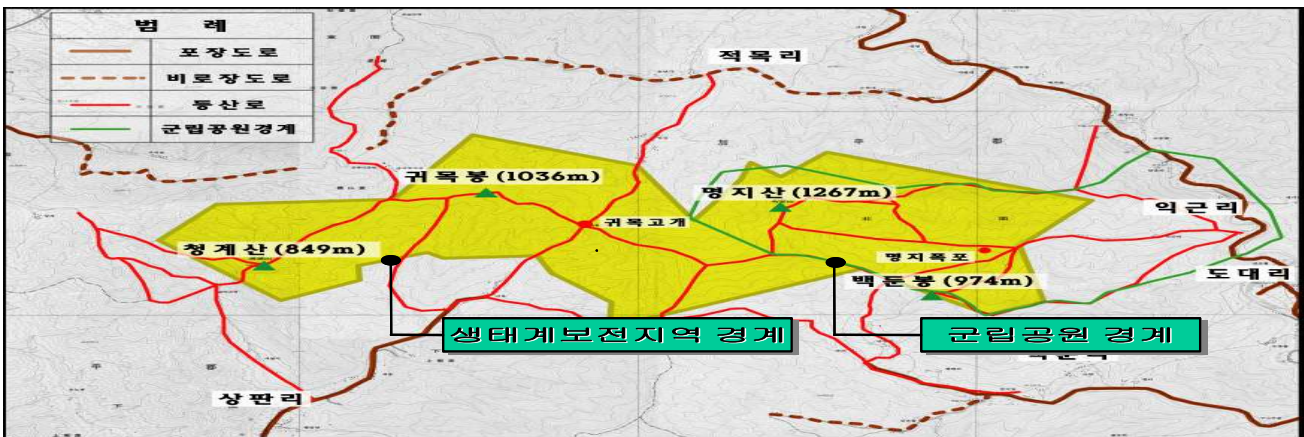
이곳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희귀 곤충상 및 식물상이 군락형태로 다양하고 풍부하여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여 이 지역에 대한 생태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생태계조사, 식물증식·복원·자원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야생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는 물론 밭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 등을 살포하는 행위,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일체 할 수 없으며, 학술조사, 생태계의 보전, 복원을 위한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훼손행위를 금지하며 위반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조종천 상류 명지산·청계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특징

경기도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인 가평군 하면, 북면 및 포천시 일동면 명지산·청계산 일원의 면적은 22.06km²이다. 명지산(해발 1,249m)과 청계산(해발 849.1m)은 조종천의 발원지이고, 깊은 계곡이 산정상 가까이까지 발달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산곡지형을 나타내고 있다. 조종천 상류지역은 차별침식에 의해 형성된 ㅁ형의 분지상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에 1,000m 내외의 고봉이 솟아있는 산악지역으로 빈영양성(貧營養性) 청정 수역이 형성된 우리나라 3대 다우지역중의 하나이다.



조종천은 명지산과 청계산에서 발원하여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에서 북한강으로 유입되며, 그 연장이 37.7km인 소하천으로 유역면적 264.57km²이다.

생태조사결과 남부와 북부의 일부 식물들이 공존하는 식물 분포지리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고 전국 유일의 무송림지이며 대부분이 녹지자연도 8, 9등급 지역이다. 이곳은 또한

극히 다양하고도 풍부한 곤충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애반딧불이 서식지이기도 하다.

식물상의 경우는 101과 357속 677종의 식물이 확인되었으며, 그 중 금강초롱, 홀아비바람꽃 등 한국특산 식물이 16종류, 겹달맞이꽃 등 귀화식물 27종류, 너도바람꽃과 산작약 등 자생식물 26종류 등이 서식하고 있다.

식생은 신갈나무군락, 고로쇠나무군락, 소나무군락, 잣나무군락, 일본 잎갈나무 군락 등 5개 군락이 형성되어 있다. 그중 신갈나무군락은 해발 200m부터 분포하고, 500m 이상에서는 신갈나무가 단일 우점종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신갈나무림의 토양은 성숙한 토양이다.

어류는 일차담수어 16종, 주연성 담수어 9종 등 8과 8속 25종이 서식하고 있다. 그중 한국 특산어종은 8종으로 쉬리, 긴몰개, 돌마자, 배가사리, 참종개, 미유기, 통가리, 동사리 등이다. 이런 어류는 맑은 물의 상류성 어류가 높은 비율로 서식하며 갈겨니, 버들치, 종개, 미유기, 독종개, 꺾지 등이 존재하고 있다.

다.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관리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다양하고, 희귀한 동·식물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년 5월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02년에서 2006년까지 국·도비 61억원을 투자,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 설치사업인 등산로 복원, 생태 탐방로 조성, 경계표주 및 울타리설치, 식물종 증식 및 자원화, 생태계 조사, 반딧불이 서식공간 복원, 생태탐방 학습원 조성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환경부로 부터 승인을 득한 바 있다.

그리고 2003년도까지 국·도비 14억원을 투입하여 훼손된 등산로 복원과 생태탐방로(1차분)조성, 안내시설정비, 경계표주 및 울타리 설치 등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설치 사업을 완료하여 탐방객의 기본적인 이용여건을 확보하였고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 일원에 위치한 5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율감시 활동 및 환경정화활동, 야생동물 보호 등 자율감시활동을 주민지원사업에 직접 참여시켜 주민의식 및 생태계 보전의식을 고취시킨 바 있다.

아울러, 2004~2005년까지 생태탐방학습원 기반시설 조성 및 생태탐방 안내관 등의 건축물 신축 및 2014년에 대대적인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하여 노후화된 시설과 전시물을 재정비 하였으며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생태학습의 기회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자연생태팀 황금옥 /☎ 031-8008-3513)

2. 야생생물 보호대책

야생 동·식물보호를 위해 기존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되어있던 야생 동·식물보호체계가 「야생 동·식물보호법」의 시행(2005. 2.10)으로 일원화되었고, 야생동·식물에 대한 보호 위주에서 원생생물(原生生物) 등을 포함한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로의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7.28.)로 변경되었다.

경기도에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와 쾌적한 자연환경의 조성과 보전에 대한 기대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하여 겨울철에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외래종 및 유해 야생 동·식물의 관리강화 및 야생동물 질병관리 강화,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설정

경기도에서는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 및 도래지 등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의 제한,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출입제한 등으로 야생생물의 보호·증식을 도모하고 있다.

< 표 2-1-17 >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현황

구 분	개소 (시군)	설 정 면 적(㎡)			비 고
		계	산 립	기 타	
야생생물보호구역	47 (21)	54,381,767	42,812,977	11,568,790	

나. 야생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 운영

그동안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시 시·군 자체적으로 야생동물 진료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어서 일부 시·군의 경우 지정 진료소가 없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조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2007년부터 도 지정 「야생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009년 3월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개소되어 치료범위에 따라 경미한 치료는 시·군별로 지정된 지역 구조치료기관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치료는 광역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역할 분담함으로써 야생동물의 구호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9년에 총 1,483마리를 구조 및 치료하였다.

다. 수렵면허시험 실시

경기도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하여 수렵인의 소양과 자질을 향상시켜 건전한 수렵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건전한 수렵은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외래종 및 특정종의 지나친 번식을 방지하고 유해 야생동물의 구제 등을 통한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건전한 레저생활로 국민의 정서함양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의 4과목이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을 얻으면 합격된다.

라.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근절

야생동물에 대한 보신문화 풍조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지속되어 야생동물 보호정책의 차질 및 국민의식의 제고가 절실한 실정이다.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총기를 이용한 밀렵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울무 등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방지계획」을 수립하였다. 민간단체·사법기관(검찰·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특별단속, 울무·창애 등 불법엽구 집중수거활동, 환경친화적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하여 캠페인, 언론홍보 등을 통한 도민(道民)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자 처벌, 밀렵신고보상제도 등을 다양한 매체(TV, 지하철, 포스터, 리플렛, 전광판 등)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였다.

<그림 2-1-9> 민관합동 불법엽구 수거 행사, 수거한 불법엽구(울무, 덫)



마. 생태계교란 외래생물의 관리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

생태계교란 생물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도입되어 국내 생태계의 균형유지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생물이다. 이런 생물은 돼지풀, 큰입배스, 황소개구리 등 24가지 종이 있다. (2019년 기준)

2) 생태계교란 외래생물의 관리 방안

건전한 생태계 유지로 토종생물의 서식 공간 확보 및 도민의 자연보전의식을 제고하고자 생태계의 균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생태계교란 외래생물을 관리하고 있다.

2019년도에도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6,610천㎡의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위해 외래 식물을 제거하였다.

<그림 2-1-10> 단풍잎돼지풀 제거 사진



< 표 2-1-18 > 경기도 내 생태계교란 식물 분포현황 및 제거실적

(단위 : 천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서 식 지(천 ㎡)	17,800	19,860	22,010	24,250
제거실적(천 ㎡)	11,820	12,000	14,050	16,610

<그림 2-1-11>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현황 및 특징(24종)

번호	지정 현황	사진	지정 년월일	특 성
1	황소개구리		'98. 2. 19.	우리나라에는 천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곤충, 물고기는 물론 뱀까지 잡아먹는 탐식성 양서류
2	파랑볼우럭 (볼루길)		'98. 2. 19.	번식력이 높은 잡식어종으로 규조류, 수서곤충, 새우, 물고기 등 움직이는 생물을 공격하여 포식
3	큰입배스		'98. 2. 19.	육식어종으로 치어때는 갑각류를 주로 먹고 개체가 커지면 수서 곤충, 어류 등 움직이는 생물을 섭식함
4	단풍잎돼지풀		'99. 1. 7.	북미에서 수입된 식물로서 양지바른 곳에서 왕성히 자라 다른 식물들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큰 무리를 이룸
5	돼지풀		'99. 1. 7	
6	붉은귀거북속 전종		'01. 12. 24.	북미에서 수입, 국내에 천적이 없음. 우리고유의 어류, 수서곤충, 양서류 등을 잡아먹어 호소와 하천생태계의 먹이사슬 교란
7	서양등골나물		'02. 3. 7.	1970년대 후반 발견된 북미산 외래식물, 이를 먹은 소의유제품을 섭취하면 구토, 변비 등의 증세를 유발하는 "milk sickness"라는 병이 생길 수 있음
8	털물참새피		'02. 3. 7.	원산지는 미국, 벼의 생육을 방해하고 농수로에 무성하게 자라 물길을 막기 일쑤임. 특히 뿌리의 길이가 1m이상으로 길어 뽑아내기도 쉽지 않은 식물임
9	물참새피		'02. 3. 7.	원산지는 열대아시아, 우리나라는 '94년도에 제주도에서 발견, 논에서 활발히 성장하므로 심각한 잡초로 분류
10	도깨비가자		'02. 3. 7.	원산지 북미,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남부지방에 분포, 가축들에게 독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11	뉴트리아		'09. 6. 1.	원산지 남미, 확산성과 번식력이 강하고 갈대·부들·어류 등 수생생물과 농작물을 섭취하여 생태계와 농업에 피해를 줌.
12	가시박		'09. 6. 1.	원산지 북미, 홍수에 종자가 강물에 휩쓸려 하류까지 신속히 확산되고, 덩굴식물로 하천변에서 풀과 나무를 뒤덮어 생육 저해
13	서양금혼초		'09. 6. 1.	유럽이 원산으로 많은 종자가 바람에 날리고 뿌리로도 번식하며, 잎이 덩벼터를 덮어 다른 식물을 밀어내고 확산됨
14	미국쑥부쟁이		'09. 6. 1.	원산지 북미, 많은 종자가 바람에 날리고 뿌리로도 번식하며, 키가 크고 밀생하여 다른 식물을 밀어내고 수변 등의 식생에 피해를 줌.
15	애기수영		'09. 6. 1.	원산지 유럽, 전국의 목장·초지·산언저리에 침입하여 다른 식물의 생육을 밀어내고, 종자를 많이 생산하고 뿌리로도 활발히 번식하며, 목장 주변과 도로변 등에 크게 번져 식생에 피해를 줌.
16	양미역취		'09. 6. 1.	원산지 북미, 일부 수변과 도로변에 확산되어 식생을 교란하며, 종자를 많이 생산하고 뿌리로도 번식하면서 하천변 등에 번져나가 수변식생에 피해를 줌.
17	꽃매미		'12. 12. 31.	원산지 중국 남부 및 동남아시아. 유충과 성충은 나무의 즙액을 빨아서 생장을 저해하고, 피해가 심한 줄기는 고사. 또한 많은 양의 분비물 배설로 그늘음병을 유발하며 과실의 품질 저하
18	가시상추		'12. 12. 31.	원산지 유럽. 바람에 씨가 날리거나 물에 흘러 도로와 하천을 따라 확산되어 다른 식물의 생육을 방해
19	갯줄풀		'16. 6. 15.	원산지 북아메리카. 왕성한 번식력으로 자생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고, 뽕뽕하게 형성된 군락은 퇴적물을 가두어 갯벌을 육상화 시킴

번호	지정 현황	사진	지정 년월일	특 성
20	영국갯끈풀		'16. 6. 15	원산지 영국, 다년생 초본, 번식력이 강해 토착 염생식물의 서식지를 침범하고 조수 흐름을 느리게 함
21	붉은불개미		'18. 1. 3.	붉은불개미의 번식력과 환경적응력으로, 한번 자리를 잡으면 박멸이 어려워 농작물 피해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킴.
22	등검은말벌		'19. 7. 26.	국내 토종말벌 생장 억제, 양봉농가 침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심각하고 도시 내 서식이 증가함에 따라 말벌 쓰임에 따른 부상, 사망 사고 발생.
23	환삼덩굴		'19. 7. 26.	줄기는 잔가시가 많아 피부에 닿으면 금방 부어오르고 가려움. 꽃가루는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환삼덩굴로 뒤덮인 곳은 식물 종다양성이 크게 감소함.
24	미국가재		'19. 10. 11.	잡식성에 환경 적응력이 높아 생존력이 매우 강한 종으로 강바닥과 논둑 등에 굴을 파는 습성이 있어 물을 탁하게 하고 녹조의 원인인 침전물 영양염류에 변화를 일으킴..

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발생을타리 등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비를 농가에 지원하고 특히 2017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직접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진입 차단시설과 포획틀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농작물 보호 및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지속 실현하고 있다.

< 그림 2-1-12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사.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보전방안은 해당지역을 법정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법이나, 보호구역이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보호구역 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철새도래지 등 법정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철새의 먹이 또는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보리재배, 벼 미수확 존치, 벼짚존치, 쉼터조성 등 지역주민의 생태계보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자연환경보전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그림 2-1-13 >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역의 철새 모습



일반 지역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역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자연생태팀 황금옥 /☎ 031-8008-3513)

3. 생태통로(Eco-bridge)의 조성 및 관리

서식처의 파편화는 생물다양성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며, 종 멸종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 도시 내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서 서식처간의 연결이 필요하다. 도로 및 주거단지 건설, 댐이나 수중보 등에 의해 생태계가 단절되면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등 야생동물의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연결하는 녹지축이 필요하다.

이에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태통로 44개소에 대하여, 매년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개선이 필요한 생태통로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 표 2-1-19 > 경기도내 생태통로 현황

연번	설치기관	설치위치	통로 유형	설치년도	육교형(m)		터널형(m)		
					길이	너비	너비	높이	길이
1	LH공사/광명시	광명시 하안동 441	육교형	2010 2011	0	65/30			
2	경기 광주시	광주시 직동 산45-1(고등골고개)	육교형	2005	40	12			
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산54-38	육교형	2002	22.5	80			
4	경기 광주시	광주시 장지동 산54-5	육교형	2006	12	60			
5	경기 구리시	구리시 교문동 418-2(셋다리어린이공원)	터널형	2007			0.09	0.3	0.3
6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산67-6	육교형	2003	35	10			
7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산31	육교형	1997	10	4			
8	경기 성남시	성남시 갈현동 산55-2	육교형	2008	38	15			
9	경기 성남시	성남시 도촌동 산8-11	육교형	2001	55	40			
10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4-3	육교형	2012	237	32			
11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25	육교형	2012	32	40			

연번	설치기관	설치위치	통로 유형	설치 년도	육교형(m)		터널형(m)		
					길이	너비	너비	높이	길이
12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09	육교형	2012	52	50			
13	경기 시흥시	시흥시 계수동 산 30-4	육교형	2008	30	50			
14	경기 시흥시	시흥시 광석동 산 34-9	육교형	2005	80	31			
15	수자원공사	시흥시 장곡동 산 84-3	육교형	2010	40	30			
16	경기 양주시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371	육교형	2006	30	40			
17	경기 양주시	양주시 어둔동 산11-2	육교형	2012	20	7			
18	경기 양평군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산22-3	육교형	2007	28	100			
19	경기 여주시	여주시 현암동 640-11	터널형	2004			12	4	3
2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산117-10(학교개)	육교형	2002	30	150			
21	경기 용인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산15-1	육교형	2004	10	30			
2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 산2-6	육교형	2009	20	70			
23	경기 용인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산122-1	육교형	2004	11	11			
24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산 55-5	육교형	2013	31	16			
25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산 46-3	육교형	2013	31	70			
26	경기 의왕시	의왕시 내손동 산 142번지	육교형	2007	15	90			
27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시 신곡동 산25-23	육교형	2009	120	16			
28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동 산4-7	육교형	1998	60	94			
29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시 자일동 산56-15	육교형	2004	32	34			
30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시 장암동 산21-14	육교형	2014	70	30			
31	경기 파주시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35-14	육교형	2007	23	15			
32	경기 파주시	파주시 금능동 산54-5	육교형	2006	21	21			
33	경기 파주시	파주시 아동동 산25-1	육교형	2009	21	22			
34	경기 파주시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산42-2	육교형	2006	50	26			
35	경기 파주시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산15-3	육교형	2006	21	21			
36	경기 평택시	평택시 장안동 산1-1	육교형	2000	50	10			
37	경기 평택시	평택시 지산동 산43-1	육교형	2006	60	40			
38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1-90	육교형	2009	90	11			
39	경기 하남시	하남시 광암동 산21-6(향여고개)	육교형	2006	40	23			
40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산82-4일원	육교형	2007	112	19.2			
41	서울국토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457-1	터널형	2005			2.1	1.4	1.5
42	경기 양주시	양주시 울정동 산57-2	육교형	2017	84	31			
43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시 낙양동 산116-1	육교형	2014	50	50			
44	경기 구리시	구리시 갈매동 산 69-183	육교형	2018	130	49.3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자연생태팀 한진선 / ☎ 031-8008-4237)

제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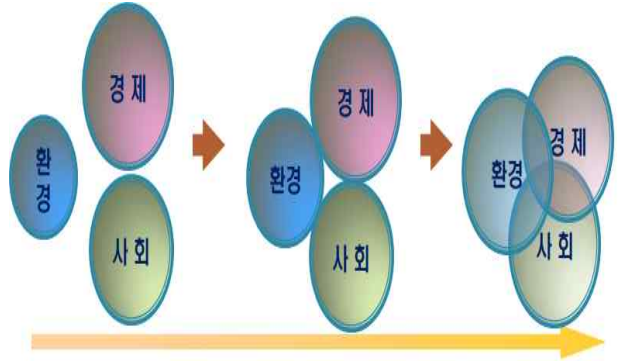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

1.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개요
2.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운영

1.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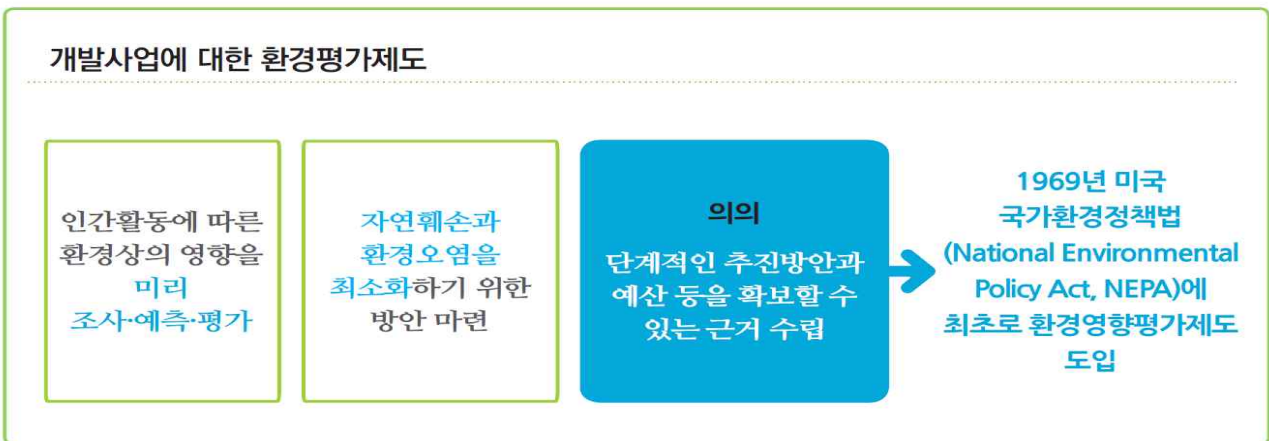
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발사업계획의 결정 시 경제성, 사업성 외에 환경성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합목적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미래세대의 이해와 관계되는 대상에 대해서 보존하는 의무를 가져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과 요구 변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되었다.



환경영향평가는 자연환경훼손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제반행위에 앞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사전에 예방하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969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는 호수, 태국, 프랑스, 필리핀 등으로 파급되어 현재 대다수의 선진국, 개발도상국이 도입, 발전시키고 있다. 각 나라마다 환경영향평가의 도입배경과 시기, 운영방법 등에는 차이가 있지만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의 사전 예방, 개발에 따른 정보공개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마지막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갈등 예방이라는 공통적 기능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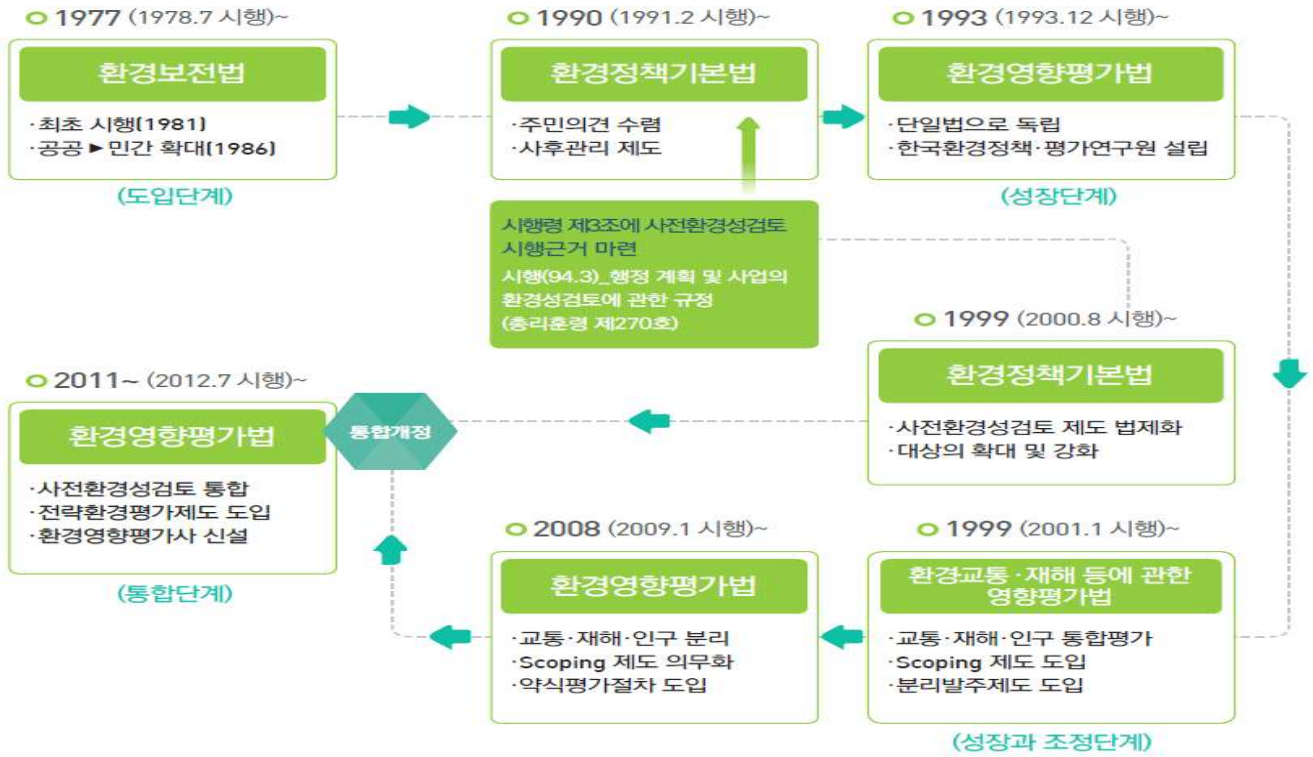


[출처]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세상, 환경영향평가제도(2016.1., 환경부)

우리나라도 지난 '77년 환경보전법에 그 법적 근거를 도입한 이래 그간 수차례의 법령 개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목적)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미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시, 제2조(정의)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단계



[출처]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세상, 환경영향평가제도(2016.1., 환경부)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성과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유도도 볼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시행 이전인 1960~70년대에는 도로건설 시 터널과 교량 설치가 미미했으나 1980년대부터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한 터널과 교량의 설치비율이 증가되었으며 공원녹지율과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이 크게 증가한 것에서 볼 수 있듯 환경영향평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국가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사업 30만제곱미터 이상”등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일지라도 지역 특성과 해당 지역의 환경민감성 및 입지조건 등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2019.7.16.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2020.1.1.일부터 본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각 시도의 평가 운영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민의 삶의 질 보장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 사전예방대책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동일하다.

<표 2-1-20> 시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현황

구분	시					도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광주	강원	제주	경남	경기
최초 공표일 (제정)	2002	2002	2003	2004	2007	2003	2006	2006	2019
최초 시행일	2002	2002	2003	2004	2007	2003	2006	2006	2020
최근 개정일	2020	2014	2019	2018	2012	2018	2017	2020	-

다.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 정보제공 기능

개발사업 실시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의 정도, 영향저감 방안 등 환경영향에 관한 정보를 인·허가권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업 실시계획·시행계획 승인 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사업계획, 환경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평가절차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주민으로부터 지역의 환경정보를 제공받기도 한다.

○ 합의형성 기능

지역주민에 대한 평가서 공람, 설명회·공청회 개최, 설명자료 배포 등을 통한 정보제공, 주민의견 청취 등의 일련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하여 지역의 환경정보가 평가서에 반영되고, 정보교류를 통해서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설득 내지는 합의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 유도기능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규제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계획 입안자가 스스로 규제기준보다 강화된 목표를 설정하거나, 규제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는 환경항목에 대하여 스스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 다음 그 목표를 유지·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복수의 대안 중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등 보다 친환경적인 계획안이 되도록 유도하는 기능까지 하게 된다.

○ 규제기능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규제제도와 연계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계획이나 사업의 실시가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평가협의 조건을 붙이거나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완료한 후 협의조건 미이행 등에 대하여 벌칙 등 제재를 과하는 등의 규제를 설정할 수 있다.

2.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운영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별표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과 그 외의 사업으로서 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범위의 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국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3개 분야(도시의 개발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에 대하여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규정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발전소)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이는 도시환경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형건물, 재개발사업 등 도시형개발사업과 고형연료제품(SRF) 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문제 등이 발생됨에 따른 사전예방조치로 볼 수 있다.

<표 2-1-21>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및 규모

구분	사업의 종류	사업규모		비고
		법정	경기	
도시 의 개발	도시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25만㎡	12.5만㎡ ~	50% 적용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제외)	30만㎡	15만㎡ ~	50% 적용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유통업무설비 - 주차장시설 - 시장	20만㎡ 20만㎡ 15만㎡	10만㎡ ~ 10만㎡ ~ 7.5만㎡ ~	50% 적용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30만㎡	15만㎡ ~	50% 적용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0만㎡	15만㎡ ~	50% 적용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20만㎡	10만㎡ ~	50% 적용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20만㎡	10만㎡ ~	50% 적용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20만㎡	10만㎡ ~	50% 적용
	학교의 설치공사	30만㎡	15만㎡ ~	50%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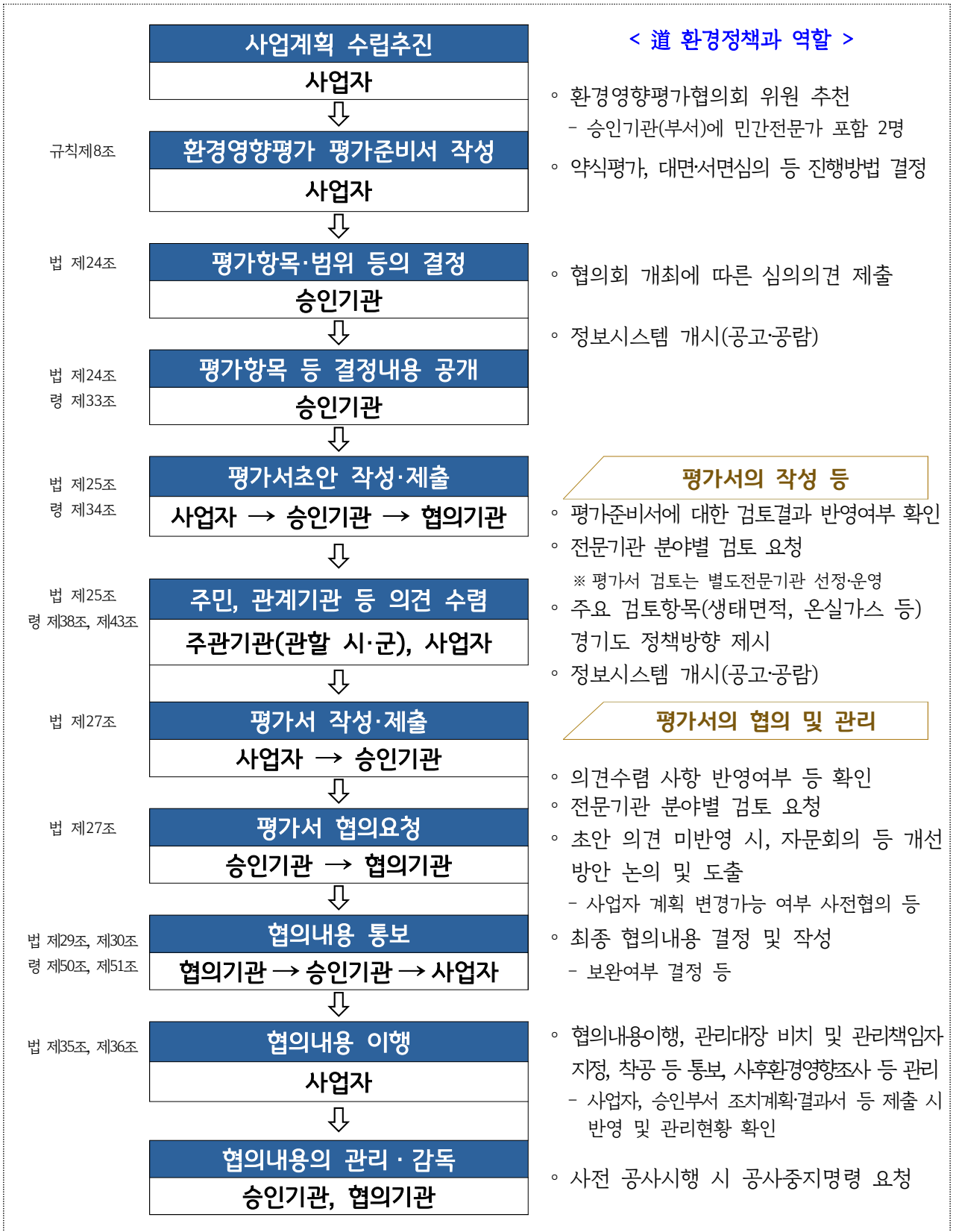
구분	사업의 종류	사업규모		비고
		법정	경기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10만 ³ /일	5만 ³ /일 ~	50% 적용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마을정비구역의 조성	20만 ²	10만 ² ~	50% 적용
	역세권 개발사업	25만 ²	12.5만 ² ~	50% 적용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	10만 ² ~	법령 외 추가사업 (환경부 사전협의 완료)
에너지 개발사업	전원개발사업 - 태양력·풍력 - SRF발전소	100MW 10MW -	50MW ~ 5MW ~ 50톤/일	50% 적용 법령 외 추가사업 (환경부 사전협의 완료)
	전기설비설치사업 - 태양력·풍력 - SRF발전소	100MW 10MW -	50MW ~ 5MW ~ 50톤/일	50% 적용 법령 외 추가사업 (환경부 사전협의 완료)
폐기물 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매립시설(최종)	30만 ² 330만 ³	15만 ² ~ 165만 ³ ~	50% 적용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최종)	5만 ² 25만 ³	2.5만 ² ~ 12.5만 ³ ~	
	- 소각시설(중간)	100톤/일	50톤/일 ~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100 ³ /일	50 ³ /일 ~	50% 적용

나. 환경영향평가 운영현황

협의 절차 및 평가항목은 국가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며 평가서 작성 전 승인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통해 21개 항목 중 중점평가, 일반평가, 제외항목을 결정하게 된다. 사업자는 각 항목의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한 평가서(초안)를 작성하여 공고·공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를 반영한 평가서(본안)로 경기도와 협의를 실시한다.

각 시·도의 협의 운영방식은 위원회 운영, 별도 검토기관 운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개발압력과 이익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31개 시·군별 자연환경이 달라 각 지자체의 현안을 이해하고 평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별도 검토기관을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표 2-1-22>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자연생태팀 이 난 / ☎ 031-8008-3514)

제 2 장

저탄소실현 에너지정책 추진

제1절 기후변화 현황 및 대책

제2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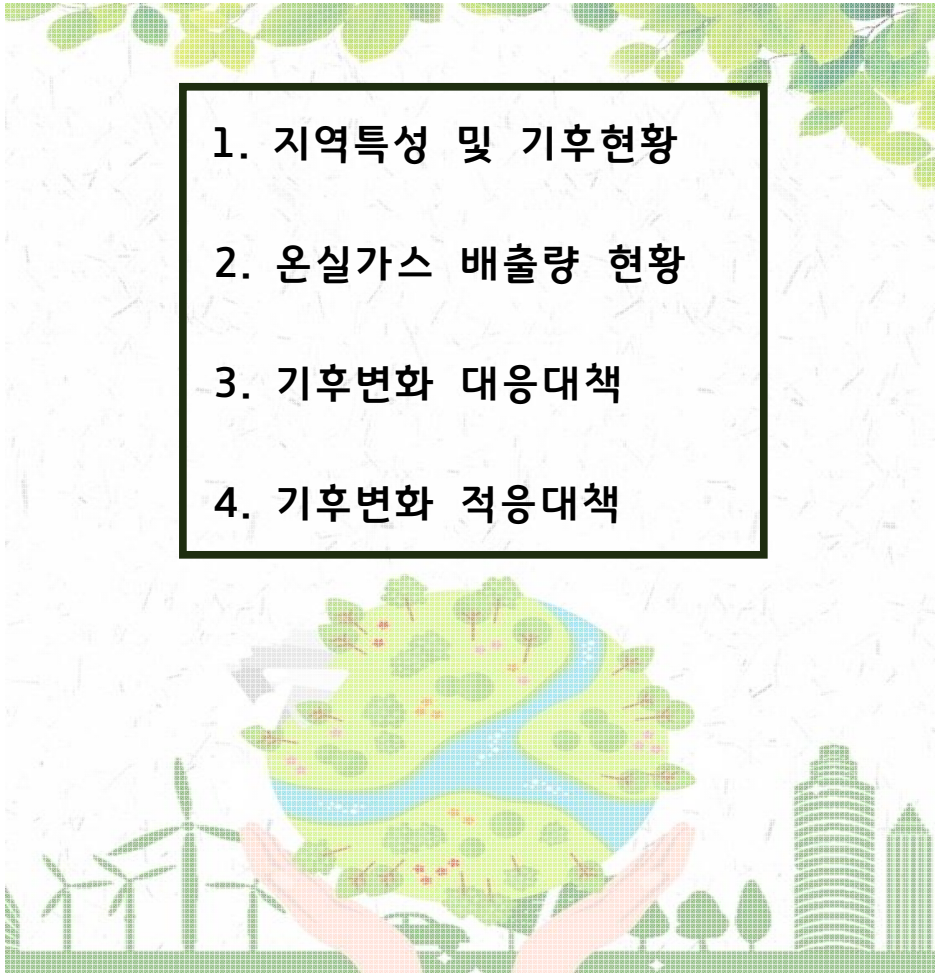
제3절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

제4절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제1절

기후변화 현황 및 대책

1. 지역특성 및 기후현황
2.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3. 기후변화 대응대책
4. 기후변화 적응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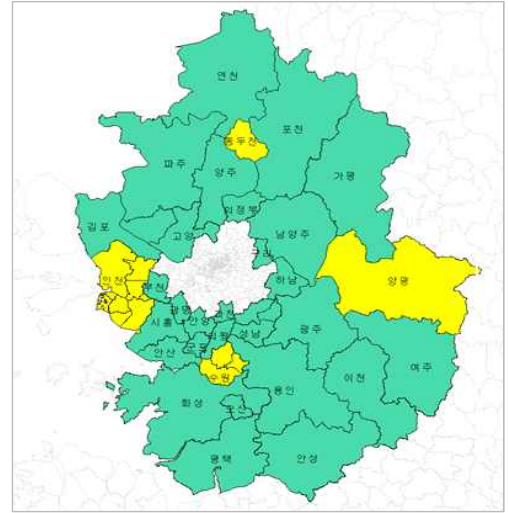
1. 지역특성 및 기후현황

□ 평균기온 및 강수량

최근 100년 동안 경기도의 권역별 기상 및 기후변화는 기온 1.2℃ 상승 및 강수량 175.6mm 증가 추세를 나타냈고, 향후 2050년에는 기온 2.5℃ 상승 및 강수량 444.2mm 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요소	분석항목	분석결과
기온	월평균 기온	기온상승
	폭염주의보 기준온도	기준온도 상승
	결빙일수, 결빙온도	기준온도 상승
강수량	강수량 변화	강수량 증가

대표지역	관측소 위치	관측기간	관측시간
경기서부	인천기상대	1909~2016	107년간
경기남부	수원기상대	1964~2016	52년간
경기동부	양평기상대	1973~2016	43년간
경기북부	동두천기상대	1998~2016	18년간



< 그림 2-2-1 > 경기도 기상 및 기후변화 추세 (권역별 대표지역 중심, 1909~2016, 107년간)

경기 서부지역

지난 100년간 기온은 2.3℃ 상승, 결빙온도 1.1℃ 상승(결빙일수 감소) 및 폭염주의보 기준온도가 0.36℃ 하강되었다. 2030년에는 월평균기온과 결빙온도가 각각 2.6℃ 및 1.2℃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륙풍 영향으로 폭염주의보 기준온도는 0.4℃ 하강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30년의 연간 강수량은 1,581mm로서 2000년 대비 175.6mm 증가하고, 2050년에는 619.8mm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부천, 인천 등 도심 인구밀집지역의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 환자 및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이 예측된다.

경기 남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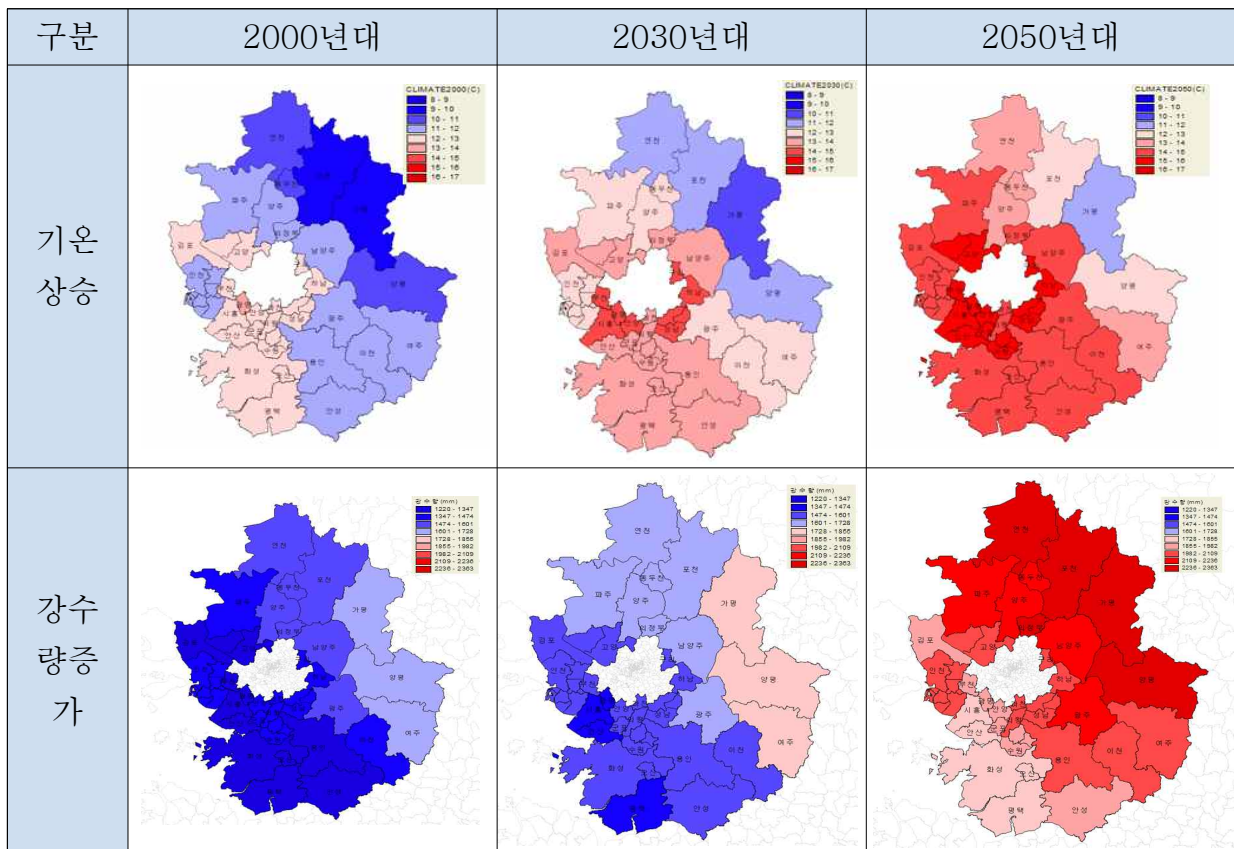
지난 52년간 기온은 2.6℃ 상승, 결빙온도 1.8℃ 상승(결빙일수 감소), 폭염주의보 기준온도가 0.4℃ 상승되었다. 2030년에는 월평균기온과 결빙온도가 각각 3.3℃ 및 2.3℃ 상승되고, 계절풍 영향으로 여름철 폭염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2030년의 연간 강수량은 1,563mm로서 2000년 대비 205.1mm 증가하며, 2050년에는 680.2mm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의왕, 수원 등 도심 인구밀집지역에서 침수가 발생되고, 용인, 화성, 평택, 안성 등에서는 농경지 피해, 도심지역에서는 폭염 피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동부지역

지난 43년간 기온 2.3℃ 상승, 폭염주의보 기준온도 0.3℃, 결빙온도 1.7℃ 가 상승되었다. 2030년에는 월평균기온 3.0℃, 폭염주의보 기준온도 0.5℃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며, 겨울철 온난 대륙풍 영향으로 결빙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여름철 폭염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30년의 연간 강수량은 1,789mm로서 2000년 대비 167.8mm 증가하고, 2050년에는 680.2mm 증가되며, 한반도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녹지에 의한 쿨링효과 감소 및 게릴라성 호우로 인한 아열대성 온대림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겨울철 결빙 온도는 유지되지만,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현재의 남부지역 기후조건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은 주거, 여가, 상업활동 패턴에 큰 변화를 미치고, 에너지 소비 감소 및 농업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 북부지역

지난 18년간 기온이 1.2℃ 상승되었으며, 폭염주의보 기준온도 또한 0.8℃ 상승되었다. 2030년에는 월평균기온 2.0℃, 폭염주의보 기준온도 1.4℃ 상승 및 계절풍 영향으로 여름철 폭염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2030년의 연간 강수량은 1,789mm로서 2000년 대비 167.8mm 증가 및 2050년에는 680.2mm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2-2-2 > 경기도의 권역별 기온상승 및 강수량 증가현상(2000년, 2030년, 2050년)

2.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가. 배출량 설명

(직접배출량) 지자체 경계내에서 연료연소, 제품의 생산, 폐기물 처리 등 온실가스가 직접적으로 배출/흡수되는 배출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하며, 국가 인벤토리와 동일하게 에너지, 산업공정, AFOLU(농업, 산림, 토지이용 부문), 폐기물 등 4개 분야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로 최신 국제 지침인 2006 IPCC G/L에서 제시하고 있는 약 180개 카테고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 표 2-2-1 > 직접배출량 분야

구분		구성
직접배출량	에너지분야	. 에너지산업, 제조업, 수송, 가정, 상업, 공공, 농수산업, 탈루배출 등
	산업공정분야	. 광물산업, 화학산업, 금속산업, 용매산업 등
	AFOLU분야	. 가축, 토지, 관리토양 및 통합적배출원
	폐기물(처리)분야	. 매립, 생물학적처리, 소각, 하폐수 등

(간접배출량) 연료의 연소나 제품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이 아닌 전력 및 열 등의 소비와 폐기물 발생과 같이 지자체 간 지역경계를 두고 온실가스가 이동하는 배출량을 말한다.

예를 들어 A 지자체 소재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인근의 B 지자체에서 전량 소비할 경우, A 지자체는 발전에 사용한 연료에 대한 직접배출량을 산정하고 B 지자체는 사용한 전력에 대하여 간접배출량을 산정한다. 이러한 지자체 배출특성으로 인해 지자체가 온실가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배출량뿐 아니라 간접배출량 인벤토리도 필요하다.

< 표 2-2-2 > 간접배출량 분야

구분		구성
간접배출량	전력	. 가정용, 공공용, 업무용 등
	열	. 산업단지, 지역난방
	폐기물(발생)	. 매립, 소각, 하폐수 등

나. 직접배출량

경기도의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은 2005년 68,487천톤CO₂eq.에서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7년 91,703천톤CO₂eq.로 2005년 대비 약 34% 증가하였다.

산정기간 동안 에너지분야 배출량은 직접배출량의 약 66%로 직접배출량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05년 대비 2017년 60,526천톤CO₂eq.로 약 11% 증가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열병합발전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아 도로수송과 가정용 연료사용이 배출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공정분야의 경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17년 27,460천톤CO₂eq.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다. 경기도는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인 전자산업(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이 발달하였으며 제품생산이 늘면서 산정기간 동안 배출량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FOLU분야는 2010년까지 배출량이 음의 값을 나타내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산림자원 조사체계 개편에 따라 2010년 통계와의 차이가 발생하여 과거자료의 시계열 일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계산한 결과이다.

폐기물분야의 경우 폐기물 매립 및 소각 처리의 영향으로 산정기간 동안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량이 높게 나타난 2011년의 경우 사업장폐기물의 소각처리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 표 2-2-3 > 분야별 직접배출량 현황

(단위 : 천톤CO₂e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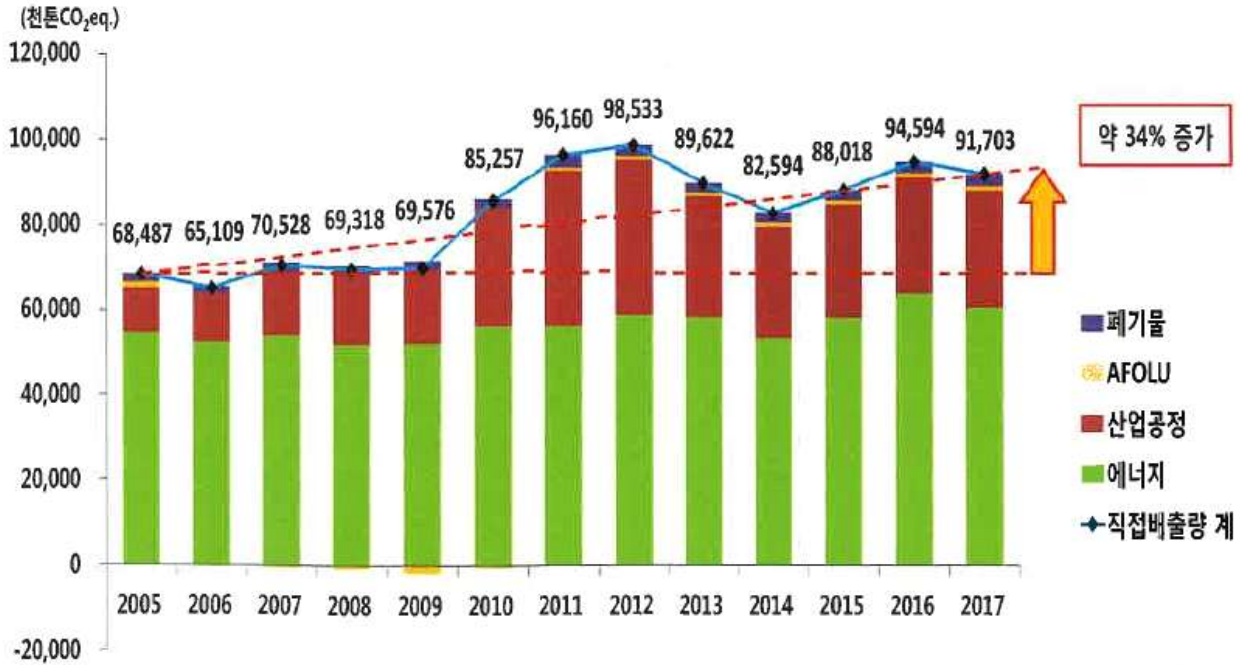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68,487	65,109	70,528	69,318	69,576	85,257	96,160	98,533	89,622	82,594	88,018	94,594	91,703
에너지	54,598	52,301	53,908	51,470	51,677	55,879	55,938	58,670	58,119	53,214	58,055	63,619	60,526
산업공정	10,538	11,563	14,864	16,597	17,435	27,887	36,572	36,481	28,476	26,337	26,604	27,444	27,460
AFOLU													
토지 포함 ¹⁾	1,389	-308	-538	-786	-1,747	-470	684	856	844	956	920	934	961
토지 제외 ²⁾	1,864	1,712	1,728	1,744	1,688	1,766	1,611	1,745	1,708	1,741	1,692	1,685	1,702
폐기물	1,962	1,553	2,294	2,036	2,212	1,961	2,966	2,525	2,182	2,088	2,439	2,596	2,756

1) AFOLU부문(토지포함) : 토지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고려한 배출/흡수량

※ 배출량이 음의 값(-)을 나타내는 경우, AFOLU분야 토지부문(3B)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토지 이외부문(가축, 관리토양)의 배출량 보다 많음을 의미함.(즉, 흡수량)배출량)

2) AFOLU부문(토지제외) : 토지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량

< 그림 2-2-3 > 분야별 직접배출량 현황



다. 간접배출량

경기도의 간접배출량은 2005년 37,295천톤CO₂eq.에서 2017년 배출량은 59,441천톤CO₂eq.로 2005년 대비 약 59%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7년 기준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은 전력 사용에 의한 배출량(89%)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력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31,739천톤CO₂eq.에서 2017년 53,008천톤CO₂eq.로 산정기간 내 약 67% 증가하였다. 전력 사용량을 소비주체별로 구분해 보면 생산부문이 약 52%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공공용 및 서비스업부문(33%), 가정부문(15%)에 의한 배출 순으로 나타났다(2017년 기준).

전력부문 배출량은 생산, 공공, 가정부문 각각 84%, 55%, 45% 증가하였다. 전력부문의 배출량 증가는 농림어업, 공공용 및 서비스업에서의 전력 사용량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열사용에 의한 간접배출량은 2015년 2,475천톤CO₂eq.에서 2017년 2,441천톤CO₂eq.로 산정기간 동안 약1% 감소하였으며 산업단지에서 열사용량의 감소가 주요원인으로 파악되었다.

폐기물 발생에 의한 간접배출량은 2005년 3,080천톤CO₂eq.에서 2017년 3,991천톤CO₂eq.로 약 30% 증가하였으며 산정기간 동안 증감을 반복하였다.

< 표 2-2-4 > 분야별 간접배출량 현황

(단위 : 천톤CO₂eq.)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37,295	39,534	41,801	43,711	44,636	48,793	50,362	52,532	53,387	53,431	54,808	56,705	59,441
전력 사용	31,739	33,862	36,081	37,822	38,682	43,003	44,755	46,349	47,244	47,218	48,532	50,534	53,008
열 사용	2,475	2,455	2,291	2,432	2,412	2,015	1,935	1,925	2,099	2,013	1,942	2,150	2,441
폐기물 발생	3,080	3,217	3,429	3,456	3,541	3,775	3,671	4,258	4,044	4,200	4,334	4,020	3,991

< 그림 2-2-4 > 분야별 간접배출량 현황



3. 기후변화 대응대책

■ 기후변화 대응?

다양한 경제사회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도적인 활동

가. 비전 및 추진 전략

(비 전)

경기도는 지자체 중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잠재량도 풍부하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경기도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비전을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저탄소 사회 실현'으로 제시함.

(전 략)

가정, 상업, 공공 등 모든 건물에 에너지성능 개선, 재생에너지, BEMS,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며, 건물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여 미니 발전소로 기능하도록 함.

- 기존 건물은 공공건물을 우선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 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며,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 의무화 기준을 적용하되 녹색건축 산업과 연계하여 에너지신산업 등 선도적인 기술과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우수사례를 구축함.
- 건물 에너지진단과 컨설팅을 통한 수요 조사를 토대로 경기도형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 건물 에너지·온실가스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 도시재생사업,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그린리모델링을 결합하며, 공공임대주택, 신규 주택단지는 제로에너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함.

수송(도로)부문은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철도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버스 서비스를 개선하며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교통수요관리 강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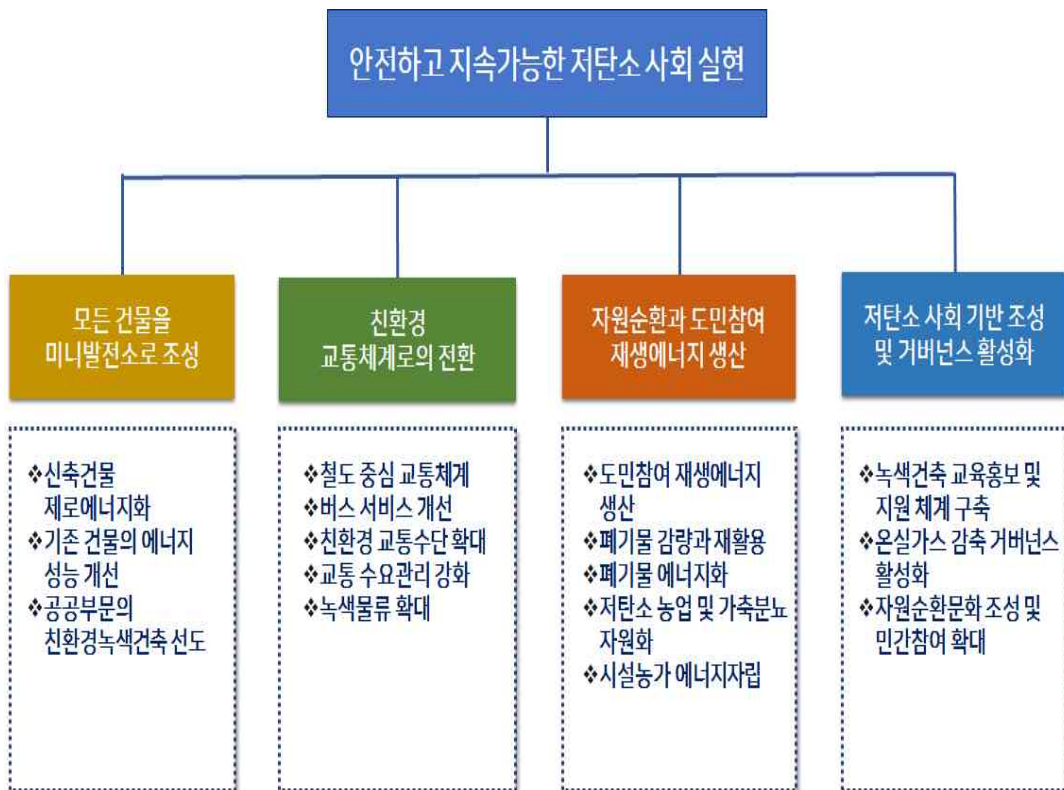
- 미래 친환경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교통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함.
- 재생에너지와 미활용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고 모든 가구가 에너지 프로슈머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함.

- 공공부문이 관련 기술과 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공공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생산거점으로 조성함.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폐기물 에너지화율 목표를 2027년까지 20.3%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함으로써 향후 온실가스 감축 및 폐기물-에너지 순환 시스템을 구축함.

민관 거버넌스 기반과 경험이 풍부한 경기도의 장점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정책에 시민, 기업 등 민간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선도 사례를 구축하며,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활성화함.

< 그림 2-2-5 > 2030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비전과 목표



< 표 2-2-5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추진 전략 및 사업 계획

구분	전략	실천과제	이행부서	
			주무과	협조
건 물	신축건물 제로에너지화 촉진	1-1-1. 태양광 예비 건축물 인증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과 행복주택과
		1-1-2. 마이크로그리드 저탄소 에너지자립 지구 조성	공공택지과 도시정책과	건축디자인과 기후에너지정책과
		1-1-3. 제로에너지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행복주택과	건축디자인과 경기도시공사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1-2-1.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인증 확대	건축디자인과	국토교통부 경기도 31개 시군
		1-2-2. 에너지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건축디자인과	국토교통부 경기도 31개 시군
		1-2-3. 경기도 녹색아파트 만들기	기후에너지정책과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과
		1-2-4. 저소득층 거주 공간 에너지효율화	기후에너지정책과	
	친환경 녹색건물을 선도하는 공공부문 역할 강화	1-3-1. 친환경 녹색건물 랜드마크 조성(기존/신축)	건축디자인과	기획재정부 경기도 31개 시군
		1-3-2. 공공건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기후에너지정책과	
		1-3-3. 공공건축물 에너지 사용 실태 조사 및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구축	건축디자인과	경기도 31개 시군
	녹색건축 교육·홍보 및 지원체계 구축	1-4-1. 경기도 녹색건축 지원센터 설립	건축디자인과	국토교통부 경기도 31개 시군
		1-4-2. 그린홈 오픈하우스 네트워크 구축	기후에너지정책과	건축디자인과
		1-4-3. Solar Decathlon Korea (태양에너지 주택경연대회) 개최	건축디자인과	국토교통부 경기도 31개 시군

구분	전략	실천과제	이행부서	
			주무과	협조
수 송	철도중심 교통체계 구축	2-1-1.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	철도물류정책과	국토교통부
		2-1-2. 광역철도망 확충	철도물류정책과	국토교통부
		2-1-3. 광역급행철도 확충	철도물류정책과	국토교통부
		2-1-4. 환승센터 확충	철도물류정책과	국토교통부
		2-1-5. 도시철도망 확충	철도물류정책과	국토교통부
	버스서비스 개선	2-2-1. 광역BRT 확충	교통정책과	수도권교통본부
		2-2-2. 대용량버스 투입(2층버스 투입)	공공버스과	
		2-2-3.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공공버스과	
		2-2-4. 경기 심야버스운행 확대	버스정책과	
	친환경 교통수단 공급	2-3-1. 공공/공유자전거 도입 확대	도로관리과	경기도내 시군
		2-3-2. 전기 시내버스 도입	미세먼지대책과	버스정책과 경기도내 시군, 민 간
		2-3-3. 친환경차량 도입	미세먼지대책과	경기도내 시군
	교통수요 및 신호운영 관리강화	2-4-1.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기후에너지정책과	경기도내 시군
		2-4-2. 자전거 마일리지 제도	교통정책과	경기도내 시군
		2-4-3.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노후차량 교체	미세먼지대책과	경기도내 시군
		2-4-4. 감응식 신호시스템 도입	교통정책과	경기도내 시군
	녹색물류 실현	2-5-1. 화물 친환경 경제운전 교육 강화	물류정책과	교통정책과

구분	전략	실천과제	이행부서	
			주무과	협조
폐기물	폐기물 발생의 원천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3-1-1.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 설정 및 추진	자원순환과	
		3-1-2. 사업장 Zero Waste 컨설팅	자원순환과	
	폐자원의 재활용 및 에너지화	3-2-1. 자원화시설 정비 및 운영 활성화	자원순환과	
		3-2-2.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	자원순환과	
	폐자원 관련 산업 육성	3-3-1. 업사이클 플라자 운영 및 활성화	자원순환과	
		3-3-2. 공공·민간부문 친환경 소비 확산	자원순환과	
	자원순환문화 조성 및 민간 참여 확대	3-4-1. 자원순환 문화사업 발굴 및 지원	자원순환과	
농축산	경종농가 친환경농법 확대	4-1-1. 간단판개 및 최소경운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농업정책과	도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4-1-2. 밭 양분 투입 관리	친환경농업과 기초지자체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 고도화	4-2-1. 가축분뇨처리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축산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4-2-2. 퇴·액비 살포 의무 준수	경기도 (담당부서 미정)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시설농가 에너지 자립	4-3-1.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농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4-3-2.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농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농업 구현	4-4-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확대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구분	전략	실천과제	이행부서	
			주무과	협조
재생에너지 확대 및 거버넌스	도민참여 재생에너지 생산	5-1-1.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기후에너지정책과	
		5-1-2. 1가구 1발전소 도민발전소 확대	기후에너지정책과	공동주택과 공동체지원과 농업정책과
		5-1-3. 도민 참여 가상발전소 시범사업 및 확대	기후에너지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 및 거버넌스 활성화	5-2-1. 경기도 저탄소 실천 이니셔티브 및 플랫폼 구축	기후에너지정책과	건축디자인과
		5-2-2. 에너지자립학교 및 그린캠퍼스 조성	기후에너지정책과	경기도 교육청
		5-2-3. 경기도형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및 지역 기후 변화·에너지 파트너십 지원	기후에너지정책과	
		5-2-4. 기후변화 국제 네트워크 가입	기후에너지정책과	경기도지속가능발전 협의회
		5-2-5. 온실가스·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기후에너지정책과	

(담당자 : 기후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 김혜민 /☎ 031-8008-6014)

4. 기후변화 적응대책

가. 비전과 목표

< 그림 2-2-6 >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비전 및 목표



- 기후변화 적응?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기후 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한 자연, 인위적인 시스템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활동

나. 제2차(‘17~‘21)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사업

제2차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17~‘21)은 8개 부문, 15개 적응전략, 40개 세부시행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사업으로는 건강 4개, 재난/재해 4개, 농업·축산 5개, 산림 5개, 해양/수산업 6개, 물관리 5개, 생태계 6개, 적응기반 5개로 구성된다.

< 표 2-2-6 >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사업

부문	추진전략	세부사업	사업유형	소관부서
건강	1-1.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리	1-1-1. 기후변화 취약계층 분류 및 관리체계 확립	신규(발굴)	건강증진과
		1-1-2. 경기도형 맞춤형 폭염 피해 저감대책 개발 및 홍보	기존보완	자연재난과
	1-2. 감염병 관리체계 마련	1-2-1. 해외유입 감염병 대책 강화	기존	감염병관리과
		1-2-2. 감염병 예방 관리 및 방역활동 강화	기존보완	감염병관리과
재난/재해	2-1. 재난재해 대비 및 저감대책	2-1-1. 생활권 주변 재해 취약시설 및 위험유인 정비	기존	자연재난과
		2-1-2. 급경사지 취약지역 주변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강화	신규(발굴)	자연재난과
		2-1-3. 복구지원 제도개선 및 관리 체계 강화	기존보완	자연재난과
		2-1-4.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정비 및 강화	기존	자연재난과
농축산	3-1. 농업용수 공급	3-1-1.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확대	기존보완	친환경농업과
	3-2. 작물 보급 및 병해충 발생 방지시스템 구축	3-2-1. 농작물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재해 경감기술 개발	기존보완	농업기술원
		3-2-2. 기후변화 적응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기존보완	농업기술원
		3-2-3. 문제병해충 발생 예측 및 방지 시스템 구축	기존보완	농업기술원
3-3. 안전한 축산업 육성	3-3-1. 가축 생활환경 개선	기존보완	축산정책과	
산림	4-1. 산림 생산성 향상 및 조림시스템 확립	4-1-1. 외래 및 돌발 산림 병해충 발생감시 강화	기존보완	산림과
		4-1-2.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체계 강화 및 관리	기존보완	산림과
		4-1-3. 탄소흡수도산도 감소 위한 적정수종 식재 및 숲가꾸기	기존보완	산림과
		4-1-4. 온실가스 통계기반 임업시스템의 운영 및 보완	기존보완	산림과
		4-1-5. 산불발생 취약지역 사전예방 관리 체계 강화	기존보완	산림과
해양수산	5-1. 연안 위험성 관리	5-1-1. 어항 기반시설 안정성 확보	기존보완	해양수산과
		5-1-2. 연안 재해 방지	기존보완	해양수산과
	5-2. 수산생물 적응력 증진 및 관리	5-2-1. 기후변화에 적합한 양식기술 개발	기존	해양수산 자원연구소
		5-2-2. 수산자원 관리	기존보완	해양수산과
		5-2-3. 생물종 보호 및 관리	신규(발굴)	해양수산과
		5-2-4. 깨끗한 해양 및 내수면 환경 조성	신규(발굴)	해양수산과

부문	추진전략	세부사업	사업유형	소관부서
물관리	6-1. 수환경 보호 및 수자원 확보	6-1-1. 지하수 방치공 폐공사업 및 관리	기존보완	수질관리과
		6-1-2.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기존보완	수질총량과
		6-1-3. 가뭄대비 식수원 확보	신규(발굴)	상하수과
		6-1-4. 물 재활용 시설 확대 및 사용량 저감	기존보완	상하수과
		6-1-5 기후변화 적응역량 함양을 위한 물 거버넌스 구축	기존보완	수질정책과
생태계	7-1. 녹지 조성 관리	7-1-1. 탄소중립숲 조성 사업	기존보완	공원녹지과
	7-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모니터링	7-2-1. 경기도 제2차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신규(기존)	환경정책과
		7-2-2. 도민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 확대 및 참여 활동 증대	기존보완	환경정책과
		7-2-3 생물 서식처 복원 사업을 통한 생태계의 연결성 확보	기존보완	환경정책과
		7-2-4. 도시생태 현황 지도 제작	신규(기존)	환경정책과
7-2-5. 생태계 교란종 관리 및 모니터링	기존보완	환경정책과		
적응 기반	8-1. 적응정책 기반 구축	8-1-1. 기후변화 적응정책 실천 입법 지원	신규(발굴)	기후에너지정책과
		8-1-2. 기후변화 적응인식 강화 교육 지원	기존보완	기후에너지정책과
	8-2. 이상기후 모니터링 기반 구축	8-2-1. 대기분야 이상기후 모니터링	신규(발굴)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
		8-2-2. 수질 및 수생태계분야 이상기후 모니터링	신규(발굴)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8-3. 기상 DB 구축 활용	8-3-1. 기상자료 활용 피해사례 DB 구축	기존	자연재난과

(담당자 : 기후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 이보미 / ☎ 031-8008-6012)

제2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

1.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수급 현황
2. 제5차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3. 경기도에너지센터 운영사업
4.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5.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설치지원
6.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7.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8.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9.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구축 기본계획 수립

1.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수급현황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정책 목표

2015년 경기도 에너지비전을 “경기도 에너지자립”으로 설정하였으며, 2030년까지 전력 자립도 70%까지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하며, 에너지효율을 20%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하는 노후 원전 11기 중 7기를 대체하고,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고자 목표를 제시했다

- 에너지비전 2030에서 2030년 전력자립도 70%,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BAU 대비 전력효율 향상 20%를 목표로 설정

가. 최종 에너지원별 소비량(2018)

2018년 기준 경기도 최종에너지 소비는 30,664천toe로 전국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원별로는 석유가 전체의 3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력(34.4%), 도시가스(17.5%) 순을 보이고 있다. 열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는 각각 5.4%, 3.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 중 경기도는 전력의 23%, 도시가스의 20%, 열에너지의 62%를 사용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 전국과 비교할 때 경기도 에너지 소비 므스는 석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력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표 2-2-7 > 최종 에너지원별 소비량

(단위 : 천toe)

구분	합계	석유제품	전력	LNG 도시가스	열에너지	신재생	석탄
경기도	30,664	11,633	10,552	5,370	1,660	1,164	285
구성비(%)	100	37.9	34.4	17.5	5.4	3.8	0.9
전국	232,740	116,831	45,249	26,444	2,682	9,110	32,424
구성비(%)	100	50.2	19.4	11.4	1.2	3.9	13.9

※ 자료출처 : 2019 지역에너지통계연보

나. 1차 에너지원별 생산량·공급량(2018)

에너지원별로는 LNG 공급 규모가 전국의 31.4%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정·상업용 도시가스 공급 외에 열병합이나 집단에너지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 표 2-2-8 > 1차 에너지원별 생산량·공급량

(단위 : 천toe)

구분		석탄	석유제품	LNG	수력	원자력	신재생
경기도	생산량	-	-	-	209	-	1,670
	공급량	285	12,078	17,326	209	0	1,670
전국	생산량	568	-	306	1,549	28,437	17,119
	공급량	86,651	118,521	55,225	1,549	28,437	17,119

※ 자료출처 : 2019 지역에너지통계연보

다. 연도별 전력자립도(2014~2018)

2018년 기준 경기도 전력자립도는 60.5%로 '20년 전력자립도 목표 40%를 초과 달성

< 표 2-2-9 > 연도별 전력자립도(2014~2018)

구분	전력발전량(GWh)	전력소비량(GWh)	전력자립도(%)	비고
2018년	74,189	122,696	60.47	11위
전국	570,647	526,149	108.46	
2017년	61,851	114,842	53.9	11위
2016년	57,085	109,424	52.2	10위
2015년	45,076	105,238	42.8	9위
2014년	28,778	102,359	28.1	11위

※ 자료출처 : 2019 지역에너지통계연보

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2014~2018)

경기도가 생산하는 전력은 1990년대 초반부터 증가하다가 1998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감소한 후 보합세를 보였으며, 2009년 이후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발전량은 2014년 28,778GWh에서 2018년 74,189 GWh로 연간 4.5%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201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LNG복합화력 신규 건설 등으로 전력 발전량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져 발전 비중이 하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 표 2-2-10 > 도내 전력생산(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구 분	신재생발전량(GWh)	전력 발전량(GWh)	신재생발전비중(%)	목표
2018년	2,883	74,189	3.9	'30년까지 발전비중 20%
전 국	52,718	570,647	9.2	재생에너지 3020
2017년	2,245	61,851	3.6	
2016년	2,120	57,085	3.7	
2015년	1,854	45,076	4.1	
2014년	1,897	28,778	6.6	

마.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누적) 현황(2017~2018)

경기도 '18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883GWh로 전체 발전량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이 전체의 37%로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소수력을 포함함 수력이(18.6%) 조력발전에 의한 해양에너지(17.1%), 바이오(13.6%) 순을 보이고 있다. 폐기물은 3.3%로 비중이 낮으며 풍력의 비중도 낮게 나타난다.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국의 7%를 차지하며, 특히 태양광과 수력 발전량이 각각 전국의 37%, 18.6%를 차지하여 경기도에 특화되어 있으며, 해양 및 바이오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풍력은 전국 발전량의 0.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표 2-2-11 >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

구 분	합계	연료전지	수력	해양	태양광	폐기물	바이오	풍력
2018 (%)	1,488 (100)	149 (10.0)	277 (18.6)	254 (17.1)	551 (37.0)	50 (3.3)	202 (13.6)	5 (0.4)
전국	19,027	348	1,798	255	8,099	3,813	3,065	1,303 IGCC 346
2017 (%)	1,247 (100)	101 (8.1)	277 (22.2)	254 (20.4)	361 (28.9)	46 (3.7)	203 (16.3)	5 (0.4)
증감	+241	+48	0	0	+190	+4	-1	0

※ 원전 약 1.5기 규모 보급 (원전 1기 용량 : 약 1GW)

2. 제5차 경기도 지역에너지 계획

가. 배경 및 목적

지역에너지계획은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 달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에너지법」에 의해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광역지자체가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2019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3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이 수립되었으며, 그 동안 수립된 지역에너지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가 에너지기본계획과 지역에너지계획의 정합성 강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모든 광역지자체가 계획기간을 맞추어 동시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5년 법정계획인 『제4차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2015~2019)』을 수립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같은 해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선언하고 2016년 『에너지비전 1차 실행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해 왔다

에너지비전은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 70%,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전력 효율 20% 향상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이러한 배경 하에 「에너지법」 및 「경기도 에너지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제3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및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과 연계하여 경기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목표와 전략,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을 목표로 한다.

나. 비전 및 목표

경기도의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변화된 동향 및 중·장기 에너지 비전을 반영한 계획 수립을 목표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 안정적 에너지 공급 유지, 미세 먼지 문제해결 및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수용성 변화를 고려한 분산형 에너지 및 지역, 지자체 등의 참여 확대 추진하여 에너지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 표 2-2-12 > 경기도 비전, 목표 및 전략

비전	<p style="text-align: center;">에너지자립</p> <p style="text-align: center;">도민과 31개 시군이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p>
목표	<p>① 최종에너지 수요 2,544천toe 절감 Δ 7.6%(‘25), 5,840천toe 절감 Δ 16.4%(‘30)</p> <p>②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30), 전력소비중 신재생에너지비중 4.4%(‘25), 13.1%(‘30) 전력소비 중 재생에너지비중 2.7%(‘25), 7.6%(‘30)</p> <p>③ 전력소비중 분산형 에너지 비중 13.4%(‘25), 22%(‘30)</p> <p>④ 도민참여공동체에너지 생산 500MW(‘25), 1.5GW(‘30)</p>
추진 전략	<p>01 에너지 다소비사회에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고효율 사회로 전환</p>
	<p>02 도민 에너지프로슈머가 중심이 되는 재생에너지생산</p>
	<p>03 에너지와 경제, 환경이 선순환하는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p>
	<p>04 에너지서비스 격차해소 및 에너지자립 실행기반 구축</p>

다.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중점과제 추진방안

제5차 경기도 지역에너지 세부계획은 4개 추진전략 중점 68개 사업도출 중 단기사업(~ 22년) 12개를 우선 선정함

< 표 2-2-13 >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중점과제 주요내용

중점과제		실행방법
에너지효율	공용전기료 제로 스마트 아파트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에너지센터 사업 성과 모니터링을 토대로 확대 아파트단지 에너지진단 실시 및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병행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 설계·인증 비용 지원 및 원스톱 통합지원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을 활용하여(예)힘펠공장)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화 촉진
	에너지자립학교 및 그린캠퍼스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립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에너지자립학교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동아리 지원 중심의 그린캠퍼스 사업을 대학 에너지자립화 사업으로 개편
	산업단지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자립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 에너지진단 실시 및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센터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추진
	물류 및 냉장·냉동 창고 에너지진단 및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 및 냉장·냉동 창고 실태 파악을 토대로 에너지진단 및 효율화 사업 우선순위 선정 시범사업 모니터링 후 확대 추진
에너지생산	공공건물 및 유희부지 활용 주민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양광, 연료전지,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원 다양화 경기도 및 시군, 도내 중앙정부 유관기관 유희부지의 적극적 활용과 이를 위한 민관파트너십 구축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갈등예방 프로그램 적용
에너지산업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자립 지구 조성 및 RE100 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시공사 개발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마이크로 에너지자립 지구 조성 RE100 제도 시행 대비 도내 RE100 기업 유치 및 지원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에너지협동조합을 거점으로 태양광 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태양광 시설 이용 효율 제고 및 일자리 창출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선정·지원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운영 제도 마련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ESS 등 분산형 에너지 기술 개발 투자 및 시장 확대를 위한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운영 지원
실행기반	기초지자체 에너지센터 및 기후·에너지 민관파트너십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에너지센터 운영 지원 방안 마련 및 예산 확보 행정과 시민사회 역량이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기후·에너지 민관파트너십 구축 및 운영 지원(도민추진단 참여)
	기초지자체 에너지통계 및 정책 평가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지자체 에너지통계 및 정책 평가 기반 마련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초지자체 에너지정책 평가 지표 개발 및 시범 적용 후 확대
	경기도-시군 에너지정책협의회 및 찾아가는 에너지정책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지자체 수요조사 실시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중앙정부 사업 기획·발굴

(담당자 : 기후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 신동훈 /☎ 031-8008-6017)

3. 경기도에너지센터 운영사업

가. 추진배경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효율적 추진 및 에너지 민간투자 촉진 등을 통한 분산형 에너지 생산시설 확대를 위해 설립된 경기도에너지센터는 '16년부터 현재까지 에너지비전확산,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효율개선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현황

2019년에는 주택 등 태양광시설 보급 714건, 신재생에너지 민간 등 투자 컨설팅 77건 에너지 절감량 1,995.7toe/년, 에너지절감비용 923백만원/년, 효율개선지원 절감량 1,088.2toe/년, 신재생에너지 설치용량 3,335.2kW, 신재생에너지 230,508㎡ 유희부지에 발전용량 21,450kW 투자제안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2대 분야, 6대 사업		주요내용
비전확산 및 역량강화	1. 비전확산	1) 에너지닥터 콜센터 운영 2) 사업설명회 및 홍보자료 제작 3) 홈페이지 유지관리 4) 에너지 전시회 참가
	2.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1) 신규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 회의 및 간담회 2) 에너지의 날 행사 공동개최 3) 에너지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민간투자 촉진	3.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 촉진	1) 태양광발전 창업교육 2) 신재생에너지 투자촉진 네트워크 3) 신재생에너지 투자컨설팅 지원 4) 태양광 발전시설 계통연계비 지원 5) 농촌 태양광 활성화 교육
	4.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1) 주택 등 태양광 설치지원 2)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3) 미니태양광 설치
	5. 에너지효율개선지원	1)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 2) 에너지효율개선(ESCO투자) 지원
	6. 시범사업 추진	1) 경기도 스마트에너지 아파트 조성 시범사업

< 그림 2-2-7 > 경기도에너지센터 추진현황



비전확산



태양광 설치 지원



효율개선 지원

(담당자 : 기후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 신동훈 /☎ 031-8008-6017)

4.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지자체 소유 및 관리하는 건물 및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년부터 '19년까지 시·군 및 道 기관 146개소에 대해 설비용량 10,309kW를 설치하였다. '19년에는 25개소에 2,045kW규모의 신재생에너지원 발전설비를 설치하였다.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해 지자체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제도* 이행 및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차원의 지원을 하였다.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비율('20년, 30%)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

< 표 2-2-14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구 분	개소	보급용량(kW)
합계	146	10,309
2019년	25	2,045
2018년	44	3,786
2017년	20	905
2016년	25	1,360
2015년	16	1,028
2014년	14	1,095
2013년	2	90

< 표 2-2-15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설비단가

구분	설비 또는 용량구분	설치단가(천원)	
태양광	고정식	2,410/kW	
태양열	평판형, 진공관형	1,500㎡이하	1,220/㎡
		6㎡급×대수(온수기)	6,860/대
		490㎡이하(냉난방)	1,940/㎡
지열	수직밀폐형	1,290/kW	
연료전지	10kW이하	29,330/kW	

* 설치단가 :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지원사업 지원기준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담당자 : 기후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 김원상 /☎ 031-8008-6018)

5.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설치 지원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군 환경기초시설 내 태양광발전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년부터 '19년까지 시·군 18개소에 대해 설비용량 5,138kW를 지원하였다. '19년에는 1개시(부천시) 하수처리장 내 161kw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였다.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시설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발전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탄소 중립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 표 2-2-16 > 시설별 단가

구분	설비 또는 용량구분		설치단가(천원)
태양광	고정식		2,900/kW
태양열	평판형, 진공관형	1,500㎡이하	1,191/㎡
		6㎡급×대수(온수기)	5,874/대
		1,500㎡이하(냉난방)	1,884/㎡
지열	수직밀폐형	1,000kW이하	1,340/kW
연료전지	-		31,048/kW

※ 자료출처 : 환경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 표 2-2-17 >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구분	개소	보급용량(kW)
합계	18개소	5,138
2019	1	161
2018	1	60
2017	3	410
2016	2	520
2015	2	276
2014	1	228
2013	2	299
2012	3	1,239
2011	2	1,695
2010	1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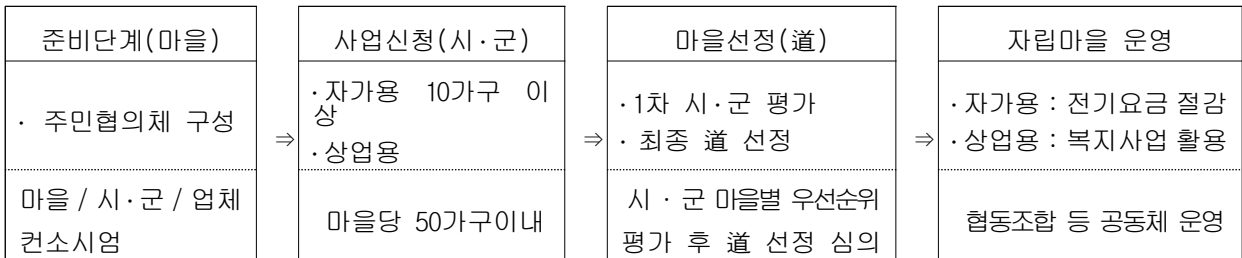
(담당자 : 기후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 김원상 / ☎ 031-8008-6018)

6.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가. 추진현황 및 성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등 에너지 보급 사각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마을 및 개인소유 주택의 유휴부지(창고, 마을회관 등)를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19년까지 시·군 49개 마을 4,680kW를 설치하였다.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해 연간 1,865tCO₂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로 소나무 387,421그루를 재식하는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마을의 에너지자립 인식 제고 및 도민 전기요금 부담 경감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 지원을 하였다.

나. 추진절차



다. 추진실적 및 사례

< 표 2-2-18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구 분	마을수	참여 가구수	용량(kW)		
			총용량	자가용	상업용
합계	49개 마을	1,183	4,680	3,547	1,133
2019년	18개 마을	534	1,930	1,605	325
2018년	14개 마을	249	1,079	789	290
2017년	7개 마을	175	700	528	172
2016년	6개 마을	110	487	285	202
2015년	4개 마을	115	484	340	144

< 그림 2-2-8 > 에너지 자립마을 설치 사례



(담당자 : 기후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 임종찬 / ☎ 031-8008-6019)

7.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가. 추진배경

경기도 전체 주택 대비 69%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니(베란다형, 옥상형) 태양광 보급을 통해 1가구 1발전소 운동 확산 및 재생에너지 인식제고에 기여하였다.

나. 추진현황 및 성과

미니태양광사업은 '16년부터 '18년까지* 시·군 3,002가구 985kW를 설치하였으며,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해 연간 526tCO₂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로 소나무 79,731그루를 재식하는 효과를 창출하였고, 설치 가구당(300W기준)13.6%의 전력 절감으로 월평균 6,190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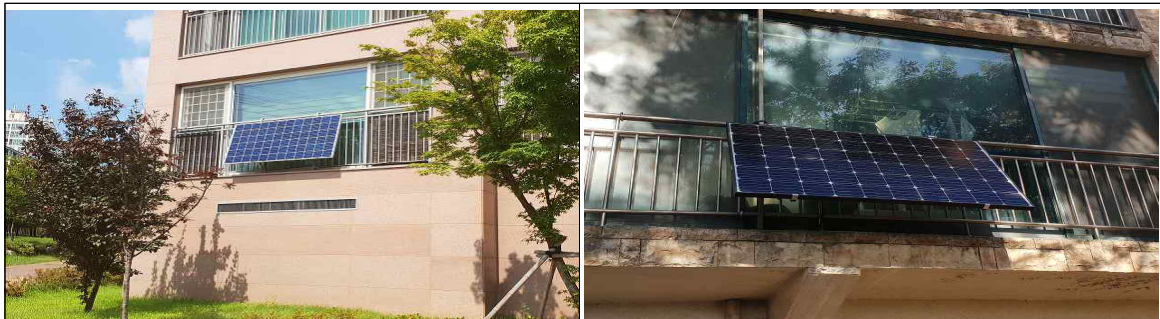
다. 추진실적 및 사례

< 표 2-2-19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구 분	가구수	보급용량(kW)
합계	3,002	985
2018년	1,996	657
2017년	932	308
2016년	74	20

* '19년 미니태양광 사업 : 16~18년까지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19년부터 국비중단 으로 시·군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

< 그림 2-2-9 > 미니태양광 설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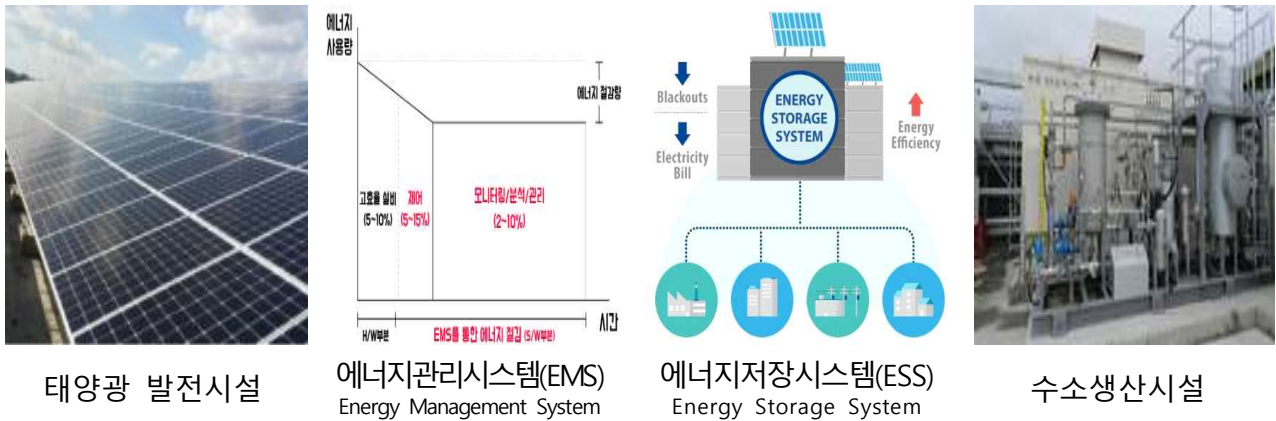


(담당자 : 기후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 임종찬 /☎ 031-8008-6019)

8.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에너지 비전 확산 및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해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고효율에너지설비 등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그림 2-2-10 >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설치지원 시설 종류



'16년부터 '19년까지 분산형 전력 생산시설 11,793kW를 설치하였으며, '19년에는 2,544kW 규모의 분산형 전력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1,378톤CO₂ 감축, 302,591그루의 소나무 식재효과를 얻었다.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해 시군과 주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도민 발전소를 통해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였다.

< 표 2-2-20 >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연도별 사업성과 및 지원효과

구 분	분산형 전력 생산시설 설치용량(kW)	발전량 (Mwh)	CO ₂ 감축량 (톤CO ₂)	소나무 식재효과(그루)
합계	11,793	15,066	6,387	967,848
2019년	2,544	3,250	1,378	208,785
2018년	3,687	4,710	1,997	302,591
2017년	2,312	2,954	1,252	189,745
2016년	3,250	4,152	1,760	266,727

※ 적용기준 : 일 발전량 3.5 시간, 1MWh 당 0.424tCO₂, 30년생 소나무 1그루당 연간 6.6kgCO₂ 흡수

(담당자 : 기후에너지정책과 에너지산업육성팀 박신영 /☎ 031-8008-6032)

9.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가. 추진배경

도는 지난 1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수소차, 수소충전소 보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저렴하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 확보 등 수소생태계 전반에 걸친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5개월 여간 전문가 의견수렴과 도내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19년 9월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수 등이 전국 최대로 수소 대량 수요 예상지역이며 자동차 부품 산업 기업 및 종사자수, CNG·LPG충전소수, 수소연료전지보급 1위로 수소관련분야 집중도가 높아 수소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임에 분명하다.

나. 기본계획 주요내용

'수소에너지 전환을 통한 CO₂ /미세먼지 Free Zone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경기도민 누구나 값싸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소를 사용함은 물론, 수소산업을 미래의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해 나아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수소생산기지 10개소 발굴, ▲수소배관망 100km확대, ▲수소차 13만대 및 수소버스 4천대, 수소충전소 200개소, ▲수소연료전지발전 1GW달성, ▲주력사업융합형 수소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 그림 2-2-11 >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구축 기본계획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대 분야 20대 중점 과제를 선정, 수소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첫 번째, 평택LNG인수기지를 거점형 수소공급기지로 육성하고 수소버스용 분산형 수소생산·충전기지를 설치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수소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두 번째, 수소차·수소충전소 확대 및 수소기반 대중교통·발전시설 등을 통해 누구나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도민체감형 인프라를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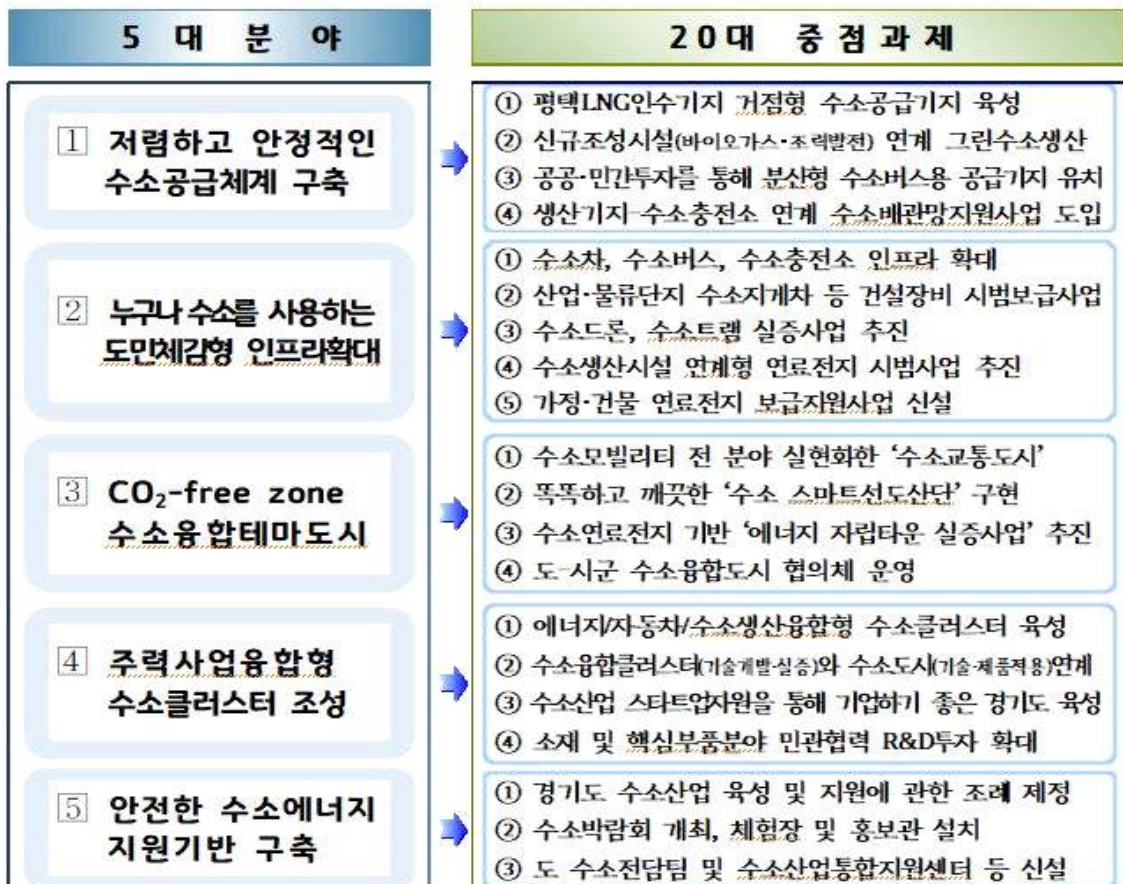
세 번째, 수소에너지 생산지역과 교통·산단·주거·물류의 주요지역과 연계하여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에너지자립형 수소융합테마도시를 구현하고자 한다.

네 번째, 도내 에너지, 자동차산업 선도지역과 연계하여 수소산업 전주기에 걸쳐 개발·실증·활용할 수 있는 주력사업 융합형 수소클러스터로 육성·발전시켜 수소핵심부품의 글로벌 R&D허브로 도약하고자 한다.

다섯 번째, 안전한 수소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해 수소 전담지원기관 및 조직을 설치하고, 국제수소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수소경제 저변을 확대코자 한다.

이러한 중점과제 추진을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비 503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천9백억원이 투입되며 2020년도 실행계획 용역을 통해 수소클러스터 및 수소융합테마도시 타당성 검토 및 사업규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그림 2-2-12 >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기본계획 분야별 중점과제



다. 향후계획

도는 가장먼저 저렴한 수소공급망 구축을 위해 도내 수소생산시설 (평택, 하루 6ton 수소생산규모로 수소차 1,000대/일 완충 가능)을 유치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충전소용 수소배관망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공급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 그림 2-2-13 > 수소추출시설(수소생산기지) : 버스차고처 충전소, 도심지 충전소 연계



2019년도에 도내 안산시가 전국 최초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안산시 수소시범 도시 조성계획 수립 중'이며, '22년까지 수소생산, 이송, 활용(주거용, 교통용), 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조력 발전소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을 완료할 예정으로 세계 최초 도시전체를 수소도시로 조성하는 성공사례로 거듭나고자 한다.

< 그림 2-2-14 > 안산시 수소시범도시 조성계획(안)



안산시 수소시범도시 조성도

수소시범도시 주요 구성

경기도는 수소에너지를 단순한 연료전환을 넘어 도민에게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수소산업 R&D 지원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국산 기술력을 확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담당자 : 기후에너지정책과 에너지산업육성팀 황윤주 / ☎ 031-8008-6008)

제3절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

1.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 대책
2.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지원
3.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
4. 도민 가스안전 확보

1.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 대책

가. 도시가스 공급 현황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률은 87.6 %(' 19.12월 기준)로 전국기준 83.7%에 비해 높은 편이나 도시가스 보급률 하위 시·군의 공급률은 30~50%[양평(24.8%), 가평(38%), 연천(43.6%), 포천(46.6%)]로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이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주민은 도시가스 공급지역의 주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의 에너지(LPG 용기 및 등유 등)를 사용하고 있다. 기준 열량(MJ)당 연료별 에너지원의 가격을 보면, 도시가스(난방용)의 가격은 18.33원/MJ 수준이나 LPG용기의 연료 가격은 약 36.99원/MJ 수준으로 도시가스보다 약 2배 비싼 상황이다.

< 표 2-2-21 > 도시가스 공급률

시군명	공급사	대상세대	보급세대	공급률	시군명	공급사	대상세대	보급세대	공급률
합 계		5,468,920	4,790,907	87.60%	군포시	삼천리	110,005	98,138	89.20%
수원시	삼천리	498,836	462,939	92.80%	광주시	코원	156,884	138,041	88.00%
성남시	코원 (삼천리)	400,460	358,855	89.60%	이천시	코원	92,643	68,006	73.40%
고양시	서울	434,028	391,089	90.10%	양주시	대륜	93,026	73,872	79.40%
용인시	삼천리	406,880	327,413	80.50%	오산시	삼천리	95,209	97,524	102.40%
부천시	삼천리	340,160	322,355	94.80%	구리시	에스코	79,870	76,357	95.60%
안산시	삼천리	277,331	285,036	102.80%	안성시	삼천리	81,599	61,927	75.90%
안양시	삼천리	222,589	199,752	89.70%	포천시	대륜, 에스코	69,976	32,604	46.60%
남양주시	에스코	276,656	251,615	90.90%	의왕시	삼천리	62,387	51,673	82.80%
화성시	삼천리	327,797	254,956	77.80%	하남시	코원	115,792	89,531	77.30%
평택시	삼천리	226,020	232,881	103.00%	여주시	코원	50,334	27,170	54.00%
의정부시	대륜	190,760	182,544	95.70%	양평군	에스코 (코원)	55,782	13,844	24.80%
시흥시	삼천리	194,750	201,249	103.30%	동두천시	대륜	42,999	39,916	92.80%
파주시	서울	191,668	151,323	79.00%	과천시	코원	21,467	17,451	81.30%
광명시	삼천리	126,001	109,937	87.30%	가평군	에스코	30,768	11,686	38.00%
김포시	인천, 서울	174,613	151,793	86.90%	연천군	대륜	21,630	9,430	43.60%

(담당자 : 기후에너지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팀 이은영 / ☎ 031-8008-6021)

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 대책 수립

경기도 지역별 에너지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가스, LPG,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공급확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재정투자 규모 예측으로 실효성 있는 에너지 공급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6년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확대 제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17.6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30년 까지 도시가스 보급률 99% 달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표 2-2-22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 계획

도시가스 배관망 (923개 구역, 83천세대)	LPG 저장탱크 (836개 구역, 32천세대)	LNG 저장탱크 (9개 구역, 2천세대)	신재생에너지 (27개 구역, 0.3천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33억원 (도비 802) > 주배관 인접, 경제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억원 (도비 440) > 집단공급 가능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억원 (도비 30) > LPG저장탱크 구역 중 산청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억원 (도비 38) > 37지 대안 외 지역
			

(담당자 : 기후에너지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팀 이은영 / ☎ 031-8008-6021)

2. 도시가스 공급 확대

가. 도시가스 공급 체계

경기도 내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받은 6개사에서 권역별로 공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가스사에 대한 인허가 및 공급규정 관리, 소비자요금 산정 등을 통해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 및 도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표 2-2-23 > 도시가스사별 공급권역

회사명	지정년월	공 급 지 역
	6개사	31개 시·군
(주)삼천리	'81.06.30	수원,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평택, 광명, 시흥, 군포, 화성, 안성, 의왕, 오산
코원에너지서비스(주)	'81.02.15	성남, 과천, 하남, 이천, 광주, 여주, 양평 일부
(주)대륜E&S	'95.11.21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일부
서울도시가스(주)	'95.11.27	고양, 파주, 김포 일부
(주)에스코	'95.11.21	구리, 남양주, 가평, 포천 일부, 양평 일부
인천도시가스(주)	'96.08.09	김포 일부

※ 분할공급 : 김포시(서울, 인천), 포천시(에스코, 대륜), 양평군(에스코, 코원)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라 공급규정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가스 공급신청부터 가스공급까지 제반 과정의 투명성, 객관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사항등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매년 산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 결산보고서와 가스공급량 등이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적합한지 등 공급 적정원가 분석을 통해 산정하고 있다.

(담당자 : 기후에너지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팀 이은영 / ☎ 031-8008-6021)

나.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지원 사업 추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에 의거 도,시·군비를 지원하여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년부터 도비 8,708백만원을 지원하여 154개 구역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확충하였다. '19년에는 28개 시·군 80개 구역 6,775가구를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에너지 사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담당자 : 기후에너지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팀 이은영 / ☎ 031-8008-6021)

3. LPG배관망 체계 구축

가. LPG배관망 체계를 통한 집단공급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 주민은 LPG용기, 등유 등을 사용하여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LPG집단공급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 및 대량공급을 통해 공급단가를 낮추는 등 연료환경 개선을 위해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 표 2-2-24 > 연료별 가격비교

구 분	도시가스	LPG 용기	실내등유	LPG 마을단위
세후 소비자 가격	799원/m ³	3,876원/m ³	2,234.8원/m ³	2,055.5원/m ³
총발열량(MJ/단위)	43.6	104.8	36.8	104.8
MJ당가격	18.33	36.99	25.45	21.33
LNG 대비지수(%)	100.0	201.9	139.2	116.4

※ 자료출처 : 도시가스 협회, 석유공사 오피넷, LPG산업협회

(담당자 : 기후에너지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팀 양일권 /☎ 031-8008-6022)

나. LPG배관망 설치 지원사업 추진

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에 의거 도·시·군비를 지원하여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도비 10,199백만원을 지원하여 62개 마을의 LPG집단공급체계를 구축하였다. '19년에는 10개 시·군 14개 마을 812가구를 지원하여 상대적 연료비용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였다.

< 그림 2-2-15 >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담당자 : 기후에너지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팀 양일권 /☎ 031-8008-6022)

② 마을단위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4년부터 국비 4050백만원을 지원하여 27개 마을의 LPG집단공급체계를 구축하였다. 도 추진사업은 마을별 사업비의 10~50%를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국비사업은 마을별로 1.5억원 한도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주로 30가구 내외의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년은 3개 시·군 9개 마을 352가구를 지원하였다.

(담당자 : 기후에너지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팀 양일권 / ☎ 031-8008-6022)

4. 도민 가스안전 확보

가. 현황 및 문제점

가스 3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안전관리 규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보완되었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가스안전 전문기관의 권한이 강화되어 가스 사고 발생은 감소하고 있으나 독거노인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인한 관리 미흡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 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2.5%('19.12월 기준)로 전국기준 15.5%에 비해 낮은 편이나 9개 시·군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더욱이 점차 노인인구 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전망증 등에 의한 고령자들의 가스 사고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자 외에도 취약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 부족으로 가스안전에 대해 무관심 또한 가스 사고의 원인이 될 것이라 예측된다.

나. 도민 가스안전 확보 사업 추진

① 가스안전장치(타이머 콕) 보급사업

모든 연소기(LPG, LNG) 사용하는 가구 중 가스안전 취약계층으로 판단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치매환자 등에 가스안전장치(타이머 콕)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2년부터 '19년까지 31개 시·군에 대해 31,120개(14.2억원)를 설치해주었으며,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해 도 내 가스안전 취약계층의 가스사고 예방과 함께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 하였다.

< 그림 2-2-16 > 가스안전장치 보급



(담당자 : 기후에너지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팀 조철희 /☎ 031-8008-6024)

②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

LP가스로 인한 사고가 전체 가스사고의 65%를 차지하는 등 LP가스는 판매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LP가스 사용 및 안전관리 실태 확인을 위해 지역청년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청년인턴으로 채용하여 LP가스 사용가구를 방문 점검하는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19년은 최초로 5개 시·군에서 시범추진하여 청년인턴 174명이 LP가스 사용 14만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청년에게는 가스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인턴 경험을 제공하는 등 실무경험을 갖춘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도민 가스 가스안전확보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 의식 환기등의 사업 성과를 거두었다.

< 그림 2-2-17 > LP가스 안전지킴이



(담당자 : 기후에너지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팀 양일권 /☎ 031-8008-6022)

③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LPG용기 사용가구 중 파손, 균열 또는 이탈 등에 취약한 LPG고무호스 공급관(압력조절기~중간밸브)을 금속배관으로 교체가 2030년부터 의무화 됨에 따라 서민층에 대한 금속배관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11년부터 25,348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서민층 가스안전 확보에 기여하였다.

(담당자 : 기후에너지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팀 양일권 /☎ 031-8008-6022)

제4절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1.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2.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

1.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가.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1) 사업목적

무더위 쉼터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동 불편한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에너지복지 실현하고자 한다.

2) 추진배경

2018년 여름 111년 만의 기록적 폭염이 발생하여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혹서기 대비 에너지복지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독거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냉난방 이용으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에너지 바우처, 연탄쿠폰, 난방유 지원 등 혹한기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에 혹서기 무더위 쉼터, 노인돌봄시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에너지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여 2019년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3) 지원내용

사업규모는 냉방기기(에어컨) 설치사업 566백만원, 전기요금 지원사업 67백만원을 지원하여 총 633백만원 전액 도비로 추진하였다. 2019년 저소득 독거노인 586가구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하였고 안전한 에어컨 사용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협조를 받아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구당 월 32,500원의 하절기(06~08월)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경기도의 맞춤형 에너지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였다.

< 그림 2-2-18 >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담당자 : 기후에너지정책과 에너지복지팀 김세난 / ☎ 031-8008-6028)

나. 에너지바우처 사업

1) 사업목적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적정 수준의 난방을 영위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생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2) 지원내용

에너지 바우처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 공급자에게 제시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족으로, 2019년에는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다. 각 시·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카드발급을 받은 대상자는 난방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2019년에는 경기도 105,157가구에 가구당 약 89천원을 지원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연탄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탄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외계층(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장애인)이다. 또한 동절기 난방연료인 난방유(등유)를 지원하여 기초 에너지 이용보장과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다.

(담당자 : 기후에너지정책과 에너지복지팀 김새난 / ☎ 031-8008-6028)

2.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1) 사업목적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고효율 조명기기(LED)를 무상으로 지원으로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부여하고 에너지복지를 실현한다.

2) 지원내용

고효율 LED조명은 백열전구 대비 88%, 형광등 대비 45%의 전력절감 효과가 있고 15,000시간의 수명으로 백열전구(1,000시간)와 형광램프(5,000시간) 비교하여 약 3~15배 정도의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2014년부터 추진하여 2019년도에는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1,529가구와 사회복지시설 523개소의 기존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였다. 이는 기존조명 대비 에너지사용량 2,122,812kWh 절감과 51% 절감률 효과로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담당자 : 기후에너지정책과 에너지복지팀 김태선 / ☎ 031-8008-6026)

나.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

1)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 중 에너지 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등 운영비를 절감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도모한다.

2) 지원내용

2013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2019년에는 77개소(경로당 56, 마을회관 9, 어린이집 10, 복지시설 2)에 271kW를 설치하였다. 이는 16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효과이며, 103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한 것과 같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 그림 2-2-19 >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





(담당자 : 기후에너지정책과 에너지복지팀 김새난 /☎ 031-8008-6028)

다. 에너지 행복나눔 사업

1) 사업목적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인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및 솔루션 제공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절감 등 에너지 행복나눔을 실천한다.

2) 지원내용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노인양로 및 아동양육 사회복지시설 25개소에 맞춤형 에너지 진단 및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건물, 신재생, 전기, 시설설비 등 분야별 에너지 진단을 추진한 후, 쿨루프(차열페인트), 창호교체, 방염방한커튼, 창문 단열필름 등 에너지 절약 물품을 지원하여 선순환되는 에너지 절약 체계를 구축하였다.

< 그림 2-2-20 > 에너지 행복나눔 사업



(담당자 : 기후에너지정책과 에너지복지팀 김새난 /☎ 031-8008-6028)

제 3 장

도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

제1절 일반현황

제2절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청정한 대기질 조성

제3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확대 보급

제4절 운행 이동오염원 관리강화로 미세먼지 저감

제5절 미세먼지 저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제1절

일반현황

1. 대기환경관리 현황

2. 미세먼지 발생원 분석

1. 대기환경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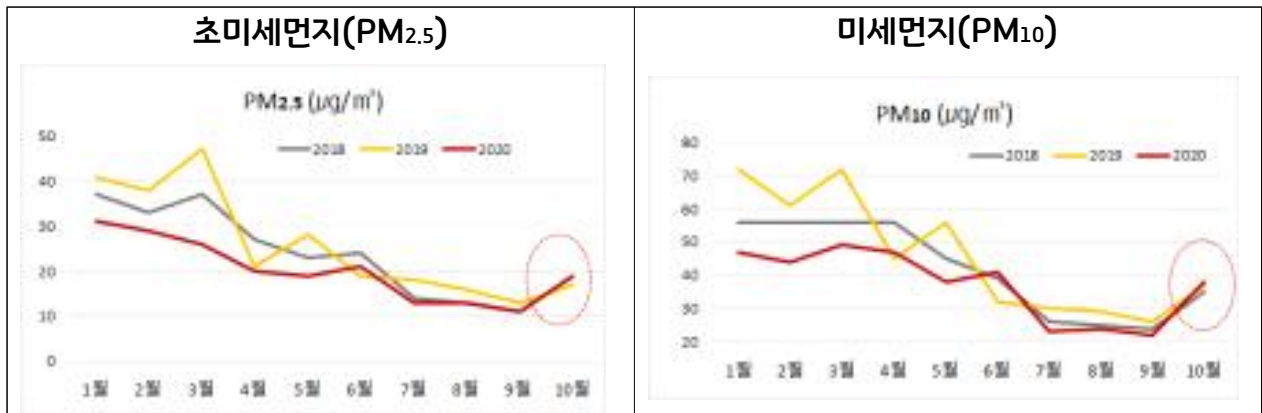
가. 대기환경현황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05.11~)과 저황유와 LNG 등 청정연료의 공급확대, 배출규제 강화 등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추진으로 SO₂, PM₁₀의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기후 변화에 따른 온난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NO₂, O₃ 농도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세먼지(PM₁₀)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농도수준이며, 특히 2013년부터는 기상 및 국외 영향 등으로 다시 감소세가 정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기 정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축적과 국외로 부터 유입이 더해지면서 고농도 초미세먼지(PM_{2.5}) 발생농도가 상승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국외 유입에 따른 국내 대기 오염 기여도는 대개 절반 수준이나 계절, 기상조건에 따라 상이하며, 고농도 사례별로 다르다. 중국 등 주변국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단기간 내 줄이기 어려운 점, 대기정체 등 기상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2-3-1 >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연도별 농도비교



자료 : 에어코리아, 한국환경공단

나. 대기환경 보전정책 추진체계

1) 대기오염물질 지정

정부는 대기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12.5.23)하여 대기오염물질 분류체계를 기존 61종의 '대기오염물질'과 3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서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세분화되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17.1.26)으로 미규제 대상 오염물질 중 국내 배출량, 위해성, 모니터링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을 64종으로 확대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 중 지속적인 감시·관찰이 필요한 암모니아 등 43종은 '유해성 대기감시물질'로 새로이 지정하였다.

2) 배출허용기준 설정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이미 설치된 배출시설에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신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는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담당자 :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기획팀 이재정 /☎ 031-8008-4118)

2. 미세먼지 발생원 분석

미세먼지 발생은 배출원으로부터 입자상태(PM₁₀)로 배출되는 경우(1차적 발생)와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PM_{2.5})로 변환되는 경우(2차적 발생)로 나눌 수 있다..

1차적 발생은 경우 자동차의 배기관이나 공장의 굴뚝에서 검은 매연의 형태로 배출되는 것을 말하며, 2차적 발생은 자동차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이 배출된 후 대기 중에서 수증기, 암모니아 등과 결합 광화학 반응을 거쳐 초미세먼지로 변환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CAPSS, 2019)와 대기오염집중측정소 고농도 사례집(2018)에 따르면, 수도권외의 경우 화학반응에 의한 2차 생성 비중이 전체 초미세먼지(PM_{2.5}) 발생량의 72%를 차지할 만큼 매우 높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국외영향과 국내배출로 대비되며, 월별(계절별)로 기후조건(풍향/풍속, 강수량 등)에 따라 다르다.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국외 영향은 평상시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까지 달할 만큼 주변국으로부터 큰 영향이 분석된 바 있다.

몇 년전부터 중국이 대기오염방지법 강화('16.1)와 제13차 5개년 경제계획('16~'20)에서 '친환경'을 공표('16.3)하는 등 강력한 환경오염 방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미세먼지가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나, 당분간 국외영향은 지속될 것을 전망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CAPSS, 2017)에서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을 살펴보면, 도로이동오염원 33%, 비도로이동오염원 16.2%, 비산먼지 11% 순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경기도의 배출원별 기여도는 화물차 18.3%, 건설장비 13.4%, RV차량 7.7%, 제조업연소 6.7%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세먼지의 발생원과 기여도는 복잡 다양하므로 과학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규모의 예산을 투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당자 :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기획팀 이재정 /☎ 031-8008-4118)

제2절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청정한 대기질 조성

1.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2.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3.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4.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 실내공기질 관리
6. 저녹스 버너 및 보일러 지원사업
7.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운영
8.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지원
9.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가. 추진배경

우리나라 대기환경은 과거 20여 년 동안 현저하게 개선되어왔다. 대기오염측정망 관측 결과에 따르면 PM₁₀은 전국적으로 뚜렷하게, PM_{2.5}는 완만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미세먼지 농도('19년 PM₁₀ 40 $\mu\text{g}/\text{m}^3$, PM_{2.5} 23 $\mu\text{g}/\text{m}^3$)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보다 2배정도 높은 수준이며,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대기질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른 나라의 PM_{2.5} 연평균 농도를 살펴보면, 프랑스(파리) 14 $\mu\text{g}/\text{m}^3$ ('18년), 영국(런던) 10 $\mu\text{g}/\text{m}^3$ 일본(도쿄) 12.8 $\mu\text{g}/\text{m}^3$ ('17년), 미국(LA) 13.3 $\mu\text{g}/\text{m}^3$ ('18년)이며, 한국(경기도)는 26 $\mu\text{g}/\text{m}^3$ ('19년)이었다.

우리 나라의 연평균 농도는 감소 추세이나, 고농도 발생일수와 농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의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횟수는 2017년도에는 23일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33일, 2019년도에는 38회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인 감축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경기도의 경제적·지리적 여건은 미세먼지 관리에 매우 불리하다.

인구는 전국의 25.7%인 13,283천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공장은 전국 공장의 35.5%에 해당하는 65,559개가 자동차는 577만대가 경기도에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편서풍 지역으로 중국 및 충남화력발전소의 상시 영향권에 위치해 있다.

이런 경기도의 여건을 극복하고 도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의 새로운 대안 마련 필요성에 따라 2018년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나. 종합대책 주요내용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의 중기 행정계획으로 6대 분야 49개 세부과제에 대해 총사업비는 1조 7,671억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저감목표는 2017년 대비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PM_{2.5})농도 33% 개선을 목표로 세부목표는 아래와 같다.

< 표 2-3-1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저감목표

오염물질	2017	2020	2022	비고
미세먼지PM _{2.5} ($\mu\text{g}/\text{m}^3$)	27	22	18	

이동오염원 관리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와 노후경유차 대책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며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장을 관리하는 경기도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사업장 감시 강화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며, 생활주변에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를 집중 지원하고 도로변 재비산먼지 관리뿐 아니라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파쇄기 지원과 조립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해 나가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민감계층의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정보에 대한 도민 알림서비스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성분측정소를 확충과 노후측정망을 교체 및 신규설치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세먼지 업무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표 2-3-2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분 야	주 요 사 업	예산 (‘18~’22)
① 이동오염원 관리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10개 사업	1조 2,097억원
②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9개 사업	935억원
③ 사업장 관리	배출사업장 과학적 점검 등 7개 사업	570억원
④ 건강보호 및 도민홍보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보급 등 15개 사업	2,808억원
⑤ 과학기술 기반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등 4개 사업	1,212억원
⑥ 국내·외 협력	청정대기 국제포럼 등 4개 사업	49억원

자료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2018

(담당자 :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대응팀 강애숙 / ☎ 031-8008-4277)

2.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가. 추진배경

우리나라 수도권은 세계적인 대도시권으로 급격하게 성장해 오면서 인구나 산업시설, 교통 등이 초고밀도로 집중되고, 그에 따른 환경부하 역시 가중되어 옴. 여기에 세계 최대의 환경오염 대국인 중국과 인접하여, 그 영향으로 OECD 주요 대도시권 중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이 됨.

이 같은 배경에서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2015년부터 2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은 환경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은 크게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각 광역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으로 구성됨.

나. 시행계획 주요내용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인 경기도 28개 시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7년~2019년이며,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인체위해성 중심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PM₁₀, PM_{2.5}, NO₂, O₃의 목표농도를 설정하고, PM₁₀, PM_{2.5}, NO_x, SO_x, VOCs를 배출량 관리 대상물질로 설정함.

1차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에서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1조 1,770억원의 예산이 배출시설 관리,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에 투자하였으며, 2차 시행계획은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이라는 전략적 비전을 기본계획과 공유하고, 기존의 PM₁₀, NO₂에 PM_{2.5}, O₃을 추가하여 새로운 목표 농도를 설정하였음.

2차 경기도 시행계획(변경)에서는 ‘대기오염 걱정 없는 경기도’라는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 기존 저감대책에서 추가적으로 인체위해성 관리 중심 사업 및 고농도 지역 관리에 역점한 저감대책, 민감계층 중점 보호 기반 강화 사업 등을 제시하였음. 총 5개 전략 각 부문별로 85개 시책사업을 수립하였음.

< 표 2-3-3 > 대기질 개선 목표

구 분	PM ₁₀ ($\mu\text{g}/\text{m}^3$) 연평균	PM _{2.5} ($\mu\text{g}/\text{m}^3$) 연평균	NO _x (ppb) 연평균	O ₃ (ppb) 8시간 평균 99백분위수
경기도	37	20	20	70

자료 :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변경), 경기도

(담당자 : 미세먼지대책과 공동협력팀 권다영 /☎ 031-8008-3623)

3.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 비상저감조치 개요

오늘날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2018년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로 인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하기 시작했고, 2019년 3월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결과이며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결과 정부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시 비상저감조치를 2017년 2월부터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 하던 것을 2019년부터 전국에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나. 시행 및 해제기준

비상저감조치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저감조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시행 및 해제기준은 아래와 같다.

< 표 2-3-4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시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단계구분	예비-관심(1)-주의(2)-경계(3)-심각(3+α) ※ 순차에 관계없이 발령 가능
시행기준 (PM _{2.5})	<예비> 관심이전단계 ①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모레(D일) "매우나쁨"(75 μ g/m ³ 초과 예보)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μ g/m ³ 초과(예보) <관심> 비상저감조치기준 ① 당일 50 μ g/m ³ 초과+내일50 μ g/m ³ 초과 or ② 당일 주의보·경보+내일50 μ g/m ³ 초과 or ③ 내일 75 μ g/m ³ 초과) <주의> 관심 2일 + 1일 지속예상 or 150 μ g/m ³ 2시간 + 다음날 75 μ g/m ³ 초과 <경계> 주의 2일 + 1일 지속예상 or 200 μ g/m ³ 2시간 + 다음날 150 μ g/m ³ 초과 <심각> 경계 2일 + 1일 지속예상 or 400 μ g/m ³ 2시간 + 다음날 200 μ g/m ³ 초과
해제기준	• 비상저감조치 발령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μ g/m ³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구분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 21시 자동해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경기·서울·인천)의 경우 2개 시·도 이상 발령기준 충족시 3개 시·도 모두 비상저감조치 시행

자료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주민 행동요령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 그림 2-3-2 >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행동

미세먼지를 줄이는 4가지 실천

01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운전할 때는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공회전, 과속, 과적은 NO!)



02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03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04 불법소각이나 불법배출, 못 본 척 말고 바로 신고하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실천

01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



02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하기!



03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미세먼지 제거하기!



04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라.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

제도 시행이후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보면 2017년 1회, 2018년 6회 2019년 14회, 2020년 12월 현재 2회가 시행되었다.

2019년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정체로 인해 이른 봄철 7회 연속 발령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로 인해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걱정은 최고조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되었다.

< 표 2-3-5 > 비상저감조치 시행 횟수

시행횟수		시행일	발령농도 ($\mu\text{g}/\text{m}^3$)		
			경기	서울	인천
2020년(2회)	23	'20.2.15(토)	53	58	39
	22	'20.1.11(토)	53	55	56
2019년(14회)	21	'19.12.11(수)	63	61	58
	20	'19.12.10(화)	49	46	35
	19	'19.3.7(목)	120	111	105
	18	'19.3.6(수)	150	144	115
	17	'19.3.5(화)	126	114	123
	16	'19.3.4(월)	82	66	71
	15	'19.3.3(일)	98	85	100
	14	'19.3.2(토)	96	81	79
	13	'19.3.1(금)	63	55	47
	12	'19.2.23(토)	67	61	52
	11	'19.2.22(금)	71	66	50
	10	'19.1.15(화)	116	120	100
	9	'19.1.14(월)	81	75	70
	8	'19.1.13(일)	81	72	60
2018년(6회)	7	'18.11.7(수)	71	55	52
	6	'18.3.27(화)	64	61	56
	5	'18.3.26(월)	70	82	55
	4	'18.1.18(목)	67	59	52
	3	'18.1.17(수)	91	88	69
	2	'18.1.15(월)	60	50	51
2017년(1회)	1	'17.12.30(토)	99	95	83

(담당자 :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대응팀 강애숙 / ☎ 031-8008-4277)

4.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가. 계절관리제 개요

계절관리제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고농도 시기(12월 ~ 익년 3월)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기저농도를 낮춰 고농도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여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초미세먼지로 인해 재난발생시 미세먼지의 긴급 저감을 위해 실시하는 ‘비상저감조치’와 구분된다.

계절관리제 도입배경은 매년 12월~3월은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29\mu\text{g}/\text{m}^3$)는 그 외 기간(4~11월) 평균농도($20(\mu\text{g}/\text{m}^3)$)대비 약 45%가 높아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국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에 계절관리제 도입을 제안(2019년 10월) 하였고, 정부에서 도입결정을 하게 되었다.(2019년 11월)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별로 추가적인 배출감축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지역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설점검 강화 등도 병행한다.

나. 시행계획 주요내용

'19년 처음 시행한 경기도 계절관리제는 '20. 5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20년에는 제2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경기도의 제2차 시행계획은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송, 산업,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 건강보호, 업무협력의 5대 분야 19개 단위과제를 설정하였다.

< 표 2-3-6 > 경기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주요 추진과제

분 야	주 요 사 업-2
① 수송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4개 사업
② 산업	사업장·공사장 불법 배출행위 특별단속 및 감시강화 등 2개 사업
③ 생활	불법소각 예방을 위한 영농잔재물 현장파쇄 지원 등 5개 사업
④ 건강보호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등 5개 사업
⑤ 업무협력	31개 시·군 공동대응을 위한 시군 자체이행계획 수립 등 3개 사업

경기도는 수립된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31개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자 :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대응팀 강애숙 /☎ 031-8008-4277)

5. 실내공기질 관리

가. 실내공기의 중요성

현대인은 하루 일과의 80~90%를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한 실내 공기 오염은 우리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일반인보다는 노약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수많은 고층건물과 지하공간에서 주기적인 청소나 적절한 환기 없이 이중창 등으로 밀폐된 실내에서 생활하면서 간혹 답답하고 피로를 느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때가 많다. 최근 '새집증후군(SHS : Sick House Syndrome)', '건물증후군(SBS : Sick building Syndrome)', '복합화학물질과민증(MCS : Multiple Chemical Sensitivity) 등은 피로, 두통, 현기증, 집중력 감퇴 등이 수반되는 증상이다.

실내공기 오염은 그 원인과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우리가 미리 대처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따라서, 실내공기질 오염원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환경청(USEPA)은 오염된 실내공기가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점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고하였으며,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환경문제로 구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 사망자 수는 연간 600만명에 이르며, 이중 실내공기 오염에 의한 사망자는 280만명에 이른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실내공기 오염은 대기오염보다도 폐에 영향을 미칠 확률은 약 천배 높으며, 실내 오염도를 20%만 줄여도 급성 기관지질환 사망률을 최소 4~8%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환경부 환경백서, 2020).

나. 실내공기 오염물질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 실내오염물질은 무척 다양하다. 미세먼지(PM₁₀, PM_{2.5}), 포름알데히드(HCHO) 등이 대표적인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표 2-3-7 >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인체 영향

오염물질	주요 발생원	인체영향
먼지, 중금속	대기 중 먼지가 실내로 유입, 실내 바닥의 먼지, 생활 활동 등	규폐증, 진폐증, 탄폐증, 석면폐증 등
석 면	단열재, 절연재, 석면타일, 석면브레이크, 방열재 등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석면폐증, 폐암, 중피증, 편평상피 등

연소가스 (CO, NO ₂ , SO ₂ 등)	각종 난로, 연료연소, 가스렌지 등	만성 폐질환, 기도저항 증가, 중추신경 영향 등
라 돈	흙, 바위, 지하수, 석고보드 등	폐암 등
폼알데히드	각종 합판, 보드, 가구, 단열재, 담배연기, 화장품, 옷감 등	눈, 코, 목 자극증상, 기침, 설사, 어지러움, 구토, 피부질환, 비염, 기억력 상실 등
미생물성물질 (곰팡이, 박테리아, 꽃가루 등)	가습기, 냉방장치, 냉장고, 애완동물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질환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스티렌, 알데히드, 케톤 등)	페인트, 접착제, 스프레이, 연소과정, 드라이크리닝 의복, 방향제, 건축자재, 왁스 등	피로감, 정신착란, 두통, 구토, 현기증, 중추신경 억제작용 등
오 존	복사기기, 생활용품, 연소기기	기침, 두통, 천식, 알레르기성 질환

자료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다.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는 규모, 종류,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크게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법정 시설은 시설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측정, 교육이수, 자재사용 제한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 26개의 시설군으로 구분하고, 시설 소유자(관리자)는 오염물질 10항목을 기준 이내로 관리해야 하며, 이중 유지기준에 속하는 미세먼지(PM₁₀, PM_{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6개 물질은 연1회 측정하고, 권고기준에 속하는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등 4개 물질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관리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을 받아야하며, 3년마다 보수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2004. 5. 30. 이후 시행되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의 항목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규칙」 2016. 12. 12. 개정을 통해 2018. 1. 1. 이후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공사는 라돈 항목을 추가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에 쓰이는 자재는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친환경 건축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오염물질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전 난방의 온도를 30~40℃로 설정하여 5~6시간동안 유지한 후 모든 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Bake-Out을 3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고속·직행형)는 연1회 이상 전체 차량(노선)의 20%이상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를 부여하여 차량 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PM_{2.5}(50 μ g/m³)], 이산화탄소(혼잡시간 2,500ppm, 비혼잡시간 2,000ppm)] 미만으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도록 '19. 4. 2.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어 '20.4.3.부터 시행하고 있다.

1)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 26개 시설군

< 표 2-3-8 >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구 분	개 념	규 모
지하역사	지하철의 역사로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딸린 시설 포함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지하도에 위치한 상가를 의미하고 연속되어 있는 지하도 상가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에서의 대합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5호)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인 공항의 여객터미널(항공법 제2조)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항만시설중 대합실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항만시설의 승객이 이용하는 대합실(항만법 제2조)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조사·연구·학습·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 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로서 국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이 해당되며 대학·학교·특수·병영 도서관은 제외(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 제1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박물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역사·인류·민속·예술·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로서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박물관과 사설박물관을 모두 포함(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미술관	박물관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으로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등을 포함(의료법 제2조)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병상수 100개 이상)
실내주차장	사방이 구획되어 있는 실내(지상·지하 모두 포함)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로서 대형빌딩, 백화점의 주차장 등이 해당(기계식 주차장과 공동주택 등에 부속되어 특정인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은 제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구 분	개 념	규 모
철도역사의 대합실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승하차를 위해 대기하는 장소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점포	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대형점, 시장(2006.6.24일 이후 설치된 시장은 제외됨),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을 포함(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모든 대규모점포
보육시설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인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서 430제곱미터인 국·공립시설 및 860제곱미터인 법인, 직장, 민간보육시설 해당	연면적 430제 곱미터 및 860 제곱미터 이상
노인요양시설 또는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 설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장례식장 (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정)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장례의식을 행하는 장소로서 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 전문장례식장 등을 포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목욕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산후조리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실내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모든 실내영화상영관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실내전시시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옥내시설로 한정한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옥내시설)
인터넷 게임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 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수 1천석 이상

구 분	개 념	규 모
실내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객석 수 1천석 이상

자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2) 강화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제개정 시행

경기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의 유지기준을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를 2006년 4월 3일 제정·시행 중이다.

지하역사, 도서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등 각기 다른 다중이용시설의 용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PM₁₀, PM_{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의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기존 시설은 환기장치 등 시설보완을 감안하여 조례제정 3년 후인 2009년 4월 4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소유자)는 경기도 조례에 의하여 제정된 강화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서 등을 참고하여 청소, 환기 등의 적정운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한다.

< 표 2-3-9 >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 ₁₀) ($\mu\text{g}/\text{m}^3$)	초미세 먼지 (PM _{2.5}) ($\mu\text{g}/\text{m}^3$)	이 산 화 탄 소 (ppm)	폼알데하 이드 ($\mu\text{g}/\text{m}^3$)	총 부 유 세균 (CFU/ m^3)	일 산 화 탄 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경기도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70 이하	-	7 이하
	국가	100 이하 (15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경기도	75 이하	35 이하	900 이하	70 이하	800 이하	5 이하
	국가	75 이하 (100 이하)	35 이하	1,00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800 이하	10 이하
다. 실내주차장	경기도	180 이하	-	1,000 이하	70 이하	-	17 이하
	국가	200 이하	-	1,000 이하	100 이하	-	25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경기도	200 이하	-	-	-	-	-
	국가	200 이하	-	-	-	-	-

자료 :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3) 법정관리 규모미만 시설관리 강화

경기도는 2019년말 기준으로 총 16,932개의 법정관리 규모미만인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의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이 있다.

법정관리 대상시설은 매년 자가측정을 실시하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정관리 규모미만의 시설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들로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환경에서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2009년부터 법정 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 시설들에 대하여 무료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오염도가 높은 시설에 대하여는 환기 요령 등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19년도에는 11,636개소를 측정하여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실내공기질을 정밀 측정할 수 있는 측정대행업체에서 현장측정하여 정밀하고 정확한 데이터 산출과 '맞춤형 컨설팅' 실시를 통해 누구나 쉽게 실내공기질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2015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측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는 환경성 질병 발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등 실내 방출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앞으로 산·학·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4) 「맑은 숨터」 만들기

환경문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 있어 환경개선과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복지가 절실한 계층이다. 이러한 취약계층의 실내공기질 여건을 개선하고자 경기도에서는 「맑은 숨터」라는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맑은 숨터」 사업은 시설내부 노후화, 지하, 실내공기질 초과정도 등 열악한 시설들에 대해 환기청정기, 멸균기, 친환경페인팅, 벽지, 바닥재, 조명기구 등 실내공기질 개선품목을 집중 지원하여 실질적인 공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경기도는 2016년도부터 「맑은 숨터」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도에 10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사업을 412개소로 확대 실시하였다.

5) IoT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 머무르게 되는 국민 생활패턴 변화와 다중이용시설의 급격한 증가 추이 고려하여 '19. 7. 1.부터 다중이용시설의 법적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강화*되었다.

*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PM₁₀ 기준 강화 : (기준) 100 μ g/m³ → (변경) 75 μ g/m³

PM_{2.5}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의무화 및 기준 강화 : (기준) 70 μ g/m³ → (변경) 35 μ g/m³

그러나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자)의 측정설비 및 관리능력 등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여, 경기도에서는 '19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건강취약계층 이용 시설(어린이집, 노인요양원, 의료원, 산후조리원 및 도서관) 120개소에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사업을 시작하여 '20년 97개소, '21년 113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 IoT 기반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센서를 설치 및 스마트폰 앱·공기정화장치와 연동하여 실내공기질을 과학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 '19년 120개소(600개센서), '20년 100개소(500개센서), '21년 113개소(565개센서)

위 사업의 추진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년 1회만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 하던 기존의 관리 형태가 실시간으로 실내오염원을 상시측정(365일 24시간)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면 공기정화장치가 자동으로 작동 및 풍량 조정되는 등 과학적 관리가 가능해져 도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자 :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기획팀 김선화 /☎ 031-8008-3563)

6. 저녹스 버너 및 보일러 지원사업

가. 추진 배경

경기도에서는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대기질 개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및 가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고가의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녹스 버너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4)으로 가정용 보일러 설치 의무화가 시작되면서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도민 부담완화를 위하여,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표 2-3-10 > 일반버너와 저녹스버너 비교

구분	일반버너	저녹스버너
질소산화물 저감 방식	-	연료·공기 혼합 비율 및 공기량 조절 방식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	80~215ppm	36~163ppm ※ 저녹스버너 인정기준 : 40~180ppm
사용 연료	중유, 등유, LNG, LPG 등	중유, 등유, LNG, LPG 등

< 표 2-3-11 > 일반보일러와 저녹스보일러 비교

구분	일반보일러	저녹스보일러
특 징	120℃이상의 배기가스와 수증기배출로 열손실 큼	발생 열 회수를 통하여 열효율이 높으며,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장착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기여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	173ppm	20ppm
에너지효율	76-83%	92%이상

자료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나. 추진 현황

경기도의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은 2006년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고 현재는 경기도 전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2019년까지 3,385대를 보급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시행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은 2019년까지 23,769대를 지원하였다.

다. 향후 계획

경기도에서는 사업장 및 생활 속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하는데 실질적 기여를 돕고, 이를 통하여 도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저녹스 버너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자 : 미세먼지대책과 공동협력팀 이지윤 /☎ 031-8008-3624)

7.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운영

국립환경과학원의 '2016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인구와 자동차·발전소 등이 밀집한 경기도는 1만1,127t을 배출해 전국 시·도 중 4위를 차지했다. 그 중 산업·건설부문(사업장·공사장) 및 생물성연소 부문(불법소각)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33%를 차지하는 등 지역 내 핵심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관내 지자체 단속 공무원 수는 부족한 실정이다.

< 표 2-3-12 > 경기도 배출사업장 단속인력 현황

배출사업장수	지도·점검 공무원 수	공무원 1인당 배출사업장
29,797개소	148명	202개소

자료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단속 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핵심 배출원 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미세먼지 핵심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민간 감시단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에 124명, 2020년 104명의 감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미세먼지 민간 감시단을 운영 중에 있다.

미세먼지 민간 감시단은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지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 감시, 불법소각 행위 및 약취배출업소 감시 등 지역 내 핵심배출원에 대한 순찰 및 감시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21년에도 125명의 인력을 채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대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담당자 :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대응팀 홍종민 /☎ 031-8008-3564)

8.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지원

미세먼지는 담배연기와 함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발암물질 그룹1에 속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의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시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노출저감 및 배출관리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지정 기준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10개소 이상 집중된 지역 중 미세먼지(PM₁₀) 또는 초미세먼지(PM_{2.5})의 연평균 농도가 환경기준(PM₁₀ 50 μ g/m³, PM_{2.5} 15 μ g/m³)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군 여건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는 스마트 에어샤워 시설, 바닥표시등, 미세먼지 알리미 등을 설치하고,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미세먼지 저감 식물벽, 미세먼지 쉼터, 에어커튼을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제공, 회피·저감시설 지원과 같은 생활밀착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 놓고 숨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표 2-3-13 > 경기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현황

시군명	소재지	지정일	시군명	소재지	지정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동 1동,3동 일원	2020.03.04.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793-1 일원	2020.10.07.
오산시	오산동 및 원동 일원	2020.04.01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일원	2020.11.25.
부천시	삼정동, 오정동, 내동 일원	2020.06.15.	수원시	영통 2-3동 일원	2020.12.01.
이천시	창전동, 중리동 일원	2020.08.07.	화성시	동탄 1동,3동 일원	2020.12.01.

자료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담당자 :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대응팀 홍종민 /☎ 031-8008-3564)

9.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가. 도로재비산먼지 관리 필요성

도로 재비산먼지란 주행차량의 타이어와 도로면의 마찰에 의해서 재비산되는 먼지로 Al, K, Ca 등의 지각물질에 기인하는 자연적 성분과 배출가스, 타이어·브레이크 마모에 의한 Cd, Pb, Cr 등의 인위적 성분을 포함한다. 또한 도로 재비산먼지는 도로변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켜 보행자 및 거주민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며, 심미적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나. 도로청소방법

도로청소 방법은 크게 기계식 청소장비를 이용한 청소와 인력을 이용한 청소로 구분되며, 기계식은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분류된다.

< 표 2-3-14 > 도로청소방법 분류

구 분	청소방법		
기계식 청소장비를 이용한 청소	이동식	고압살수차	물탱크장착
		노면청소차	브러쉬 장착, 필터 장착(선택)
		분진흡입차	브러쉬 미장착, 필터 장착
	고정식	클린로드 시스템	
인력을 이용한 청소	환경미화원 등 순수 인력에 의한 도로청소		

자료 : 도로청소 가이드라인 (2016 환경부)

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기초지자체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말 현재 도내 운행 중인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은 총 336대이고 각 차량별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 표 2-3-15 >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별 장단점

운영차종	장 점	단 점
노면청소차	도로변 토사, 각종 쓰레기 수거에 가장 효율적	작업시 2차 비산먼지 배출 및 동절기 가동율 저하
고압살수차	노면 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제거효과 탁월	지하수 2차오염 및 동절기 운용불가 물사용량 과다 도로파손
분진흡입차	동절기 작업가능, 2차 비산먼지 배출 없음 (필터 적용)	노면 중앙 위주 청소 낮은 흡입력으로 큰 쓰레기 청소효율 저하

자료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담당자 : 미세먼지대책과 공동협력팀 남기영 / ☎ 031-8008-3565)

제3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확대 보급

1. 수소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2.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3. 천연가스 버스 보급대책
4.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1. 수소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가. 수소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현황

경기도는 오염물질 발생이 없는 미래차인 수소차를 2019년부터 보조금을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여 596대가 운행 중에 있고 2022년까지 3,000대 보급 할 계획이다. 하남, 여주, 안성 등 휴게소에 4개소 설치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승용용)은 최대 3,000백만원까지 지원받아 설치 하였다. 또한 안산, 평택, 안성 등 지역에서 지자체 보조 및 민간보조 사업으로 수소충전소 15개소 설치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40개소를 구축 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소 설치비 보조금 : 승용용 3,000백만원, 버스용 6,000백만원

나. 미래의 친환경차로서의 수소전기차 보급

최근 자동차 사업은 세계적으로 규제 강화에 직면하여 격변기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에서 수소, 전기에너지 등으로의 수송용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충전시간 대비 운행거리가 짧은 전기차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수소전기차(FCEV)가 미래의 친환경차로 함께 대두 되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자동차 내에 장착된 연료전지(Fuel Cell)에서 연료인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얻은 후, 생산된 전기로 모터를 움직여 주행하는 자동차로, 배기가스로 미반응 산소와 질소, 수증기만이 배출되어 전형적인 무공해자동차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수소전기차에 최대 13,000달러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수소충전소에는 설치비의 70~90% 지원과 운영비 10만 달러를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수소전기차에 최대 302만 엔(정부 202만 엔, 지자체 40~160만 엔)의 보조금과 약 18만 엔(취득세 면제, 자동차세 75% 감경)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690억 원을 투자하여 수소전기차 개발 실증 사업을 추진, 현재 양산체제를 구축하였다. 환경부는 수소전기차의 기술검증과 초기 수요 제공을 위해 2013년에 공공부문에 수소연료전기차 5대, 충전소 1기를 시범 보급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일반 개인까지 보급대상을 확대 하였다. 2018년 신차 출시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2018년까지 주요 거점도시를 대상으로 수소충전소 14기 설치 및 수소전기차 908대를 보급하였다. 향후 2022년까지 수소차 6.5만대, 수소버스 2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자료 : 환경백서 (2020 환경부)

(담당자 : 미세먼지대책과 친환경차보급팀 유충호 /☎ 031-8008-3617)

2.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가.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현황

경기도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2011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우선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시 동급 내연기관 차량과의 가격차 일정 부분을 보조하고, 충전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였다. '13년부터는 안산시에서 도내 최초로 민간에 대해 전기자동차 10대를 보급하였다. 2018년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수립시 전기차 타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 3만대 보급, 전기 충전인프라 1.5만기 설치를 목표를 수립하였다. 특히 금년들어 전기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조금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홍보와 주행거리 등 차량의 성능 및 경제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이 보급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이에 못지 않게 아직까지는 크게 부족하지만 계속 확충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인프라도 수요자들을 증가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2019년에는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을 도입함으로써 경유 화물차 사용으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환경저해물질이 효과적으로 저감될 전망이다. 그 결과 '2019년 12월말 경기도내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11,750대로 2018년 6,383대 대비 1.8배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과 더불어 경기도,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한전 등 충전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공용충전기 설치에 30억원을 투입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9년말 도내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수는 15,224기로 18년 8,388기 대비 1.8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정책

경기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및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세제 감면 외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또는 도 내 산업단지 재직자(입주기업)가 전기차 구매시 도비 보조금을 추가지원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공용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민자도로 3곳(제삼경인고속도로, 경기남부고속도로, 일산대교)에 대하여 전기차 통행시 통행료 전액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더하여 시군 조례에 따라 공용주차장 주차비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경기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13일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 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기자동차 외에 수소전기차를 포함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친환경차 보급 촉진과 충전소 확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담당자 : 미세먼지대책과 친환경차보급팀 김현준 /☎ 031-8008-4241)

3. 천연가스 버스 보급대책

가. 현황 및 성과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7년간 정부와 자동차 제작사가 공동으로 국내기술로 엔진개발을 완료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하게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 버스는 기존의 경유버스와 비교할 때 미세먼지(PM)는 100% NOx 배출가스량은 65% 저감시킬 수 있으며, 매연이 거의 배출되지 않아 환경보전 측면에서 우수한 차량이다.

또한 소음과 진동에 있어서도 기존 경유버스 보다 크게 개선되어 승용차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표 2-3-16 > 천연가스 버스 보급현황(2019년)

(2019년 12월말 기준)

계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평택	의정부	파주	시흥	김포
12,586	1,982	965	462	1,240	1,247	934	218	835	524	268	438	521	255	1,083
광명	광주	군포	이천	오산	하남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의왕	동두천	과천	연천	
28	364	27	79	49	433	136	106	106	206	9	44	7	20	

자료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나. 문제점

경기도에서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 천연가스 충전소 부지 확보 및 운수업체의 초기 자부담 과중으로 참여를 기피하는 것 등이다. 경기도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차고지 조성과 연계하여 공영차고지내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를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도내 충전소 : 65개소, 157기

다. 발전방안 및 향후계획

경기도에서는 천연가스버스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비 및 지방비를 포함하여 CNG버스 대당 1,200만원을 보조하고, CNG-하이브리드버스는 대당 6,000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과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연료도 경유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담당자 : 미세먼지대책과 친환경차보급팀 정진영 /☎ 031-8008-3565)

4.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가. 추진 배경

경기도에서는 어린이의 건강보호와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된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 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의 단위 체중 당 공기 흡입량은 성인에 비해 2배 이상 많고, 어린이의 하루 평균 통행빈도는 성인에 비해 20% 높아, 같은 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더라도 더욱 치명적이다.

또한 LPG 차량은 각종 호흡기 질환 및 폐암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PM₁₀) 배출량이 매우 적으며, 국립환경과학원 실외도로시험 조사('15~'16년) 결과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도 경유차의 1/93에 불과하다. 노후 경유차의 비율이 높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차로 전환하면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골목길 또는 등굣길 다른 어린이들의 건강까지 보호할 수 있으며 나아가 대기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나. 추진 현황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현황(출처: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은 총 12,306대이며, 유종에 따른 구분은 경유 11,259대, LPG 1,030대, 휘발유 13대, CNG 4대로 경유차가 전체 차량의 91.5%를 차지한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2018년부터 노후된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 차량을 LPG 신차로 교체 시 구매지원금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총 329대, 2019년 총 289대 전환 지원하였다.

다. 향후 계획

경기도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0년 786대, 2021년 1,238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담당자 : 미세먼지대책과 공동협력팀 권다영 /☎ 031-8008-3623)

제4절

운행 이동오염원 관리강화로 미세먼지 저감

1.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3. 노후건설기계 관급공사장 사용 규제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1.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필요성

자동차용 연료소비의 급증과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가로 인하여 대기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 수송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비중이 70%를 상회하며, 그 중에서도 자동차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 1/2정도가 버스 및 트럭 등 5등급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수도권의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가 1위인 배출가스 5등급 운행 경유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저공해 엔진인 LPG 엔진으로의 개조를 추진하고 있다.

나.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현황

경기도는 저공해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 유도를 위해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1조 9,4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9년도에는 총 4,0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DPF 20,191대, 조기폐차 98,302대, LPG엔진 개조 3대, 건설기계 등 1,935대에 대하여 사업이 추진되었다.

< 그림 2-3-3 > 배출가스 저감장치 종류

		
1종(DPF)	2종(p-DPF)	LPG엔진

자료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금액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2018)」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금은 중량과 엔진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건설기계는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은 상한액 165만원 안에서 100% 지원하고 있고 총중량 3.5톤 이상과 건설기계 3종은 각 지정된 상한액 안에서 기본 100%, 신차 구입 시 추가지원 200%로 지원받을 수 있다.

< 표 2-3-17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률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165	10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자료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2019)

매연저감장치 등의 지원금액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2018)」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에 따라 다르게 지정되어있다.

< 표 2-3-18 >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988	5,391	597	10.0%	462		
	자연중형	5,409	4,869	540	10.0%	462		
	복합대형	10,327	9,295	1,032	10.0%	462		
	복합중형	7,791	7,013	778	1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727	3,262	465	12.5%	462	
		화물	3,727	3,355	372	10.0%	462	
p-DPF	소형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986	1,650	336	17.0%	12
		화물	1,986	1,699	287	14.5%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986	1,689	297	15.0%	12
		화물	1,986	1,738	248	12.5%	12	
LPG 엔진 개조	RV, 승합		4,432	4,012	420	9.5%	47	
	1톤 화물		4,432	4,122	310	7.0%	47	

자료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2019)

또한, 생계형 차량에 대하여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시 차량가액의 110%를 지원했고,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은 자부담금 없이 100% 지원하였다.

라. 향후 추진계획

2020년에는 총 3,1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5,098대, 노후 차량 조기폐차 100,976대, 건설기계 등 3,380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제로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등급 차량에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리고, 건설사업장에는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여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더욱 높은 조기폐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금액의 상한액을 165만원을 300만원으로 증액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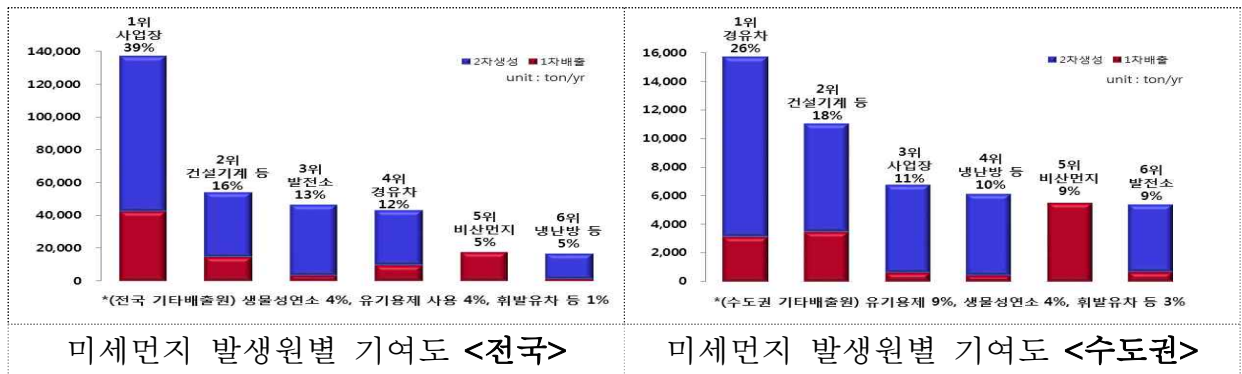
또한, 조기폐차한 이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경유차량의 재구매를 줄이기 위해 비경유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 미세먼지대책과 운행차관리팀 김현경 / ☎ 031-8008-4288)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가. 운행제한의 필요성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기여도는 전국적으로 12%를 차지하나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는 26%를 차지한다. 더욱이 전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53%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건강위해도가 높아 특별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구분	총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차량(만대)	2,320	129	914	844	186	247
비율(%)	100	5.6%	39.4%	36.4%	8.0%	10.6%
미세먼지 배출량(톤/년)	44,385		12,490		8,183	23,712
배출량 비중(%)	100%		28.1%		18.5%	53.4%

자료 :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2019.10.)

이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저공해조치가 되지 않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고 최근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나. 운행제한 제도의 종류

경기도는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제도' 등 2가지의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기간(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2020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 운행제한의 근거

운행제한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에 따라 시도의 조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경기도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 제도(LEZ)인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법」에 따라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가 2019년에 시행되었으며, 2020년에는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을 위한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2016년 8월 4일 환경부 및 경기·서울·인천시간 협약을 통해 대기관리권역인 28개시(양평군, 연천군, 가평군 제외) 전체에 시행하기로 정하였으며, 경기도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시군의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와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불합격한 자동차는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운행제한 위반 시 차량의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시군에서 최초 1회는 과태료의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매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과태료 누계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제도는 「미세먼지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다.

재난사항으로 분류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경기도 전역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나, 법령에 따라 긴급차, 장애인차, 국가유공자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와 달리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만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되며, 위반시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시군이 아닌 최초 적발 시군에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 제도는 전국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우려가 높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여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추진하는 제도이다.

당초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친 후 전문위원회, 분야별협의체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정책을 제안함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미세먼지법」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20년 「미세먼지법」이 개정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2020년 12월부터 최초 시행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경기도 전역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나, 법령에 따라 긴급차, 장애인차, 국가유공자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만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되며, 위반 시 최초 적발 시군에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4개월간 지속적으로 위반한다면 약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2020년 12월부터는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우선 시행될 예정이며, 환경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에서 6대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까지 확대되도록 조례제정을 요청함에 따라 2021년에는 대도시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사. 운행제한 단속 방법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은 과속단속카메라처럼 고정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 시행중이며, 2020년까지 80개 지점, 151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고 2021년까지 161대까지 설치를 늘릴 계획이다.

< 표 2-3-19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구분

등급	차종		
	전기차·수소차	휘발유·가스차	경유차
1등급	전기·수소만 사용	2009~2016년 기준적용 차종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2006~2016년 기준적용 차종	
3등급		2000~2003년 기준적용 차종	Euro-5('09.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4등급		1988~1999년 기준적용 차종	Euro-4('06년 기준적용 차종)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Euro-3 이전('05.12.31이전+05.12.31 이후 판매되었더라도 Euro-3 인증받은 차량)

자료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2018)

(담당자 : 미세먼지대책과 운행차관리팀 이동석 / ☎ 031-8008-4230)

3. 노후건설기계 관급공사장 사용 규제

가. 노후건설기계 관리 필요성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수송부문 전체 배출량인 23,717톤 중 23.6%에 해당하는 5,599톤을 차지하고 있다. 굴삭기, 지게차 등으로 대표되는 건설기계는 대부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여 경유차와 동등한 수준의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는 아직 배출가스 관리가 미흡한 편이다. 노후 건설기계 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는 노후 경유차보다도 약 11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나. 현황 및 관리여건

경기도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99,744대이며, 그 중 5종 건설기계가 약 88%로 전체 건설기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5종 건설기계 중 노후건설기계는 23,278대로 약 26%를 차지하고, 도내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이 340개소로 관급공사장에서만 사용을 제한해도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신형 건설기계로 자발적 교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2-3-4 > 5종 건설기계 종류



다.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시행

2019년 7월 16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20년 1월1일부터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현장에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건설기계 사용제한 대상은 '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과 '04.12.31.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으로 총 5종에 대하여 실시한다.

라. 향후 추진계획

경기도에서는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현장 건설사 및 건설기계 주요 사용업체에 제도 시행을 홍보하고,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매월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저공해조치 건설기계를 확대하기 위하여 DPF 부착 시 대당 최대 1,058만원, 엔진교체 시 대당 최대 2,952만원 및 조기폐차 시 대당 3,00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도는 저공해조치 3,380대를 지원하여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담당자 : 미세먼지대책과 운행차관리팀 이재광 /☎ 031-8008-3618)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가. 제도의 근거 및 내용

1)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근거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간접규제 일환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인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 유도 및 친환경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1991년 12월 31일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 제도의 주요내용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 요인이 되는 자동차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설물분은 2015년 7월 1일부로 폐지되어 2016년 1기분부터는 자동차에만 부과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상의 환경 개선사업, 환경기술 개발사업 등에 중점 지원되며, 민간부분의 환경산업 국산화, 기술개발 자금 등에도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3) 제도의 세부 대상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유로 5·6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보증기간 : 3년) 등은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되어 매반기마다(3월, 9월) 부과하고 있으나,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대상이 부과제외 또는 면제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하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부과·징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도내 31개 시·군에서 고지서 발송, 체납독촉 및 압류조치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경기도는 매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우수 3개 시·군을 선정하여 기관 표창을 수여하고 시군종합평가 지표로 관리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부담금제도의 운영현황

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현황

경기도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2019년에 805억 5,673만원을 부과하여 그 중 83.2%인 670억 1,929만원을 징수하였다.

< 표 2-3-20 > 연도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2010년	125,261	97,389	77.8%
2011년	128,883	102,435	79.5%
2012년	132,750	105,828	79.7%
2013년	134,602	107,943	80.2%
2014년	136,051	110,246	81.0%
2015년	136,443	111,306	81.6%
2016년	106,103	86,924	81.9%
2017년	97,299	80,370	82.6%
2018년	90,332	74,598	82.6%
2019년	80,557	67,019	83.2%

자료 :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2) 부당 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신청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해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주고 있으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고 있다.

(담당자 :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기획팀 이수연 /☎ 031-8008-3628)

제5절

미세먼지 저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1. 유엔환경계획(UNEP)-경기도 국제협력 증진
2. 중앙정부 및 인접 지방정부와 미세먼지 공동대응

1. 유엔환경계획(UNEP)-경기도 국제협력 증진

가. UNEP 주관 대기질 개선 인식포럼 개최

경기도는 '2019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이후 UNEP 아·태 본부를 대상으로 환경부와 함께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유치를 성공하게 됨에 따라 국내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UNEP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2019년 11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한 제21회 EANET 범정부회의(IG21)에서 2020년도 인식포럼을 경기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그 해 12월에 UNEP에 세부서안서를 발송하였다.

도는 2020년 상반기에 '2020년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UNEP와 함께 아·태지역 21개 국가가 참여하는 차원 높은 정책포럼을 준비하였으나,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호 협의 하에 2021년 9월로 연기하였다.



나. 유엔환경계획(UNEP)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 추진

UN산하 국제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공동 참여하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 추진성과 분석 및 향후 방안'의 공동연구를 제안(2018.1)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와 서울·인천시는 공동연구에 합의하고 2021~2023년까지 2년간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규제 성과 평가와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결과 및 배출원별 특성분석, 대기질 모델링에 의한 주변국과의 인과관계 분석 등이 진행될 계획이며, 동 연구에 3개 시·도 정책연구원(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처럼, 경기도는 국제적인 문제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라는 한계와 한정된 행정권한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와 경기도의 공동협력으로 경기도 미세먼지 정책의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정책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한다.

(담당자 :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기획팀 여윤정 /☎ 031-8008-3567)

2. 중앙정부 및 인접 지방정부와 미세먼지 공동 대응

가.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구성

수도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으로 환경부 및 경기·서울·인천·충남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2018년 7월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는 수도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과 미세먼지 환경기준 조기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2018.7.6./환경부, 경기·서울·인천)하였다. 협의체 주요 안건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주요 사항 점검으로, 운행제한 표준조례안, 비상저감조치 시행방안, 수도권 광역발령 조건 등을 협의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3개 시·도는 2019년부터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계절관리제(12월~3월)동안 운행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개정(20.5.19.)하였다.

또한 도는 인접 지자체인 충남의 참여를 제안하여,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공동선언(2018.10.2./환경부, 경기·서울·인천·충남)을 하였다.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진 및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이다. 주요 성과는 2019년에 경기-충남, 경기-인천 산업단지 배출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5월 폐쇄 예정인 충남 화력발전소 2기를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2020년 12월까지 조기폐쇄 할 예정이다.

나.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구성

2019년 경기도 대기질 평가보고서(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경기 남부권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8\mu\text{g}/\text{m}^3$ 로 도 평균 $26\mu\text{g}/\text{m}^3$ 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시민의 건강 보호가 절실하며, 도와 남부권 지자체가 공동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여,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를 2019년 9월 구성하게 되었다.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는 경기도와 6개 시(화성, 평택, 이천, 오산, 안성, 여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안 해결 및 예산 지원 공동 건의와 미세먼지 발생오염원 파악 및 기여도 조사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그림 2-3-6 >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협약식(2019. 9. 5.)

(담당자 : 미세먼지대책과 공동협력팀 권다영 / ☎ 031-8008-3623)

제4장

환경오염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1절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2절 사업장 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

제3절 배출시설 및 환경서비스업 업격 관리

제4절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 삶의 질 개선

제1절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

1.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
2.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례
3.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 구축

1. 유해화학물질 관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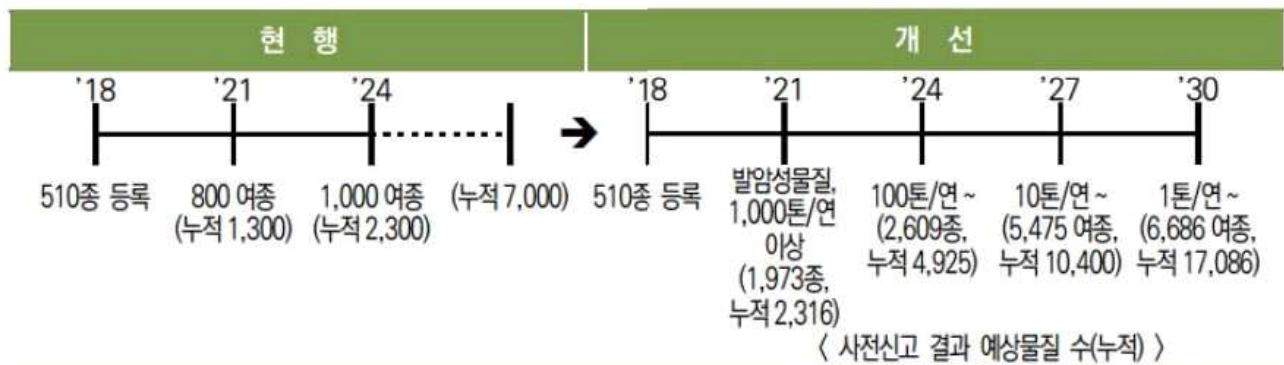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20만여 종에 이르며 매년 3천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고, 향후에도 화학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⁴⁾되고 있다.

국내에는 4만 4천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고, 매년 2,000여 종이 새로이 국내시장에 진입되는 등 화학물질의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화학산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화학산업국가로 국제적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U는 화학물질의 유통·사용량 증가에 따른 사람의 건강 및 환경 위해성 예방·저감을 목적으로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시행('07.6)하고, 일본은 2010년 4월 화학물질 신고 및 심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2010년 중국도 신화학물질관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학물질 관리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사전에 화학물질을 신고하여 위해성을 심사 평가하도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2015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시행초기의 혼란을 방지코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도록 2018년 화평법을 개정·공포하여 2019년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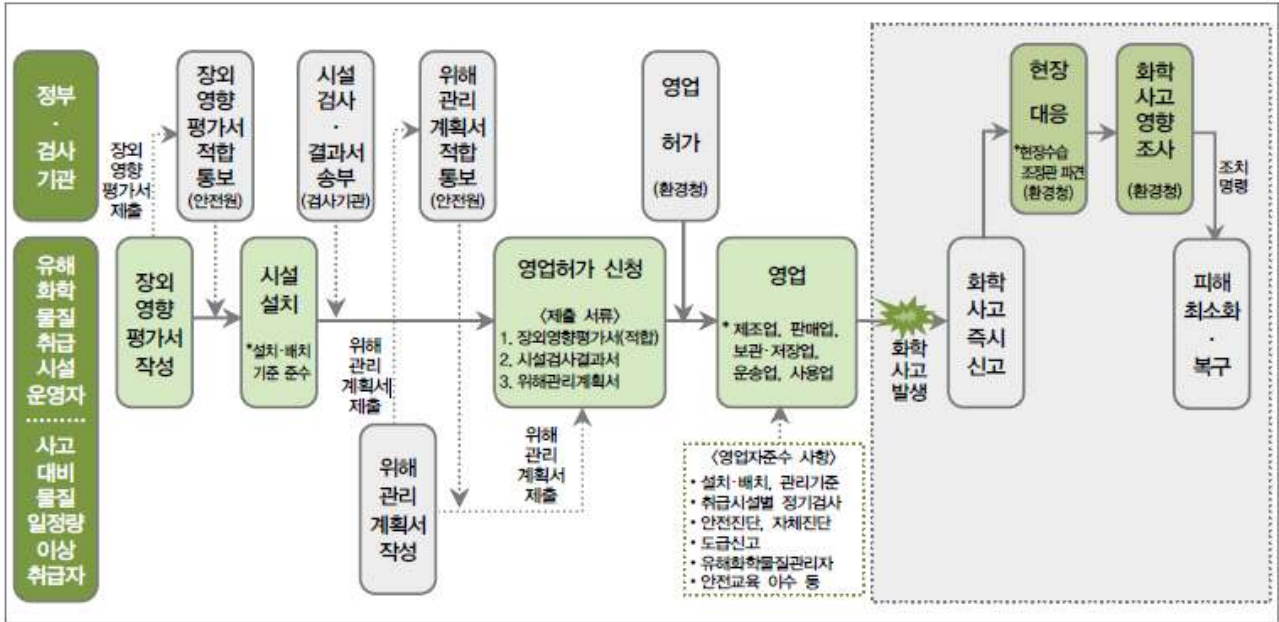
< 그림 2-4-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선



정부에서는 2012년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개정하여 법령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15.1.1 시행)’를 도입하였다. 현재 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유독·제한·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등, 1,169여종),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유해·위험물질(50여종), 고압독성가스(40여종), 위험물(3,000여종) 등으로 구분되어, 이를 위험물질로 통칭하고 있으며, 부처별로 관리대상 물질을 정하여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안전성향상계획(산업통상자원부), 예방규정(소방청)을 작성·제출토록 하고 있다.

4) 2030년에는 2017년 대비 2배 정도 시장규모 확대 예상(UNEP, '19)

< 그림 2-4-2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관리 체계도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목적으로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및 사용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여 업종 특성에 적합한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말 기준 국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14,676⁵⁾개소이며 도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전국대비 34.8%인 5,109개소이며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2-4-1 >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소 현황

(’19. 12. 31. 기준, 단위: 개소)

계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5,109	326	2,750	62	70	1,901

※ 화관법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
취급시설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취급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화학사고	시설의 교체 등 작업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5) 환경통계연감, 환경부, 2019, 587쪽

또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에서 대응·수습을 주관하며, 도 및 시·군에서는 환경부에서 파견된 현장수습조정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대피 및 사고수습을 지원토록 업무를 분담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화학사고의 대응 및 수습이 가능토록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정하였다.

경기도는 화학사고를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과 사고대응 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진단 요일제 운영, 지역구성원의 참여와 역력강화를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한 방제약품 공급체계 및 오염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유독물 등 화학물질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활동에 필수불가결한 물질이기도 하지만 환경오염의 원인물질로서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 과정을 걸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되게 되므로 우리 생활 속에 언제든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담당자 :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안전예방팀 이용현 /☎ 031-8008-5232)

2.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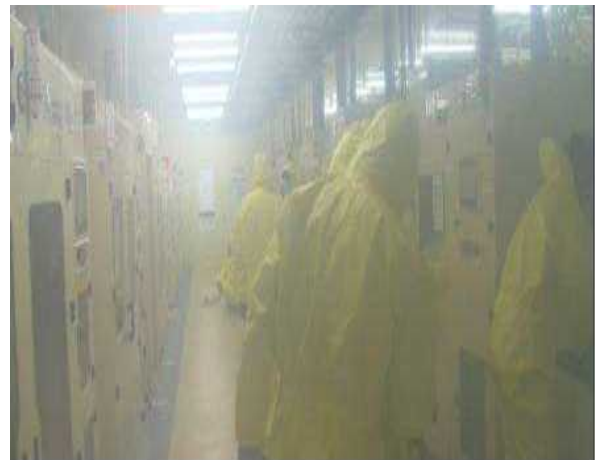
화학사고의 형태는 부주의·설비결함 등으로 인한 유출, 화재·폭발 등에 기인한 유출, 운송차량의 전복·교통사고 유형으로 발생하고 화학사고의 특징으로는 짧은 시간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언제 어디에서도 발생 가능하며 예측과 통제가 곤란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2012년 9월 구미 0000(주) 사업장 내에서 이동용 탱크로리에 있던 불산원액을 저장 탱크로 이송하던 중 미숙한 작업으로 밸브가 개방되면서 불화수소가 분출되어 개인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던 근로자 5명이 불산에 누출되어 사망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하고 인근지역으로 불산가스가 퍼지면서 주택, 축사, 농작물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대기오염사고로 번지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연이어 크고 작은 화학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계속되었고 더욱이 2013년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친 화성 0000(주)의 불산사고로 사회적 영향 및 관심이 증대되었다.

< 그림 2-4-3 > 유해화학물질 사고 사례



구미 (주)00000 불산누출



화성 0000(주) 불산누출

2015 ~ 2019년 동안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감소추세로서,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작업자 부주의와 시설관리 미흡에 의한 사고이다.

< 표 2-4-2 >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사고 건수

('19. 12. 31. 기준. 단위: 건)

계	2015	2016	2017	2018	2109
106	36	18	19	16	17

도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담당자 및 대표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역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대비체계'를 구축 중이며,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모니터링, 안전진단 요일제 등을 시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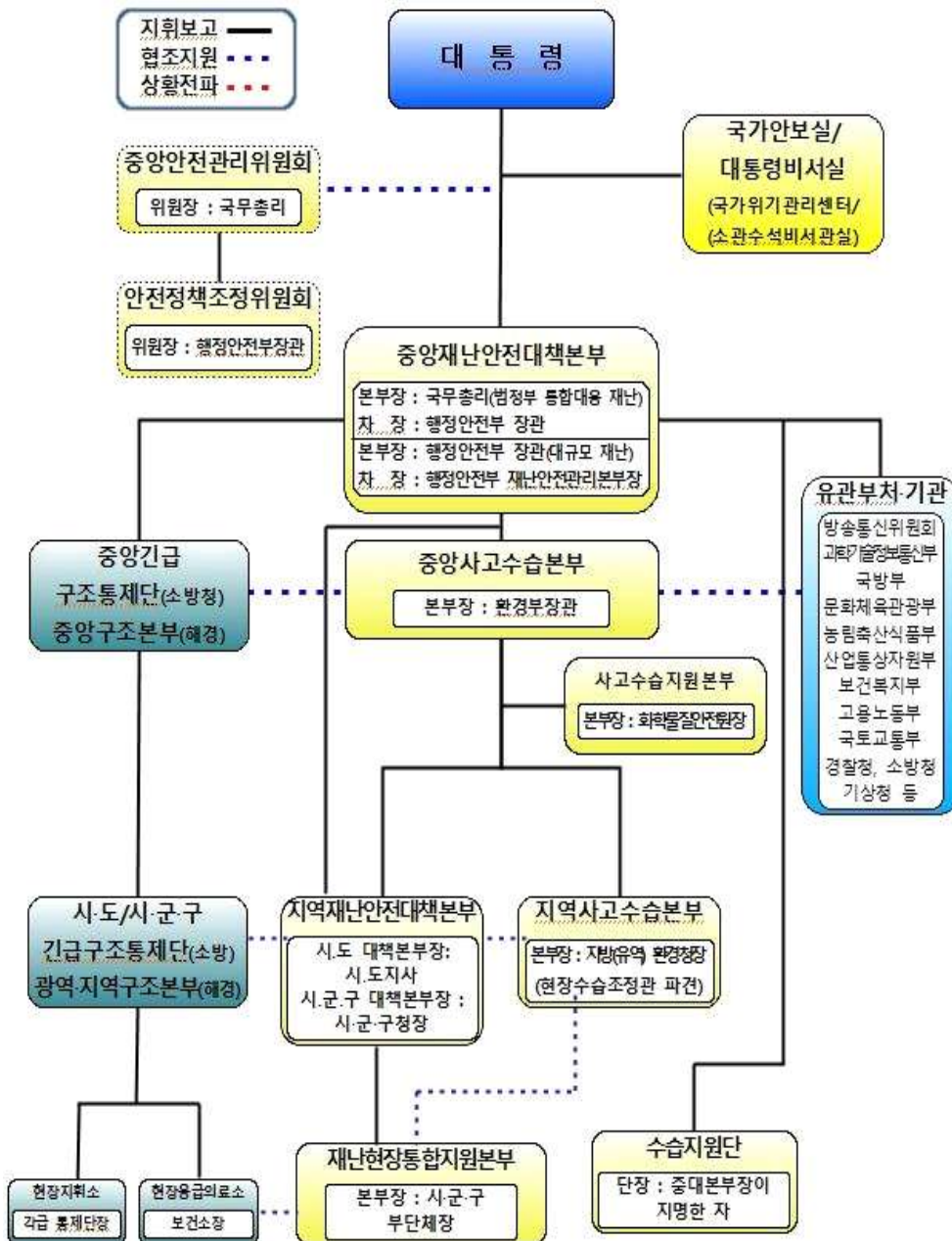
(담당자 :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안전예방팀 이용현 ☎ 031-8008-5232)

3.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체계 구축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는 화재·반응 등에 의한 폭발적 분출로 짧은 시간에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사고시 신속하고도 유효한 조치로 피해최소화를 사고대응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의 발전과 함께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유독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독물 유출사고시를 대비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관련 매뉴얼 정비, 방재장비 확보 등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는 2013년 5월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인 환경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2013년 8월부터 정책 자문기구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설치·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한 5년 단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그림 2-4-4 > 화학사고 비상연락 체계도



< 표 2-4-3 > 유관기관별 업무분담 현황

기 관 별	업 무 분 담 내 용
환경안전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초기 상황파악 및 보고 ○ 사고 사업장 초동대응 조치 지원 ○ 사고 현장 수습활동 지원 및 전문인력 등 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제정보, 사후 복구기술 등 대응정보 제공 ○ 지역사고수습본부와 연락체계 유지 ○ 사고현장 오염방지 및 피해확산 방지 활동 지원 ○ 사고 주민 사고지역내 복귀 여부 결정, 상황종료 전파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 현장수습조정관 현장파견, 사고정보 통합 및 수습 조정·지원 ○ 사고수습반 및 측정분석반 현장 출동 ○ 위기상황 및 위험정보 조사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고 정보 공유 ○ 사고 처리현황 파악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고 ○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가동 및 대응정보 제공 ○ 사고지역 사후 영향평가(필요시)
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방재청 중앙통제단과의 연락 및 협조체계 유지 - 道 긴급구조대응체계 총괄 조정·통제 ○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긴급이송 등 현장대응활동 지휘·통제 ○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민방위대 등 방재인력 동원
보건환경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화학사고 원인물질 확인 등, 사고지역 오염도 조사 ○ 상수원 오염에 대비 수질검사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독물사고시 방재인력 및 장비동원 등 방제조치 ○ 유독물사고시 방제자제 확보 ○ 사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 ○ 사고지역 인근주민 소산 및 응급복구 ○ 사고지역 인근하천 및 상수원오염방지를 위한 제방설치 등 긴급조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사업장 초동대응 조치 지원 ○ 상황전개 및 피해상황 확인과 지속적인 대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설비 긴급조치 기술지원, 작업중지·사용중지 명령 ○ 중대산업 사고대응 및 수습활동 협조 ○ 사고 현장 수습활동 지원 및 전문인력 등 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제정보, 사후 복구기술 등 대응정보 제공 ○ 기술적인 사고원인 조사 지원(중대산업사고 관련) ○ 사업장 시설 설비 안전성 검사 ○ 재난예방지원팀 활동 및 재난근로자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의 전파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비상지원본부 설치·운영 ○ 피해현황 등 상황종합 보고 ○ 인근주민(근로자) 대피명령 등 구호활동 ○ 대피 주민 사고지역내 복귀 여부 결정, 상황종료 전파
업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독물사고 신고(관할 행정기관, 소방서, 경찰서등) ○ 자체 방제계획에 따라 방재인력 및 방제장비 긴급동원 등

< 표 2-4-4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9년말 기준)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	031)8008-5232	031)8008-3549	
	공단환경관리사업소	031)8008-8217	031)434-0797	
	당직실	본청	031)8008-2222	031)8008-2299
		제2청	031)8030-2222	031)8030-2224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	031)230-6621~4	031)230-2969
	안전관리실	안전기획과	031)8008-8412	031)8008-6096
		사회재난과	031)230-6653	031)230-2925
	수자원본부	주간	031)8008-6971	031)8008-6998
야간		031)8008-6920	031)8008-6869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933(주) 044)201-7440~1(야)	044)201-6830(주) 044)201-7442(야)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031)790-2879(주) 790-2590(야)	031)790-2899(주) 790-2600(야)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043)830-4120~4	043)830-4199	
	시흥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환경팀	031)470-2484	031)470-2449(주) 470-2499(야)
		화학구조팀	031)470-2454	031)470-2499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31)259-0252	0505-130-0381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	031)259-7149	031)259-7170
		서부지사	031)481-7516	031)413-0062
		동부지사	031)785-3300	031)785-3333
		중부지사	032)680-6513	032)681-6533
		북부지사	031)828-1953	031)875-067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044)203-4211	044)203-4772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지역본부	031)259-3521	0505-106-4518	
	한국가스공사경기지역본부	031)400-7233	031)400-7580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	044)202-2651~2	044)202-3989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0~3	044)205-8890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	044)205-4119	044)205-9119	
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종합상황실)	031)888-3229	031)229-6399	
	경기북부지방경찰청(종합상황실)	031)961-2600	031-961-1329	
국방부	지상작전사령부(WMD과) (지휘통제실)	031)331-0114(주) 031)331-0301~3	031)335-9754	
	수도군단	031)440-4419	-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예보과)	070-7850-8243	031)292-9764	

(담당자 : 환경 안전 관리과 환경 안전 예방팀 방경수 / ☎ 031-8008-5234)

제2절

사업장 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

1. 환경기술 지원
2.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개선 지원
3. 악취방지대책

1. 환경기술 지원

경기도는 도내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환경사업장들의 시설 관리능력을 높여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e-safe경기 환경안전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e-safe경기 환경안전기술지원단은 道, 경기·시흥·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녹색기업협의회, 안산·시흥 환경기술인협회 등 총 5개 기관 46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기술지원은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단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를 진단한 후, 기업실정에 맞는 효율적 환경관리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술지원단은 대학교수·기술사·환경기술인 등 환경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조공정 개선·원료사용량 저감 방안·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등의 기술지원을 2019년에는 588개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사업장 관리카드를 작성 및 철저히 관리하여 시설개선과 오염배출 환경관리 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feed-back을 통해 1회성 기술지원의 한계를 탈피하는 한편 각종 자금지원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담당자 : 환경안전관리과 환경기술지원팀 오누리 /☎ 031-8008-3556)

2.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개선 지원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2만여 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중 약 90%는 환경관리에 기술적·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5종 등 소규모 사업장이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경기도 전체 배출량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사업장(특히 소규모) 관리는 대기환경개선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 환경관리 지원을 위해 286개 사업장에 환경전문 업체 기술 인력을 월 2회 이상 파견하여 방지시설 관리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방지시설 핵심 소모품 교체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172개 사업장의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개선하였으며, 방지시설을 개선한 사업장은 먼지배출 농도 85%, THC(총탄화수소) 농도 87%를 저감하는 대기개선 효과를 거두었다.

< 그림 2-4-5 > 대기방지시설 개선 지원



방지시설 교체·개선



방지시설 유지관리



방지시설 소모품 교체

향후 대기방지시설 성능검사, 유지관리 및 교체 개선 등 지속추진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환경관리를 강화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해 나아갈 것이다.

(담당자 :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안전정책팀 최장영 /☎ 031-8008-3454)

(담당자 : 환경안전관리과 환경기술지원팀 장인애 /☎ 031-8008-3552)

3. 악취방지대책

가. 악취의 개념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 처리시설, 퇴비화 시설, 비료 제조시설, 음·식료품 제조시설 등 공장, 축사, 음식점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며, 감각공해로써 사람에게 건강 피해,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주지만 원인물질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22종의 물질을 지정악취물질이라 일컫고,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후각을 자극하며 불쾌감·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복합악취라 한다.

< 표 2-4-5 > 지정악취물질

연번	물 질 명	연번	물 질 명
1	암모니아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2	메틸메르캅탄	13	톨루엔
3	황화수소	14	자일렌
4	다이메틸설파이드	15	메틸에틸케톤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16	메틸아이소뷰틸케톤
6	트라이메틸아민	17	뷰틸아세테이트
7	아세트알데하이드	18	프로피온산
8	스타이렌	19	n-뷰틸산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20	n-발레르산
10	뷰틸알데하이드	21	i-발레르산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22	i-뷰틸알코올

나. 경기도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등의 것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동·식물성 유지, 사료, 석유제품, 비료 및 질소화합물 등 각종 제조시설, 섬유 염색 및 가공시설, 금속 표면처리시설,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이 있다.

도내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수는 총 20,662개소(2019.12.31.기준)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배출시설 종류로는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및 그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이 가장 많고, 폐수처리시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이 뒤를 잇는다.

< 표 2-4-6 > 발생원별 주요 악취발생 공정과 물질(일부)

발생원	악취 유발물질	냄새
도장공업	- 톨루엔 - 자일렌 - 벤젠 등	- 신나 냄새 - 신나 냄새 - 자극적인 냄새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 하수처리, 분뇨처리)	- 암모니아 - 메틸메캅탄 - 황화수소	- 자극적인 냄새 - 양배추 썩는 냄새 - 달걀 썩는 냄새
고무공장	- 톨루엔 - 메틸메캅탄 - 이황화물 - 아세트알데하이드	- 신나 냄새 - 자극적인 냄새 - 자극적인 냄새 - 역겨운 냄새
합성수지 제조	- 알데하이드 - 포르말린 - 페놀	- 불쾌한 냄새 - 자극적인 냄새 - 의약품 냄새
가죽제품 제조·가공	- 메틸에틸케톤 - 톨루엔 - 아세톤	- 방향성 자극적 냄새 - 방향성 자극적 냄새 - 자극적인 냄새
주물	- 페놀 - 포르말데하이드 - 암모니아	- 의약품 냄새 - 불쾌한 냄새 - 자극적인 냄새
알루미늄 가공	- 황산 미스트 - 신나 - 수산 미스트	- 자극적인 냄새 - 신나 냄새 - 시큼한(산) 냄새

(담당자 :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안전예방팀 방민주 / ☎ 031-8008-5233)

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및 적용

「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내 배출시설과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15조(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로 공업지역의 2배 가량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및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 표 2-4-7 > 경기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o 복합악취

구 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회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500 이하	400 이하
부지경계선	15 이하	10 이하

o 지정 악취물질

악취물질		공업지역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ppm)	악취물질		공업지역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ppm)
1	암모니아	1 이하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3 이하
2	메틸머캅탄	0.002 이하	13	톨루엔	10 이하
3	황화수소	0.02 이하	14	자일렌	1 이하
4	다이메틸설파이드	0.01 이하	15	메틸에틸케톤	13 이하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09 이하	16	메틸아이소부티르케톤	1 이하
6	트라이메틸아민	0.005 이하	17	뷰티르에세테이트	1 이하
7	아세트알데하이드	0.05 이하	18	프로피온산	0.03 이하
8	스타이렌	0.4 이하	19	n-뷰티르산	0.001 이하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05 이하	20	n-발레르산	0.0009 이하
10	뷰티르알데하이드	0.029 이하	21	i-발레르산	0.001 이하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09 이하	22	i-뷰티르알콜올	0.9 이하

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추진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도내 악취 배출사업장 중에서, 악취물질 저감효율이 높은 방지시설의 설치, 노후된 방지시설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경제적 부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악취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고 대기질 개선 및 악취민원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 표 2-4-8 > 최근 5년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내역

연도	지원사업장 (개소)	지원액* (천원)	대상업종
2019	18	800,000	육계식품제조업, 퇴비제조업, 축산업 등
2018	7	400,000	사료제조업, 폐기물처리업 등
2017	11	400,000	축산물가공업, 섬유제품제조업 등
2016	32	2,400,000	염색가공업,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등
2015	15	666,667	염색가공업, 도금업, 잉크제조업 등

* 도비와 시·군비 합산금액

마. 시·군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악취는 발생과 동시에 공기 중으로 확산되는 성질이 있어, 악취 민원의 발생 상황 당시에 시료를 포집하여야 오염도 분석을 통하여 현황 확인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원 발생 즉시 악취시료를 포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군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원격으로 신속하게 시료채취가 가능한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를 구입·설치하도록 하여 발생원 관리 강화와 동시에 민원 저감을 실현하고자 한다.

바.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악취관리지역 내의 대기 중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22종) 물질의 농도와 영향범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주기적인 현황 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를 통해 악취관리지역이 지정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악취 관리 및 저감대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반기 1회 실시하고 있다.

< 표 2-4-9 > 경기도 내 악취관리지역 현황

관리지역명	시·군	면적	지정일시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송지구	평택시	6,327,000m ²	2005.5.16.
시화국가산업단지	안산시	4,424,000m ²	“
	시흥시	16,443,000m ²	“
반월국가산업단지	안산시	15,374,000m ²	“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안산시	147,000m ²	“
누읍동 일반공업지역	오산시	460,000m ²	2011.1.10.
발안산업단지	화성시	1,268m ²	2016.12.5.
평택일반산업단지	평택시	535,000m ²	2018.2.13.
포곡읍 신원리, 유운리 (축산농가 47개소, 용인에스피아)	용인시	247,000m ²	2018.6.4.

(담당자 :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안전예방팀 방민주 /☎ 031-8008-5233)

제3절

배출시설 및 환경서비스업 업격 관리

1.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2. 생태독성 관리제도
3.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4.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5. 측정대행업 등록
6.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7.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8. 폐수처리업 등록

1.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총량관리제도는 종전의 사후적 관리인 배출농도관리와는 달리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제도로 오염물질별 목표 대기질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후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감축하여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며, 할당량 초과시 할당량 삭감 및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한다. 대상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이며 초기연도는 과거 5년간의 평균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연도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배출되는 수준으로 할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현재 30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총량허가 및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완료하고 배출량을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대상사업장에는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허용(배출권 거래) 및 차기년도 이월이 가능하고 일부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보다 20~30%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며 저유황연료 사용의무화 적용 제외, 대기오염 배출부과금 면제, 최적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시 재정·기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량 사후관리를 위해서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매월 배출량을 관리하고 측정기기 설치가 곤란한 시설을 배출계수와 단위배출량, 자가측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배출량을 산정·관리하며, 초과배출량에 대해서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당해연도 초과 배출량은 최고 1.8배의 범위내에서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 할당시 삭감하게 된다.

사업장의 배출총량 할당은 환경부 기본계획에 의해 지역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된 지역배출허용총량 범위내에서 경기도는 사업장별 배출량을 할당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장별로 연도별 이행확인을 하고 사업장 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담당자 : 환경안전관리과 환경기술지원팀 정광호 / ☎ 031-8008-5247)

2. 생태독성 관리제도

지금까지의 산업폐수 관리는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발달로 인해 사용·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는 세계적으로 24만여종, 국내에서는 41,000여종을 제조·사용하고 있고, 매년 400여종의 신규물질이 수입 또는 제조되는 등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물질은 34종에 불과해 이들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천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 등 수용체 중심의 수질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002년부터 각종 연구사업과 해외사례 수집 등을 통해 수질유해물질의 통합독성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왔다.

이러한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석유화학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종다량 사용하는 35개 업종(전체 82개 업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07년에 개정하게 되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2019년에 개정하여,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생태독성관리제도를 실시, 2021년 1월 1일부터 전체 82개 업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 표 2-4-10 > 생태독성 적용대상 폐수배출 업종별 현황 및 평균독성(TU)

연번	업종분류(폐수배출시설)	평균독성(TU)
1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3
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2
3	주정제조 및 주조시설	1.125
4	제사 및 방직시설	1
5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6.1
6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0.4
7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3.2
8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1
9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1
10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3
11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3.7
1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8.8
13	합성염료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9.9
1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0.43
15	합성고무 제조시설	0.8
1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	3.7
17	의약품 제조	0.25
18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2.06
19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1.6
20	계면활성제·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제조시설	2.95
21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0.75
22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시설	6
23	화학섬유 제조시설	0.67

연번	업종분류(폐수배출시설)	평균독성(TU)
2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1.3
25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2.17
26	제1차 철강산업시설	2.9
27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3.2
28	동 압연·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시설	1.5
29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1.1
3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2
31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	0.98
32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2.7
33	병원시설	3
34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 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1.7
35	도금시설	6.1

※ TU(Toxicity Unit) : 물벼룩이 50% 이상 생존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원폐수에서 물벼룩 생존율 50%시 TU 1로 표현하고, 2배 희석한 시료의 물벼룩 생존율 50%시 TU 2로 표현함)

경기도에 소재한 전체 폐수배출사업장 17,964개소 중에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산업폐수의 생태독성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종으로는 물벼룩과 어류, 조류, 박테리아 등이 있으나 이중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험종이 물벼룩으로 급성독성 시험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시한 추천종이며 학명이 *Daphnia magna*이고 크기가 4.5~6mm이며, 주로 미국 등 북반구에 서식하는 생물종이다.

< 표 2-4-11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지역구분	적용 기준
청정	TU 1이하
가	TU 2이하
나	TU 2이하
특례	TU 2이하

경기도에서는 생태독성 관리제도의 시행에 따라 폐수를 배출하는 산업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사업장에 대한 생태독성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독성이 발현되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다.

(담당자 : 환경안전관리과 환경기술지원팀 오누리 / ☎ 031-8008-3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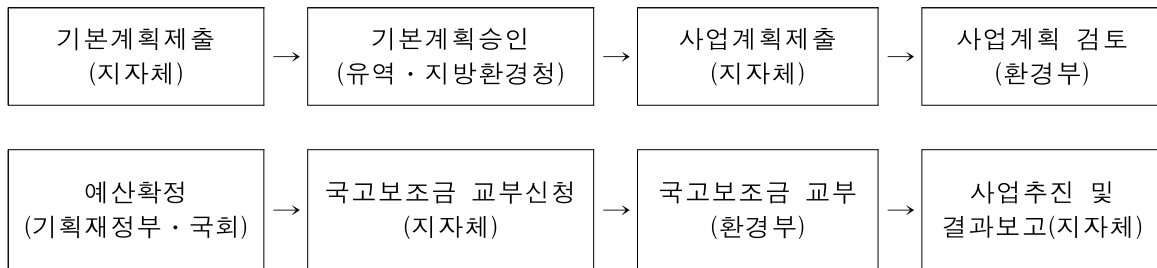
3.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폐수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하는 폐수처리시설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시설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되는 시설, 그리고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폐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 등이 있으며 동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설치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 표 2-4-12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추진 체계



< 표 2-4-13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국비) 지원비율

구분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구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설치된 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농공단지
국비보조율	수도권 : 50%(원인자 50%) 접경·수도권외 지역 : 70%(원인자 30%)	일반농어촌 : 50% 추가지원 농어촌 : 70% 우선지원 농어촌 : 100%

경기도에는 현재 평택, 안성 등 8개 시·군지역의 산업단지 22개 시설(479,940m³/일)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공사 중인 시설은 화성 정남, 평택 진위3, 김포 양촌(2단계) 3개 시설(4,500m³/일)이 있다.

< 표 2-4-14 > 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

(단위 : m³/일, 백만원)

시군명	단지명	소재지	시설 용량	사업비			준공일
				계	국비	원인자	
계			479,940	692,888	428,766	264,122	
평택시 (5)	송탄	산단로 52번길 77	6,200	19,551	17,232	2,319	'94.03
	어연한산	청북읍 청북산단로 105	5,500	12,257	6,128	6,129	'00.12
	현곡	현곡산단로 16-2	3,600	12,000	6,000	6,000	'05.01
	진위	진위면 진위산단로 53-122	2,000	15,790	8,114	7,676	'11.03
	고덕국제화	고덕 여염리 1672	102,000	98,141	48,756	49,385	'16.09
안성시 (2)	제1	안성시 공단1로 55	3,000	1,050	0	1,050	'85.10
	제2	미양면 제2공단 5길 28	11,000	13,898	0	13,898	'94.12
화성시 (3)	발안	향남읍 발안공단로 149	3,000	11,095	4,444	6,651	'05.10
	마도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176	2,500	22,615	0	22,615	'05.11
	장안	장안면 장안공단8길 38	2,000	6,984	3,492	3,492	'08.07
김포시 (1)	양촌	양촌읍 황금로 127번길 217	3,400	19,264	14,330	4,934	'09.06
파주시 (4)	금파	파평면 청송로 208번길 30	190	1,512	856	656	'03.07
	월릉	월릉면 휴암로 434	17,000	39,243	36,443	2,800	'14.04
	LCD	월릉면 엘씨디로 305	230,000	188,746	91,789	96,957	'17.08
	문산	파주읍 돈유1로 13	10,000	24,635	24,635	0	'08.05
양주시 (2)	검준	남면 검준길 184	23,000	45,117	38,675	6,442	'03.04
	홍죽	백성읍 권율로1253번길 52-21	1,000	8,997	8,824	173	'14.08
포천시 (3)	양문	영중면 양문공단로 105	14,000	32,682	12,483	20,199	'07.12
	용정	군내면 용정리 산15-93	2,300	15,964	11,175	4,789	'18.01
	장자	신북면 장자경제로70-10	18,750	54,194	47,669	6,525	'16.10
연천군 (2)	백학	백학면 백학산단길 46	500	6,440	5,008	1,432	'12.04
	청산	청산면 초대로 217-41	19,000	42,713	42,713	0	'15.02

< 표 2-4-15 > 공사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추진 : 3개소 4,500m³/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용량 (m ³ /일)	사업기간	총사업비	'19년 사업비			처리 공법	공정율	비고
				계	국비	원인자			
계	4,500		34,611	6,156	2,974	3,182			
화성 정남	400	'18 ~ 20	10,702	1,627	800	827	생물학적 고도처리	완료 (시운전중)	계속
평택 진위3	700	'17 ~ 20	10,368	1,934	1,100	834	생물학적 고도처리	완료 (시운전중)	계속
김포 양촌(2단계)	3,400	'16 ~ 20	13,541	2,595	1,074	1,521	생물학적 고도처리	66%	계속

담당자 : 환경안전관리과 환경기술지원팀 김민겸 / ☎ 031-8008-3455)

4.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2000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제정되어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 촉진을 위한 환경산업 육성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이에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보전·복원 및 개선·관리 기술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많은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2019년 도내 환경전문공사업체는 2018년 보다 79개소 적은 360개소로, 도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여 환경산업이 육성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적발된 13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

< 표 2-4-16 > 환경전문공사업 현황

(단위: 개소)

업체수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360	427	191	217	19

자료 :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

< 표 2-4-17 > 환경전문공사업 지도·점검 결과

(단위: 개소)

단속 업소	위반 업소	위 반 내 역				조 치 사 항					
		계	기준 미달	변경등록 미이행영업	기타	계	등록 취소	경고	영업 정지	과태료	고발
235	13	13	11	-	2	16	-	10	1	-	5

자료 :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

(담당자 : 환경안전관리과 환경기술지원팀 김민겸 / ☎ 031-8008-3455)

5. 측정대행업 등록

측정대행업은 공장굴뚝 매연 등의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해주는 것으로 측정대행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의 구비조건을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 후 영업을 할 수 있다.

2019년 도내 측정대행업체는 115개소이며 측정대행업소의 경쟁력 및 공정거래 유도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도는 기술인력 부족 및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 37개소를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 표 2-4-18 > 측정대행업 현황

(단위: 개소)

업체수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115	191	53	61	46	11	20

자료 :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

< 표 2-4-19 > 측정대행업 지도·점검 결과

(단위: 개소)

단속 업소	위반 업소	위 반 내 역				처분사항						
		계	기준 미달	준수사항 미이행	기타	계	등록 취소	경고	영업 정지	과태료	고발	기타
137	37	46	1	21	24	52	-	18	14	4	11	5

자료 :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

(담당자 : 환경안전관리과 환경기술지원팀 김민겸 / ☎ 031-8008-3455)

6.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은 공장굴뚝 매연 등의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또는 유독물 등의 환경기술인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 기관으로써 관리대행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의 구비조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지정 후 영업을 할 수 있다.

2019년 도내 환경관리 대행업체는 2018년 보다 9개소 많은 155개소로 이며, 이들 사업체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적발된 3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

< 표 2-4-20 > 환경관리 대행기관 현황

(단위: 개소)

업체수	계	대기	수질	유독물
155	196	38	128	30

자료 :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

< 표 2-4-21 > 환경관리대행기관 분야별 관리대행 지도점검 실적

(단위: 건수)

단속업소	위반업소	위 반 내 역				
		계	지정취소	업무정지	경고	기타
75	3	3	-	-	3	-

자료 :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

(담당자 : 환경안전관리과 환경기술지원팀 김민겸 / ☎ 031-8008-3455)

7.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컨설팅회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과 환경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을 하는 업으로 환경컨설팅 회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의 구비조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후 영업을 할 수 있다.

2019년 도내 환경컨설팅회사는 71개소로 이들 사업체의 환경컨설팅 지도점검 실적은 12개소로 위반사항은 없었다.

< 표 2-4-22 > 환경컨설팅회사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건수)

업체수	단속업소	위반업소	위 반 내 역			
			소계	기준미달	실적없음	기타
71	12	-	-	-	-	-

자료 :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

(담당자 : 환경안전관리과 환경기술지원팀 김민겸 / ☎ 031-8008-3455)

8. 폐수처리업 등록

폐수처리업은 다른 사업장의 폐수를 수집·운반하여 처리하는 영업으로 폐수 재이용업과 폐수 수탁처리업으로 나눌 수 있다.

폐수 재이용업은 위탁받은 폐수를 제품의 원료, 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이고, 폐수 수탁처리업은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위탁받은 폐수를 재생·이용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폐수 재이용업 3개소, 폐수 수탁처리업 8개소 등 11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 표 2-4-23 > 폐수처리업소 현황

구분	대상 업소	점검 업소	위반 업소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병과 고발	
				계	기준 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계	경고	개선 명령	조업 정지	폐쇄 명령	순수 고발		기타
2016	12	24	-	-					-							
2017	11	22	-	-					-							
2018	11	18	3	3				3	3	3						
2019	11	41	3	3				3	3	3						1

(담당자 : 환경안전관리과 환경기술지원팀 오누리 / ☎ 031-8008-3556)

제4절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 삶의 질 개선

1. 소음·진동 현황과 발생 실태
2. 소음·진동 방지대책
3.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지원
4.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5.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
6.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7. 환경성질환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1. 소음·진동 현황과 발생 실태

가. 소음의 개념

소음은 『바라지 않는 소리』로 정의되며,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공해 중 가장 빈번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국소 다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인간의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환청과 난청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발생원은 공장·사업장의 소음, 건설작업 소음,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의 교통소음과 이동 행상의 마이크 소음 등 일상 사업 활동에 따른 소음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나. 소음의 분류

1) 공장소음

공장소음은 자동차, 기차 및 항공기와 같은 이동소음과 달리 한번 설치되면 반영구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소음피해가 국지적인 점을 감안하여 1993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업무가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 2006년 시·군 고유업무로 전환되었으며,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되어 1997년 3월 7일 부터 정온을 요하는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공동주택의 주변지역 및 주거지역, 취락 지역에 한하여 소음배출사업에 대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존속시키고 나머지는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2019년 소음배출 업소수는 총 20,546개로 이중 허가업소는 209개소이고, 신고업소는 19,509개소, 그 외 업소는 828개소이다.

2) 생활소음

생활소음 배출원은 확성기소음, 건설공사장의 작업소음, 소규모 공장의 작업소음, 유흥업소 심야소음 등 매우 다양하며, 최근에는 도로변이나 주거지역의 이동행상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증가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인구증가와 함께 도시화, 산업화 등에 따라 조용한 생활환경을 위한 대책이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생활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생활소음은 누구나 원인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문제도 있으므로 해결을 더욱 곤란하게 할 수도 있다.

다. 진 동

진동은 기계, 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강한 흔들림을 의미하며, 주로 지반을 통해 전파되어 통상적으로 건물내에 2차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2019년 진동 배출 업소 수는 2,818개소이며, 진동배출업소로 허가받은 업소는 37개소가 있다.

라. 소음·진동 발생 실태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 지역적 특성으로 경부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을 비롯 국도 및 지방도를 이용하여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소음·진동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많을 뿐 아니라 신도시 개발 등 급속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각종 산업시설 및 운행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그 피해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음·진동의 주 발생원은 도로, 교통, 철도, 항공기 등 운송수단에 의한 것과 공장 및 건설 공사 등의 배출시설에 의한 소음·진동과 확성기, 음향기계 및 기구 등에 의한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의 소음·진동 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2010년 11,346건, 2011년 12,815건, 2012년 13,860건, 2013년 16,407건, 2014년 24,324건, 2015년 22,274건, 2016년 28,477건, 2017년 29,960건, 2018년 31,289건으로 증가하다 2019년은 30,864건으로 전년도 대비 1.4% 감소하였다.

(담당자 : 환경안전관리과 환경보건팀 한민정 /☎ 031-8008-3544)

2. 소음·진동 방지대책

가. 공장 소음·진동 대책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소음발생원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특히 정온을 필요로 하는 학교, 병원 등의 주변공장에 대하여는 저소음 공정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소음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도에는 3,572개 소음·진동 배출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된 9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 중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는 폐쇄 명령 및 사용중지의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하였다.

< 표 2-4-24 >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실적(2019년)

단속업소	위반업소	위 반 내 역				조 치 사 항							고 발
		계	기준초과	무허가(무신고)	기타	계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폐쇄명령	사용중지	기타	
3,572	92	242	22	39	181	242	21	-	-	10	30	181	39

자료 :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

나. 생활소음 저감대책

쾌적한 지역사회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내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의정부, 평택, 남양주, 광명, 시흥, 군포, 광주, 김포, 이천, 파주, 구리, 화성 등 19개시에 환경소음 측정망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화성기,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학교, 병원 등 정온을 요하는 지역의 건축물을 정온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소음의 76%를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 관리를 위하여 2019년에는 특정공사장 7,51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된 1,015건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였으며, 이 중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원의 사용금지 및 공사중지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표 2-4-25 > 특정공사장 지도·점검실적(2019년)

단속실적	위 반 내 역				조 치 사 항				과태료(건수)	고발(건수)
	계	방음시설미설치	신고미이행	규제기준초과	계	개선명령	소음원의사용금지	공사중지		
7,516	1,015	104	304	607	624	501	60	63	957	79

자료 :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

라. 교통 소음·진동 규제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도로확장 등으로 자동차, 철도교통량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교통소음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자동차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차종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도로 교통소음의 주원인인 운행중인 자동차 배기소음에 대하여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하였다.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까지 351개소 1,186.48km를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교통소음 규제지역에 대한 관리는 도로설치 관리자 또는 소음유발 사업자에게 방음 시설을 설치토록 하거나, 방음벽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자동차의 속도 및 경음기 사용을 제한하도록 조치함은 물론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자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담당자 : 환경안전관리과 환경보건팀 한민정 /☎ 031-8008-3544)

3.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지원

석면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철거 및 개량이 필요하나 비용의 부담 때문에 철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도에서는 2011년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의 일부(동당 336만원)를 지원하고, 2013년부터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용의 일부(취약계층 대상 동당 최대 8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주택개량 사업, 빈집정비 사업,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등을 연계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물 철거신고, 해체·제거 작업계획 신고, 폐기물 처리신고 등 행정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One-Stop)으로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2021년까지 노후화된 슬레이트지붕 1만7천동(도 전체의 20%)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자 : 환경안전관리과 환경보건팀 김정혜 /☎ 031-8008-4243)

4.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공공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시범사업으로 2010년 10월 안양시에서 공공 건축물 석면 지도를 전국최초로 만들고 다중 이용시설 중 공공건축물 141개동(연면적 50㎡이상)에 대한 석면 사용실태 조사, 석면 분포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이어서 2011년에는 수원시, 용인시 공공 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하되 건축물 내 석면함유물질 위치뿐만 아니라 건축자재, 면적, 위해성 등급 등 채취시료의 관련 정보까지 작성토록 하여 함유물질 대체방안, Data Base 구축 등 사후 관리에 있어 활용성을 높였다. 이후 2012년부터 공공 건축물 및 일정규모이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석면지도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석면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게 되었다.

작성된 석면지도는 건물관리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위해성 등급⁶⁾에 따른 보수와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담당자 : 환경안전관리과 환경보건팀 김정혜 /☎ 031-8008-4243)

6) 위해성 등급 :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평가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점수 합산을 통해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등급은 3단계의 낮음, 중간, 높음으로 구분된다.

5.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

도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악성종괴종과 석면폐암, 석면폐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 및 이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 구제제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석면 질환은 석면이 다량 함유된 공기를 호흡하는 과정에서 몸에서 배출되지 않고 폐에 쌓여 발병하게 되는데 주로 과거에 석면광산 또는 석면제품 공장에서 근무했거나 인근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석면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 동안 석면광산, 석면함유제품 제조공장 등의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근로자가 아닌 석면광산 또는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환경성 석면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

석면질환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는 의료비와 요양 생활수당(월정액), 장의비가 지급되며,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의 유족에게는 특별유족 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지급받게 된다.

< 그림 2-4-6 > 석면피해 구제 절차



(담당자 : 환경안전관리과 환경보건팀 김정혜 / ☎ 031-8008-4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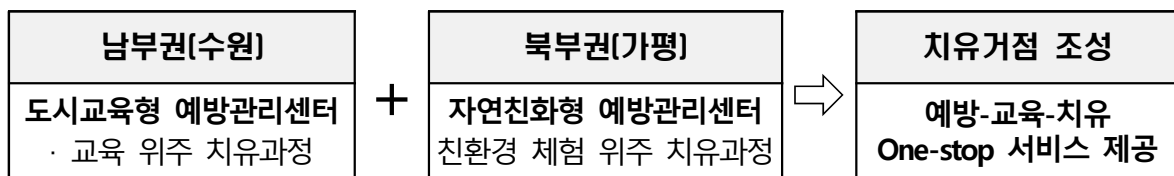
6.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경기도에서는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수원시와 가평군에 각 1개소씩 총 2개소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운영을 추진 중에 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는 친환경 체험을 통한 도민 건강 증진 및 질환 예방,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과학적 근거 중심의 질환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는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233번길 144 광교산 인근에 100억원 (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로 2012년 착공하였으며 2014년 4월 개관하여 수원시에서 운영 중이다. 세미나실, 상담실, 검사실, 체험실, 숙박시설 등을 마련하여 환경성질환의 예방 관리교육, 가족의 심리·정서적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평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는 가평군 상면 축령로 289-126 축령산 인근에 100억원 (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로 2014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2019년 7월 개관하여 가평군에서 운영 중이다. 주요시설인 본관, 숙박시설, 생태 놀이터 등 부대시설과 가평군의 청정 자연환경 및 관광명소를 활용한 친환경 체험 및 체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2-4-7> 경기도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현황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는 질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환경성질환의 유병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림 2-4-7> 수원·가평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담당자 : 환경안전관리과 환경보건팀 한민정 / ☎ 031-8008-3544)

7. 환경성질환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의 증가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환경성질환의 발생에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관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지난 20년간 급격한 유전자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으므로 환경적인 요인이 환경성질환의 증가에 주로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환경성질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환경요인을 규명하고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환경성질환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로 인해 시의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는 등 사회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환자 개인에게 가려움증, 진물 등 신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자신감 결여, 사회적 소외, 불안감이나 우울감, 짜증 등 2차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져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또한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환자를 돌보는 시간과 추가적인 집안일 등으로 육체적 피로를 겪는 등 질환자와 가족 전체에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

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사업 추진

환경성질환은 가정과 사회에 막대한 부담을 야기하는 만성질환으로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환경성질환의 종합적·체계적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질환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수원·가평환경성질환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가 소재한 지역 주민 중심 사업에서 도 단위 광역센터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유아, 학부모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질환자 상담, 예방인형극, 종사자 교육, 부모교육 등 연령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환경성질환의 유병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및 개선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므로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예방·관리교육 만큼이나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가 장시간 머물거나 주로 활동하는 공간인 어린이집 및 놀이 시설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내·외 전체시설에 대하여 녹이 슬고 금이 가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았는지 육안검사를 하고, 페인트를 칠한 시설, 시트지·벽지 등 마감재료를 사용한 시설의 중금속 측정

통해 기준이상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않은지 검사하고, 놀이터 모래의 중금속이나 기생충란 검사 등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통해 시설이 개선되도록 조치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머물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담당자 : 환경안전관리과 환경보건팀 한민정 / ☎ 031-8008-3544)

제5장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구현

제1절 일반현황

제2절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제3절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제4절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화

제5절 생활폐기물 처리

1. 폐기물관리의 기본방향
2. 경기도 폐기물 통계자료 작성
3.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4.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5.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
6. 의료폐기물 관리
7.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 도입
8. 불법폐기물 관리 및 예방대책
9.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10.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1. 폐기물 관리의 기본방향

경기도에서는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재활용 및 자원화의 극대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을 폐기물 관리 3대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첫째,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생산·유통·소비 등 경제활동 과정 및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발생 총량을 억제하고 최소화하는 것으로 1995년부터 쓰레기 감량에 제도적 바탕이던 쓰레기 종량제와 더불어 음식물류 폐기물도 종량제를 실시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배출체계를 개선하고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억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재활용 및 자원화의 극대화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활용 제품의 수요처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간 재활용 수집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종이팩, 전지류 등 유가성이 낮아 재활용률이 저조하거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는 품목들도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폐자원에 고부가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를 조성하였다.

셋째,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효율적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과 함께 4자 협의회를 운영하여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발전 및 열 공급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처리시설 주변을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휴식 및 체육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 주민과 친화되고 안전한 처리시설이라는 인식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민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깨끗한 경기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자원순환사회 기반구축을 위하여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자원순환이용률 확대, 재활용률 제고,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및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조성이다.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 권영복 / ☎ 031-8008-4253)

2. 경기도 폐기물 통계자료 작성

경기도는 폐기물 관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등 폐기물 통계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조사·수록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현황, 생활·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생활·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 등 40여 개 항목이다. 조사대상 기간은 다음 해 1월부터 기초 데이터를 수집·정리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최종 확정한다.

폐기물 통계자료는 국가 및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계획 수립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것으로서 경기도에서는 보다 정확한 폐기물 통계 작성을 위하여 통계자료 DB화와 통계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 최은이 / ☎ 031-8008-4254)

3.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0%인 134,936백명('18년 폐기물 통계)이다.

< 표 2-5-1 >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단위 : km², 백명)

계		관 리 구 역		관 리 구 역 외	
면적	인구	면적	인구	면적	인구
10,187	134,936	10,187 (100%)	134,936 (100%)	-	-

※ 2019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2018년도 기준 전년 대비 인구는 1.9% 증가되었으며 1일 생활폐기물은 6.9%가 증가된 12,406.1톤이 발생되었다. 이 중 61%인 7,530.7톤은 재활용으로 처리되었고, 나머지는 소각 또는 매립처리되었다.

< 표 2-5-2 >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톤/일)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발 생 량	10,213.6	10,362.4	10,798.2	10,428.2	9,919.2	10,452.1	11,467.1	12,069.5	11,605.3	12,406.1	
처 리	매 립	1,128.2	940.6	1,167.1	660.8	784.5	962.6	1,029.9	1,220.3	835.0	958.3
	소 각	2,750.6	3,010.2	3,123.3	3,377.9	3,354.2	3,476.7	3,684.7	3,716.1	3,694.7	3,917.1
	재활용	6,334.8	6,411.6	6,507.8	6,389.5	5,780.5	6,012.8	6,752.5	7,133.1	7,075.6	7,530.7

※ 2019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2018년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0.92kg으로 2017년도(0.88kg) 대비 0.04kg 증가하였다.

< 표 2-5-3 >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단위 : kg/일·인)

'06	'10	'11	'12	'13	'14	'15	'16	'17	'18
0.83	0.86	0.88	0.84	0.79	0.83	0.89	0.92	0.88	0.92

※ 2019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 최은이 / ☎ 031-8008-4254)

4.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2018년도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대비 5.1%가 감소하였으며, 총량대비 77%가 재활용되었다.

< 표 2-5-4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처리현황

(단위 : 톤/일)

구 분	계	매립	소각	재활용	해양배출
'15년	20,594.8 (100%)	5,034.0 (24.4%)	2,207.5 (10.7%)	13,157.9 (63.9%)	195.4 (1.0%)
'16년	19,051.8 (100%)	3,607.2 (18.9%)	2,056.3 (10.8%)	13,388.3 (70.3%)	0 (0.0%)
'17년	19,899.1 (100%)	3,460.4 (17.4%)	2,151.8 (10.8%)	14,286.9 (71.8%)	0 (0.0%)
'18년	18,892.5 (100%)	2,544.5 (13.5%)	1,808.7 (9.6%)	14,538.9 (77.0%)	0.4 (0.0%)

※ 2019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 최은이 / ☎ 031-8008-4254)

5.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

2018년도에 1일 50,331.5톤의 건설폐기물이 배출되었으며, 이 중 97.8%에 달하는 대부분의 건설폐기물이 성토재, 도로기층재로 공사현장에서 재활용되고 있다.

< 표 2-5-5 >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톤/일)

구 분	발생량	매립	소각	재활용
'15년	46,039.0 (100%)	972.2 (2.1%)	371.3 (0.8%)	44,695.5 (97.1%)
'16년	46,524.3 (100%)	787.0 (1.7%)	236.2 (0.5%)	45,501.1 (97.8%)
'17년	44,502.8 (100%)	870.5 (2.0%)	259.8 (0.6%)	43,372.5 (97.5%)
'18년	50,331.5 (100%)	909.5 (1.8%)	205.1 (0.4%)	49,216.9 (97.8%)

※ 2019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 최은이 / ☎ 031-8008-4254)

6. 의료폐기물 관리

가. 현황 및 성과

폐기물관리법 개정(2007.1.3)으로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더욱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제 관리대상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감염성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의료폐기물”로 변경하여 2008년 1월 4일부터 사용하게 되었다. 의료폐기물은 인체조직 등의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으로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의료폐기물이 배출되는 기관 및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올바른시스템을 도입하여 그 처리경로를 확인·감시하는 등 매우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2018년도 경기도에서 발생된 의료폐기물은 총 42,451.0톤으로서 이중 39,719.4톤은 소각, 2,731.6톤은 재활용 등으로 각각 처리하였다.

< 표 2-5-6 > 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톤/년)

연도	전년도 이월량	발생량	처리내역				보관량	
			총계	자가처리		위탁처리		
				소각	기타 ⁷⁾	소각		재활용
2018	87.2	42,451.0	34,806	136.4	2,709.7	39,583.0	14.6	94.5

※ 2019년 지정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나. 발전방향 및 향후 계획

의료폐기물의 2차 감염예방을 위해 2004년 8월 1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의 규정)됨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으로 적용되는 배출사업장이 10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되었다. 기존의 일반폐기물로 관리하였던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의 의무시설, 기업체의 부속의료기관, 사단급 이상 군부대의 의무시설, 노인전문 요양시설 및 유료 노인전문 요양시설, 태반의 재활용신고를 한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의료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였다.

의료폐기물의 선진적 관리제도 RFID(무선주파수인식기술) 올바른시스템을 도입(2008. 8. 4. 시행)하여 의료폐기물의 배출단계에서부터 처리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검사기관(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환경공단)의 검사에 합격한 전용용기를 사용하여야 함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보건협회 및 대한의사협회 등을 통해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의료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을 적극 예방해 나가고 있다.

(담당자 : 자원순환과 폐자원관리팀 서승원 / ☎ 031-8008-3458)

7) 기타 란은 멸균분쇄, 폐수처리시설에서 정제되는 경우 등임

7.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 도입

기존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는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처리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행정기관 등이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종이인계전표를 통한 폐기물관리는 종이인계서의 관리, 확인, 검토에 따른 복잡한 행정 절차와 과도한 업무량,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http://www.allbaro.or.kr>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편의는 물론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의 배출에서 최종처리까지 전 생애적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자동 관리할 수 있는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인 이 시스템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수집·운반자가 갖고 있는 리더기(Reader)를 통과하여 인식되는 순간 폐기물의 종류, 중량 등 폐기물 정보가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된 중앙전산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자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지정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 배출자 및 수집·운반자, 처리자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배출 또는 수집·운반, 처리한 폐기물량 및 처리일시, 장소 등을 입력하면 폐기물 이동경로 및 정보가 인터넷에 나타나 행정기관에서는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처리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던 폐기물배출자신고서 등도 동 시스템에서 직접입력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은 2007년 8월 3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2008년 8월 4일부터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시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전자인계서 작성이 의무화 되면서, '10.6월 건설폐기물과'11.7월 배출자 신고대상(일원화) 전체 사업장폐기물(9개 →37개)로 작성 대상을 확대시행 하였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시행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의 폐기물을 전자인계서를 통하여 전산 관리함으로써 폐기물의 투명한 관리와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는 본 시스템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인계서 작성, 실적보고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담당자 : 자원순환과 폐자원관리팀 서승원 / ☎ 031-8008-3458)

8. 불법폐기물 관리 및 예방대책

< 표 2-5-7 > 불법폐기물 처리현황

(‘19.12월 기준, 단위: 톤)

구 분	발생 개소(잔여)	발생량	처리량	잔량
계	92(50)	747,927	605,513	142,414
방 치	17(10)	607,553	540,002	67,551
불법투기	75(40)	140,374	65,511	74,863

* 방 치 : 조업중단·허가취소·부도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체 내에 적체된 폐기물

**불법투기 :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임야, 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

경기도에서는 '19년 행위자·투기자 등 처리책임자 약 38만톤, 행정대집행 약 23만톤 등 약 61만톤의 불법투기 및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 불법폐기물 투기예방대책을 수립하여 2020년도에 추진*하였다.

* 2020년도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근절대책 : ① 불법투기자 공익제보 포상(최고 1억원), ②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건당 10~300만원), ③ 불법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한 폐기물배출·처리업체 도·시군 합동 연중 수시 점검

(담당자 : 자원순환과 폐자원관리팀 이병돈 / ☎ 031-8008-3471)

9.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도내 31개 시·군 중 4개 시·군이 직·공영, 1개시가 대행, 26개 시·군이 직·공영 및 대행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청소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보유장비는 차량이 2,766대, 손수레 중장비 146대이다.

< 표 2-5-8 >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인 력(명)			장비현황(대)								
			차 량			손수레			중장비		
계	자치단체	처리업체	계	자치단체	처리업체	계	자치단체	처리업체	계	자치단체	처리업체
7,308	3,420	3,888	2,766	1,042	1,724	704	433	271	146	120	26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 최은이 / ☎ 031-8008-4254)

10.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2016년 5월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폐기물 처리에 있어 환경적으로 가장 우선시되는 처리 방법은 재활용이며 매립은 최후의 처리 수단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립과 소각을 억제하여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전년도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에 폐기물의 유형별 부과요율(원/kg)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되며, 납부의무자는 전년도에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징수기관에 3월 말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문화조성등의 사업, 폐기물처분시설·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담당자 : 자원순환과 환경시설팀 고경주 / ☎ 031-8008-4262)

제2절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1. 자원순환 정책 비전 수립
2. 깨끗한 경기만들기 추진
3. 생활폐기물 배출·수거체계 개선
4.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1. 자원순환 정책 비전 수립

가. 추진배경

천연자원의 고갈과 폐기물 매립지 부족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경기도 인구는 1.2배 증가하였으나 폐기물 발생량은 1.3배 증가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군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가용한 자원은 최대한 활용하고 한번 사용한 것도 재이용하는 순환사회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비전 및 정책 목표

폐기물은 재료, 자원이 순환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Zero Waste 경기도' 라는 비전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재활용률 제고,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조성이라는 4대 정책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다. 핵심사업 추진계획

첫 번째로,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부족한 소각시설을 시·군 간 광역적 설치 및 공동 이용을 추진하고, 노후 소각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화재·고장·보수 등의 원인으로 소각장 가동이 멈췄거나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이 어려울 경우 시·군 간 협력을 통해 폐기물을 공동 처리를 위해 구축한 품앗이 소각체계도 도내 소각시설로 확대 구축하였다.

두 번째로,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농촌 및 단독주택 지역에 거점배출 방식의 맞춤형 생활폐기물 배출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수선별에 의존하던 노후시설을 자동화로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업사이클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옛 서울대농생대 부지에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업사이클은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Recycle·재활용)'의 합성어로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로,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를 공공분야에서 선수범하고, 도민 공감과 실천 유도를 통해 민간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종 관급 공사 시 천연골재 대신 순환골재를 사용하고 녹색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네 번째로, 자원순환문화 조성을 위해 폐기물을 줄여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시스템과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목표로 하는 자원순환마을을 확대하고 민간과 기업,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자원순환포럼을 운영하는 등 자원순환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 권영복 / ☎ 031-8008-4253)

2.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

깨끗한 경기 만들기는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2018년 10월 생활, 도로, 산림, 하천, 농지, 해양 등 각 6개 분야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고, 2019년부터 민·관이 합동하여 생활폐기물의 신속처리와 불법행위 감시 및 단속, 정화활동을 추진 중이다.

<그림 2-5-1> 2019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전략

	단기계획	중장기계획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속강화) 집중단속기간 운영(경찰 협업) ○(홍보강화) G-버스, 반상 회보지, SNS 등 및 취약지역(외국인 집중거주 지역 등) 홍보 ○(수거체계 구축) 기동처리반(29개 사군) 및 도로관찰제(Road-checking) 운영 ○(정결운동 확산) 깨끗한 경기 만들기 청결운동 전개(민간단체, 사군, 군 협업) ○(체험교육) 환경기초시설 등 현장 체험교육 시행(교육청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포상금) 신고포상금 상향조정(10~20%→40%) 및 신고포상금 규모 확대 ○(인프라 구축) 이동식 감시카메라(79대) 및 경고표지판(202개), 거점배출시설(66개소) 설치 ○(도민참여 확대) '도로환경 감시단' 확대 운영(20개 사군 4,063명 - 31개 사군 4,500명) 및 주민자율정화사업 활성화(행복홀씨 입양사업 확대)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화활동 전개) 도로환경 정비 추진 ○(T/F팀 운영) 도로변 무단투기 근절 T/F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화활동 확대) 도로환경 정비 확대 추진('19년부터 춘계, 하계, 추계 3회 추진)
산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시강화) 산불감시원(851명) 등이 무단투기 감시활동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화활동 전개) 산림정화요원(109명) 환경정비 지속 추진
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속강화) 자연별 관리책임제(팔당수계 15개 자천 1회/일 이상 순찰) 운영 ○(홍보강화) 무단투기 금지 캠페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시강화)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인원 증원(102명 - 160명) ○(정화활동 전개) 팔당수계지역 정화활동 사업 지속 추진
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18년 농촌 페비널 공동집하장 확충(10개소), 농촌 페비널 및 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19년 농촌 페비널 공동집하장 확충(11개소), 농촌 페비널 및 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지급 ○(불법소각 예방) 농업부산물 파쇄기 운영
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화활동 전개) 연안정화의 날(매월 셋째주) 만관 합동 정화활동 전개 ○(단속강화) 해양투기 단속 요청(해수부, 해경) ○(무단투기 예방 강화) 어구실명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율활동 활성화) 항포구 지킴이 운영(22명) ○(정화사업 추진) 해안가 쓰레기 수거 등 5개 사업 추진 ○(인프라 구축) 경기도 바다 청소선 건조

2019년 주요 성과로는 민간감시원 운영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올바른 배출방법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 분위기를 확산하였고 이와 함께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도 증가하였다. 무단투기 상시 감시를 위한 감시카메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위한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도로관찰제 및 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 불법 투기된 폐기물을 신속 처리 하였으며, '깨끗한 경기의 날', '경기 청소의 날' 운영을 통해 특별대청소를 추진하여 주민참여 정화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시·군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연내 추진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 후 자원순환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상사업비를 교부하고 민·관 유공자에 대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였다.

경기도는 도민 누구나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 김민경 / ☎ 031-8008-4251)

3. 생활폐기물 배출 · 수거체계 개선

농촌 및 단독주택 지역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별도의 생활폐기물 수거지역 또는 수거시설 등이 부족하여 나대지·도로변에 배출하여 미관문제를 야기한다. 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품은 분리하고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여 적법하게 배출하더라도 수거시설이 없어 쓰레기 날림, 수거 후 잔여물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신주 주변, 보도블록 구석에 놓인 폐기물은 보행자와 주변지역 주민의 준법 의식을 약화시켜 더 많은 투기 및 혼합배출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배출부터 수거 시점까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등을 분리배출, 보관하여 수거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등을 예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품 수거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실천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4년부터 3년간 농촌, 도시, 단독주택 밀집 등 지역 특성에 따른 모델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시범사업에 따라 2017년부터는 농촌지역 공동집하장, 공동수거함, 분리수거대(이동식), 분리수거시설(고정식) 4가지 모델을 확정 하여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재활용 동네마당과 함께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9년에는 재활용 동네마당 15개소 , 농촌지역 공동집하장 7개소, 공동수거함 5개소, 분리수거시설(고정식) 6개소, 분리수거대(이동식) 4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청결하게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재활용률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2-5-2>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진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 김민경 / ☎ 031-8008-4251)

4.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따른 대량생산, 대량소비 방식의 생활습관은 자원과 에너지의 고갈을 초래하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자원의 고갈 및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자원 및 에너지로 인식하고 과거의 자원소비형 사회에서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자원 및 에너지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민간과 행정이 참여하고 마을 특성을 고려한 생활환경복지마을, 초록마을 대학, 자원순환마을 등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상기 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주도형 자원순환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환경 교육을 통해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과 주민 스스로 폐기물·에너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2년 처음 시작될 당시에는 쓰레기 제로와 자원순환 문제를 주로 다뤘고, 2013년에는 에너지 절약 부분을 추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외국인 쓰레기 문제를 포함하는 주제로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교육과 캠페인활동, 쓰레기 거점 지역 선정 및 쓰레기 분리배출 시설 마련, 지자체와 주민간의 민·관 네트워크 형성, 지역 자원순환 축제개최, 마을공동체 형성 등의 사업성과를 내고 있다. 2019년까지 총 89개소 조성되었다

경기도는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확보 및 참여마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2-5-3> 자원순환마을 조성사례

			
(부천 원미1동) ‘1회용 비닐봉투 없는 시장 만들기’	(부천 송내2동) ‘폐목재 도롱뇽호형물’	(여주 금사면 외평리) ‘RE&UP 폐자원 활용’	(연천 청산면백의1리) ‘농촌형 클린하우스’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김수형 / ☎ 031-8008-4256)

제3절

폐기물재활용 활성화

1. 폐기물재활용 의의
2. 재활용품 수거량 및 재활용률
3.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시행
4.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5.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6.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7. 1회용품 사용 줄이기

1. 폐기물재활용 의의

인구의 증가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대량생산, 다량소비로 인하여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에 의한 2차 환경오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실천하는 '환경 친화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선별·수거하여 재사용하거나 재생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의 양을 줄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으로 활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으로 처리비용을 줄이고, 도민 참여 중심의 다양한 재활용 시책 추진과 인프라 구축으로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박순영 / ☎ 031-8008-4258)

2. 재활용품 수거량 및 재활용률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폐자원 수거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수거 운동 전개 및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로 폐기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표 2-5-9 >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

(단위 : 톤/일)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생활폐기물 발생량	9,790.0	10,195.6	10,213.6	10,362	10,798.2	10,428.2	99,19.2	10,452.1	11,467.1	12,069.5	11,605.3	12,406.1
재활용량 (비율)	5,670.8 (57.9%)	6,289.4 (61.7%)	6,334.8 (62.0%)	6,411.6 (61.9%)	6,507.8 (60.3%)	6,389.5 (61.3%)	5,780.5 (58.3%)	6,012.8 (57.5%)	6,752.5 (58.9%)	7,133.1 (59.1%)	7,075.6 (60.9%)	7,530.7 (60.7%)

품목별로 유리병, 캔류 등은 재활용 분리배출이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재활용이 미흡한 전지류, 종이팩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분리배출 홍보와 수거체계 마련으로 재활용률을 꾸준히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표 2-5-10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현황(2018년)

(단위 : 톤/일)

종이류	유리병류	금속캔류	합성수지류	플라스틱류	발포수지류	전자제품	전지류
347.5	314.3	103.2	667.6	301.1	39.9	49.6	2.4
타이어	형광등	고철류	의류	영농폐기물	가구류	폐식용유	기타
11.5	24.3	122.1	13.6	26.4	323.0	4.7	216.8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박순영 / ☎ 031-8008-4258)

3.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시행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이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과 남미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인 국가 재활용 정책이다. 이는 종전 제품의 재질구조개선 정도에 있던 환경개선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무 범위를 소비자가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지자체·생산자·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 표 2-5-11 >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주체별 역할

주 체	역 할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분리배출표시 포장재는 각 시군구별로 분리 수거체계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수·재활용 의무 성실 이행(투명한 재활용위탁 계약 체결)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 이행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EPR 대상 포장재의 분리수거 업무 철저 분리수거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 체계구축
한국환경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별 출고량, 회수·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 · 승인 회수·재활용의무이행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실적확인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집행에 관한 사항 재활용 현장 확인·조사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제 · 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를 산정 고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지원 · 관리 주체간의 갈등 조정 및 해소

우리나라의 경우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으로는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과 7개 제품군(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EPR 시행에 따른 분리수거 용기 확충 및 지역주민에 대한 분리배출 방법 홍보 등을 통해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변지현 / ☎ 031-8008-4276)

4.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농촌지역에 버려져 있는 폐비닐의 적기 수거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20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은 폐비닐의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 B, C, D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A등급 150원/kg, B등급 110원/kg, C등급 70원/kg, D등급 0원/kg)하고 있다.

< 표 2-5-12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시행지역

수원, 고양, 용인, 화성, 안산, 남양주, 평택, 시흥, 파주, 김포, 광주,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특히,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농촌폐기물의 수거 참여율을 높이고자 영농폐기물의 다량 발생시기인 봄, 가을철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수거체계 개선을 위하여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그림 2-5-4 > 농촌폐비닐 수거·처리 체계도



< 표 2-5-13 > 연도별 농촌폐비닐 수거현황('13 ~ '19년)

(단위:톤)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폐비닐 수거량	17,605	14,938	13,703	16,560	15,588	16,908	16,863

(담당자 : 자원순환과 폐자원관리팀 성태은 / ☎ 031-8008-4268)

5.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경기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선별장)는 29개소이며, 이 중 위탁운영이 23개소, 직영 운영방식이 6개소이다. 2019년 생활자원회수센터 일일평균 반입량은 1,046톤으로 이 중 54%인 565톤이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선별 회수되었다.

재활용품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현대화를 위하여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운영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추가적인 시설 보강 계획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 표 2-5-14 >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 현황

재활용 선별장	처리용량 (톤/일)	운영방식	선별방식	재활용 품목수
29개소	1,467	위탁 23, 직영 6	자동화 2 수선별 11 자동·수선별 16	평균 22

< 표 2-5-15 > 연도별 생활자원회수센터 처리 현황

구분	(톤/일)		
	2017년	2018년	2019년
반입량	864	1,015	1,046
선별량	483	553	565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변지현 / ☎ 031-8008-4276)

6.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경기도는 초기단계인 업사이클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어 건전한 「환경·소비문화」 육성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과 일자리 창출, 도민들에게 업사이클 문화 확산 및 자원순환사회 토대 마련을 위해 옛 서울농생대 건물인 '상록회관'을 리모델링해 19. 6. 15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를 개관 하였다

업사이클이란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Recycle)의 합성어로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가 더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으로 버려지거나 쓸모없어진 것을 수선 또는 수리해서 재사용하는 의미의 리사이클보다 진보된 개념이다. 즉, 단순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전혀 다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업사이클플라자는 연면적 2,660.15㎡, 지상1층, 지하1층 규모로, 지상 1층에는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소재를 찾아볼 수 있는 소재전시실, 업사이클 제품을 만드는 디자이너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방, 전시카페, 세미나실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아이디어 상품을 제작해 볼 수 있는 공동 작업실(▲정밀 3D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등의 첨단 장비가 구비된 90.62㎡ 규모 '순환창작소'), 업사이클 제품 생산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시설(▲3D프린터 ▲페이퍼 및 원단류 커터기 ▲봉제기 등의 장비를 갖춘 448㎡ 규모 '창작의 광장') 등 도민의 인식 개선부터 창업에 이르기까지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19년 주요실적으로 폴리마켓, 세미나·포럼 등 자원순환행사 추진(6월~10월 / 4회 1,900명), 탐방체험실습, 강사양성 및 교사연수과정 운영(6월~12월 / 5개 과정 / 4,766명), 교육청 지정 특수분야 교사연수 기관 지정('19.8월), 자원봉사 인증기관 지정('19.12월) 등을 통해 도민 자원순환 인식개선 및 문화확산을 도모하였으며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8개소 50백만원), 소재중개 활성화 지원(90건), 팝카페 운영(97회 1,056명), DB구축(소재 503, 제품 280), 사업화 컨설팅 66건, 업사이클 공모전 개최(10개작 선정) 등을 통해 업사이클 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을 위한 '거점역할' 수행하였다

<그림 2-5-5> 업사이클플라자 주요 추진사업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김수형 / ☎ 031-8008-4256)

7. 1회용품 사용 줄이기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1회용 컵·용기·봉투·쇼핑백 등 총 18종을 지정하고 업소별 사용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택배·배달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1회용품 관련 발생 폐기물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자원절약 및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자발적 저감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솔선수범을 위해, 2019년에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해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청사 내 다회용품으로 대체 가능한 4대 1회용품(1회용컵·용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및 우산 비닐 커버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플라스틱 재질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물티슈를 공공기관 내 사용금지 품목으로 포함하여 플라스틱 제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자발적 1회용품 사용 저감 유도를 추진하였다. 1회용품 규제업소 지도·점검 및 홍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회용품 민간 감시원 운영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포장재 폐기물 감량을 위해 명절기간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1회용 컵 사용 제품의 판매자가 1회용 컵을 반환하는 자에게 1회용 컵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가 2022년 6월 시행되어 1회용품 사용 규제는 점차 강화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솔선수범, 업소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황윤정 / ☎ 031-8008-3522)

제4절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화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 음식물류 폐기물 원천적 감량
3. 자원화시설 기반구축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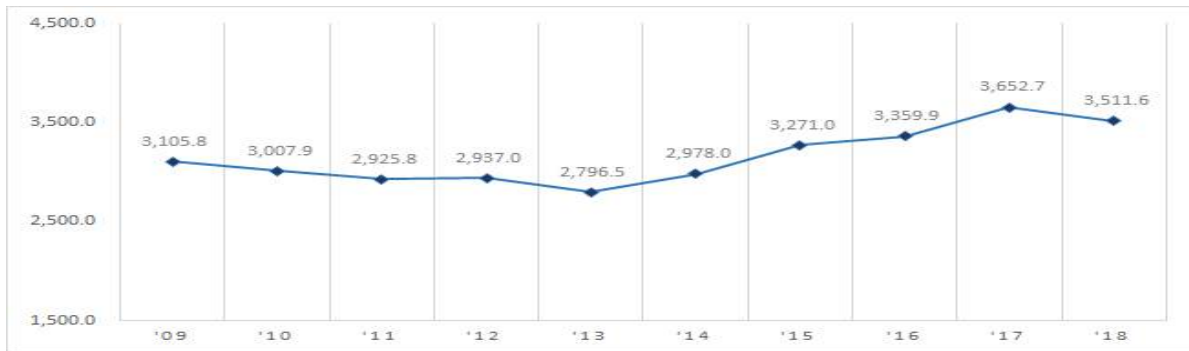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최근 고병원성 조류 독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인한 처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경기도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2009년에는 3,105.8톤/일이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 2013년에는 2,796.5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2014년부터 다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적정 처리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대응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일일 발생량 12,406.1톤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3,511.6톤으로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28.3%에 해당하며, 1인당 1일 발생량은 0.26kg으로 전국 1인당 1일 발생량 0.27kg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5-6>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단위 : 톤/일, 출처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은 1997년 기준 매립 73.3%, 소각 11%, 자원화 15.7%에서 2018년 기준 매립 0%, 소각 0.9%, 자원화 99.1%로 단순 매립·소각 위주에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으로 전환되었다.

<그림 2-5-7>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추이

(단위 : %, 출처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장지연 / ☎ 031-8008-3523)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경기도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정책은 배출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과 에너지 · 기후 변화에의 악영향을 저감하고자 수집·운반·재활용 촉진 등 사후처리에서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사전발생 억제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에 두고, 2013년부터 ‘버린 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발생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종량제의 시행은 원천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유도과 발생량 감소로 경제적·사회적 낭비를 예방하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므로 지역 특성에 맞추어 추진하고, 발생억제 계획으로 목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장지연 / ☎ 031-8008-3523)

3. 자원화시설 기반구축

음식물류 폐기물은 발생단계에서부터 감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 문화개선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원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996년부터 자원화시설 확충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2019년 기준 27개소의 공공 자원화시설과 140개소의 민간 자원화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로 재활용하거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다.

<표 2-5-1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수	시설규모 (톤/일)
계	167	9,022
공공처리시설	27	2,709
민간처리시설	140	6,313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자원화 및 재활용 제품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리배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남은 음식물 줄이기와 함께 분리배출의 필요성 및 올바른 분리배출 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추진하고 분리배출 기준 확대, 전용 수거용기 보급 등을 통한 분리수거 체계 확립과 시·군별로 공공 자원화시설을 확충하여 자원화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장지연 / ☎ 031-8008-3523)

제5절

생활폐기물 처리

1. 소각시설 관리 및 건설
2. 매립지 관리 및 건설
3. 사용종료 매립지 공원 조성 사업
4. 폐기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1. 소각시설 관리 및 건설

가. 기본방향

좁은 국토 면적, 침출수와 악취·매립가스의 발생, 난분해성 폐기물의 매립에 의한 환경 오염 등 매립에 의한 쓰레기 처리방식에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1990년대 이후 기존 매립 위주의 폐기물처리가 소각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1984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정부시에 스토커 방식²⁾의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고, 1995년에는 성남시에 유동상식 소각로³⁾가 건설되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현재 도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26개소로 처리용량이 5,114톤/일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는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1시·군 1소각장 건설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아울러 폐기물의 경제적인 처리와 효율성 확보를 위해 18개 기초자치단체를 8개 권역으로 묶어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 소각시설의 광역화 추진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사업은 수차에 걸친 기초자치단체간의 행정협약과 전문가 자문, 그리고 주민대표, 환경단체, 지방의원의 참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다.

그 결과 8개 권역에서 18개 기초자치단체가 광역화 사업에 합의하여 광명시와 구로구간의 쓰레기와 하수처리의 빅딜, 과천시와 의왕시 생활폐기물 소각, 구리시와 남양주시간의 생활폐기물 소각과 매립, 파주시의 김포시 생활폐기물 소각, 이천·광주·하남·여주·양평 등 5개 시·군의 동부권 소각, 양주시의 동두천시 생활폐기물 소각, 군포시와 의왕시 생활폐기물 소각, 화성시와 오산시간의 쓰레기와 하수처리의 빅딜 등 인접 자치단체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재정적·행정적 낭비 요인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광역 소각시설의 경우 소규모 시설의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통합관리를 통하여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광명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서울시 구로구 쓰레기를 반입 처리하는 대신 광명시 하수를 서울시 서남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하는 국내 최초의 광역자치단체간 환경기초시설 '빅딜'을 성사시켜 건설비·운영비 등 1,7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바 있다.

그 외 광역시설인 동부권 소각시설은 5개 지방자치단체(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가 공동으로 건설·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대표적 광역화 사례로서 2008년 9월에 준공,

2) 스토커(Stoker) 방식 : 노(爐)내의 화격자위에 폐기물을 투입하여 연소용 공기를 화격자 하부로부터 공급하면서 건조, 연소, 후 연소 등 3단계로 소각하는 방식

3) 유동상식(Fluidized bed type) 소각로 : 내화물을 내장한 수직 원통형 노체에 모래를 유동매체로 하여 2,000~3,500mmH₂O의 압축공기로 유동층을 형성하고, 700~800도로 가열된 모래에 의하여 투입된 폐기물을 순간적으로 건조, 소각하는 방식

북부권(양주,동두천) 소각장은 2009년 12월에 준공하였다. 화성권(화성, 오산)의 경우에도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2010년 4월 시설을 완공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이 더욱 확대되었다.

< 그림 2-5-8 > 동부권 광역 소각시설(이천시)



다. 소각시설의 여열이용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고 철저한 운영·관리를 통한 자원의 낭비억제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소각시설 건설시에는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열이용을 위한 온수 또는 전력 생산설비를 갖추고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여열과 전기를 주민편익시설인 수영장·헬스시설 등에 공급함은 물론 자체 소각시설에도 활용하고 있다.

2019년에는 지역난방공사 등에 열원을 공급하여 86,998백만원의 판매수익을 창출하였으며, 기존의 여열 회수·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의 경우 열 회수효율 증대, 열공급처 확대, 품질향상 등 여열활용 확대방안을 검토하여 건설함으로써 소각시설이 단순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에너지 생산시설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휴식 및 체육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제공될 것이다.

< 표 2-5-17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여열 생산 및 이용실적(2019년)

(단위 : Gcal/년, 백만원)

구분	여열 발생량	여열이용량(Gcal/년)			공급수익(백만원/년)			이용률(%)
		계	발전	열공급	계	발전	열공급	
계	3,270,495	3,249,393	311,855	2,937,537	90,715	3,717	86,998	99.4%
수원	383,110	383,110	-	383,110	4,974	-	4,974	100.0%
고양	185,648	185,648	8,800	176,848	1,979	29	1,950	100.0%
용인	195,276	195,276	49,406	145,870	1,211	68	1,143	100.0%
용인수지	37,013	37,013	-	37,013	635	-	635	100.0%
성남	378,759	378,759	-	378,759	4,337	-	4,337	100.0%
성남판교	38,231	38,231	-	38,231	586	-	586	100.0%
부천	174,720	174,720	129	174,590	2,103	-	2,103	100.0%
화성	156,191	156,191	15,804	140,387	2,834	638	2,196	100.0%
안산	170,029	170,029	6,126	163,903	2,447	620	1,827	100.0%
남양주	45,891	44,816	14,501	30,315	473	-	473	97.7%
안양	152,870	152,870	13,313	139,557	2,777	899	1,878	100.0%
평택	10,010	1,542	-	1,542	-	-	-	15.4%
파주	185,203	185,203	-	185,203	2,147	-	2,147	100.0%
파주운정	63,566	63,566	-	63,566	606	-	606	100.0%
의정부	140,798	140,798	6,911	133,887	898	62	836	100.0%
김포	62,180	62,180	-	62,180	686	-	686	100.0%
광명	168,745	168,745	-	168,745	2,481	-	2,481	100.0%
군포	114,128	114,128	-	114,128	1,354	-	1,354	100.0%
하남	41,790	34,037	-	34,037	-	-	-	81.4%
양주	132,035	130,371	111,890	18,481	-	-	-	98.7%
이천	206,190	206,190	17,585	188,605	1,400	1,400	-	100.0%
구리	94,843	94,843	46,852	47,991	1	1	-	100.0%
안성	22,735	22,734	14,487	8,247	-	-	-	100.0%
포천	43,568	43,568	-	43,568	-	-	-	100.0%
과천	56,786	56,786	-	56,786	56,786	-	56,786	100.0%
연천	10,180	8,039	6,051	1,988	-	-	-	79.0%

(담당자 : 자원순환과 환경시설팀 이향선 / ☎ 031-8008-4263)

라. 대기 오염물질(다이옥신) 저감대책

다이옥신은 유기염소화합물을 소각할 때 불완전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다. 예전에 이 물질에 대한 법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사회문제로 확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의 대형 소각시설에 대해 1997년부터 선진국 수준인 0.1ng/m³ 이하(신설시설은 곧바로 적용하고, 기존시설은 0.5ng을 우선 달성한 후 2003년 7월부터 0.1ng으로 강화)로 배출하도록 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시간당 처리능력이 0.2톤 이상 소형 소각시설로 확대하여 다이옥신 관리를 강화하였다.

< 표 2-5-18 > 소각장별 다이옥신 배출기준 및 연도별 배출농도 현황

소각시설	소각용량 (톤/일)	배출허용기준 (ng-TEQ/S ^m)	측정결과(ng-TEQ/S ^m)			
			2018년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 원	600 (300×2기)	0.1	0.000	0.013	0.000	0.010
			0.000	0.019	0.000	0.001
고 양	300 (150×2기)	0.1	0.010	0.004	0.004	0.001
			0.046	0.043	0.002	0.001
용인	300 (100×3기)	0.1	-	-	-	0.003
			0.003	0.007	0.004	0.005
			0.002	0.009	0.009	0.004
	70 (35×2기)	10	0.003		0.010	
			0.006		0.011	
성 남	600 (300×2기)	0.1	0.008	0.011	0.035	0.014
			0.035	0.014	0.062	0.004
	90 (45×2기)	5	0.043		0.009	
			0.015		0.006	
부 천	300	0.1	0.001	0.001	0.002	0.003
화 성	300 (150×2기)	0.1	0.006	0.006	0.007	0.009
			0.008	0.007	0.004	0.009
안 산	200	0.1	0.000	0.000	0.001	0.028
남양주	52	0.1	0.003	0.001	0.001	0.001
안 양	200	0.1	0.001	0.001	0.001	0.002
평 택	30	10	0.137		0.483	
파 주	200 (100×2기)	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2
	90 (45×2)	5	0.013		0.011	
			0.025		0.068	

소각시설	소각용량 (톤/일)	배출허용기준 (ng-TEQ/S ^{m³})	측정결과(ng-TEQ/S ^{m³})			
			2018년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의정부	100×2기	0.1	0.000	0.004	0.005	0.001
			0.000	0.000	0.001	0.000
김 포	84 (42×2기)	5	0.005		0.012	
			0.004		0.005	
광 명	300 (150×2기)	0.1	0.005	0.000	0.004	0.000
			0.000	0.001	0.004	0.000
군 포	200	0.1	0.002	0.004	0.005	0.001
하 남	48	0.1	0.012	0.002	0.002	0.008
양 주	200 (100×2기)	0.1	0.029	0.035	0.008	0.009
			0.078	0.054	0.033	0.014
구 리	200 (100×2기)	0.1	0.011	0.007	0.004	0.001
			0.008	0.004	0.005	0.002
안 성	50	0.1	0.000	0.004	0.014	0.004
포 천	80 (40×2기)	5	0.009		0.022	
			0.003		0.007	
과 천	80	0.1	0.000	0.002	0.003	0.014
연 천	40	5	0.004		0.013	

주)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가스 1^{m³}당 검출되는 다이옥신의 양을 말한다. ng(나노그램)은 10억분의 1그램

(담당자 : 자원순환과 환경시설팀 이향선 / ☎ 031-8008-4263)

마. 사업장 및 소형 소각로 관리대책

소형 소각로의 경우 1998년 이전에는 배출허용기준 등 관리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 많았다.

그러나 1998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시간당 25kg 미만 소각로의 설치 금지와 모든 소각로에 대한 정기검사제도가 도입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25kg 이상의 모든 소각시설에 대하여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소형 소각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05년 5월 1일부터 소각시설을 대형(2톤/hr 이상), 중형(0.2톤/hr 이상 ~ 2톤/hr 미만), 소형(0.2톤/hr 미만)으로 구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 표 2-5-19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시 설 명	황산화물 (ppm)	질소산화물 (ppm)	염화수소 (ppm)	일산화탄소 (ppm)	먼지 (mg/Sm ³)	
					'14.12.31. 이전 설치	'15.1.1. 이후 설치
2톤/hr이상	30	70	12	50	20	10
200kg/hr-2톤/hr	40	90	15	200	30	20
200kg/미만	50	90	15	200	40	20

※ 대기관리권역(김포시 등 28개시) 내 소각용량 2톤/hr 미만 소각시설

또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미달되는 노후 소각로에 대하여 폐쇄 및 시설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소형 소각시설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후에도 기준에 미달되는 노후된 소각로의 폐쇄를 유도하여 소형 소각로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표 2-5-20 > 중·소형 소각시설 현황

(한강유역환경청 승인시설 포함, '19.12월말 기준, 개소)

구분	계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		
	계	소형	중형	계	소형	중형	계	소형	중형
경기도	67	42	25	7	0	7	60	42	18

※ 중형 200kg/시 이상 ~ 2톤/시 미만, 소형 25kg/시 이상 ~ 200kg/시 미만

(담당자 : 자원순환과 폐자원관리팀 서승원 / ☎ 031-8008-3458)

바. 발전방향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발생단계에서 최대한 재활용하여 배출을 최소화하고 최종 처리대상 폐기물은 위생적인 처리시설을 통해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과거의 단순매립, 단순소각 등의 처리방식에서 탈피하여 폐기물 자원화에 역점을 두고 광역화와 종합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시설부지의 개별 확보와 운영에 따른 시설비와 운영비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폐기물을 열원, 기초자원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주민에게 복지혜택을 돌려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폐기물을 이용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자원을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 중인 시설은 건설 초기단계에서 기술검토 등을 통해 완벽한 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다이옥신 등 각종 환경오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소각장 정문에 설치된 전광판에 주요 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한 행정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시설이 아닌 생활 속의 일부가 되도록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각종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체 현황을 도민에게 수시로 공개하고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폐기물이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자 : 자원순환과 환경시설팀 이향선 / ☎ 031-8008-4263)

2. 매립지 관리 및 건설

가. 수도권매립지 이용 및 운영관리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지역의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1989년 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매립지 건설·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 서구 백석동 일원의 1,618만㎡(490만평)의 부지에 조성한 광역 매립시설로 4자 협의체(환경부, 서울, 경기, 인천)의 사용종료 합의시까지 쓰레기를 매립할 계획이다.

당초 수도권매립지는 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설립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조합」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2000년 1월 21일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2000년 7월 22일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의 64개 기초자치단체(경기도 30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다.

그간 연간 폐기물반입량은 350만톤을 상회 하였으나 2019년에는 336만톤으로 그 중 서울시가 가장 많은 142만톤을 매립하고 인천시는 69만톤, 경기도는 125만톤을 매립하였으며, 경기도에서 반입한 폐기물중 생활계폐기물이 32.7%, 사업장 폐기물이 53.4%, 기타 건설폐기물 등이 13.9%로 나타났다.

< 표 2-5-21 > 수도권매립지의 경기도 폐기물 반입 추이

(단위:톤/일)

구 분	계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연 탄재
			생활계	배출시설계	건설폐기물	
'17년	1,325,850	206,619	124,194	587,058	390,094	17,885
'18년	1,463,225	292,877	111,957	780,165	263,064	15,162
'19년	1,250,121	313,085	82,449	667,806	173,271	13,510

(담당자 : 자원순환과 환경시설팀 정광훈 / ☎ 031-8008-4264)

나. 시·군 매립시설 이용 및 운영관리

도내 9개 시·군에 9개소의 매립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소각하고 남은 재) 또는 불연성 폐기물만을 매립하고 있다.

2019년 중 경기도내 매립장에는 1일 289톤의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으며 매립된 폐기물로부터 해충과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쓰레기 표층에는 매일 복토작업이 이루어지며, 9개소의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자체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완벽한 정화과정을 거쳐 배출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표 2-5-22 > 경기도 매립시설 현황

(2019년 12월기준)

구분	계	성남시	용인시	안성시	여주시	양평군	파주시	남양주시	가평군	연천군
매립용량 (천 m ³)	8,285	1,106	2,605	568	643	477	364	1,414	457	650
누적 매립량 (천 m ³)	4,146	891	1,286	210	413	277	102	45	411	512

경기도에서는 향후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 소각재에 대한 재활용 등을 통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최소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그림 2-5-9 > 매립시설(남양주시 에코랜드)



(담당자 : 자원순환과 환경시설팀 고경주 / ☎ 031-8008-4262)

3. 사용종료 매립지 공원 조성 사업

가.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활용방안 마련

1990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조성된 매립지는 대부분이 비위생매립지로 쓰레기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차단·처리하기 위한 차수시설 등 위생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등 체계적인 매립이 이뤄지지 못하였다.

경기도 지역에는 생활쓰레기 매립 후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가 125개가 있으며 이들 매립지의 대부분이 비위생적으로 조성되어 토양, 지하수 등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하고 도시의 팽창에 의한 개발욕구와 토지 활용도의 제고, 사유재산권 행사 등으로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01년 환경부에서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지침」을 마련하여 2001년 7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사용종료 매립지를 대상으로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미 안정화되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은 매립지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안정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매립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게 되었다.

경기도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의 매립지 안정화 평가기준에 따라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에 대해 매립폐기물 및 매립지반의 안정도 등 환경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후 사후관리를 종료하는 등 오염예방을 위해 매립지의 지속적인 정비 및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나. 사용종료 매립지 공원 조성

그동안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나대지 또는 환경이 불결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또한, 사용종료 매립지의 57%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 토지주의 동의 없이는 동 부지 재활용 사업의 추진이 곤란하거나, 일부 시설설치가 가능한 유휴 매립지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소재해 있고, 매립지의 대부분이 소규모로 토지 활용도가 낮다는 이유 등의 문제점으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용종료 매립지 주변이 도시개발의 확산으로 주거지역과 매립장이 인접하게 되면서 매립지 주변의 환경정비와 함께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내 125개 사용종료 매립지중 지역주민의 접근성 등 이용이 용이한 27개 매립지를 선정하여 체육공원 등 조성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동안 수원시 오목천, 안양시 석수동 등 24개 매립지에는 축구·농구·테니스장과 자전거도로 등 체육시설을, 용인시 어버리, 가평군 상색리 2개 매립지에는 테마공원을, 양평군 조현리 매립장에는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등 27개 매립지에 대한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매립장 환경을 크게 개선시켰을 뿐 아니라, 그동안 외면 받아온 매립시설이 주민들이 즐겨 찾는 친환경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현재, 남양주 일패 사용종료매립지에 체육공원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입지여건이 좋은 사용종료 매립지를 발굴하여 지역여건과 주변환경이 조화가 되는 친환경 공원조성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그림 2-5-10 > 사용종료 매립지 공원조성 모습



성남시 단대·상대원동 테마공원(23천 m²)



안양시 석수체육공원(78천 m²)

(담당자 : 자원순환과 환경시설팀 고경주 / ☎ 031-8008-4262)

4. 폐기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가.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SRF⁴⁾)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시범사업으로 부천시에 90톤/일(SRF 30톤)을 건설하였으며, 2012년에는 평택·안성시가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50톤/일(SRF 130톤) 규모의 시설을 2019년 12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다.

< 그림 2-5-11 >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SRF) 시설(평택 에코센터)



(담당자 : 자원순환과 환경시설팀 이향선 / ☎ 031-8008-4263)

4)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SRF(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 폐기물에 함유된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을 파쇄, 선별, 건조 등 전처리하여 연료화한 고형(固形)연료제품 제조

제6장

환경과 기업이 상생하는 경기도 조성

제1절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환경서비스 지원

제2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감시 강화

제3절 도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환경행정 구현

제4절 숲속공장(Plant in the Forest) 조성

제1절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환경서비스 지원

1. 산단 배출업소 맞춤형 인허가 지원
2.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환경닥터제)
3.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관리방법 지원

1. 산단 배출업소 맞춤형 인허가 지원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경기남부지역의 국가산업단지 4개소(반월·시화·시화MTV·포승)와 지방산업단지 78개소 등 총 82개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 환경 민원 20종에 대해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다.

< 표 2-6-1 > 배출업소 및 허가(신고) 현황

(’19. 12. 3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단지수	배출업소	배출시설 허가(신고) 내역				
			계	대기	수질	기타수질	VOC
계	82	4,051	5,990	2,893	2,958	57	82
국가산단	4	2,380	3,576	1,730	1,732	43	71
지방산단	78	1,671	2,414	1,163	1,226	14	11

2019년 현재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4,051개소 배출업소(국가산단 2,380개소, 지방산단 1,671개소)의 5,990개 배출시설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중 2019년 한해 동안 3,578건(대기 2,183건, 수질 1,370건 VOC 등 25건)의 대기 및 수질관련 허가 및 신고처리를 하였다. 향후공단관리사업소의 관할 사업단지 증가와 지도·점검 확대 영향으로 인허가 처리건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 표 2-6-2 > 최근 3년간 배출업소 및 배출시설 인·허가 처리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산단수	입주업체	배출업소	배출시설	처리건수	처리기간		단축율
						법정기간	처리실적	
2019	82	27,403	4,051	5,990	3,578	5.3일	0.5일	90%
2018	73	26,901	3,798	5,719	3,705	5.5일	0.8일	85%
2017	67	26,568	3,638	5,435	3,642	5.5일	0.8일	86%

또한,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 요구에 부응하는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사전상담제 운영, 민원 처리 메뉴얼 제작(표준화)으로 법정 처리기간 보다 90% 이상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여 공단 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마련에 힘쓰고 있다.

< 표 2-6-3 > 주요 민원 처리기간 단축 실적

(’19. 12. 31.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처리건수	처리기간		단축율
		법정기간	처리실적	
계(평균)	3,578	5.32일	0.51일	90.34%
대기[설치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총량, VOC 등]	2,208	5~30	0.51	89.72%
폐수[설치허가(신고), 변경허가(신고), 기타수질 등]	1,370	4~15	0.53	91.16%

그리고,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매주 2회 이상 산업단지공단(반월,포승공단)으로 출장을 나가 산업단지 입주심의 및 환경관련 자문 등 환경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컨설팅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장입주 및 배출시설 인허가 절차 등 각종 환경상당으로 환경관련법령의 저촉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인의 신속·정확한 인허가 처리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 표 2-6-4 > 연도별 환경컨설팅 실적(2014~2019)

(단위: 건)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건수	693	541	331	219	517	459	

아울러,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반월·시화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 개선 관련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반월·시화 산업단지의 대기질 데이터 수집, 환경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역학조사 등 환경영향 분석 및 개선·검토를 위해 실시하며, 지자체·시민·전문가·기업체 등 여러 집단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용역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반월·시화 산업단지 인근 40만 주민의 건강상 위해성을 최소화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월·시화산업단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자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허가팀 이동욱 / ☎ 031-8008-8202)

2.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환경닥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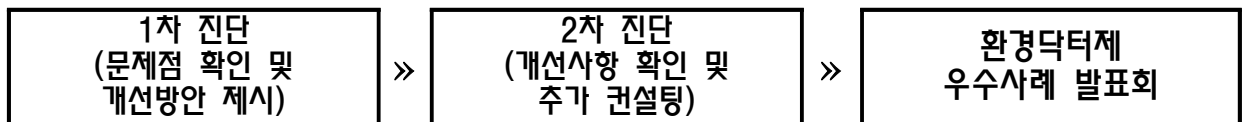
가. 추진목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지도·단속을 통한 오염물질 적정 처리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도·단속을 통한 환경오염물질 감시활동 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장 등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으로 위해 2003년부터 환경기술지원(환경닥터제)을 제공하고 있다.

나. 지원방법

환경관리 중점배출사업장 및 환경관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환경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닥터제 자문위원단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지원 대상이 대부분 시설 증설 등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방법 개선 등으로 시설투자 없이 기존 시설의 효율을 높여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술지원 항목은 대기, 폐수, 악취, 유해화학물질 등 사업장에서 겪고 있는 환경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닥터제 우수사례 발표회, 홈페이지에 개선사례 공개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사회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다. 운영현황

환경기술지원(환경닥터제)은 2003년부터 배출사업장에 무료 환경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환경닥터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3년부터 2,576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한정된 대상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였고 기존 연간 60개소에서 80개소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 표 2-6-5 > 환경기술지원(환경닥터제) 지원현황

지원연도	합계	'03~'15	'16	'17	'18	'19
지원업체	2,576	2,296	80	60	60	80

다. 기대효과

환경기술지원(환경닥터제) 사업은 주요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중점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으로 방지시설 효율을 증대시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등 환경기술인에 대한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배출사업장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담당자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2팀 전재희 /☎ 031-8008-8218)

3. 신규 사업장 환경시설 운영관리방법 지원

가. 추진 배경 및 경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총 7개 점검부서(환경점검1팀~7팀)와 환경관리팀, 환경허가팀으로 나누어져 31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다.

(단위: 개소)

구분	점검 업체 수			위반업체 수			위반율 (%)
	합계	대기	수질	합계	대기	수질	
2019	7,276	3,620	3,656	757	484	273	10.4
2018	7,252	3,738	3,514	697	488	209	9.6
2017	6,032	3,106	2,924	525	404	121	8.7

산업단지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점검하는 업체 수도 6,032개소에서 7,276개소(2017년에서 2019년까지)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장 수도 증가하면서 위반율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위반하는 사항들을 보면 기본적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도 인지하지 못하는 다수의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자문단을 꾸려 법적 작성서류 및 환경시설 운영이 미흡한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환경관리 유도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2014년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새로운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장의 환경오염 예방과 기업지원을 위해 도입하게 되었으며 매년 새롭게 환경허가팀을 통해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정리한 후 방문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나. 사업개요

환경컨설팅은 전담 인력, 법령 및 관련 정보 부족으로 환경관리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안내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로, 소규모 사업장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그리고 신규 인·허가 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방법 기술지원, 중소기업의 안정적 환경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다. 추진실적

연도별	2019년			
	소계	대기	수질	공통
사업장 개소	226	66	88	72

2019.12.31.일 기준으로 총 226개소의 사업장을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관리 방법 지원을 하였으며 그 중 대기사업장 66개소, 수질사업장 88개소, 공통적으로 있는 사업장이 72개소였다.

※ 추진방법: 전월 인·허가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관리방법 지원을 마치고 만족도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총 226개 사업장 중 매우만족 181개소, 만족 41개소, 보통3개소, 불만족 1개소가 나왔다. 약 98% 만족 이상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더욱 이 사업을 추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



<그림 2-6-1> 신규 사업장 환경시설 운영관리 방법지원

라. 기대효과

신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사업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예를 들면, 인·허가 및 가동개시일, 사업장 종수별, 업종별, 배출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 등의 내용)이 가능해져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변 우수 환경기업과의 멘토링 연결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추진이 가능해지고, 실시하는 환경컨설팅으로 기술력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기본적인 법령 위반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자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2팀 조민제 /☎ 031-8008-8219)

제2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감시 강화

1. 대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2. TMS등을 통한 과학적 감시 활동

1. 대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가. 촘촘한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관리로 도민체감형 환경질 개선

배출시설 관리체계

대기환경보전법은 1990년 8월 제정되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주된 배출시설 관리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허가·신고제도의 운영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일정 기준농도 이상으로 배출하거나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허가를, 그밖에 시설은 신고를 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은 먼지 등 36개이다. 현재 2015년 1월1일부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었고 2020년1월1일부터 배출허용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토록 유도하고 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는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법적인 규제기준이 설정되면 이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시에는 벌칙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혹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별로 규모 및 범규위반 횟수 등에 따라, 우수, 일반,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고 있다.

2019년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총 10,398업소를 점검하여 2311개 위반업소(위반내역 2311개)를 적발하였다. 위반내역은 배출허용기준초과 80, 방지시설 등 부적정운영 248, 무허가 527, 기타 1456개 이며 이에 따른 조치내역은 개선명령 101, 조업정지 261, 사용중지 및 허가취소 580, 순수고발 36, 경고 및 기타 1333이며, 병과고발도 721개에 달한다.

대기배출부과금의 부과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토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량 및 배출농도 등에 대하여 부과금을 부과하는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항목은 먼지 및 황산화물이며 연2회 반기별 1~3종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제출한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의거 부과하며 오염물질별로 먼지 1kg당 770원, 황산화물은 1kg당 500원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질산화물도 부과될 예정이다.

2019년 대기배출부과금액은 총 230,705천원이며 기본배출부과금 132.8백만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초과부과금은 97.8백만원 부과하였다.

< 표 2-6-6 > 대기 배출부과금 부과현황 (2019년)

(단위 : 천원)

계	기본	초과
230,705	132,812	97,892

< 표 2-6-7 >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현황(2019년)

구분	지도점검 실적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사 항						고 발 (병과)
			계	기준 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기타	계	개선령	조업지	폐쇄 금지	허가 취소	경고 기타	
합계	10,398	2,311	2,311	80	248	527	1,456	2,311	101	261	550	30	1,333	757(721)
광역시	3,620	484	484	22	17	44	401	484	29	24	34	0	395	48(46)
수원	238	27	27	2	3	8	14	27	2	3	5	0	14	13(10)
성남	48	4	4	0	1	1	2	4	1	0	0	0	3	0(0)
부천	262	53	53	0	8	8	37	53	0	7	8	0	38	4(4)
안양	107	16	16	1	2	0	13	16	1	2	0	0	13	2(2)
안산	775	55	55	0	1	2	52	55	0	1	2	0	52	3(3)
용인	379	66	66	1	2	26	37	66	3	1	15	0	35	28(16)
평택	289	59	59	0	3	12	44	59	0	3	6	0	44	22(16)
광명	20	2	2	0	0	1	1	2	0	0	1	0	1	1(1)
시흥	78	18	18	1	0	17	0	18	1	0	17	0	0	13(13)
군포	121	23	23	3	0	4	16	23	3	0	4	0	16	3(3)
화성	379	157	157	1	6	34	116	157	1	9	98	0	49	38(38)
이천	451	65	65	0	1	10	54	65	0	1	10	0	54	11(11)
김포	1442	777	777	13	175	251	338	777	18	188	247	0	321	450(447)
광주	111	75	75	0	9	19	47	75	5	4	19	30	17	23(23)
안성	290	31	31	0	1	2	28	31	0	2	2	0	27	4(4)
하남	48	11	11	0	0	10	1	11	0	0	10	0	1	5(5)
의왕	63	20	20	3	1	1	15	20	3	1	1	0	15	2(2)
오산	47	7	7	0	0	2	5	7	0	0	2	0	5	2(2)
여주	35	8	8	0	2	0	6	8	0	2	0	0	6	0(0)
양평	4	3	3	0	0	0	3	3	0	0	0	0	3	1(1)
과천	23	2	2	1	0	0	1	2	1	0	0	0	1	0(0)
고양	122	31	31	0	0	9	22	31	0	0	2	0	22	18(11)
의정부	34	3	3	0	0	0	3	3	0	0	0	0	3	0(0)
남양주	359	57	57	1	2	13	41	57	1	1	11	0	41	15(12)
파주	167	70	70	4	6	25	35	70	5	4	25	0	36	17(17)
구리	22	2	2	0	0	0	2	2	0	0	0	0	2	0(0)
포천	602	112	112	17	6	22	67	112	17	5	23	0	67	29(29)
양주	108	48	48	8	1	4	35	48	8	1	5	0	34	2(2)
동두천	58	12	12	2	0	0	10	12	2	2	0	0	8	0(0)
가평	37	3	3	0	0	1	2	3	0	0	1	0	2	1(1)
연천	59	10	10	0	1	1	8	10	0	0	2	0	8	2(2)

나.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합리적 관리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업무는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 및 산업단지의 외 1~2종에 대해서는 도에서, 산업단지 외 3~5종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도에서는 2017년도 10월부터 배출업소 관리 강화를 위하여 환경안전관리과, 북부환경관리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관리하던 지도점검 업무를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업소의 환경관리 자율기반을 조성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배출업소의 방지시설 설치 상태 및 위반횟수에 따라 우수, 일반,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등급을 부여하여 차등관리 하고 있으며, 폐수배출규모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하여 정기점검 횟수를 달리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오염 우심지역 소재업소, 민원유발 및 상습적 위반 등 중점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폐수방류수의 수질조사를 실시 등 집중단속으로 이들의 수질오염 행위에 적극 대처한 결과 2019년에는 9,956업소를 점검 1,282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다.

< 표 2-6-8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지역구분	대상 규모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항목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총유기 탄소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mg/L)	총유기 탄소량 (mg/L)
청정지역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40 이하	60 이하	80 이하	5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5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75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30 이하	25 이하	30 이하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위반내역은 배출허용기준초과 276, 방지시설등 부적정 운영 169, 무허가194, 기타 643개 업소이며 이에 따른 조치내역은 개선명령 303, 조업정지 72, 사용중지 및 허가 취소 252, 순수고발 39, 경고 등 기타 616개소이며, 병과고발은 196개소에 달한다.

수질배출부과금의 부과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종 ~ 4종 사업장에 한하여 상·하반기 두 번 기본배출부과금을,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및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

< 표 2-6-9 > 수질 배출부과금 부과현황 (2019년)

(단위 : 천원)

계	기본	초과
3,880,017	548,784	3,331,233

< 표 2-6-10 > 폐수배출업소 지도 · 점검현황(2019년)

구분	지도점검 실적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역					조 치 사 항					고 발 (병과)	
			계	기 준 초 과	비 정 상 가 동	무 허 가	기 타	계	개 선 령	조 업 지	폐 쇄 용 지	허 취 소		경 고 기 타
합계	9,956	1,282	1,282	276	169	194	643	1,282	303	72	246	6	616	235(196)
광역	3,656	273	273	61	18	13	181	273	94	9	10	0	157	18(15)
수원	373	38	38	14	2	3	19	38	14	2	2	0	19	5(4)
성남	111	32	32	1	17	1	13	32	18	0	1	0	13	1(1)
부천	273	44	44	7	1	16	20	44	6	1	16	0	21	7(7)
안양	156	13	13	6	0	0	7	13	6	0	0	0	7	0(0)
안산	801	52	52	14	0	2	36	52	13	1	2	0	35	1(0)
용인	477	70	70	8	2	14	46	70	9	1	9	0	46	18(13)
평택	284	38	38	9	3	7	19	38	9	4	1	0	18	14(8)
광명	50	4	4	0	0	0	4	4	0	0	0	0	4	0(0)
시흥	89	9	9	2	0	5	2	9	2	0	5	0	2	1(1)
군포	86	10	10	2	0	0	8	10	2	0	0	0	8	0(0)
화성	331	142	142	17	72	30	23	142	16	5	99	0	21	30(29)
이천	419	45	45	15	1	8	21	45	11	3	8	3	20	7(7)
김포	588	147	147	8	13	54	72	147	6	16	53	0	68	77(73)
광주	79	7	7	1	1	5	0	7	1	1	4	0	0	5(4)
안성	175	13	13	3	2	0	8	13	3	0	0	0	10	1(1)
하남	88	8	8	2	1	1	4	8	2	1	1	0	4	2(2)
의왕	69	7	7	1	1	0	5	7	1	1	0	0	5	0(0)
오산	60	17	17	3	0	6	8	17	3	0	6	0	8	4(4)
여주	38	5	5	4	0	0	1	5	4	0	0	0	1	0(0)
양평	42	12	12	0	0	0	12	12	0	0	0	0	11	1(0)
과천	16	2	2	1	0	0	1	2	1	0	0	0	1	0(0)
고양	266	28	28	1	14	5	8	28	2	1	12	0	7	9(3)
의정부	76	12	12	2	0	4	6	12	2	0	1	0	6	6(3)
남양주	252	33	33	16	5	4	8	33	12	4	2	0	12	6(3)
파주	154	34	34	14	6	0	14	34	14	4	0	0	16	4(4)
구리	62	9	9	5	0	1	3	9	5	0	1	0	3	1(1)
포천	447	74	74	26	9	8	31	74	24	11	8	2	28	12(11)
양주	181	42	42	20	0	3	19	42	14	6	3	0	19	0(0)
동두천	82	5	5	2	0	0	3	5	2	0	0	0	3	0(0)
가평	74	7	7	2	0	0	5	7	2	0	0	0	5	0(0)
연천	101	50	50	9	1	4	36	50	5	1	2	1	38	5(2)

(담당자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1팀 박승미 / ☎ 031-8008-8209)

2. TMS등을 활용한 과학적 감시활동

가. 대기오염 자동감시체계 구축

TMS(Tele Monitoring System)란 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24시간 감시하는 원격 시스템이다. 그동안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현황은 지도·단속에만 의존하였으나, 2002년 2월부터 굴뚝자동감시시스템(CleanSYS)을 대기 1~3종 사업장 중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부착하면서 과학적인 관리체계로 전환되었다. 2015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2019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대기관리권역 확대와 대기 3종 사업장이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추가되면서 부착대상 사업장이 늘어났다.

굴뚝자동감시시스템은 오염발생원별로 설치된 자동측정기기와 관제센터(한국환경공단)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 황산화물(SO_x), 질소산화물(NO_x), 일산화탄소(CO), 염화수소(HCl), 암모니아(NH₃), 불화수소(HF)의 7개 대기오염물질과 유량 등을 24시간 상시 감시하고 있다. 또한 자동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출설비를 원격 조정함으로써 각종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 측정된 자료를 부과금과 행정처분의 자료 등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완화는 물론 대기질 개선 및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체계구축을 위해 2009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에 대해 일정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2019년 한해 설치비 10개사업장, 운영관리비 26개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현재 경기도에는 146개의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되어있으며, 경기도는 굴뚝 자동감시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은 물론 대기질 개선 등 환경관리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2-6-2> TMS 운영체계



(담당자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3팀 원두희/☎ 031-8008-8233)

나. 드론

경기도에서는 환경시설 지도·점검 시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육안으로 확인이 힘든 대형 배출사업장 환경시설 상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드론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드론 9대를 활용하여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접근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의 불법행위(무단방류 등)을 감시하고 있다.

드론 비행 가능지역은 경기북부(과주, 양주, 포천, 의정부, 남양주, 구리, 고양, 동두천, 가평, 연천), 공항관제권(김포, 성남, 수원, 오산, 평택, 이천) 이외 지역에서 가능하다. 또한 비행제한 구역 및 관제권일 경우 별도 비행승인이 필요하여 승인 후 드론이용 환경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412개소 점검 47개소 위반적발 및 2019년 413개소 점검 38개소 위반 적발하였다.

보통 촬영 4일전 관할 책임부대에 신청을 해야 하고, 비행 3일전 지역별 승인기관에 신청을 해야 한다. 드론과 같은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오염행위를 상시모니터링 하여 쾌적한 경기도 환경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 표 2-6-11 > 드론 장비현황

모델번호	측정항목	대수	대당구입가격 (단위:천원)	구입일시
팬텀4프로	사진,동영상	6	1,650	2017.04.27
메트릭스200	사진,동영상	1	7,753	2018.01.03
메트릭스210	사진,동영상	2	9,800	2019.06.03

< 그림 2-6-3 > 드론 장비사진



(담당자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1팀 김중면 ☎ 031-8008-8386)

제3절

도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환경행정 구현

1.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2. 민간환경감시원 운영
3.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4. 환경법 위반업소 공개

1.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가.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개요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은 2003년도부터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사회 각계각층 및 지역 사회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촉·운영함으로써 환경보전 참여의식 확산 및 민간에 의한 자율적 환경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경기도 위촉 명예환경감시원은 총 300명으로 하천주변 등에서 환경 정화활동과 환경오염신고를 전개하고, 일부 지역의 환경오염행위 순찰 및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표 2-6-12 > 명예 환경감시원 현황

기관명	명칭	인원	위촉기간	활동내용	활동지역	보수(만원)	운영근거
도	명예환경감시원	300명	3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계도활동, 환경보호 캠페인	산림, 공원, 하천 등	없음	경기도 명예환경감시원운영 지침

자료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나. 명예환경감시원 활동내역

도에서 위촉한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보전캠페인 활동 및 교육홍보 참여,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활동, 도·시·군 환경부서와 합동단속 등 지도·점검 지원 활동을 한다.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대기분야 54건, 수질분야 71건, 폐기물분야 25건, 유독물 및 기타 33건 등 총 183건의 환경오염신고를 하였다. 또한 18건의 환경정화 및 보호캠페인을 실시하였고, 91건의 합동점검 및 오염행위 감시활동, 20건의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 표 2-6-13 > 명예 환경감시원 환경오염신고 현황

구분	계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기타
건수	183	54	71	25	0	33

자료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 표 2-6-14 > 명예 환경감시원 캠페인 및 홍보활동 현황

구분	환경정화 및 보호캠페인	오염행위 감시활동	합동점검	환경교육 및 기타
건수	18	183	91	20

자료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담당자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1팀 손승현 / ☎ 031-8008-8216)

2. 민간환경감시원 운영

가. 민간환경감시원 운영 개요

민간환경감시원 운영은 1990대 후반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환경오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단체 및 시·도의원들이 『반월·시화 산업단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민관 감시기구 설치』를 건의하여 시흥 및 안산시에서 민간환경감시단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20년간 지자체,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환경오염행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환경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게 되었다.

나. 민간환경감시원 활동내역

민간환경감시원은 반월·시화산단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악취검사(관능) 및 민원빈발지점 악취포집, 민관합동단속에 참여한다.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586회 자체순찰 및 의심사업장 보고(감시원→市)로 26건 위반사항 적발하였다. 민간감시원은 단속권한이 없으므로 자체순찰시 의심사업장을 발견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점검하여 처분하고 있다.

민간환경감시원 활동은 환경오염사고 및 민원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산업단지 순찰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경각심을 주어 불법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 표 2-6-15 > 민간환경감시원 활동 및 실적

구 분	자체순찰 횟수	합동점검 지원	위반현황			
			계	대기	수질	기타
건 수	743	431	53	28	1	24

자료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담당자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1팀 손승현 /☎ 031-8008-8216)

3.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개요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제도는 2000년도부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속대처 및 민간감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민원인은 인터넷(국민신문고, 경기도홈페이지, SNS 등), 전화(031-120, 128),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환경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환경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처분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3~300만원) 하고 있다.

< 표 2-6-16 >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	보 상 기 준	비 고
과태료 부과대상	부과액의 10%(최고10만원, 최저3만원)	- 위반사항은 없으나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문화상품권지급 가능 (1만원 상당) - 동일건에 대해 다수인이 신고 시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 하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 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 부과대상	징수교부금의 10%(최고50만원, 최저3만원)	
행정처분 대상	경고 및 개선(시정)명령 : 5만원 조업정지 및 사용중지 : 10만원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 : 20만원	
사법처분 대상 (징역형·벌금형 등)	징역형(금고형) : 최고300만원, 최저200만원 벌금형 : 벌금액의 10%(최고 200만원) 선고유예 : 20만원, 기소유예 : 1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선고를 기준으로 함)	

자료 :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별지별표)

나.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운영내역

2019년 한해 동안 환경오염행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분야 225건, 수질분야 40건, 폐기물분야 1건, 악취 및 소음 등 기타 5건 등 총 271건의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접수 되었고, 이 중 44건은 환경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처분 되었으며, 26건에 대하여는 3,480천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 표 2-6-17 > 2019년 환경오염행위 신고 현황

구 분	계	대 기	수 질	폐기물	기타 (악취, 소음 등)
건 수	271	225	40	1	5

자료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 표 2-6-18 > 2019년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현황

구 분	계	대기	수질	폐기물	기타 (악취, 소음 등)
건 수	26	21	4	1	-
지급액 (단위:천원)	3,480	2,450	980	50	-

자료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담당자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5팀 한재두/☎ 031-8008-8234)

4. 환경법 위반업소 공개

경기도는 2000년부터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업소 중 개선명령 이상 또는 고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경기도는 홈페이지에 위반사항을 공개함으로써 환경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불법 오염행위를 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근절시켜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폐수 무단방류와 같이 중대한 환경법규를 위반한 경우 일간지 등 언론에 위반 사실을 제공하여 사업장 및 도민에게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위반업소가 재차 위반하지 않도록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다.

행정처분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에는 위반업소명, 위반 및 처분내용 등을 즉시 공개한다. 그러나 위반사항이 시정되면 즉시 삭제함으로써 기업의 영업을 최대한 보호하고 자율적인 환경규정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 표 2-6-19 > 최근 3년간 위반업체 인터넷 공개내역

(단위 : 개소)

구분	계			경기도 본청			시·군		
	총계	대기	수질	계	대기	수질	계	대기	수질
계	5,970	3,489	2,481	570	265	305	5,400	3,224	2,176
2018년	2,063	1,243	820	98	66	32	1,965	1,177	788
2019년	2,545	1,532	1,013	205	89	116	2,340	1,443	897
2020년 (9.30.기준)	1,362	714	648	267	110	157	1,095	604	491

(담당자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1팀 안현준 / ☎ 031-8008-8385)

제4절

숲속공장(Plant in the forest) 조성

1. 숲속공장 추진배경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안

1. 숲속공장(Plant in the Forest) 조성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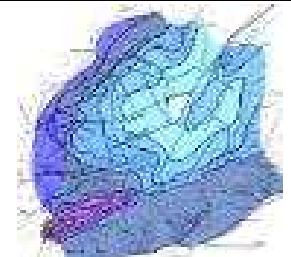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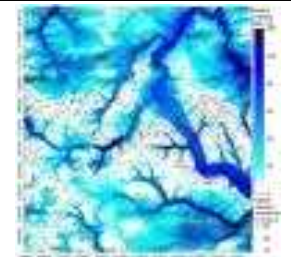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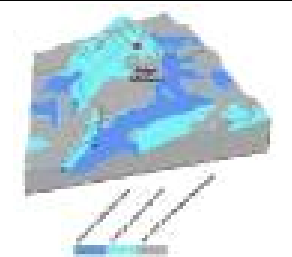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약 30%인 19,405개소가 경기도에 있어 미세먼지(PM10) 배출량이 연간 약 1,417톤으로 전국 최대이다.

현행법상 환경관리는 긴 시간 오염물질 발생억제에 대한 노력을 해왔으나, 국내 및 주변국의 경제 위주 발전에 오염물질 발생농도 저감이라는 질적인 환경관리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지만 오염물질 발생 총량(사업장)의 증가라는 양적인 부분은 제 자리 걸음일지도 모른다.

이에, 경기도는 선진국 우수사례 중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바람길 숲에서 영감을 얻어 나무와 대기오염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한 결과 산림청 자료에 나무 1그루당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35.7g 정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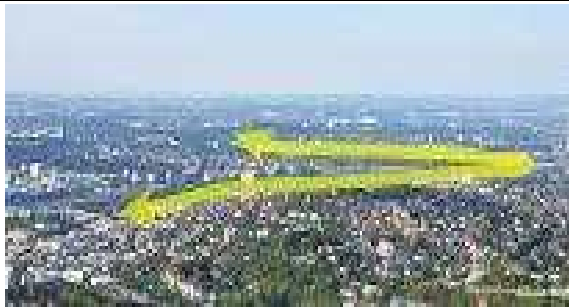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장 유희부지에 나무를 심는 내용으로 설문조사와 사업설명회를 개최, 최종 삼성전자 등 121개소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정화 나무심기 내용으로 「숲속 공장(Plant in the Forest) 조성」 협약을 체결, 2021년까지 3년간 공장 내 나무심기 및 쉼터 등을 조성하기로 약속하였고 이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내용으로 이후 몇몇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표 2-6-20>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바람길숲 조성 및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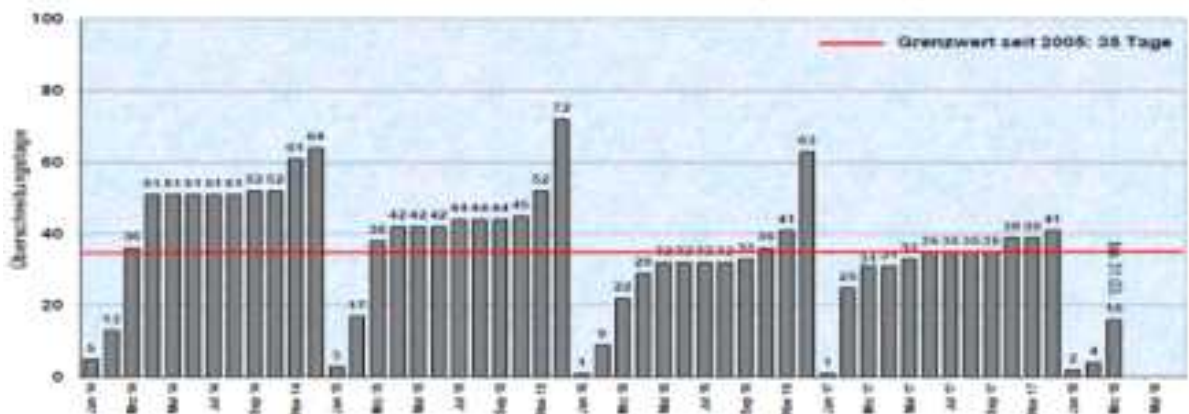
<p>□ 사업의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 열섬 완화를 위한 도시 대기 정체 해소를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슐로스가든(Schlossgartenanlagen)에서 킬레스베르크(Kilesberg)까지 총 길이가 8km에 100ha 규모의 바람길 유도를 위해 도시숲 Green-U forest를 조성 - 2020년까지 슈투트가르트 중앙(Stuttgart HauptBahnhof)을 지하화하여, Green-U forest를 확충 계획 			
			
도시숲의 도심미기후 조절효과 분석		산줄기 찬바람 생성모델에 의한 공간화	

□ 추진 효과

- 미세먼지 고농도($PM_{10} > 50 \mu g/m^3$) 일수 감소, 2017년말까지 30%의 미세먼지 저감 (고농도 일수, 10회('14) → 3회('17) 효과, 암네카토르 지점 기준)



Anzahl der Überschreitungstage (Monatssummenwerte) für $PM_{10} > 50 \mu g/m^3$
LUBW Station "Am Neckartor" (2014 - 2018)



2. 추진내용 및 성과

숲속공장 조성 추진사업은 사업장 주변 유휴부지에 공기정화 효과가 큰 소나무, 삼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을 심어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쉼터 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숲속 공장’ 조성에 사용되는 소나무, 삼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의 나뭇잎에는 미세 먼지를 흡착·흡수하는 기능이 있으며, 나뭇가지와 줄기에는 지상으로 가라앉은 미세 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평균 25.6%의 미세먼지와 40.9%의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3월 26일 경기도와 삼성전자 등 121사간 협약 체결, 그해 12월말까지 나무 3만여 그루 식재하였다. 이는 매년 미세먼지 1,071kg* 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산림청 자료 : 1그루당 35.7g 정화)

<그림 2-6-4> 숲속공장 조성 협약식(주요기업)



삼성, 기아, 현대, SK 등 10개사

<그림 2-6-5> 숲속공장 조성 협약식(전체기업)



협약기업 전체 121개사

3. 평가 및 발전방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단계의 관리에 더 나아가 배출된 오염물질을 전기 등 별도의 연료가 필요 없는 천연 공기청정기인 나무를 활용, 전국 최초로 시행한 「숲속 공장(Plant in the Forest) 조성」 사업은 정부 재정지원 없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백년이상 저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도내 모든 공장을 대상으로 「1사 1그루」 나무심기 운동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경기도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림 2-6-6> 숲속공장 조성 참여사업장 전경



<그림 2-6-7> 숲속공장 조성 참여사업장 전경



<그림 2-6-8> 「1사 1그루」 나무심기 홍보물



(담당자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점검2팀 강철중 / ☎ 031-8008-8235)

부 록

1. 주요 환경통계
2. 관련 법률 및 소관 조례

1

주요 환경통계 (2019. 9. 30. 기준)

기후·에너지 분야

○ 최종 에너지원별 소비량(2017)

(단위 : 1,000toe)

구분	합계	석유제품	전력	LNG 도시가스	신재생	열에너지	석탄
경기도	29,333	11,647	9,876	5,040	1,220	1,247	303
구성비(%)	100	39.7	33.7	17.2	4.2	4.3	1.0
전국	233,901	117,861	43,666	24,053	12,520	2,441	33,260
구성비(%)	100	50.4	18.7	10.3	5.4	1.0	14.3

○ 1차 에너지원별 생산량·공급량(2017)

(단위 : 1,000toe)

구분		석탄	석유	LNG	수력원자력	신재생
경기도	생산량	-	-	-	174	1,515
	공급량	303	12,024	15,251	174	1,515
전국	생산량	702	-	341	33,105	15,847
	공급량	86,177	119,400	47,536	33,105	15,847

○ 전력자립도(2017)

구분	전력발전량(GWh)	전력소비량(GWh)	전력자립도(%)	비고
경기도	61,851	114,842	53.9	11위
전국	553,530	507,746	109.9	

○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2017)

구분	신재생 발전량(GWh)	전력 발전량(GWh)	신재생발전비중(%)	목표
경기도	2,245	61,851	3.6	30년까지 발전비중 20%
전국	46,623	553,530	8.4	재생에너지 3020

○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 현황(2017)

(단위 : MWh)

구분	합계	연료 전지	수력	해양	태양광	폐기물	바이오	풍력
경기도	1,247 (100%)	101 (8.1)	277 (22.2)	254 (20.4)	361 (28.9)	46 (3.7)	203 (16.3)	5 (0.4)
전국	15,702	251	1,794	255	5,835	3,794	2,284	1,143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현황(2017)

(단위 : MWh)

구 분	합계	연료 전지	수력	해양	태양광	폐기물	바이오	풍력
경기도	2,244,820 (100%)	623,380 (27.8)	550,031 (24.5)	489,466 (21.8)	400,164 (17.8)	119,265 (5.3)	56,851 (2.5)	5,664 (0.3)
전국	46,623,321	1,469,289	2,819,882	489,466	7,056,219	23,867,053	7,466,664	2,169,014

○ 도 온실가스 배출현황(2017) 133.5백만톤(비산업 68.6 + 산업 64.9)

○ 지구 평균기온 14.44℃

대기·환경보전 분야

○ 미세먼지 오염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PM ₁₀ (μg/m ³)	54	54	53	53	51	44
PM _{2.5} (μg/m ³)	-	-	26	28	27	25

○ 대기오염 주의보·경보 발령횟수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27	49	87	97	117	146
오존	26	32	27	62	47	77
미세먼지(PM ₁₀)	1	1	48	25(2)	40(4)	26(4)
초미세먼지(PM _{2.5})	-	16	12	10	30	43

※ () : 경보발령횟수

○ 황사발생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황사발생 횟수	3	9	11	5	9	5
황사특보 횟수	-	-	1	-	-	-

○ 대기오염 전광판 28개 市·郡, 88개소

○ 일반 대기오염 측정망 31개 市·郡, 94개소

○ 대기오염 경보제 시행 지역 4개 권역 31개 市·郡

- 저녹스버너 보급('06~'19) 3,260대
- 가정용저녹스 보일러 보급('17~'19) 17,967대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01~'19) 12,363대(버스 12,271대 / 청소차 92대)
- 전기자동차 보급('11~'19) 9,159대
-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11~'19) 12,111기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19) 195대
-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19) 4개소
-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04~'19) 658,022대
 ※ 조기폐차 321,516대, 저감장치 243,039대, 엔진개조 91,234대, 건설기계 2,233대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5,421개소
 ※ 지하역사 79, 실내주차장 1,508, 대규모점포 266, 보육시설 1,332, 목욕장 306, 기타 1,930
- 법적관리규모 미만 취약계층 사용시설 15,514개소
 ※ 보육시설 4,197, 노인시설 9,897, 장애인시설 643, 지역아동센터 775, 기타 2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49,906개소(누계)
 ※ '09년 ~ '18년 38,426개소, '19년 11,480개소
- 『맑은 숨터』 조성 969개소(누계)
 ※ '16년 10개소, '17년 19개소, '18년 527개소, '19년 413개소

환경안전 분야

-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6,628개소
 ※ 대기(19,044)/수질(17,908)/기타수질오염원(5,623)/휘발성유기화합물(1,518)/악취(2,535)
- 대기오염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307개소
- 환경안전기술지원단 지원 실적 526개소
 ※ 대기(305)/수질(59)/유독물(38)/비산먼지(4)/악취(90)/소음(2)/폐기물(28)

- 폐수처리업 11개소
 ※ 폐수수탁처리업(8개소) / 폐수재이용업(3개소)
- 공공폐수처리시설 23개소(481,440m³/일)
- 환경서비스업 675개소
 ※ 환경전문공사업 365, 측정대행업 112, 환경컨설팅회사 49, 환경관리대행기관 149
- 악취관리지역 지정 8개소
 ※ 국가산업단지(3개소) / 일반산업단지(3개소) / 기타지역(2개소)
-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2,574개소
-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추진실적('06~'19.9) 437개소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알선판매업 제외) 1,998개소
 ※ 제조업(280개소), 사용업(1,234개소), 보관·저장업(58개소), 운반업(52개소), 판매업(374개소)
- 석면슬레이트 주택 철거 지원 실적('11~'18) 10,186동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빛공해 관리('19.7.19. 시행) 29개 시·군
 ※ 가평·연천(인구밀도 100인/km² 미만), 관광특구(관광진흥법) 제외, 공항·항만시설 제외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2개소(수원, 가평)

자원순환 분야

- 1인 1일당 생활쓰레기 발생량 0.87kg/인·일
 ※ 총 발생량 11,653톤/일(매립 7%, 소각 32%, 재활용 61%) * '18년('17년도) 전국통계 기준
- 청소인력 및 차량현황 8,801명 / 2,494대
-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3,232톤/일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비율 93%
 ※ 공동주택 87%, 단독주택 100%, 음식점 등 상가지역 100%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20개 市·郡 26개소(2,499톤/일)
-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12개 市·郡(191개소)
-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선별장) 26개 市·郡 28개소(1,417톤/일)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3개 市·郡 26개소(5,114톤/일)
※ 광역화 8개소(18개 시·군) 1,780톤/일 처리, 단독 18개소 3,334톤/일 처리
-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2개 市·郡 2개소(155톤/일)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9개 市·郡 9개소(8,361천㎡)
- 사용종료매립지 24개 市·郡 125개소(2,226천㎡)
※ 사후관리 40개소, 사후관리 제외 85개소
- 사용종료매립지 공원화 사업 28개소(완료27, 조성중1)
- 폐기물처리업체 5,048개소
※ 사업장폐기물 4,253개소, 건설폐기물 472개소, 지정폐기물 281개소, 의료폐기물 42개소
- 자원순환마을 89개 마을

기타 분야

- 녹색환경지원센터 3개소(경기, 안산, 시흥)
- 녹색제품 제조업체 1,145개소
- 환경관련 비영리 법인 40개 법인(남부29, 북부11)
- 환경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270개 단체(남부191, 북부79)
- 생태·경관보전지역(명지산, 청계산) 22.06km²
- 야생동물 구조·치료기관 지정 27개소
- 멸종위기 야생 생물 267종(1급 60종, 2급 207종)

2

관련 법률 및 소관 조례

□ 관련 법률

【환경정책과】	【미세먼지대책과】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쟁 조정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자연공원법	【환경안전관리과】
지속가능발전법	물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교육진흥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습지보전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기후에너지정책과】	석면안전관리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석면피해구제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광산안전법	【자원순환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광업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농어촌전화촉진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폐기물관리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석탄산업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송유관안전관리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촉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에너지기본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에너지 및 자원 사업특별회계법	【수자원본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지하수법, 하수도법, 수도법, 토양환경보전법
열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먹는물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원개발촉진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	

□ 소관 조례

【환경정책과】	【미세먼지대책과】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경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경기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환경안전관리과】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경기도 생활악취방지 지원 조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경기도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측정대행업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화학물질지역협의회 설치·운영 지침
【기후에너지정책과】	【자원순환과】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북부환경관리과】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경기도 주민군지 및 공영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반월·시화공단 대기특별대책반 운영 규정